

행정 간 행물 등록 번호
11-1270000-00106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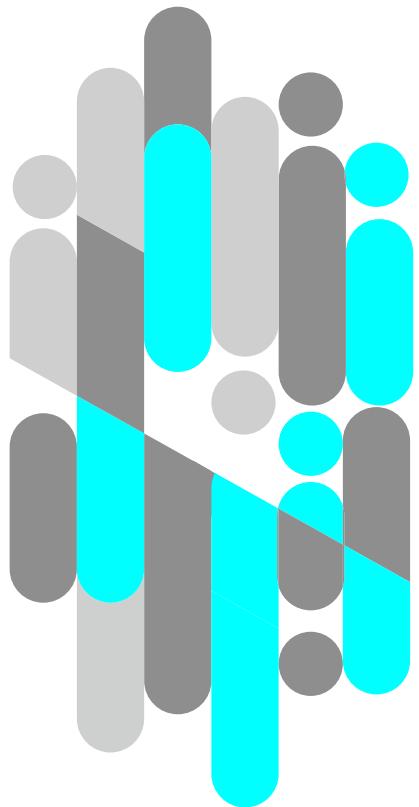
2020 성범죄백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0 성범죄백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발간사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국가에서 등록·관리하여 범죄자의 재범 의지를 감소시키고, 재범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대상자 중에 공개·고지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상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 스스로 성범죄로부터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의지를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0년 이른바 ‘원조교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의 신상공개제도가 먼저 시행되었고, 2006년에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신상정보 열람이 인터넷을 통한 공개와 우편으로 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1년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한 후 성폭행하고 살인한 이른바 ‘김길태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적용 범위가 종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 범죄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업무를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19세 이상은 법무부에서, 19세 미만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던 것을 2013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등록은 법무부에서,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도록 바뀌는 등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상정보등록 사건의 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 현황을 보면 2008년에 264건에서 2018년에는 14,053건으로 53.2배 늘어났고, 2019년에는 관리되는 전체 신상정보등록 사건이 83,000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성폭력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고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해 보다 엄정한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대한 기본적 분석 자료가 필요합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신상정보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보관·관리되고 있는 방대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범죄내용 등을 분석하여 이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경찰청 등의 「범죄분석」, 「범죄통계」처럼 범죄의 실태를 파악한 통계 자료도 의미가 있지만, 신상정보등록 74,956건과 등록기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2,901건의 현황을 분석한 이 백서는 성범죄자의 특징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봅니다.

2020년에는 신상정보등록제도 도입 20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간의 제도 운영 전반을 되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바람직한 제도 운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성범죄자 관리와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 연구자에게 한층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백서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직원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신상정보관리센터 직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고마움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2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강호성**

목차

제1편

서 론

제1절	발간목적	2
-----	------	---

제2절	백서구성	4
-----	------	---

1.	서론	4
2.	신상정보등록제도	4
3.	성범죄 동향 분석	5
4.	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 현황	6
5.	부록	7

제3절	일러두기	8
-----	------	---

1.	통계의 기준	8
2.	용어 해설	9

제2편

신상정보등록제도

제1절	신상정보등록제도의 개요	12
-----	--------------	----

1.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의의	12
2.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변천 과정	13

제2절	업무절차 및 내용	19
-----	-----------	----

1.	업무절차 개요	19
2.	신상정보 등록	21

3. 신상정보 관리	24
4. 신상정보 공개	27
5. 신상정보 고지	29

제3절 외국 신상정보제도 운영 사례	32
1. 미국	32
2. 캐나다	38
3. 영국	41

제3편

성범죄 동향 분석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제1절 성범죄 현황	46
1. 신상정보등록	46
2. 성폭력범죄 기소건수와 비교	47
3. 등록 근거법	49
4. 등록유형	51
5. 선고형	55
6. 최종 심급	57
7. 선고형별 최종 심급	59
8. 형량	60
9. 사회내처우 부과 현황	61
10. 등록 종료	77

목차

제2절 성범죄자 특성	78
1. 성범죄 전과	78
2. 연령	82
3. 성별	86
4. 직업	87
5. 국적	89
제3절 성범죄 죄명별 특성	94
1. 등록사건	94
2. 선고형	96
3. 벌금형	98
4. 집행유예	100
5. 집행유예 기간	101
6. 최종 심급	103
7. 형량	105
8. 범죄시간	106
9. 범행월	108
10. 범죄 유형(접촉·비접촉)	123
11. 내·외국인	124
12. 피해자 성별	125
13. 피해자 연령	127
제4절 성범죄 재범 현황	129
1. 재등록사건	129
2. 등록 근거법	129
3. 등록 유형	130

4. 선고형	132
5. 사회내처우 부과 현황	133

제5절 성범죄 재범자 특성 135

1. 재등록 경과 기간.....	135
2. 국적	136
3. 성별	136
4. 직업	136
5. 성범죄 전과 횟수	138
6. 음주	139
7. 공범	139
8. 직권등록	140
9. 범행수단 및 방법	140

제6절 성범죄 재범의 죄명별 특성 142

1. 재등록	142
2. 범죄 발생 시간	143
3. 범행월	145
4. 범행장소	146
5. 범죄 유형(접촉 · 비접촉)	148
6. 피해자	148

제7절 분석 요약 및 주요 동향 154

1. 성범죄 분석 요약	154
2. 성범죄 재범자 분석 요약	157
3. 신상등록은 지속적 증가, 공개 · 고지 대상은 급감하는 추세	160
4.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록 증가	161

목차

제4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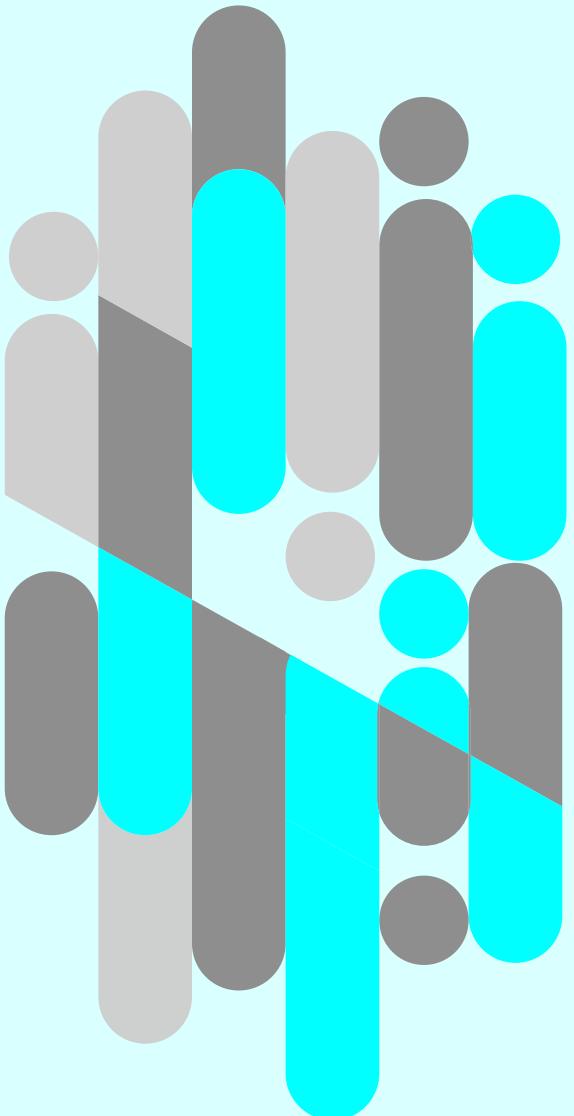
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 현황

제1절	보호관찰 현황	164
1.	접수사건 및 실시사건(병과자, 전자감독 포함)	165
2.	성별(실시사건)	166
3.	재범률	167
제2절	사회봉사명령 현황	169
1.	접수사건	169
2.	부과시간	170
제3절	수강명령(이수명령) 현황	172
1.	접수현황	173
2.	부과시간	174
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75
제4절	전자감독 현황	178
1.	현재원	179
2.	접수사건	179
3.	처분유형	180
4.	연령	181
5.	부착명령 기간	182

제5절	성충동 약물치료 현황	184
1.	집행	184
2.	판결	185
3.	죄명	185
4.	치료내용	186
5.	심리치료 프로그램	187
제6절	청구전조사 등 현황	188

부 록

1.	표/그림목차	192
2.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198
3.	신상정보등록제도 개선 방향	211
참고문헌		216



제1편

서 론

발간목적

- 아동·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범죄이다. 성범죄자의 엄격한 관리와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수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왔고 여론도 강하게 형성되어 왔다.
- 이에 전자감독제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등 연이어 여러 성범죄자 사후대책이 도입되어 시행되었고, 신상정보등록제도 또한 성범죄자 사후대책 중에 하나로 실시되었다.
-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의지를 감소시키고, 재범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등록대상자 중에서 공개·고지명령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 스스로 성범죄로부터 예방 조치를하도록 하고, 일반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의지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2000년 7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의 신상정보를 범죄 제도문으로 공개하는 형태로 최초 시행되었다. 2006년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제도가 도입되었고 2010년에 들어서는 종전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열람하던 방식에서 정보통신망(전용 공개 인터넷사이트)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인터넷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방식은 획기적이나, 제도에 관심이 없거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국민인 경우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얻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 이에 국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시행되었다.

- 2011년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되었고, 2013년에는 종전에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되었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는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 2016년에는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변혁을 맞게 된다. 그 동안 죄질이나 형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기간이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차등화(10년, 15년, 20년, 30년)하였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잔여기간의 등록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이렇게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운영과 집행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으며 등록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접수 건수를 보면 2008년 264건에서 2018년에는 14,053건으로 53.2배로 급증하였다. 2013년 이후에는 매년 1만 건 씩 증가되었으며, 2018년 기준 등록된 건수는 74,956건에 이른다.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끔찍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크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교화나 치료적 접근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교화나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범죄자 및 성범죄 특징 등의 기초 데이터이다.
- 법무부 신상정보관리센터에서는 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의 방대한 자료가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성범죄자의 판결문 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8년 까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예방활동 수립에 기초자료 활용될 수 있는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 또한 지난 19년간 운영되어온 신상정보등록제도와 업무를 되돌아보고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이 백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서론

- 발간목적, 백서구성, 일러두기로 구성되었다. 일러두기를 통해 2008년부터 2018년 까지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의 죄명, 단위, 형량 등 통계 기준을 설명했다. 또한 신규등록, 전체등록, 직권등록 등 신상정보등록 업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설명하였다.
- 전체적인 백서의 구성으로는 1편 서론을 시작으로 2편에서 신상정보등록제도를 설명하고, 3편에서 신상정보등록사건을 중심으로 성범죄 현황과 성범죄자의 특징을 분석했다. 그 다음 재등록대상사건을 통해 성범죄 재범 현황과 성범죄재범자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 4편으로 넘어가 성폭력사범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이수)명령, 전자감독,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등 사회내처우 현황을 살펴보았다.
- 부록에서는 전체 표목차와 대검찰청에서 2018년 발간한 「범죄분석」의 성폭력사범 현황(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신상정보등록제도의 향후 개선 방향 등을 설명하였다.

2. 신상정보등록제도

- 2000년 성매수자에 대한 공개제도 최초 도입부터 2006년 6월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 제도 도입, 2008년 2월 결정 주체의 변경, 2010년 공개·고지제도의 도입과 제도 적용범위의 확대, 2012년 등록면제제도 도입, 업무부서의 이원화 등의 변천과정을 확인하였다.
- 신상정보등록·열람·공개·고지제도의 의의와 집행방법 및 절차를 판결문 송달, 진위여부 확인, 제출서 접수, 사진촬영 등의 업무 절차를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등록대상이 되는 성범죄와 제외되는 성범죄를 비교하여 신상정보등록 성범죄의 유형을 설명했고, 신상등록면제 방법과 조건, 신규 등록 및 제출서 접수 증가 추이 등도 알아보았다.

- 우리나라의 신상정보등록제도에 영향을 많이 끼친 외국(미국, 캐나다, 영국)의 신상 정보등록제도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각 나라별의 연혁을 살피면서 제도운영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3. 성범죄 동향 분석

- 신상정보등록 현황을 통해 성범죄와 성범죄자의 현황 및 특성을 알아보고, 2018년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 성폭력범죄 현황(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발생건수, 발생월, 발생시간 등과 비교하였다.

(1) 성범죄 현황

-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신상정보 전체등록 74,956건을 토대로 성범죄 동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신상정보등록 대상의 연도별 추이와 성폭력범죄 기소건수와 신상정보등록사건을 비교하였다. 또한, 등록 근거법, 등록 유형, 선고형, 최종심급, 형량, 사회내처우 부과 현황 등을 통해 성범죄 현황을 알아보았다.

(2) 성범죄자 및 성범죄 특성

- 성범죄자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사건 대상자의 국적, 연령, 성별, 직업, 전과를 살펴보았고, 연령별, 성별, 직업별 등 범죄자의 특징도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 성범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등록사건 추이, 선고형, 별금형, 집행유예, 심급, 형량, 범죄일시, 접촉·비접촉 여부, 내·외국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연령 등을 죄명별로 살펴보았다.
- 죄명별 등록사건을 통해 연도별 죄명에 따른 증감 추이를 확인했고, 선고형, 별금형, 집행유예 기간 등의 죄명별 분포도를 통해 각 죄명별 특이점을 살펴보았다. 각 죄명별로 범죄 발생시간과 가장 발생 건수가 많았던 시간대도 함께 살펴보았다.

(3) 성범죄 재범 현황

- 성범죄 재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신상정보등록사건 중 성범죄로 재범하여 다시 등록된 2,901건의 사건을 등록 추이, 등록 근거법, 등록 유형, 선고형, 사회내처우 부과 현황별로 살펴보았다.
- 재등록자의 원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을 비교분석했다. 재등록사건 접수 추이를 통해 재등록사건의 연도별 비율을 확인하였고, 등록 근거법, 등록 유형, 선고형, 사회내처우 부과 현황을 통해 재등록자의 원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했다.

(4) 성범죄 재범자 및 재범의 특성

- 성범죄 재범자의 특성을 재등록까지 걸린 기간, 국적, 성별, 직업, 성범죄 전과 횟수, 음주, 공범수, 직권등록여부, 범행수단 및 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 성범죄 재범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재등록 현황, 범죄일시, 발생장소, 접촉·비접촉 여부,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 재등록대상자가 원등록시점부터 재등록시까지 걸린 기간을 확인하여 재등록 추이를 확인했고, 국적을 통해 재등록대상자의 외국인 추이를 확인했다.
- 직업, 음주, 공범수, 범죄일시, 발생장소 등을 통해 재등록자의 원등록사건과 재등록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 피해자 유형(아동·성인), 성별, 관계, 인원수, 정신장애 여부 등 분석하여 재등록자의 성범죄 특성을 확인하였다.

4. 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 현황

-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 현황을 알아보았다. 성폭력 사범의 실시인원, 접수현황, 재범률, 프로그램 실적 등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이수명령), 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 조사별로 알아보았다.
- 접수사건 및 실시사건을 통해 성폭력사범의 사회내처우 추이를 확인했고, 재범률, 부과시간, 프로그램 구성 등을 통해 성폭력사범의 사회내처우 현황을 파악하였다.

5. 부록

- 「범죄분석」의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성폭력범죄 현황, 발생건수, 발생월, 발생시간 등을 표와 그래프로 나열하였고, 신상정보등록제도 개선방향으로 신상 등록 공개·고지 업무 일원화, 관계기관 연계 강화, 재범위험성 평가 활용, 분석 업무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분석항목 비교표(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분석항목	성범죄(자)	재범(자)
전체 등록사건	○	○
등록 근거법별 등록사건	○	○
죄명별 등록사건	○	○
유형별 등록사건	○	○
법원판결	○	○
사회내처우 부과	○	○
피해자특성	○	○
접촉범죄 유무	○	○
범행월	○	○
시간	○	○
성별	○	○
직업	○	○
국적	○	○
전과	○	○
등록 종료	○	-
연령	○	-
재범기간	-	○
재범종류	-	○
주거지 변동	-	○
직권등록	-	○
범행 수단 및 방법	-	○
장소	-	○
공범	-	○
음주상태	-	○

1. 통계의 기준

- 이 백서의 통계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전원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등록기간에 재차 등록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 단위는 사건 수이다. 동일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각각 다른 범죄로 복수 등록되었을 경우 등록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며, 하나의 판결에 다수의 성범죄로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는 기간을 합산했다. 이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봤다.
-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 죄명은 강간 등,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 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의 아동 성학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제작배포,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알선영업이다.
- 강간 등에는 각 법의 강간 외에 간음, 강간등상해, 강간등살인, 강간등치상, 강간등 치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강제추행에는 강제추행 외에 위계등추행, 업무상위력등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
- 유사성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동법 제7조 제2항이 포함된다.

2. 용어 해설

신규등록 건수 :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로 등록된 사건 수

전체등록 건수 : 당해 12월 31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사건 수

등록 근거법 : 신상정보등록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록·공개·고지 : 등록은 등록 명령만을 받은 대상사건, 공개는 등록 및 공개 명령만을 받은 대상사건, 고지는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모두 받은 대상사건만을 의미하며,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등록유형 : 등록·공개·고지로 등록된 사건 유형을 말한다.

성범죄 전과 : 등록사건 이전 성범죄 전과 횟수. 단, 소년보호사건, 기소유예·중지,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성매매 범죄는 제외한다.

국적 : 신상정보등록대상 외국인의 국적. 사건수가 많은 상위 8개국 및 기타로 분류

연령 : 범행일과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계산한 범행 당시 연령

선고형 : 판결문 상에 기재된 최종 선고형. 형벌이 병과되었다면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함. 집행유예는 별도로 분류

접촉범죄·비접촉범죄 : 범행이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을 포함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단, 「아동복지법」의 아동 성학대의 경우 언어나 시각자료 등의 방식을 이용한 비접촉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

직권등록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의무기간 내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무부에서 직접 등록한 사건

직업 : 등록 대상자의 현재 직업. 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부분류를 따른 관리자, 군인,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 10개에 공무원, 학생, 무직을 별도로 추가하였다. 등록 대상자가 제출서에 직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원등록사건 : 재범으로 인해 신상정보가 복수 등록된 범죄자의 최초 등록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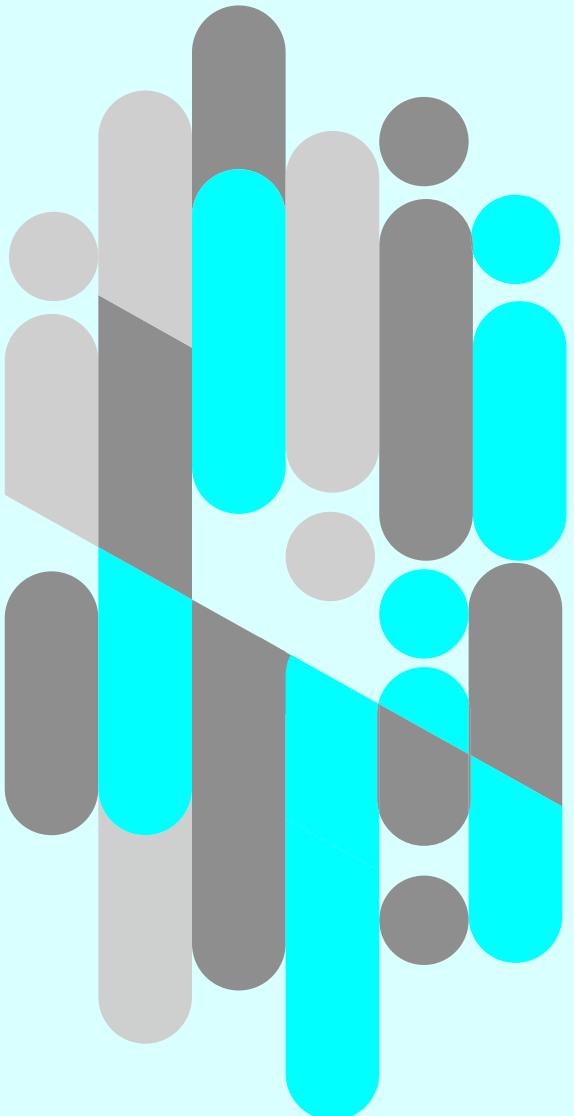
재등록사건 : 재범으로 인해 신상정보가 복수 등록된 범죄자의 최초 등록사건을 제외한 등록사건

재등록 경과 기간 : 원등록사건 등록일부터 재등록사건 등록일까지 경과된 일자

범행·주거지 행정구역 : 범행지와 범행 당시 주거지의 행정구역(행정동)의 일치여부
일치

성범죄 죄명별 특성 : 죄명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과 월
<표>의 음영(■)

성범죄 재범 <표>의 : 재등록대상자의 원등록과 재등록의 범죄가 동일한 경우
음영(■)



제2편

신상정보 등록제도

신상정보등록제도의 개요

1.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의의

-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엄벌주의에 기초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이에 따른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전자감독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 등 여러 성범죄자 관리대책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 신상정보등록제도 또한 성범죄자의 사후관리 대책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부과 받은 등록기간 동안 등록·관리하는 제도이다.
- 그리고 등록대상자 중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공개 전용 인터넷 사이트)을 통해 공개하여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고지명령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한다.
- 이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성범죄 재범 시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경찰관에게는 성범죄 발생 시 등록된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범인의 검거를 용이하게 한다.
- 또한 일반국민과 지역주민에게 공개 또는 고지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자신과 가족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예방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변천 과정

- 우리나라는 신상정보등록제도 도입 전에 신상정보공개제도를 먼저 시행하였다. 1990년대 후반 성인이 금전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이른바 원조교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면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2000년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 이후 잔혹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사회적 여론 악화와 국민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제도의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범죄 계도문을 통한 신상정보공개

- 2000년 3월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의 신상공개제도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신상공개등사전검토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 영업적 목적으로 청소년을 매매춘에 종사하게 한 자,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이용·배포한 자, 청소년 인신매매범,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에서 신상공개 대상자를 선별하였고 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다.
- 공개되는 정보는 가해자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범죄사실 요지였고, 범죄 계도문을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개월 게시하였으며, 청소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초로 도입된 신상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신상정보를 제대로 등록·관리하지 않아 범죄수사에 활용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2)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도입

- 2006년 6월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제도가 도입되었다. 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성범죄자가 재범하였을 경우 등록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한 검거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결정으로 등록 절차가 이루어졌고 등록된 신상정보는 5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대상은 성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하였다.
- 등록정보는 가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장 및 실제거주지 주소, 사진이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및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한편,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게시문을 통해 열람하던 방식에서 관할경찰관서에서 컴퓨터 단말기로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방식도 바뀌었다.
- 2008년 2월 법 개정을 통해 신상등록 여부 결정의 주체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종전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재범위험성을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법원에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재범위험성의 판단과 결정 없이 등록하도록 하였다.
- 신상등록 업무의 소관부처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었다. 등록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열람 기간은 5년이 되었다. 등록정보는 가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였고, 열람정보에는 등록정보 이외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범죄사실 요지)이 추가되었다.

(3)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 도입

- 2010년에 들어서 신상정보공개·고지제도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신상정보 열람 방식이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 이하 “성범죄자 알림e”라고 한다)를 통한 공개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로 명칭도 바뀌었다. 이에 ‘성범죄자 알림e’에서 20세 이상 성인다면 누구나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신상등록 성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최장 10년으로 정해졌다. 등록된 정보 중 성명, 연령, 주소지 및 실제거주지(읍·면·동), 사진, 신체정보(키와 몸무게)가 공개되었다.

- 2010년 4월에는 등록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 8월에는 이전의 열람대상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로 정보통신망 공개명령으로 전환이 가능한 규정도 마련되었다.
- 2011년에는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가 시행되었다. 고지제도는 고지 대상자가 거주한 곳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고지명령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 우편으로 고지되는 정보는 성명, 연령,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신체 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대상 성범죄 요지였다. 우편고지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되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 정보에다 아파트 동 호수 등 상세주소가 포함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제도라고 하겠다.

(4) 성인대상 성범죄자로 제도 적용범위 확대

- 2010년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한 후 성폭행하고 살인한 이른바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종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한하여 적용하던 신상정보등록제도를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도 적용하게 되었다.
- 2011년 4월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가 전면 시행되었고, 2013년부터는 이전에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가 추가되어 등록대상 성범죄도 확대되었다.
- 그러나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성폭력처벌법」에서는 10년으로 정한 반면, 「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20년으로 정하여 양 법률에 차이가 있었고, 담당하는 기관이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가 중복되고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5)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 도입 등 제도의 개선

- 2012년 서울 중곡동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른바 ‘서진환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자에게 실시하던 종전의 정책에 대해 전환과 혁신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다.
- 이에 국회는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범죄자 관리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 개선하였다.
- 개선된 내용을 보면, 사진을 제출하는 대신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를 직접 촬영하고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 사진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고 등록기간도 20년으로 통일하였다.
- 그리고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만 실시하였던 우편고지를 그 구역의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학원 및 교습소의 장까지 확대하였다. 더불어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대상이 확대되었다.
- 또한 최초 고지 이후 추가고지를 하지 않아 우편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우편고지 집행이후 출생, 입양, 전입신고된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등’에도 반기 1회씩 고지명령을 집행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줄였다.
- 한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이용에 있어서도 열람자를 20세 이상 성인으로 국한하고 인증 절차도 복잡하던 것을,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인증만 거치면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그리고 공개·고지 정보에 성폭력범죄 횟수와 현재 전자장치 부착여부 정보를 추가하였다.
-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변화도 있었다. 등록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20년이라는 장기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는 것에 기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2015년 7월에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의 등록 신상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규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2014헌마340, 2014헌마672, 2015헌마99(병합)).

- 이에 따라 그동안 죄질이나 형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대하여, 불법성·재범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선고형을 기준으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차등화 하였다.
- 그러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범죄자 정보관리의 필요성 증대로 인해 등록기간이 20년으로 상향되어 온 제도의 연혁과 법 개정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에 등록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징역 10년 초과는 종전보다 연장된 30년으로 하고 징역 3년 초과 10년 이하는 종전과 같이 20년으로 하였으며, 징역 3년 이하는 15년으로, 벌금형은 10년으로 등록기간을 일정화하였다.
- 그리고 2017년 6월에는 신상정보등록면제제도도 도입되었다. 등록면제란 일정 신상등록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등록대상 성범죄의 재범이 없었고, 부과 받은 보호관찰명령, 수강·이수명령 등을 집행 완료하는 등 일정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6) 업무 주관부서의 변동 및 업무의 이원화

- 2000년에 처음 도입된 신상정보공개와 2006년에 도입된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 업무의 주관부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 변경)였다. 2008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 흡수되었고, 2010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상정보등록 등 업무의 주관부서가 여성 가족부로 변경되었다.
- 2011년 신상등록제도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까지 확대되면서 피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소관부처가 분할되었다. 피해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이면 법무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19세 미만이면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였다. 업무가 이원화되어 동일한 가해자가 청소년과 성인을 동시에 성폭행한 경우에는 양 기관으로부터 우편고지서가 배달되는 등 업무의 비판을 받아왔다.
- 2012년 ‘서진환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성범죄자의 관리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당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업무를 형사 집행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관장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의 여성아동 성폭력범죄 특별 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등록업무는 법무부가, 공개업무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이후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업무 프로세스 중심으로 신상정보등록은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공개·고지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과 공개업무의 이원화로 인해, 부처 간에 통일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고, 정보 전송 등 시스템 연계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집행까지 여러 절차를 거치며 시간이 소요되어 정보 공개의 신속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표 2-1-1〉 신상정보공개제도 변천과정과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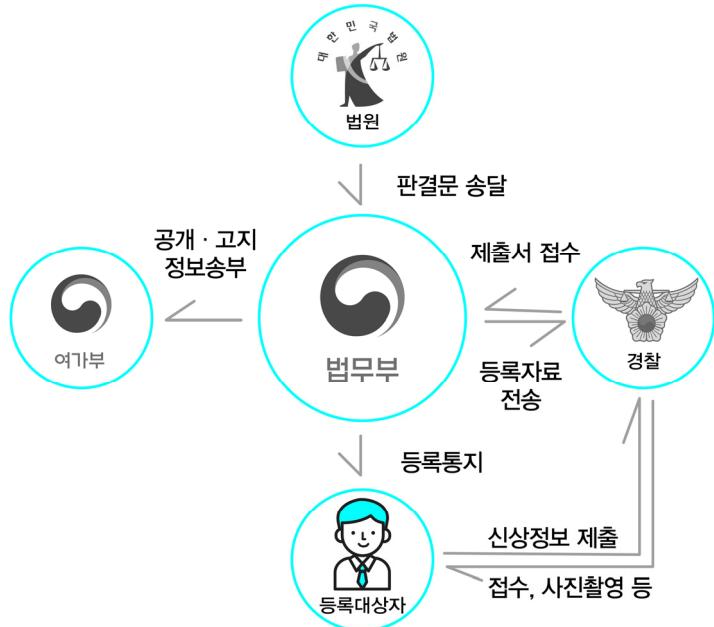
시행	주요 내용	대상자	등록정보 (등록기간)	공개정보	공개방법	결정 기관
00.7.	일반 신상 정보 공개	청소년성매수자	-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 범죄사실요지 (공개 6개월)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청소년 보호 위원회
06.6.	신상 정보 등록 열람	성폭력범죄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 중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	성명, 연령, 직업, 주소, 사진 (등록 5년)	• 인터넷공개 : 상동 • 열람 : 등록정보	•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만 관할경찰관서 방문 열람	국가 청소년 위원회
08.2.	신상 정보 등록 열람 확대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확정된 자	직업, 소재지 추가 (10년 확대)	성명, 연령,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관할경찰관서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만 열람 ※ 일반신상정보공개 폐지	법원
10.1.	신상 정보 인터넷 공개	상동	신체정보 (키, 몸무게) 추가 (20년 확대)	성명, 연령,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 신체정보, 사진, 범죄요지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성인만 인증 접근) ※ 12년부터 모든 국민 인증 접근 가능	법원
11.1.	신상 정보 우편 고지	상동	상동	공개정보 상동 ※ 우편고지 정보공개 정보, 주소 및 실제 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읍·면·동 청소년 보호세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등	법원
11.4.	성인 신상 정보 등록 공개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확정된 자까지 확대	성인대상 등록기간 (10년)	상동	피해자 연령 기준으로 19세 이상 법무부, 19세 미만 여성가족부에서 관장	법원
13.6.	등록 공개 운영 일원화	등록대상 성범죄확대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록기간 20년으로 통일	상동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등록은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에서 관장	법원
16.12.	등록 기간 차등화 등	상동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 차등화 (10, 15, 20, 30년)	상동	상동	법원

제2절

업무절차 및 내용

1. 업무절차 개요

<그림 2-2-1> 유관기관 업무 흐름도



(1) 업무절차 개요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업무 흐름은 위 <그림 2-2-1>처럼 이루어진다. 법원에서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등록대상임을 고지하고, 공개·고지 명령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등에 따라 판결과 동시에 선고한다. 법원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등록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규 및 변경 신상정보제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고, 제출한 정보의 진위여부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 법무부장관은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제출서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보완 후 신상정보 등록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신상정보등록기간 종료 시까지 신상정보를 관리하며,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된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한다. 등록기간 경과 등 종료 시에는 등록된 신상정보를 폐기한다. 등록 대상자는 본인의 등록정보 및 폐기사실을 형사사법포털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공개명령 부과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고지명령 부과자의 신상정보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고지한다.
- 등록대상자는 해마다 1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고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 등 3개 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 절차가 복잡하고, 적극적·능동적 대처가 쉽지 않다.
- 이에 법무부는 급증하는 신상정보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신상정보업무 담당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였고, 2016년부터는 법무부, 여성 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체 구성
	
신상정보등록관리시스템 등록	신상정보 개인별 카드편찰

(2) 근거법령

-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업무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보존·관리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련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성폭력처벌법」에는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신상정보의 제출내용,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록정보의 보존 관리, 신상정보등록의 면제, 등록의 종료, 등록정보의 활용, 비밀준수,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청소년성보호법」에는 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고지, 고지명령의 집행, 고지정보의 정정, 공개명령의 집행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행위가 추가되어 있다.

2. 신상정보 등록

(1) 등록대상자

- 등록대상자는 〈표 2-2-1〉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등록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이라 함은 사형, 징역, 금고, 집행유예, 별금형은 물론이고 선고유예, 형집행면제 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함시킬 것인지와 관련하여 실무상 논의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도3564)고 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대상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됨을 명백히 하였다.

(2) 신상등록 성폭력범죄의 유형

- <표 2-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유형은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다양하다. 「성폭력처벌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은 2012. 12. 법 개정 시 추가되었다.
- 다만, 성범죄 중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및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성매매 알선 및 강요행위, 매매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모든 성범죄를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등) 및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 반면에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 중에서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 등),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5조(공연음란)의 죄와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제294조(미수범)의 죄를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 행위도 제외하였다.

〈표 2-2-1〉 등록대상 성범죄

구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종류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39조[강도강간], 제342조[강도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강제추행],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강제추행],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상해·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에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미수범] ※ 제12조, 제13조 벌금형 제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강제추행],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상해·치사], 제11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청소년의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제11조 3항, 5항 벌금형 제외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신상정보 등록 절차

-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공개명령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또한 등록대상자에게 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유죄판결이나 공개명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과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 제출하는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이다. 그리고 정면·좌측·우측 상반신과 전신을 촬영하게 된다. 등록대상자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http://www.kics.go.kr>)를 통해 자신이 제출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 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고 촬영한 등록대상자의 사진은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한다.
-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내용의 정확성 검토 및 누락된 자료 보완 후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 이외에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과 성범죄 전과사실 (죄명, 횟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여부 및 그 기간 등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여 시스템에 입력한다.
- 만약 등록대상자가 제출기한 내에 신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상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직권으로 등록하고 있다.

3. 신상정보 관리

-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보존·관리한다. 아래〈표 2-2-2〉와 같이,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은 20년, 10년 초과 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은 30년간 관리하게 된다. 이때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은 등록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등록정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전산자료로 보존되고 법원에서 송부한 판결문,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 조회 자료 등 관련 서류는 개인별 카드에 편철하여 관리한다.

〈표 2-2-2〉 선고 유형별 등록기간 및 정보 확인 주기

선고형	벌금	징역 3년 이하	징역 3년 초과· 징역 10년 이하	징역 10년 초과, 사형, 무기징역	
신상등록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정보 확인주기	1년	6개월	3개월	신상정보 공개 · 고지대상자 3개월	

-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나 거주지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대상자와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 및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 〈표 2-2-2〉와 같이 벌금형은 1년마다, 3년 이하의 징역에서부터 10년 이하의 징역은 6개월마다 그리고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 공개·고지 대상자는 3개월마다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진은 최초 촬영한 후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다시 촬영에 응해야 한다. 또한 등록대상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출국 전에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입국한 후에는 14일 이내에 입국 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출국 신고 의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 또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하였던 자가 등록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등 엄격하게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 등록대상자는 아래 〈표 2-2-3〉과 같이, 등록기간의 약 70%에 해당되는 최소등록 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성범죄의 재범이 없고 부과 받은 공개·고지명령, 보호관찰, 수강·이수명령 등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신상정보등록 관련 의무위반 범죄가 없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의 등록면제 신청에 대해 등록 면제의 객관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 등록대상자는 등록면제 심사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2-3〉 등록면제 신청을 위한 등록기간 경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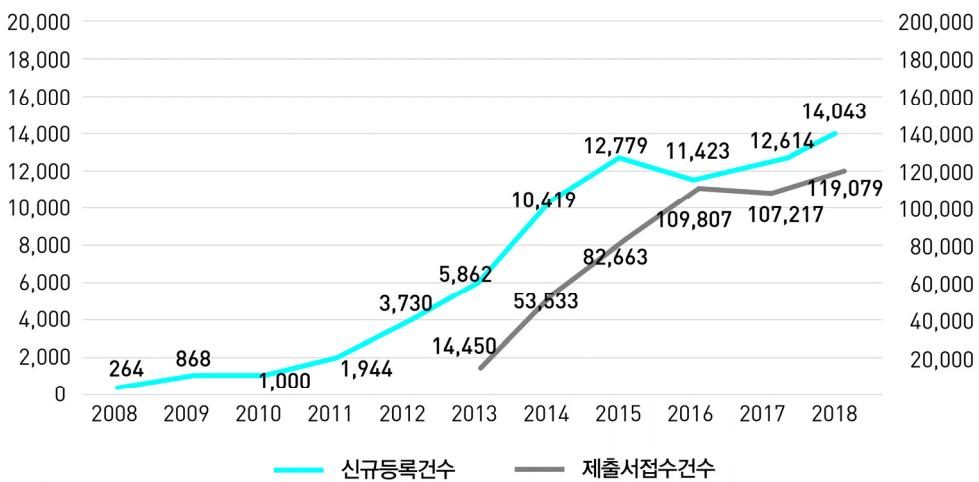
선고형	벌금	징역 3년 이하	징역 3년 초과~ 징역 10년 이하	징역 10년 초과, 사형, 무기징역
등록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면제신청 등록기간 경과 기준	7년	10년	15년	20년

- 법무부장관은 신상정보를 주기적으로 등록, 관리하면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와 범인 검거에 활용하도록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등록 신상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 그러나 등록기간의 만료, 등록대상자의 사망 등의 폐기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정보원부 파일을 즉시 폐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이 종료된 대상자는 등록 정보 폐기사실을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종료된 때부터 1년이다.
- 아래 〈표 2-2-4〉와 〈그림 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상정보 관리 업무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표 2-2-4〉 신상정보 신규 등록 및 신상정보제출서 접수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신규등록	264	868	1,000	1,944	3,730	5,862	10,419	12,779	11,423	12,614	14,053
제출서	0	0	0	0	0	14,450	53,533	82,663	109,807	107,217	119,079

〈그림 2-2-2〉 신상정보 신규 등록 및 신상정보제출서 접수 현황



※ 제출서접수는 2013년 여성가족부의 등록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된 이후부터 산정

4. 신상정보 공개

(1) 공개명령대상자

- 신상정보공개제도는 처음 범죄 계도문 방식의 일반 신상공개에서 출발하여 경찰관서 방문 열람제도로,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한 공개로 변천해 왔다.
- 열람 주체도 초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에 한정되던 것을 등록대상자 거주 지역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으로 확대하였고,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법상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다.
- 「청소년성보호법」에는 공개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성폭력범죄) 제3호·제4호,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 1항 또는 2항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위 1항 또는 2항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신상정보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대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1도 16863판결).

(2) 공개 기간 및 공개 내용

-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개기간이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에는 5년, 벌금의 경우에는 2년을 각 초과하지 못한다.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되며, 실형이나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연령,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 정보(키와 몸무게), 사진(전면·좌측·우측 얼굴, 전신), 등록대상 성범죄요지 (판결 일자, 죄명, 선고형량 포함),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 이는 등록정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등록정보에 있는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와 소유차량 등록번호, 성범죄 경력정보는 공개정보에서 제외되어 있고, 주민등록 번호는 연령으로 대체되었으며, 성범죄 전과사실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로, 전자장치 부착여부 및 기간은 전자장치 부착여부로 대체되어 등록정보에 비해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 이는 누구나 실명 인증절차를 거치면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의 열람이 가능 하기에, 대상자에 대한 지나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그리고 부칙(청소년보호법(법률 제9765호)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해 열람명령이 공개명령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신상공개 기간은 열람에 제공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으로 하고, 공개되는 정보는 기존 열람정보에 한정된다(「청소년성보호법」(법률 제16622호) 부칙 제5조 제7항 및 제8항).

(3) 공개명령 집행

-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개대상자의 신상 정보를 송부 받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가 실제 거주지 상 주소 기준으로 검색되고, 공개대상자 성명, 시·도, 읍·면·동, 도로명주소, 학교반경 1km 등의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다.
- 또한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다.
- 공개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되었다고 해도 조회한 신상정보를 열람자가 SNS 등을 통해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접속 이력을 일정기간 보관·관리하고 있다.

5. 신상정보 고지

(1) 고지명령대상자

- 「청소년성보호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중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성폭력범죄) 제3호·제4호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 위 1,2항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2항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고지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야하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공개명령의 경우와 동일하다.

(2) 고지정보 및 기한

- 고지되는 정보는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한 경우에는 성명, 연령,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전면·좌측·우측얼굴·전신), 등록대상 성범죄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포함),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이다.
-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공개정보에서와는 달리 ‘번지 및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고지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위 고지정보와 함께 그 대상자의 전출정보를 고지한다.
- 고지집행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3) 고지명령 집행 방법 및 절차

- 고지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고지명령의 집행방법은 우편고지와 정보통신망 고지, 그리고 게시가 있다.
- 우편고지는 여성가족부가 구축한 우편고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장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집행된다.
- 최초 제도 도입 시(2011. 1. 1. 시행)에는 고지대상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와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었으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으로 확대되었다.
- 고지명령의 집행이후에 관할구역에 출생·입양·전입신고가 된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고지정보 수령자로서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도 반기별로 1회 우편고지를 한다.

- 정보통신망 고지는 전자우편고지 라고도 하며,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고지이다. 현행 우편고지제도는 고지대상자가 해당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등에 일회의 고지에 그치고, 그 이후 해당지역으로 새로 전입한 주민이나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두지 않은 주민은 우편고지를 받을 수 없으며, 단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열람만이 가능한데, 이 경우 상세주소가 포함된 신상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 정보통신망 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성인 인증 후에 해당지역주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게시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고지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의 읍·면 사무소의 장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위임하여 게시하고 있다.

외국 신상정보제도 운영 사례

-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호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0여 개이다. 1947년 최초로 미국에서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시행되었고 그 외 국가들도 대부분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 성범죄자의 체계적 관리와 범행 발생 시 검거의 용이성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신상정보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정도이고, 고지제도 또한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실시하더라도 재범위험성 평가 후 고지, 이해관계인 또는 개별요구 시에 열람 허용, 고위험인 경우 등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 여러 나라 중 우리나라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미국, 영국, 캐나다의 신상정보등록제도 운영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1. 미국

(1) 제도 운영 특징

- 미국은 국가 단위의 통합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제도를 구축한 세계 최초의 국가이다. 1940년대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에서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처음 시작된 이후 1990년대 초까지 미국 대다수의 주가 신상정보등록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 미국은 해당 제도의 운영에 대한 경험과 사례가 많은 국가이며, 우리나라의 신상정보등록제도가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미국의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변화와 관리 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미국 신상정보등록제도의 특징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하고 이를 연방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점이다. 개별 주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시스템을 관리하고, 연방정부에서는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웹사이트를 관리한다. 주 정부 자료를 모두 연결하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데이터를 다시 유지·관리하고, 일부 특정범죄자 관련 상세 정보는 다시 연방 수사 기관과 관련 국가 기관이 따로 보관·관리하는 이중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대상 범죄자에게 요구하는 정보가 달라진다면 안정적인 국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되므로, 법무부에서는 SORNA(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를 통해 일관된 등록 항목 및 기준을 최소 기준안으로 정하여 지방 해당 부서에 내려 보내고 있다.

- 신상정보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각 주마다 다른데, 일부 주에서는 경찰이 담당하고 일부는 우리나라의 범죄예방정책국과 유사한 치안안전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 연방정부 차원에서 신상정보등록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법무부 산하 “SMART(Sex Offender Sentencing, Monitoring, Apprehending, Registering, and Tracking Office)”라는 부서이다. 이 부서는 성범죄자의 양형, 감독, 체포, 등록, 위치 확인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2) 등록정보의 주요내용 및 확인 과정

- 등록해야 할 최소한의 정보는 이름(가명 포함), 인터넷 신원식별 정보(이메일, 메신저 주소 등),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 실거주지(임시 거주지 포함)와 여행이나 이민정보(여권, 이민서류 등), 고용정보(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게 될 직장의 이름과 주소, 직업관련 자격증 정보), 학교 정보(현재 재학 중이거나 다니게 될 학교의 이름과 주소), 차량 정보(본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본인 소유가 아니라도 자주 이용하는 차량의 번호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 생년월일, 신체정보(외모 묘사와 특징 포함),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 기록, 다른 범죄 기록(체포, 유죄판결 날짜, 가석방 상태, 보호관찰, 등록의무 위반 여부, 영장발부 여부 등), 최근사진, 지문과 손바닥 지문, DNA샘플,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사본이다.
- 거주불명자 혹은 직업의 특성상 자주 옮겨 다니며 일하는 대상자도 등록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경찰은 대상자가 ‘습관적으로 사는 곳’을 등록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사는 곳은 30일 이상(연속 또는 불연속적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거주하는 곳을 의미한다. 거주불명자의 경우, ‘xx지하철역 인근’ 등과 같이 거주하는 거리의 장소적 특징을 최대한 묘사할 것으로 요구된다.

- 직장의 경우, 고정된 장소에 출퇴근 하지 않는 대상자는 주로 일하러 가는 곳의 동선을 등록해야 하는데, 특히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아침에 인력 시장이 서는 곳을 직장의 주소로 간주하고 등록한다.
- 신체정보는 일반적인 것과 특징적인 것 모두 등록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키와 몸무게, 눈 색깔, 머리 색깔뿐만 아니라 상처와 문신과 같은 특징적인 정보도 모두 포함된다.
- 만약 성범죄자가 등록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벌금 또는 최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등록 담당 기관은 해당 정보 중 신상정보 등록에 해당하는 주요 정보만을 다시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성범죄 관련 위반 법률 및 죄명, 과거 범죄 전력, 체포 날짜 및 형 확정 날짜,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한 추가 정보가 중요 신상정보 항목으로 수집된다.

(3) 제출서 처리 방식

- 대부분 각 주 산하 카운티 경찰이 ‘성범죄자등록도구(SORT, The Sex Offender Registry Tool)’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업무를 담당한다. 미국은 각 지역 경찰이나 신상정보등록 기관이 SORT를 이용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할 때는 종이서류를 작성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이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성범죄자의 집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모든 정보가 다 입력되면 성범죄자에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시키고,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처벌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시키며 웹사이트에 전자서명을 하도록 한다. 하지만 각 주마다 전자문서화 정도에 차이가 있기도 하고, 특정 주가 종이문서 사용을 고수하는 경우,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4) 청소년 성범죄자 등록

- 청소년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의 경우 주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SORNA의 통과 당시, 36개 주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되어 판결을 받은 특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상정보 등록이 요구되었으나, 나머지 주에서는 신상정보 등록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SORNA의 경우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특정 청소년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주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이들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청소년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철학은 처벌이 아니라 재활(회복)이고, 법적 개입이라는 것은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인과 같이 정당한 절차권이나 배심원 재판의 혜택이 없는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부과하는, 즉 성범죄자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청소년이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자가 되는 요건은 위법 행위 당시 14세 이상이거나, 위법 행위가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와 비교할 때 이와 대등하거나 더 심각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위법 행위에 가담하려는 시도 혹은 음모가 있는 경우이다.
-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의 신상정보 등록은 낙인효과, 사회적 배제 및 소외, 괴롭힘, 거주지의 제한, 고용의 제한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신상정보 등록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5) 등록기간 및 면제조건

- 미국의 경우 보통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수법이나 죄질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 2-3-1〉과 같이 성범죄자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한다. 성범죄 유형에 따라 2단계와 3단계가 구분되고 이 두 개의 군에 해당하지 않는 성범죄 유형은 1단계로 분류되는데, 3단계의 성범죄자가 가장 고위험군 범죄자이다. 등록기간은 이 분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5년 · 25년 · 종신으로 상이하게 부과될 수 있다.
- 각 단계별 등록정보의 진위 확인주기는 1단계는 1년에 한 번, 2단계는 6개월에 한번, 3단계는 3개월에 한 번이 된다. 1단계 성범죄자의 15년 등록기간은 10년이 지나고 면제 기준이 충족되면 5년이 단축된다. 2단계 성범죄자의 등록기간 25년은 단축시킬 수 없다. 3단계의 성범죄자는 평생 등록 대상자가 된다. 다만 3단계 성범죄자 중에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는 예외인데, 3단계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면제 충족기간은 25년이고, 면제기준이 충족되면 등록기간이 종신에서 25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

〈표 2-3-1〉 미국의 성범죄자 분류 단계(Sex Offender Classification Tiers)

분류 단계	등록기간	각 단계별 분류 지침
3단계 (Tier III)	종신	13세미만미성년자성적학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 납치 범죄(부모, 보호자 제외)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성범죄자 또는 2단계로 지정된 대상자가 재범(any offense)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2단계 (Tier II)	25년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강요 및 유인, 불법성행위참여목적미성년자이송, 미성년자대상가학적성적행위, 미성년자성적공연이용, 미성년자성매매유인, 아동음란물 제작, 배포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성범죄자
1단계 (Tier I)	15년	2, 3단계에 속하지 않은 그 밖의 성범죄자들

출처 : Sex Offender Laws(2nd edition)

(6) 신상정보 공개

-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미국 연방 법무부에서 공개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NSOPW(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라는 통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각 주의 성범죄자 등록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다. 신상정보가 등록된 모든 성범죄자는 온라인 웹사이트에 정보가 공개되지만 각 주는 재량에 따라 1단계(저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미국의 신상정보등록제도에서 규정한 공개 정보를 최소 기준으로 해서 주 정부는 얼마든지 더 많은 정보를 성범죄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고 그것을 자체 주 정부 규정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성범죄자와 관련된 많은 개인 정보들이 사이트에 공개되지만 피해자 정보, 성범죄자의 사회보장번호,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체포경력, 기타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는다. 각 주는 〈표 2-3-1〉의 1단계에 있는 성범죄자들의 범죄가 아동성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주 성명, 대상자가 다녔던 교육기관 이름, 기타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로 규정한 항목들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또, 모든 주가 웹 사이트를 통해 등록된 모든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주 대부분의 경우 그 대상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 성범죄자로 제한한다.

(7) 신상정보 고지

- 미국은 성범죄자 신상정보고지제도 역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고지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인에 대한 지역사회 고지제도’이다.
-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고지제도는 신상정보 등록 정보에 대한 유관 기관과의 즉각적인 정보 공유 업무를 위한 것이다. 주 정부차원에서 성범죄자가 처음으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통보하거나, 새로운 변경 정보를 알리게 되면 지방 정부 담당자는 즉시 해당 사항을 범죄자가 출퇴근하는 타 지역 유관기관이나 학교가 위치한 지역 주 정부에 알릴 책임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면 해당 정보를 경찰, 검찰, 보호관찰소 등 법 집행 및 감독기관, 아동 보호기관 등과 같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자원봉사단체까지도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상정보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 일반인에 대한 지역사회 고지제도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 완료되거나 새롭게 개신되었을 때 특정인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일부 주에서는 자동 고지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매우 한정적으로 운영된다. 그것보다 일반인 고지제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성범죄자 웹사이트에 해당 정보를 3일 이내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제공 방식의 경우 우편함을 통해 개별적으로 간행물을 보내기도 하며, 언론(신문), 전화통화, 포스터(등록대상자의 사진과 정보)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이메일 고지제도’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성범죄자의 ID를 포함하여 이메일로 특정 일반인들에게 성범죄자의 주거지와 직장 상황, 학교 정보, 주소, 우편번호 등의 정보를 고지하는 것이다.
- 한편, 대부분의 주에서는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통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주 공무원들이 단순히 해당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것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문에 해당 정보를 고시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석방이나 주거 이동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 개인방문 혹은 이웃들에게 편지를 보내 해당 정보를 알리는 것, 이전의 피해자 혹은 범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성범죄자가 석방되거나 거주지를 이동할 때 이전의 피해자와 시민들이 통보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옵트인(opt-in)’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8) 보호관찰과의 연계

- 미국 보호관찰관의 주요 임무는 성범죄자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과 성범죄자가 지역사회 적응을 돋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에 변동이 있을 때 성범죄자에게 정보 등록 기관에 가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정보를 등록하도록 고지하여 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성범죄자가 보호관찰과 같은 형을 받은 경우, 법원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이 성범죄자 신상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성범죄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송부한다. 그리고 보호관찰소 담당자는 출소하는 성범죄자에게 정해진 기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상정보등록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2. 캐나다

(1) 제도 운영 특징

- 캐나다는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논의 없이 지역사회 공개제도가 먼저 도입된 연혁을 갖고 있다. 캐나다는 온타리오 주에서 2001년에 처음 독자적으로 성범죄자 등록 시스템을 도입한 후, 2003년까지 연방정부의 입법 없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여러 형태로 시행되어오다가, 2004년 중앙 정부 주도로 SOIRA (성범죄자 정보 등록법, Sex Offender Information Registration Act)를 제정하여 국가 성범죄자 등록 체계를 공식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 이때부터 각 주 단위에서 수집된 신상정보 등록 자료를 중앙-지방 정부가 서로 연계하여 새로운 차원의 국가 신상정보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 신상정보 등록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이다. 지방 경찰 부서 담당자들이 실제 성범죄자의 정보를 수집, 입력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모든 책임이 있다. 특이하게도 다른 많은 나라들이 형사사법 기관과 성범죄자 등록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과 달리, 캐나다는 오직 경찰기관 내 성범죄 수사 담당자에게만 한정하여 데이터를 오픈해 주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접근 및 활용이 실무자들에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2) 등록 대상

-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만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기준 아래에서 등록 범죄 유형은 강간과 같은 성적 공격, 추행 행위, 컴퓨터를 통한 아동 유인,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범죄까지 매우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성인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중 범행의 심각성으로 인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은 일부 청소년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포함된다.
- 그러나 유죄가 확정된 모든 성범죄자에게 제도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대상자가 등록 해당 요건을 갖추었어도 적극적으로 자신이 지역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등록 가능 대상자로 나온 성범죄자의 42%가 자신의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입증하여 등록 시스템에 개인 신상정보가 처음부터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등록정보의 주요내용 및 대상자의 의무

- 신상정보 등록 내용은 성범죄자의 사진, 연령, 주소지, 범죄 수법 및 유형, 피해자 특징 등을 포함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전산 시스템 내에 입력되어 등록·관리되고 있다.
- 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지역 경찰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신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일정 기간 주기로 변경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여행을 가거나 거주지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미리 경찰관서를 방문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만약 성범죄자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부터 구금까지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등록기간 및 면제조건

- <표 2-3-2>와 같이 성범죄 등록 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종신으로 기간 범위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 등록 기간은 범죄 유형의 심각성과 전과 횟수, 피해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표 2-3-2〉 캐나다 : 법정형 기준 차등화

등록기간	등록기준
10년	약식기소 되거나 최대 2년 또는 5년의 구금형을 부과 받은 경우
20년	최대 10년 또는 14년의 구금형을 부과 받은 경우
종신	종신형을 부과 받은 경우

- 등록면제는 해당 범죄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면제는 완벽한 신상정보 기록 말소가 아닌 단순 등록 재확인, 변경 보고 의무를 해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재등록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국가 성범죄자 보고 데이터 전산 시스템 속에는 성범죄자의 기록이 남아 있게 된다.
- 등록면제는 성범죄자의 등록 부여 기간에 따라 요청 가능 시점이 달라진다. 먼저, 10년의 등록 의무가 있는 성범죄자는 5년 동안의 등록 기간을 잘 지킨 후 면제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20년 등록 기간을 부여받은 성범죄자는 최초 등록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면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종신까지 등록제도 내에 있어야 하는 성범죄자는 20년이 경과하면 면제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록 자체를 삭제 하고 싶다면 성범죄자는 공식적인 사면절차를 거쳐 왕립특별 사면 위원회의 공식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5) 신상정보 공개

- 2015년에는 전격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성범죄자 등록 시스템에 올라온 개인 신상정보를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신상정보 웹사이트에는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재범 고위험성’의 평가를 받은 일부 성범죄자의 정보만 공개된다. 이처럼 캐나다는 공개제도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3. 영국

(1) 제도운영의 특징

- 영국의 신상정보등록제도는 1997년 성범죄자법(Sexual Offences Act)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형이 확정되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보하고, 주기별로 변경사실도 통보해야 할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 2003년 발생한 ‘사라 페인(Sarah Payne) 살해 사건(8살 소녀가 소아성애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에게 납치되어 강간·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강화하여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몇 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쪽으로 제도의 운영 방향이 변하게 되었다. 이에 일정한 성범죄(강간, 성폭행,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등)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개인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 영국의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범죄자 등록과 아동 성범죄자 공개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성범죄자 등록은 일정 성범죄자가 개인적으로 경찰관서에 찾아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은행계좌, 신용카드 정보 등의 다양한 신상정보를 통보하고, 신상정보 항목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변경 사항을 다시 경찰관서에 통보하게 하여 성범죄자의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 공개는 아동을 키우는 부모나 보호자 등이 공식적으로 경찰관서에 찾아가 특정인이 아동 성범죄자로 등록된 것은 아닌지 확인 요청을 할 때 제한적으로 해당 정보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것을 지칭한다.
- 영국의 신상정보등록제도는 경찰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이며 잠재적 범죄자를 억제하기 위한 것일 뿐 형벌 방법의 하나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간주된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의 신상정보등록제도 운영 이념의 동향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범죄자 체포, 수사, 확인을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 둘째, 경찰 이외에 다양한 지역사회 형사 사법 기관들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상정보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되어야 한다.
- 셋째, 잠재적 범죄자가 성범죄의 의지를 단념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하나의 유익한 유도 전략으로 사회에서 활용될 뿐,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 등록대상 및 등록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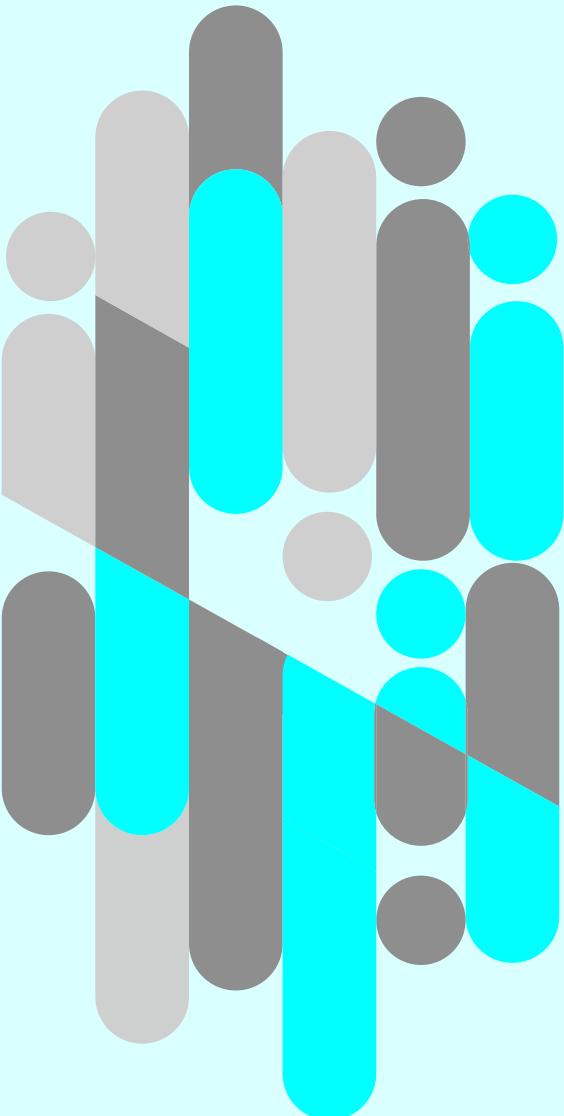
- 영국에서는 거의 모든 성범죄 유형을 등록 범죄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표 2-3-3〉과 같이 개별 상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5년에서부터 종신까지 그 등록 기간 범위가 매우 넓다. 그리고 신상정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성범죄자는 3일 이내 경찰에 변경사실을 알려야만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성범죄자가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면 벌금에서부터 최장 5년까지의 구금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 성범죄자는 거주지역의 경찰관서에 본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사진촬영과 지문채취를 받아야 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성범죄 유형은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 아동대상 간음, 16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간음, 추행, 그리고 남성간 추행 행위 등이며,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각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다.

〈표 2-3-3〉 영국 : 선고형 기준 차등화

구분	벌금형	징역 6월 이하	징역 6월 초과, 30개월 미만	종신 또는 징역 30개월 이상
등록기간	5년	7년	10년	종신

(3) 민사 명령(civil order)

- 영국 신상정보등록제도 운영에서 특이한 사항은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민사명령인데 이는 대상자가 성범죄 등록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성인이 아동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성적 특성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에 누구나 성적 위해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부과하는 경우 대상을 성범죄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특정 행위를 금지할 수도 있다.
- 금지 행위에는 아동과의 접촉, 아동 대상범죄를 저질렀던 장소의 방문 등이 있다. 또, 해외여행 제한은 상황에 따라 특정 국가를 명시할 수도 있고,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영국에서는 이런 다양한 성범죄 예방 대책을 통해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사용한다.



제3편

성범죄 동향 분석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성범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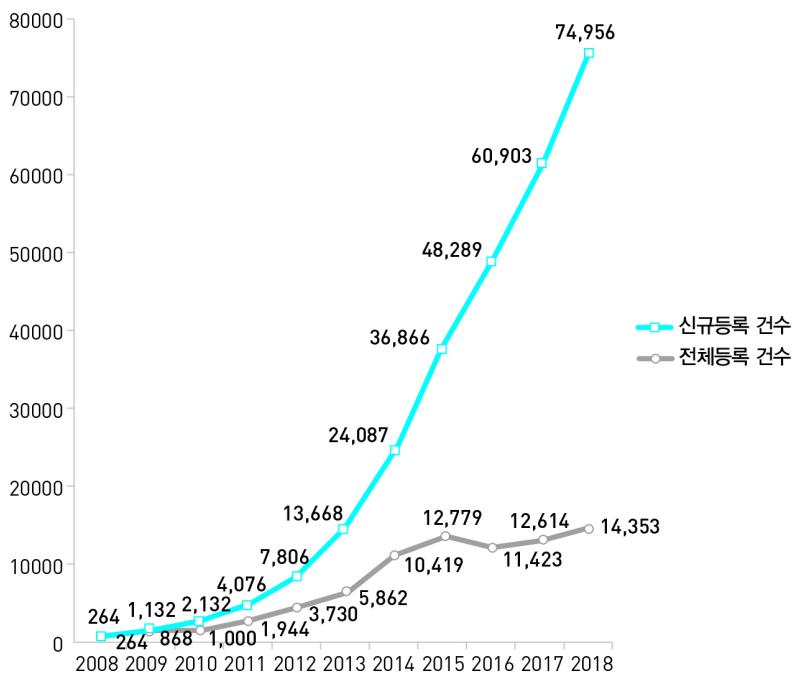
1. 신상정보등록

- 〈표 3-1-1〉은 신상정보등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신규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264건을 시작으로 2015년 12,779건까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1년부터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되었고, 2013년 청소년·성인 대상 성범죄자 등록 일원화에 따라 법무부로 모든 등록 업무가 이관되면서 2014년부터 신규등록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2018년까지 등록된 신규등록 건수 추세로 보면 2020년에는 신상정보등록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2016년에는 신규등록 건수가 감소하였는데 2016년 3월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 위헌 결정(2015마688)이 반영된 것이라 분석된다.

〈표 3-1-1〉 신상정보등록 현황

연도	신규등록 건수	전체등록 건수
2008	264	264
2009	868	1,132
2010	1,000	2,132
2011	1,944	4,076
2012	3,730	7,806
2013	5,862	13,668
2014	10,419	24,087
2015	12,779	36,866
2016	11,423	48,289
2017	12,614	60,903
2018	14,353	74,956

〈그림 3-1-1〉 신상정보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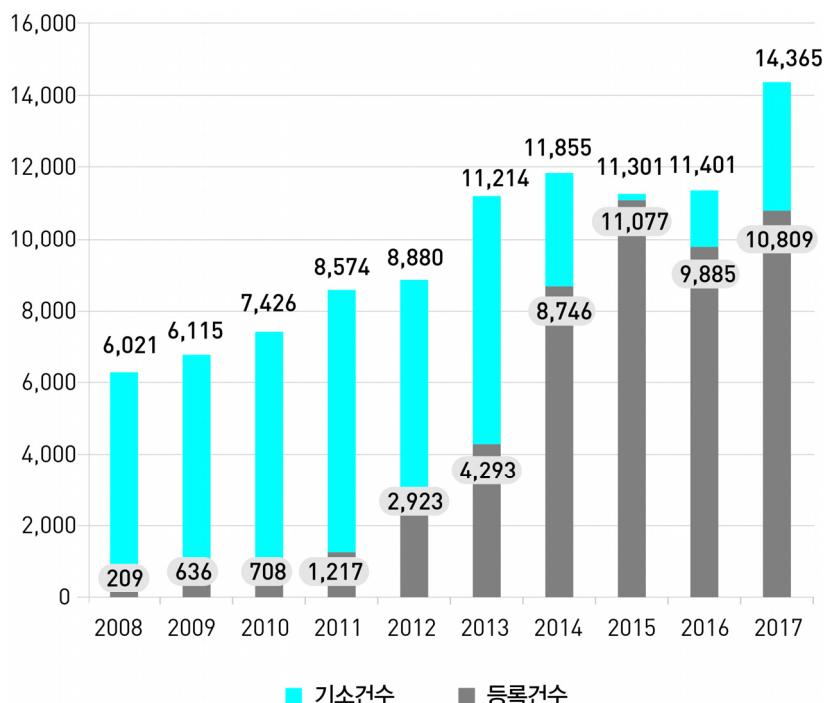
2. 성폭력범죄 기소건수와 비교

- 〈표 3-1-2〉는 대검찰청에서 2018년에 발간한 「범죄분석」(이하 “「범죄분석」”이라 한다)의 성폭력범죄 기소 건수와 신상정보 신규등록 건수를 비교하였다.
- 「범죄분석」 성폭력범죄에 제외되어있는 유사성행위와 「아동복지법」의 아동성학대, 「청소년성보호법」의 음란물제작배포,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영업은 제외하고 비교하였다.
- 법무부로 모든 등록 업무가 이관된 후인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48,922건이 성폭력범죄로 기소되었다. 같은 기간 내 동일 범죄로 신상정보 신규등록이 된 사건은 40,517건으로 82.8%의 비율을 차지한 바 성범죄자의 80% 이상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1-2〉 연도별 성범죄 기소 건수, 성폭력범죄등록 건수 현황

연도	「범죄분석」 성폭력범죄 기소 건수	신규 등록 건수 (성폭력범죄 기소 건수와 동일 범죄)	(%)
2008	6,021	209	3.5
2009	6,115	636	10.4
2010	7,426	708	9.5
2011	8,574	1,217	14.2
2012	8,880	2,923	32.9
2013	11,214	4,293	38.3
2014	11,855	8,746	73.8
2015	11,301	11,077	98.0
2016	11,401	9,885	86.7
2017	14,365	10,809	75.2
2014~2017 누계	48,922	40,517	82.8

〈그림 3-1-2〉 연도별 성범죄 기소 건수, 성폭력범죄등록 건수 현황



3. 등록 근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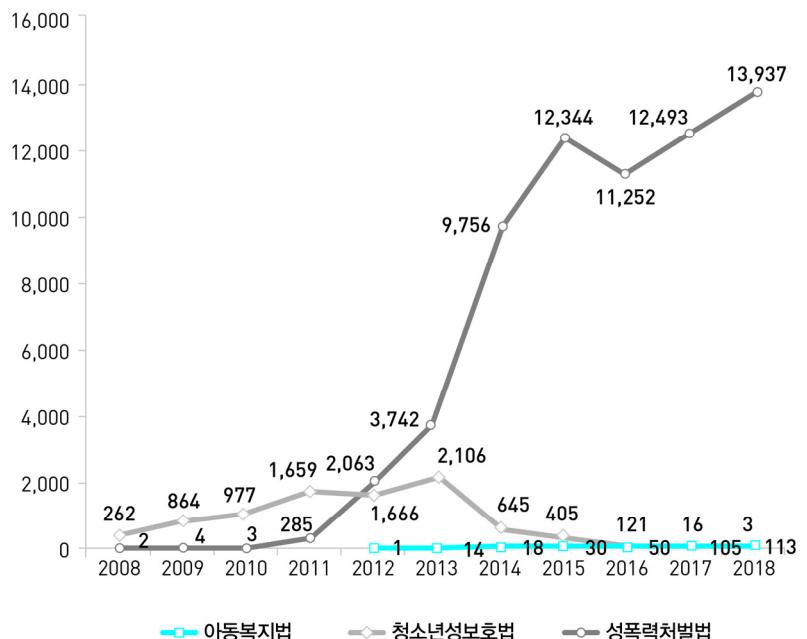
- 〈표 3-1-3〉은 등록 근거법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등록사건 74,956건 중 65,881건(87.9%)이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등록되었으며, 「청소년성보호법」을 근거로는 8,744건(11.7%)이, 「아동복지법」을 근거로는 331건(0.4%)이 등록되었다.
- 2012년부터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한 2,063건의 등록사건은 2018년 13,937건까지 늘어났으며, 비율은 55.3%에서 99.2%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대다수의 등록 건수가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등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반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던 「청소년성보호법」을 근거로 한 등록사건은 2013년 2,106건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18년에는 단 3건만 등록되었다.
- 2012년 「아동복지법」 상 상습 아동 성학대가 등록대상 성범죄로 추가되면서,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1건이 등록된 이후 2018년 113건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종합해보면, 최근에는 대다수의 사건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등록되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등록사건은 감소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의 경우 등록사건은 적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 3-1-3〉 등록 근거법별 현황

연도 \ 등록근거법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총계
2008	2	–	262	264
	0.8	–	99.2	(%)
2009	4	–	864	868
	0.5	–	99.5	(%)
2010	3	–	997	1,000
	0.3	–	99.7	(%)
2011	285	–	1,659	1,944
	14.7	–	85.3	(%)
2012	2,063	1	1,666	3,730
	55.3	0.0	44.7	(%)
2013	3,742	14	2,106	5,862
	63.8	0.2	35.9	(%)

연도	등록근거법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총계
2014		9,756	18	645	10,419
		93.6	0.2	6.2	(%)
2015		12,344	30	405	12,779
		96.6	0.2	3.2	(%)
2016		11,252	50	121	11,423
		98.5	0.4	1.1	(%)
2017		12,493	105	16	12,614
		99.0	0.8	0.1	(%)
2018		13,937	113	3	14,053
		99.2	0.8	0.0	(%)
총계		65,881	331	8,744	74,956
		87.9	0.4	11.7	(%)

〈그림 3-1-3〉 등록 근거법별 현황



4. 등록유형

- 〈표 3-1-4〉는 등록유형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등록사건은 74,956건이다. 2008년 등록(공개·고지포함)건수는 264건인데 2016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한해 14,053건이 등록되었다. 이는 2008년 보다 53.2배 증가한 수치이다.
-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등록사건 74,956건 중 등록만 된 사건은 60,643건 (80.9%), 등록되고 공개된 사건은 2,598건(3.5%), 등록되어 공개·고지까지 된 사건은 11,715건(15.6%)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독)등록사건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2008년 115건에서 2018년 13,327건으로 약 1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등록·공개건수는 2008년에 149건이었는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해 전체 등록사건 1,944건 중 1,016건(52.3%)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그 해 등록사건 14,053건 중 16건(0.11%)에 불과하였다.
- 등록·공개·고지건수는 2011년 우편고지제도가 도입된 해 455건이 등록되었는데, 2012년에는 2,28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그 해 등록사건 3,730건 중 61.4%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710건으로 그 해 등록사건 14,053건 중 5.1%만을 차지하였다.
- 등록기간별로는 전체 등록사건 74,956건 중 15년이 36,447건으로 48.6%, 10년이 29,643건으로 39.5%, 20년이 8,664건으로 11.5%, 30년이 117건으로 0.2%, 5년이 77건으로 0.1%, 7년이 8건으로 0.1%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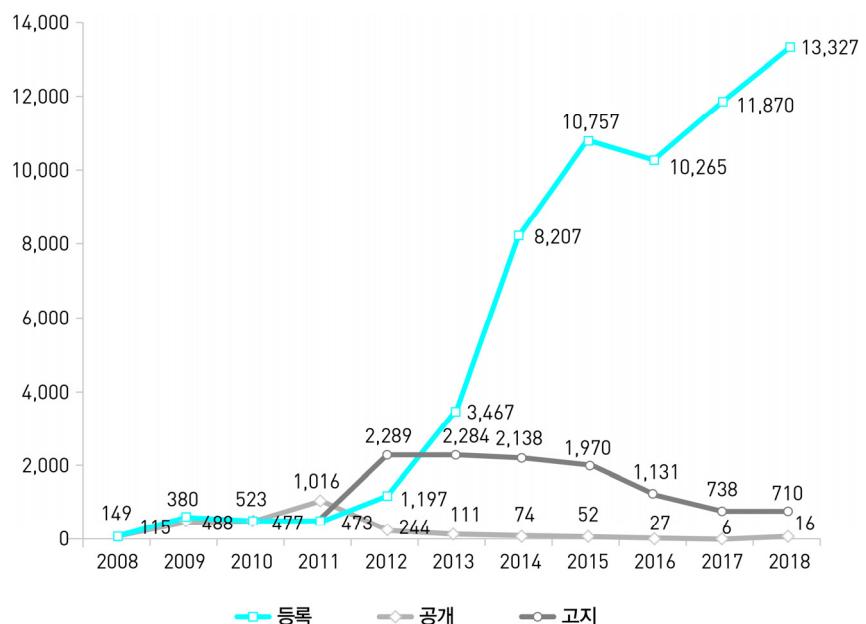
〈표 3-1-4〉 등록유형별 현황¹⁾

연도	등록유형 ¹⁾	등록	등록·공개	등록·공개·고지	총계
2008	115	149	—	264	
	43.6	56.4	—	[%]	
2009	488	380	—	868	
	56.2	43.8	—	[%]	
2010	477	523	—	1,000	
	47.7	52.3	—	[%]	

1) 등록은 등록 명령만을 받은 대상사건, 공개는 등록 및 공개 명령만을 받은 대상사건, 고지는 등록·공개 및 고지 명령을 모두 받은 대상사건만을 의미하며,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연도	등록유형 ¹⁾	등록	등록·공개	등록·공개·고지	총계
2011	등록	473	1,016	455	1,944
	등록[%]	24.3	52.3	23.4	[%]
2012	등록	1,197	244	2,289	3,730
	등록[%]	32.1	6.5	61.4	[%]
2013	등록	3,467	111	2,284	5,862
	등록[%]	59.1	1.9	39.0	[%]
2014	등록	8,207	74	2,138	10,419
	등록[%]	78.8	0.7	20.5	[%]
2015	등록	10,757	52	1,970	12,779
	등록[%]	84.2	0.4	15.4	[%]
2016	등록	10,265	27	1,131	11,423
	등록[%]	89.9	0.2	9.9	[%]
2017	등록	11,870	6	738	12,614
	등록[%]	94.1	0.1	5.9	[%]
2018	등록	13,327	16	710	14,053
	등록[%]	94.8	0.1	5.1	[%]
총계	등록	60,643	2,598	11,715	74,956
	등록[%]	80.9	3.5	15.6	[%]

〈그림 3-1-4〉 등록유형별 현황



(1) 공개 기간

- 〈표 3-1-5〉는 공개명령을 받은 사건을 공개기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공개기간이 판결문에 특정 기간으로 명시된 사건은 제외하였다. 2008년 149건을 시작으로 2012년에 2,533건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고, 전체 공개명령 사건 수는 14,295건이었다.
- 공개기간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공개기간이 5년인 사건이 5,987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 3,404건(23.8%), 10년 2,141건(15.0%), 2년 1,071건(7.5%) 순으로 나타났다.
- 공개기간이 5년인 경우는 2008년 149건(100.0%)에서 2012년 1,017건(40.2%)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258건(35.5%)까지 감소하였고 2013년부터는 이후 2016년(28.7%)을 제외하고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 공개기간이 3년인 경우는 2010년 5건(1.0%)에서 2012년 713건(28.1%)까지 증가하였다가 2018년 231건(31.8%)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비율은 2012년 이후 20~30%대를 유지하고 있다.
- 공개기간이 10년인 경우를 살펴보면, 2010년 18건(3.4%)에서 2013년 500건(20.9%)까지 증가하였다가 2018년 86건(11.8%)으로 감소하였는데, 공개기간 3년과 다르게 사건수와 비율이 함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공개기간별 현황

연도	6월	7월	8월	9월	1년	1년 4월	1년 6월	2년	2년 6월	3년	3년 6월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총계
2008	—	—	—	—	—	—	—	—	—	—	—	—	149	—	—	—	—	—	149
	—	—	—	—	—	—	—	—	—	—	—	—	100.0	—	—	—	—	—	[%]
2009	—	—	—	—	—	—	—	—	—	—	—	—	380	—	—	—	—	—	380
	—	—	—	—	—	—	—	—	—	—	—	—	100.0	—	—	—	—	—	[%]
2010	—	—	—	—	—	—	—	1	—	5	—	1	498	—	—	—	—	—	18 523
	—	—	—	—	—	—	—	0.2	—	1.0	—	0.2	95.2	—	—	—	—	—	3.4 [%)
2011	—	—	—	—	6	—	—	37	—	260	—	23	933	1	20	—	—	—	191 1,471
	—	—	—	—	0.4	—	—	2.5	—	17.7	—	1.6	63.4	0.1	1.4	—	—	—	13.0 (%)
2012	—	—	—	—	8	—	—	148	—	713	—	169	1,017	7	64	1	—	—	406 2,533
	—	—	—	—	0.3	—	—	5.8	—	28.1	—	6.7	40.2	0.3	2.5	0.0	—	—	16.0 (%)
2013	—	—	—	—	8	—	—	161	—	552	1	199	817	17	132	8	—	—	500 2,395
	—	—	—	—	0.3	—	—	6.7	—	23.0	0.0	8.3	34.1	0.7	5.5	0.3	—	—	20.9 (%)

공개 기간 연도	6월	7월	8월	9월	1년	1년 4월	1년 6월	2년	2년 6월	3년	3년 6월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총계
2014	-	-	-	1	20	-	1	202	1	513	-	145	725	30	133	18	3	418	2,210
	-	-	-	0.0	0.9	-	0.0	9.1	0.0	23.2	-	6.6	32.8	1.4	6.0	0.8	0.1	18.9	(%)
2015	3	1	1	-	14	1	3	196	-	515	-	111	643	41	144	32	3	300	2,008
	0.1	0.0	0.0	-	0.7	0.0	0.1	9.8	-	25.6	-	5.5	32.0	2.0	7.2	1.6	0.1	14.9	(%)
2016	-	-	-	-	11	-	-	149	-	363	-	57	332	15	73	16	1	141	1,158
	-	-	-	-	0.9	-	-	12.9	-	31.3	-	4.9	28.7	1.3	6.3	1.4	0.1	12.2	(%)
2017	-	-	-	-	3	-	-	92	-	252	-	27	235	12	35	5	-	81	742
	-	-	-	-	0.4	-	-	12.4	-	34.0	-	3.6	31.7	1.6	4.7	0.7	-	10.9	(%)
2018	-	-	-	-	2	-	-	85	-	231	-	25	258	4	29	6	-	86	726
	-	-	-	-	0.3	-	-	11.7	-	31.8	-	3.4	35.5	0.6	4.0	0.8	-	11.8	(%)
총계	3	1	1	1	72	1	4	1,071	1	3,404	1	757	5,987	127	630	86	7	2,141	14,295
	0.0	0.0	0.0	0.5	0.0	0.0	7.5	0.0	23.8	0.0	5.3	41.9	0.9	4.4	0.6	0.0	15.0	(%)	

(2) 고지기간

- 〈표 3-1-6〉은 고지명령을 받은 사건을 고지기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고지기간이 판결문에 특정 기간으로 명시된 사건은 제외하였다. 전체 고지명령 사건 수는 11,697건이었는데, 2011년 455건을 시작으로 2012년 2,289건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다.
- 고지기간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고지기간이 5년인 사건이 3,965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 3,199건(27.3%), 10년 1,894건(16.2%), 2년 1,012건(8.7%) 순으로 나타났다.
- 고지기간이 5년인 경우는 2011년 191건(42.0%)에서 2012년 893건(39.0%)으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 250건(35.2%)까지 감소하였다. 다만 비율은 2012년부터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 고지기간이 3년인 경우는 2011년 165건(36.3%)에서 2012년 661건(28.9%)까지 증가하였다가 2018년 227건(32.0%)까지 감소하였다. 비율은 20~30%대를 유지하고 있다.
- 고지기간이 10년인 경우를 살펴보면, 2011년 41건(9.0%)에서 2013년 483건(21.1%)까지 증가하였다가 2018년 85건(12.0%)으로 감소하였는데, 2014년부터는 사건 수와 비율이 함께 감소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3-1-6〉 고지기간별 현황

고지 기간 연도 \	6월	7월	8월	9월	1년	1년 4월	1년 6월	2년	2년 6월	3년	3년 6월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총계
2011	—	—	—	—	5	—	—	21	—	165	—	21	191	—	11	—	—	41	455
	—	—	—	—	1.1	—	—	4.6	—	36.3	—	4.6	42.0	—	2.4	—	—	9.0	(%)
2012	—	—	—	—	7	—	—	139	—	661	—	158	893	6	64	1	—	360	2,289
	—	—	—	—	0.3	—	—	6.1	—	28.9	—	6.9	39.0	0.3	2.8	0.0	—	15.7	(%)
2013	—	—	—	—	9	—	—	156	—	540	1	192	755	16	124	8	—	483	2,284
	—	—	—	—	0.4	—	—	6.8	—	23.6	0.0	8.4	33.1	0.7	5.4	0.4	—	21.1	(%)
2014	—	—	—	1	15	—	1	194	1	493	—	138	703	29	131	18	3	409	2,136
	—	—	—	—	0.0	0.7	—	0.0	9.1	0.0	23.1	—	6.5	32.9	1.4	6.1	0.8	0.1	19.1
2015	3	1	1	—	11	1	3	185	—	505	—	111	621	41	142	32	3	296	1,956
	0.2	0.1	0.1	—	0.6	0.1	0.2	9.5	—	25.8	—	5.7	31.7	2.1	7.3	1.6	0.2	15.1	(%)
2016	—	—	—	—	10	—	—	144	—	358	—	57	318	15	72	16	1	140	1,131
	—	—	—	—	0.9	—	—	12.7	—	31.7	—	5.0	28.1	1.3	6.4	1.4	0.1	12.4	(%)
2017	—	—	—	—	3	—	—	90	—	250	—	27	234	12	35	5	—	80	736
	—	—	—	—	0.4	—	—	12.2	—	34.0	—	3.7	31.8	1.6	4.8	0.7	—	10.9	(%)
2018	—	—	—	—	2	—	—	83	—	227	—	25	250	4	28	6	—	85	710
	—	—	—	—	0.3	—	—	11.7	—	32.0	—	3.5	35.2	0.6	3.9	0.8	—	12.0	(%)
총계	3	1	1	1	62	1	4	1,012	1	3,199	1	729	3,965	123	607	86	7	1,894	11,697
	0.0	0.0	0.0	0.0	0.5	0.0	0.0	8.7	0.0	27.3	0.0	6.2	33.9	1.1	5.2	0.7	0.1	1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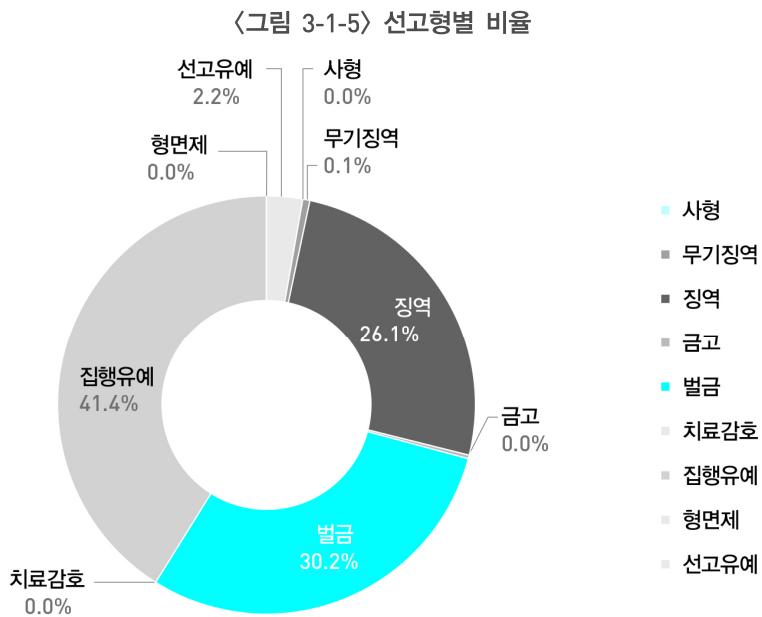
5. 선고형

- 〈표 3-1-7〉은 등록대상사건의 선고형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 선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등록사건 74,956건 중 집행유예가 31,006건(41.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벌금 22,669건(30.2%), 징역 19,567건(26.1%) 순으로 나타났다.
- 2010년을 제외하면, 2013년까지는 집행유예–징역–벌금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4년부터는 벌금의 비율이 징역을 넘어서 집행유예–벌금–징역 순으로 나타났다.
- 집행유예 사건을 살펴보면, 2008년 152건(57.6%)을 시작으로 2011년 1,094건(56.3%)을 기록하여 처음으로 1,000건을 넘었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5,706건(40.6%)이 등록되었다. 전체적인 비율은 30%~40%대를 유지하며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벌금 사건은 2016년을 제외하고, 2008년 10건(3.8%)을 시작으로 2018년 5,298건(37.7%)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율 또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의 약 3%대의 적은 수치였으나 2011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35.9%까지 증가한 후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 징역 사건은 2015년 3,232건(25.3%)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여 2018년에는 2,793건(19.9%)으로 낮아졌다. 30%대를 웃돌던 비율도 2014년부터는 20%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선고형별 현황

선고형 연도	사형	무기 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 감호	집행 유예	형면제	선고 유예	총계
2008	-	-	102	-	10	-	152	-	-	264
	-	-	38.6	-	3.8	-	57.6	-	-	(%)
2009	-	1	406	-	29	-	431	-	1	868
	-	0.1	46.8	-	3.3	-	49.7	-	0.1	(%)
2010	1	1	503	-	36	-	459	-	-	1,000
	0.1	0.1	50.3	-	3.6	-	45.9	-	-	(%)
2011	-	3	725	-	120	-	1,094	-	2	1,944
	-	0.2	37.3	-	6.2	-	56.3	-	0.1	(%)
2012	-	4	1,574	-	486	-	1,657	-	9	3,730
	-	0.1	42.2	-	13.0	-	44.4	-	0.2	(%)
2013	-	9	2,028	-	1,503	-	2,296	-	26	5,862
	-	0.2	34.6	-	25.6	-	39.2	-	0.4	(%)
2014	-	22	2,582	2	3,741	1	3,995	4	72	10,419
	-	0.2	24.8	0.0	35.9	0.0	38.3	0.0	0.7	(%)
2015	2	14	3,232	-	4,125	-	4,748	2	656	12,779
	0.0	0.1	25.3	-	32.3	-	37.2	0.0	5.1	(%)
2016	-	10	2,911	2	3,275	1	4,898	1	325	11,423
	-	0.1	25.5	0.0	28.7	0.0	42.9	0.0	2.9	(%)
2017	-	4	2,711	-	4,046	-	5,570	1	282	12,614
	-	0.0	21.5	-	32.1	-	44.2	0.0	2.2	(%)
2018	-	3	2,793	-	5,298	-	5,706	-	253	14,053
	-	0.0	19.9	-	37.7	-	40.6	-	1.8	(%)
총계	3	71	19,567	4	22,669	2	31,006	8	1,626	74,956
	0.0	0.1	26.1	0.0	30.2	0.0	41.4	0.0	2.2	(%)



6. 최종 심급

- 〈표 3-1-8〉은 등록대상사건의 최종 심급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확정 심급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등록 사건 중 1심에서 확정된 사건은 37,506건으로 50.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심 확정 사건은 24,233건(32.3%), 3심 확정 사건은 10,610건(14.2%)으로 나타났다.
- 2009~2012년까지는 2심 확정 사건이 가장 많았으나, 2008년 한 해와 2013년 이후로는 1심 확정 사건이 50% 내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다음으로 심급 현황을 살펴보면, 1심의 경우 2008년 182건(68.9%)부터 2015년 6,695건(52.4%)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5,000건~6,000건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2심의 경우 2008년 80건(30.3%)부터 2015년 4,143건(32.4%)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3,000건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1심의 경우와 증감 추이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3심의 경우도 2008년 2건(0.8%)을 시작으로 2015년 1,928건(15.1%)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후로는 1,000건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도에서 10%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746건(20.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약식명령의 경우 2016년까지는 그 수치가 미미하였는데, 2017년에는 646건(5.1%)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1,755건(12.5%)까지 증가하였다.

〈표 3-1-8〉 최종 심급별 현황

연도 \ 심급	약식명령	1심	2심	3심	총계
2008	-	182	80	2	264
	-	68.9	30.3	0.8	[%]
2009	-	382	410	76	868
	-	44.0	47.2	8.8	[%]
2010	-	317	514	169	1,000
	-	31.7	51.4	16.9	[%]
2011	15	776	882	271	1,944
	0.8	39.9	45.4	13.9	[%]
2012	68	1,364	1,552	746	3,730
	1.8	36.6	41.6	20.0	[%]
2013	70	2,813	2,028	951	5,862
	1.2	48.0	34.6	16.2	[%]
2014	18	6,027	3,123	1,251	10,419
	0.2	57.9	30.0	12.0	[%]
2015	13	6,695	4,143	1,928	12,779
	0.1	52.4	32.4	15.1	[%]
2016	22	5,906	3,764	1,731	11,423
	0.2	51.7	33.0	15.2	[%]
2017	646	6,408	3,931	1,629	12,614
	5.1	50.8	31.2	12.9	[%]
2018	1,755	6,636	3,806	1,856	14,053
	12.5	47.2	27.1	13.2	[%]
총계	2,607	37,506	24,233	10,610	74,956
	3.5	50.0	32.3	14.2	[%]

7. 선고형별 최종 심급

- 〈표 3-1-9〉는 등록대상사건의 선고형별 최종 심급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확정 심급을 기준으로 했다.
-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행유예·벌금·징역을 살펴본 결과, 집행유예는 1심 확정이 20,42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2심 확정이 9,170건(29.6%), 3심 확정이 1,408건(4.5%) 순으로 나타났다.
- 벌금의 경우에는 1심 확정이 14,008건(61.8%), 2심 확정 4,353건(19.2%), 약식 명령 2,607건(11.5%) 순이다. 벌금의 경우 다른 선고형과는 다르게 약식명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비율이 3심보다는 높고 2심보다는 낮다.
- 징역의 경우에는 2심 확정이 10,035건(51.3%), 3심 확정이 7,407건(37.9%), 1심 확정이 2,125건(10.9%)인데, 집행유예·벌금보다 2심과 3심 확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벌금·집행유예·선고유예는 1심 확정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사형·무기징역·징역·금고 등 상대적으로 더 중한 선고형의 경우 2심 이후의 확정 비율이 1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선고형별 등록대상사건 최종 심급 현황

선고형 \ 심급	약식명령	1심	2심	3심	총계
사형	-	-	2	1	3
	-	-	66.7	33.3	[%]
무기징역	-	1	24	46	71
	-	1.4	33.8	64.8	[%]
징역	-	2,125	10,035	7,407	19,567
	-	10.9	51.3	37.9	[%]
금고	-	1	2	1	4
	-	25.0	50.0	25.0	[%]
벌금	2,607	14,008	4,353	1,701	22,669
	11.5	61.8	19.2	7.5	[%]
치료감호	-	1	1	-	2
	-	50.0	50.0	-	[%]

선고형	심급	약식명령	1심	2심	3심	총계
집행유예	-		20,428	9,170	1,408	31,006
	-		65.9	29.6	4.5	(%)
선고유예	-		940	640	46	1,626
	-		57.8	39.4	2.8	(%)
형면제	-		2	6	-	8
	-		25.0	75.0	-	(%)
총계	2,607		37,506	24,233	10,610	74,956
	3.5		50.0	32.3	14.2	(%)

8. 형량

- 〈표 3-1-10〉은 사형·무기징역·징역·금고형을 받은 사건을 형량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전체 19,645건 중 18,309건(93.2%)이 10년 미만의 형을 받은 사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19,645건 중 3년 이상~6년 미만이 6,798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년 이상~3년 미만이 6,432건(32.7%)이었으며, 1년 미만이 2,650건(13.5%)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표 3-1-10〉 형량별 현황(사형·무기징역·징역·금고형)

형량	사건 수	(%)
1년 미만	2,650	13.5
1년 이상-3년 미만	6,432	32.7
3년 이상-6년 미만	6,798	34.6
6년 이상-10년 미만	2,429	12.4
10년 이상-20년 미만	1,137	5.8
20년 이상-30년 미만	114	0.6
30년 이상-40년 미만	8	0.0
40년 이상	3	0.0
무기징역	71	0.4
사형	3	0.0
총계	19,64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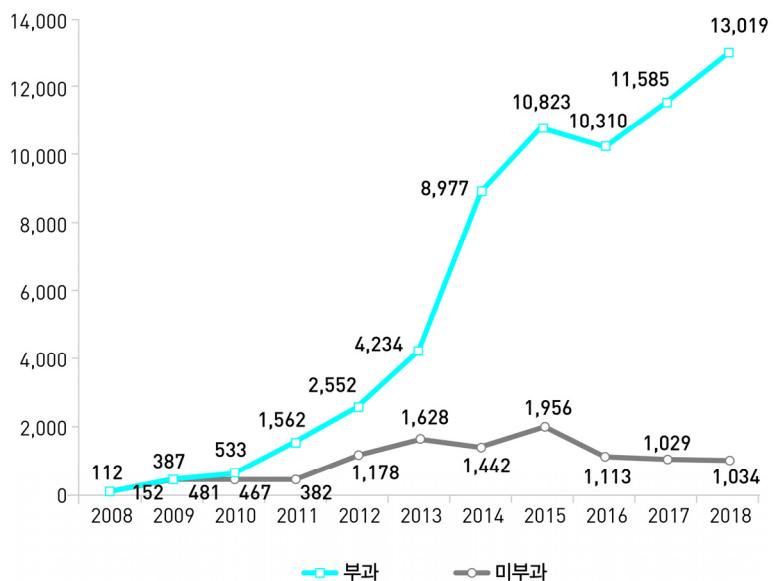
9. 사회내처우 부과 현황

- <표 3-1-11>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이수명령 등의 사회내처우 부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사건 중 부과 대상사건은 64,094건으로 85.5%를 차지한다.
- 2008년 112건(42.4%)이 부과되었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13,019건 (92.6%)이 부과되었다.
- 부과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42.4%를 시작으로 2011년 80.4%까지 계속 증가하다 2012년에 68.4%로 감소한 후, 증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다시 증가하여 2016년에는 90.3%로 90%를 넘었고, 2018년 92.6%까지 증가하였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호관찰은 2008년 76건(28.8%)을 시작으로 그 건수가 2012년 1,049건(28.1%)으로 처음 1,000건 대를 넘었으며, 그 이후 2018년까지 1,000건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부과내용 중 보호관찰 비율은 감소 추세로 2014년 1,624건(15.6%)이 부과되어 처음으로 20%를 밑돌았고, 2018년에는 9.6%로 낮아졌다.
-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2008년 51건(19.3%)부터 2018년 1,982건(14.1%)까지 2010년을 제외하면 그 건수는 계속하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과내용 간 비율은 2009년 178건(20.5%)을 제외하면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 수강·이수명령의 건수와 비율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2008년 32건 (12.1%)에서 2018년에는 12,920건(91.9%)까지 증가하여 사회내처우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특히, 2013년 3,793건(64.7%)에서 2014년 8,689건(83.4%)으로 증가폭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2013년에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이수명령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 전자감독의 경우 2013년 603건(10.3%)까지 사건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다가 이후 2018년에는 261건(1.9%)까지 감소하였으며, 비율도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 종합해보면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건수는 매년 비슷하나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수강·이수명령은 사건수와 비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 사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비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전자감독의 경우는 사건수와 비율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1〉 사회내처우 부과 현황(중복집계)

처분 연도	총계	미부과	부과	부과 내용(중복집계, %행은 총계 중 비율)						
				보호 관찰	사회봉사 명령	수강 · 이수명령	전자 감독	치료 감호	치료 명령	약물 치료
2008	264	152	112	76	51	32	14	1	-	-
	(%)	57.6	42.4	28.8	19.3	12.1	5.3	0.4	-	-
2009	868	481	387	267	178	168	62	16	-	-
	(%)	55.4	44.6	30.8	20.5	19.4	7.1	1.8	-	-
2010	1,000	467	533	345	177	281	172	17	-	-
	(%)	46.7	53.3	34.5	17.7	28.1	17.2	1.7	-	-
2011	1,944	382	1,562	715	305	1,299	355	29	-	-
	(%)	19.7	80.4	36.8	15.7	66.8	18.3	1.5	-	-
2012	3,730	1,178	2,552	1,049	555	2,132	517	41	-	-
	(%)	31.6	68.4	28.1	14.9	57.2	13.9	1.1	-	-
2013	5,862	1,628	4,234	1,261	744	3,793	603	38	2	1
	(%)	27.8	72.2	21.5	12.7	64.7	10.3	0.6	0.0	0.0
2014	10,419	1,442	8,977	1,624	1,131	8,689	598	70	2	6
	(%)	13.8	86.2	15.6	10.9	83.4	5.7	0.7	0.0	0.1
2015	12,779	1,956	10,823	1,679	1,380	10,371	582	49	-	5
	(%)	15.3	84.7	13.1	10.8	81.2	4.6	0.4	-	0.0
2016	11,423	1,113	10,310	1,435	1,538	10,052	344	56	-	3
	(%)	9.7	90.3	12.6	13.5	88.0	3.0	0.5	-	0.0
2017	12,614	1,029	11,585	1,394	1,813	11,337	249	27	25	2
	(%)	8.2	91.8	11.1	14.4	89.9	2.0	0.2	0.2	0.0
2018	14,053	1,034	13,019	1,349	1,982	12,920	261	26	57	1
	(%)	7.4	92.6	9.6	14.1	91.9	1.9	0.2	0.4	0.0
총계	74,956	10,862	64,094	11,194	9,854	61,074	3,757	370	86	18
	(%)	14.5	85.5	14.9	13.1	81.5	5.0	0.5	0.1	0.0

〈그림 3-1-6〉 사회내처우 부과 현황



(1) 보호관찰 부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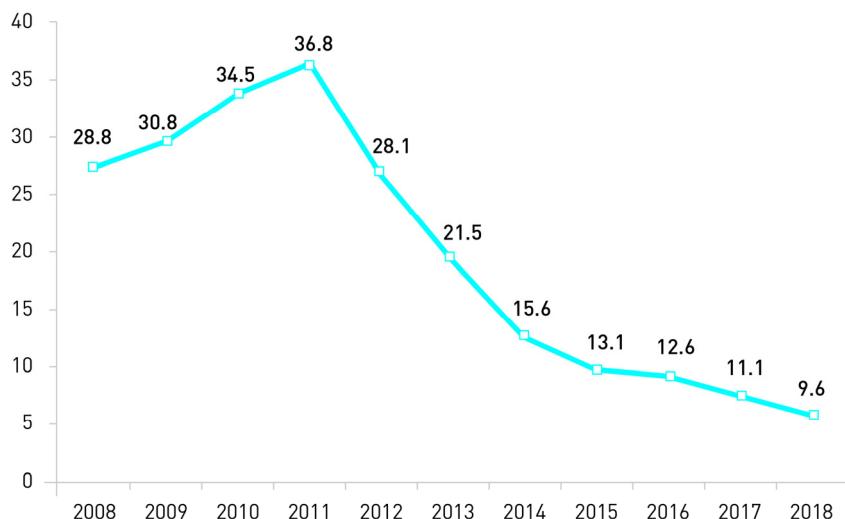
- 〈표 3-1-12〉는 보호관찰 부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8년 전체 264건 중 76건(28.8%)이 보호관찰을 부과 받았고, 그 후 부과 건수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2018년에는 1,349건(9.6%)이 보호관찰을 부과 받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74,956건 중 11,194(14.9%)이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보호관찰 부과 비율은 2008년 28.8%에서 2018년 9.6%까지 점차 감소하였는데, 이는 등록대상사건 중 벌금 사건이 차지하는 부과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12〉 보호관찰 부과 현황

연도	보호관찰	부과	미부과	총계
2008		76	188	264
		28.8	71.2	[%]
2009		267	601	868
		30.8	69.2	[%]
2010		345	655	1,000
		34.5	65.5	[%]

연도	보호관찰	부과	미부과	총계
2011		715	1,229	1,944
		36.8	63.2	[%]
2012		1,049	2,681	3,730
		28.1	71.9	[%]
2013		1,261	4,601	5,862
		21.5	78.5	[%]
2014		1,624	8,795	10,419
		15.6	84.4	[%]
2015		1,679	11,100	12,779
		13.1	86.9	[%]
2016		1,435	9,988	11,423
		12.6	87.4	[%]
2017		1,394	11,220	12,614
		11.1	88.9	[%]
2018		1,349	12,704	14,053
		9.6	90.4	[%]
총계		11,194	63,762	74,956
		14.9	85.1	[%]

〈그림 3-1-7〉 보호관찰 부과 비율(단위 : %)



(2) 보호관찰 기간

- 〈표 3-1-13〉은 보호관찰 기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11,194건 중 2년이 3,852건(34.4%)으로 가장 많고, 3년이 2,193건(19.6%), 1년이 868건(7.8%) 순으로 나타나, 1년~3년의 기간이 전체의 6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호관찰 기간 2년의 비율은 2014년까지 20%~30%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40%를 넘는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2017년에는 671건(48.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보호관찰 기간 3년의 비율은 2011년까지 20%~30%를 보이다 2012년부터 10%대로 낮아진 후 2017년부터는 20%대를 유지중이다.

〈표 3-1-13〉 보호관찰 기간 현황

기간 연도	6월	1년	2년	2년 6월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0년	12년	15년	20년	25년	30년	총계
2008	-	9	30	-	21	9	6	-	1	-	-	-	-	-	-	-	76
	-	11.8	39.5	-	27.6	11.8	7.9	-	1.3	-	-	-	-	-	-	-	[%]
2009	-	21	106	-	100	17	15	-	3	-	5	-	-	-	-	-	267
	-	7.9	39.7	-	37.5	6.4	5.6	-	1.1	-	1.9	-	-	-	-	-	[%]
2010	-	20	88	-	84	25	55	25	23	-	20	-	1	4	-	-	345
	-	5.8	25.5	-	24.3	7.2	15.9	7.2	6.7	-	5.8	-	0.3	1.2	-	-	[%]
2011	-	20	150	-	151	80	60	51	38	1	114	1	6	41	-	2	715
	-	2.8	21.0	-	21.1	11.2	8.4	7.1	5.3	0.1	15.9	0.1	0.8	5.7	-	0.3	[%]
2012	-	27	233	-	197	96	101	45	34	-	256	-	28	30	1	1	1,049
	-	2.6	22.2	-	18.8	9.2	9.6	4.3	3.2	-	24.4	-	2.7	2.9	0.1	0.1	[%]
2013	2	57	280	-	217	116	99	50	43	5	290	3	22	71	1	5	1,261
	0.2	4.5	22.2	-	17.2	9.2	7.9	4.0	3.4	0.4	23.0	0.2	1.7	5.6	0.1	0.4	[%]
2014	1	161	469	-	306	108	127	61	42	3	246	4	17	71	-	8	1,624
	0.1	9.9	28.9	-	18.8	6.7	7.8	3.8	2.6	0.2	15.1	0.2	1.0	4.4	-	0.5	[%]
2015	1	166	603	-	275	81	148	29	36	4	231	-	19	83	-	3	1,679
	0.1	9.9	35.9	-	16.4	4.8	8.8	1.7	2.1	0.2	13.8	-	1.1	4.9	-	0.2	[%]
2016	-	173	619	-	252	85	101	10	10	1	137	2	9	34	-	2	1,435
	-	12.1	43.1	-	17.6	5.9	7.0	0.7	0.7	0.1	9.5	0.1	0.6	2.4	-	0.1	[%]
2017	1	128	671	1	295	72	76	15	8	-	82	1	5	36	-	3	1,394
	0.1	9.2	48.1	0.1	21.2	5.2	5.5	1.1	0.6	-	5.9	0.1	0.4	2.6	-	0.2	[%]
2018	-	86	603	-	295	98	109	19	15	1	70	-	13	39	-	1	1,349
	-	6.4	44.7	-	21.9	7.3	8.1	1.4	1.1	0.1	5.2	-	1.0	2.9	-	0.1	[%]
총계	5	868	3,852	1	2,193	787	897	305	253	15	1,451	11	120	409	2	25	11,194
	0.0	7.8	34.4	0.0	19.6	7.0	8.0	2.7	2.3	0.1	13.0	0.1	1.1	3.7	0.0	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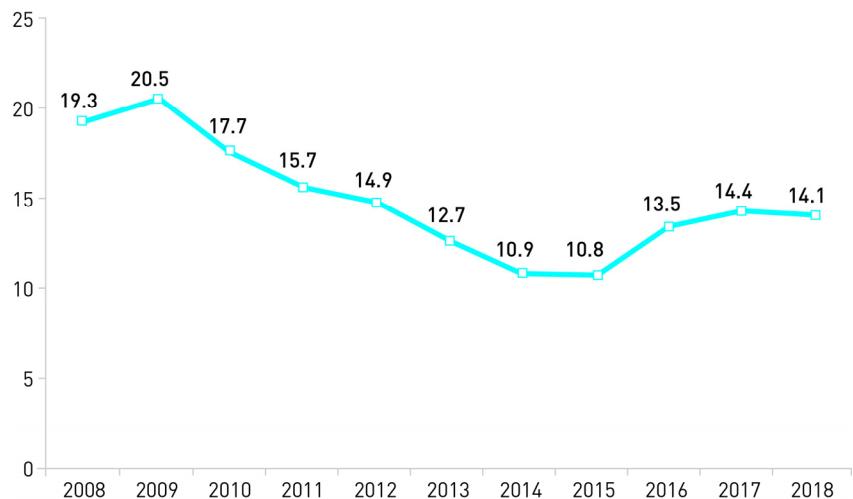
(3) 사회봉사명령 부과 현황

- 〈표 3-1-14〉는 사회봉사명령 부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등록사건 74,956건 중 9,854건(10.1%)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았다. 2008년 당해 등록사건 264건 중 51건(19.3%)에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는 1,982건(14.1%)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사건으로 나타났다.

〈표 3-1-14〉 사회봉사명령 부과 현황

연도	사회봉사명령	부과	미부과	총계
2008		51	213	264
		19.3	80.7	[%]
2009		178	690	868
		20.5	79.5	[%]
2010		177	823	1,000
		17.7	82.3	[%]
2011		305	1,639	1,944
		15.7	84.3	[%]
2012		555	3,175	3,730
		14.9	85.1	[%]
2013		744	5,118	5,862
		12.7	87.3	[%]
2014		1,131	9,288	10,419
		10.9	89.1	[%]
2015		1,380	11,399	12,779
		10.8	89.2	[%]
2016		1,538	9,885	11,423
		13.5	86.5	[%]
2017		1,813	10,801	12,614
		14.4	85.6	[%]
2018		1,982	12,071	14,053
		14.1	85.9	[%]
총계		9,854	65,102	74,956
		10.1	89.9	[%]

〈그림 3-1-8〉 사회봉사명령 부과 비율(단위 : %)



(4)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간

- 〈표 3-1-15〉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사건의 시간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사회봉사명령 부과 사건 9,854건 중 50~200시간을 부과 받은 사건이 7,902건 (80.2%)이었으며, 300시간 이상은 142건(1.5%)으로 나타났다.
- 특히, 50~100시간을 부과 받은 사건이 3,478건(35.3%)으로 가장 많았고, 100~150 시간 3,049건(30.9%), 150~200시간 1,375건(1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15〉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간별 현황

사회봉사명령 시간	사건수	(%)
~50	723	7.3
50~100	3,478	35.3
100~150	3,049	30.9
150~200	1,375	14.0
200~300	1,087	11.0
300~400	106	1.1
400 이상	36	0.4
총계	9,8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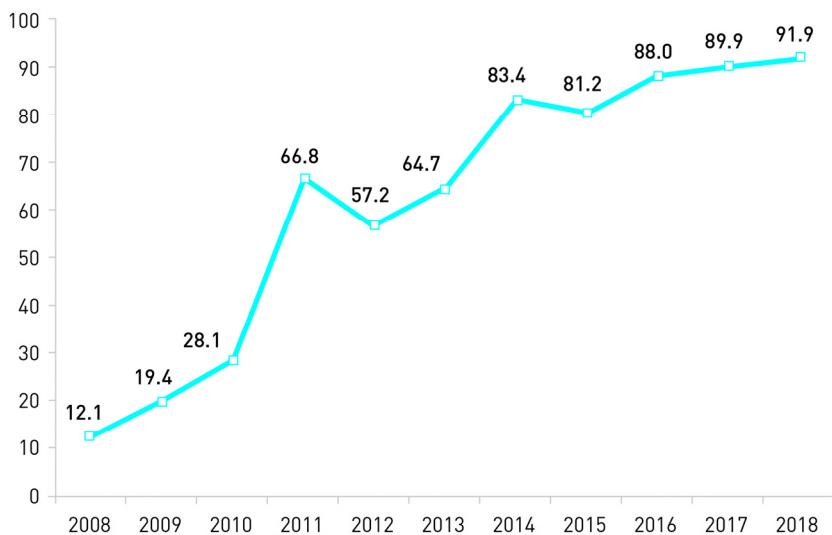
(5) 수강·이수명령 부과 현황

- 〈표 3-1-16〉은 수강·이수명령 부과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등록사건 74,956건 중 수강·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사건은 61,074건(81.5%)이다.
- 2008년 당해 등록사건 264건 중 수강·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사건이 32건(12.1%) 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12,920건 (91.9%)이 되었다. 특히, 2011년 이후로는 대부분 전년 대비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16〉 수강·이수명령 부과 현황

연도	수강·이수 명령	부과	미부과	총계
2008		32	232	264
		12.1	87.9	[%]
2009		168	700	868
		19.4	80.7	[%]
2010		281	719	1,000
		28.1	71.9	[%]
2011		1,299	645	1,944
		66.8	33.2	[%]
2012		2,132	1,598	3,730
		57.2	42.8	[%]
2013		3,793	2,069	5,862
		64.7	35.3	[%]
2014		8,689	1,730	10,419
		83.4	16.6	[%]
2015		10,371	2,408	12,779
		81.2	18.8	[%]
2016		10,052	1,371	11,423
		88.0	12.0	[%]
2017		11,337	1,277	12,614
		89.9	10.1	[%]
2018		12,920	1,133	14,053
		91.9	8.1	[%]
총계		61,074	13,882	74,956
		81.5	18.5	[%]

〈그림 3-1-9〉 수강·이수명령 부과 비율(단위: %)



(6) 수강·이수명령 부과 시간

- 〈표 3-1-17〉은 수강·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사건의 시간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수강·이수명령 부과 사건 61,074건 중 100시간 미만이 전체의 58,761건 (96.2%)을 차지했다.
- 그 중에서도 50시간 미만을 부과 받은 사건이 47,072건(7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100시간이 11,689건(19.1%)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300시간 이상은 26건(0.04%)으로 미미했다.

〈표 3-1-17〉 수강명령·이수 부과 시간별 현황

수강명령·이수 시간	사건수	(%)
~50	47,072	77.1
50~100	11,689	19.1
100~150	1,852	3.0
150~200	206	0.3
200~300	229	0.4
300~400	24	0.0
400 이상	2	0.0
총계	61,07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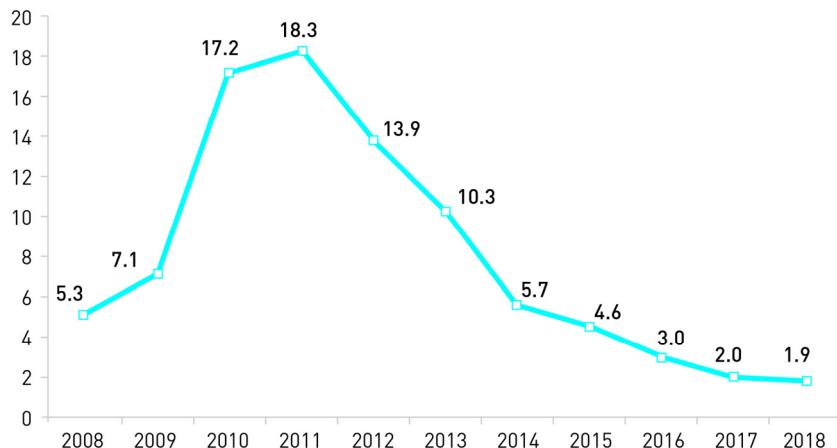
(7)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 현황

- 〈표 3-1-18〉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 현황으로, 전체 등록사건 74,956건 중 3,757건(5.0%)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 받았다.
- 전자장치 부과율을 분석해보면, 2008년에 당해 등록사건 264건 중 14건(5.3%)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603건으로 그 해 등록사건 5,862건 대비 10.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는 261건으로 당해 등록사건 14,053건 중 1.9%를 차지하는 것에 그쳤다.

〈표 3-1-18〉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 현황

연도	전자장치	부착 부과	미부과	총계
2008		14	250	264
		5.3	94.7	[%]
2009		62	806	868
		7.1	92.9	[%]
2010		172	828	1,000
		17.2	82.8	[%]
2011		355	1,589	1,944
		18.3	81.7	[%]
2012		517	3,213	3,730
		13.9	86.1	[%]
2013		603	5,259	5,862
		10.3	89.7	[%]
2014		598	9,821	10,419
		5.7	94.3	[%]
2015		582	12,197	12,779
		4.6	95.5	[%]
2016		344	11,079	11,423
		3.0	97.0	[%]
2017		249	12,365	12,614
		2.0	98.0	[%]
2018		261	13,792	14,053
		1.9	98.1	[%]
총계		3,757	71,199	74,956
		5.0	95.0	[%]

〈그림 3-1-10〉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 비율(단위 : %)



(8)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 〈표 3-1-19〉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건의 기간별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전자장치 부착사건 3,757건 중 10년이 1,452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5년이 540건(14.4%), 3년이 424건(11.3%) 순으로 나타났다.
- 부착기간 20년은 410건(10.9%)으로 부착기간 3년(424건, 11.3%)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부착기간 25년은 2건(0.1%)에 불과하였다.

〈표 3-1-19〉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별 현황

전자장치 부착 기간	사건 수	(%)
1년	15	0.4
2년	127	3.4
3년	424	11.3
4년	58	1.5
5년	540	14.4
6년	305	8.1
7년	253	6.7
8년	15	0.4
10년	1,452	38.7
12년	11	0.3
15년	120	3.2
20년	410	10.9

전자장치 부착 기간	사건 수	(%)
25년	2	0.1
30년	25	0.7
총계	3,757	-

(9) 치료감호 부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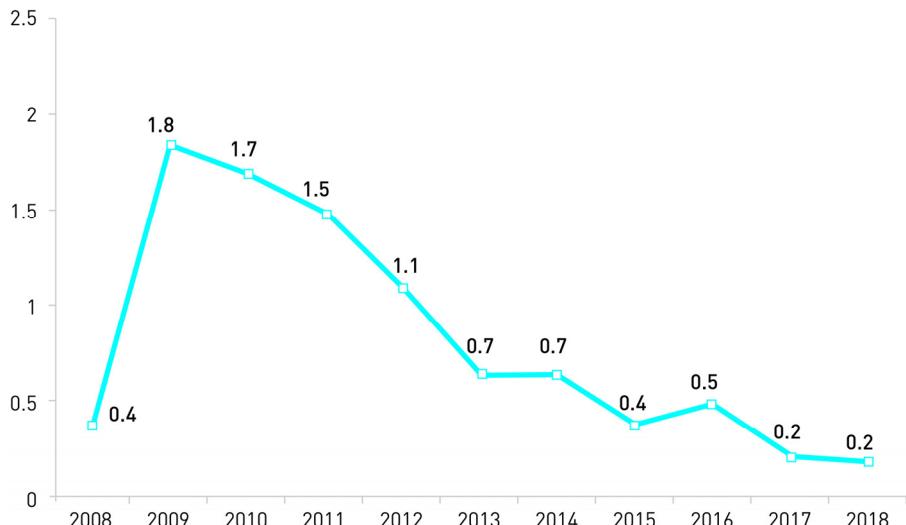
- 〈표 3-1-20〉은 치료감호 부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등록사건 74,956건 중 370건이 치료감호를 부과 받은 사건으로 전체 대비 0.5%를 차지했다.
- 2008년 당해 등록사건 264건 중 1건으로 시작한 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70건(0.7%)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부과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18년에는 당해 등록사건 14,053건 중 26건(0.2%)만이 치료감호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0〉 치료감호 부과 현황

연도	치료감호	부과	미부과	총계
2008		1	263	264
		0.4	99.6	(%)
2009		16	852	868
		1.8	98.2	(%)
2010		17	983	1,000
		1.7	98.3	(%)
2011		29	1,915	1,944
		1.5	98.5	(%)
2012		41	3,689	3,730
		1.1	98.9	(%)
2013		38	5,824	5,862
		0.7	99.4	(%)
2014		70	10,349	10,419
		0.7	99.3	(%)
2015		49	12,730	12,779
		0.4	99.6	(%)

연도	치료감호	부과	미부과	총계
2016		56	11,367	11,423
		0.5	99.5	[%]
2017		27	12,587	12,614
		0.2	99.8	[%]
2018		26	14,027	14,053
		0.2	99.8	[%]
총계		370	74,586	74,956
		0.5	99.5	[%]

〈그림 3-1-11〉 치료감호 부과 비율(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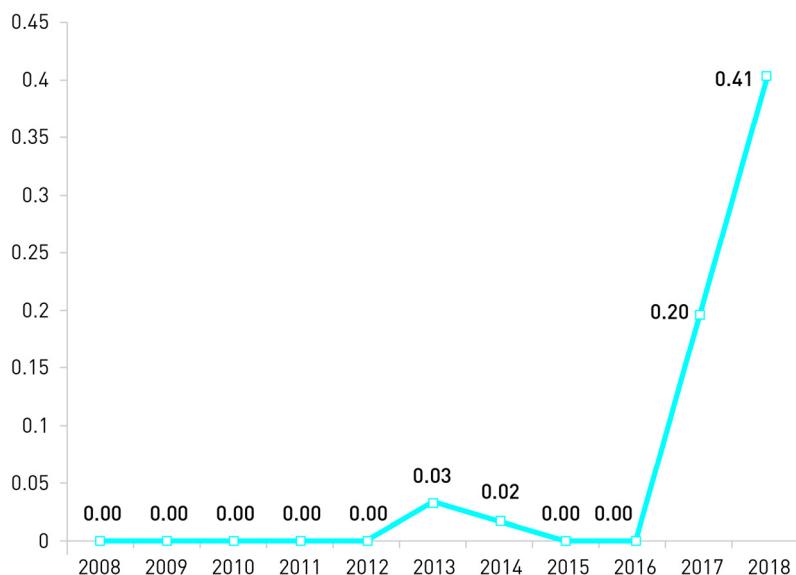
(10) 치료명령 부과 현황

- 〈표 3-1-21〉은 치료명령 부과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등록사건 74,956건 중 치료명령이 부과된 사건은 86건으로 0.1%를 차지했다. 2013년에 처음으로 2건이 등록된 후 2014년 2건, 2017년 25건, 2018년에는 57건이 등록되어 최근 치료명령 부과 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1〉 치료명령 부과 현황

연도 \ 치료명령	부과	미부과	총계
2008	-	264	264
	-	100.0	[%]
2009	-	868	868
	-	100.0	[%]
2010	-	1,000	1,000
	-	100.0	[%]
2011	-	1,944	1,944
	-	100.0	[%]
2012	-	3,730	3,730
	-	100.0	[%]
2013	2	5,860	5,862
	0.0	100.0	[%]
2014	2	10,417	10,419
	0.0	100.0	[%]
2015	-	12,779	12,779
	-	100.0	[%]
2016	-	11,423	11,423
	-	100.0	[%]
2017	25	12,589	12,614
	0.2	99.8	[%]
2018	57	13,996	14,053
	0.4	99.6	[%]
총계	86	74,870	74,956
	0.1	99.9	[%]

〈그림 3-1-12〉 치료명령 부과 비율(단위 : %)



(11) 성충동 약물치료 부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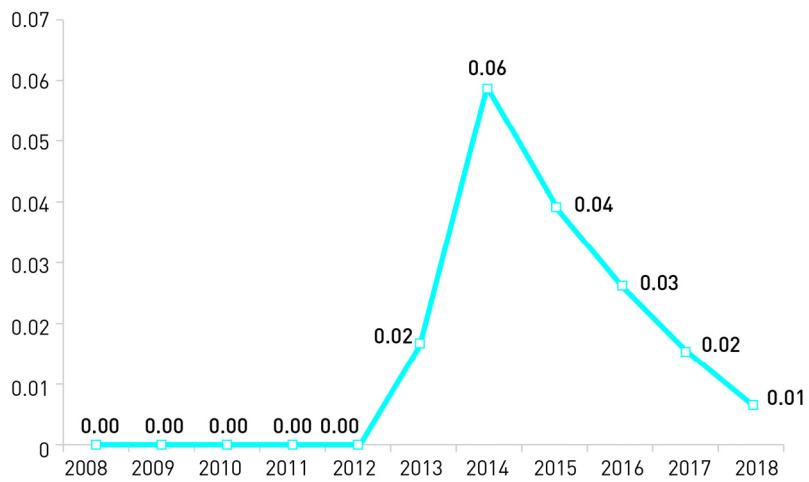
- 〈표 3-1-22〉는 성충동 약물치료 부과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등록사건 74,956건 중 성충동 약물치료가 부과된 사건은 18건이다.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2013년에 처음으로 1건이 등록되었고, 이후 2014년에 6건, 2015년에 5건 등 전체 등록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었다.

〈표 3-1-22〉 성충동 약물치료 부과 현황

연도	성충동치료	부과	미부과	총계
2008		–	264	264
		–	100.0	[%]
2009		–	868	868
		–	100.0	[%]
2010		–	1,000	1,000
		–	100.0	[%]
2011		–	1,944	1,944
		–	100.0	[%]

연도	성충동치료 부과	미부과	총계
2012	-	3,730	3,730
	-	100.0	(%)
2013	1	5,861	5,862
	0.0	100.0	(%)
2014	6	10,413	10,419
	0.1	99.9	(%)
2015	5	12,774	12,779
	0.0	100.0	(%)
2016	3	11,420	11,423
	0.0	100.0	(%)
2017	2	12,612	12,614
	0.0	100.0	(%)
2018	1	14,052	14,053
	0.0	100.0	(%)
총계	18	74,938	74,956
	0.0	100.0	(%)

〈그림 3-1-13〉 연도별 성충동 약물치료 부과 비율(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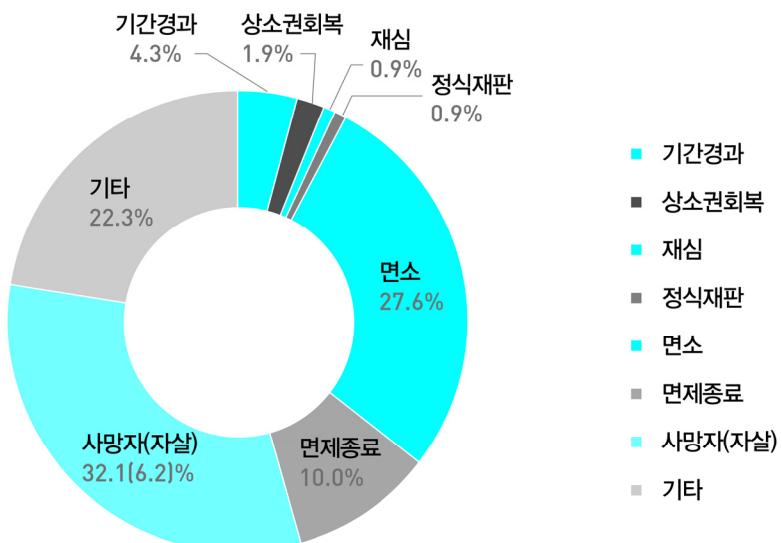
10. 등록 종료

- 〈표 3-1-23〉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등록 종료 현황이다. 전체 종료건수는 3,944건으로 전체 등록사건 74,956건 중 5.3%이다. 종료사유를 살펴보면, 사망이 1,267건(32.1%), 면소 1,091건 (27.6%), 면제종료 394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은 78건으로 6.2%를 차지했다. 기타 종료는 2016년 3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위헌(2015마688) 결정 및 중복 등록 등의 사유로 발생한 수치이다.

〈표 3-1-23〉 등록 종료별 현황

종료사유	사건수	(%)
기간경과	168	4.3
상소권회복	74	1.9
재심	35	0.9
정식재판	34	0.9
면소	1,091	27.6
면제종료	394	10.0
사망자(자살)	1,267[78]	32.1(6.2)
기타	881	22.3
총계	3,944	100.0

〈그림 3-1-14〉 등록 종료별 비율



성범죄자 특성

1. 성범죄 전과

(1) 성범죄 전과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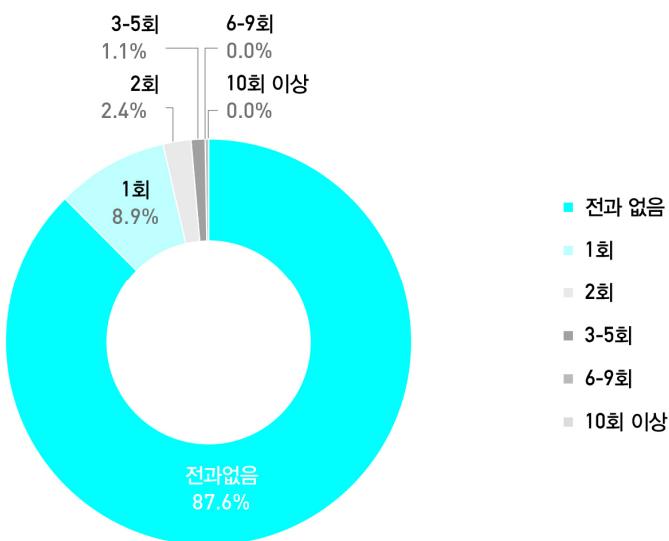
- 〈표 3-2-1〉은 연도별 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등록사건 74,956건 중 65,638건(87.6%)이 성범죄 전과사실이 없는 등록대상자의 범죄였으며, 뒤이어 1회 6,680건(8.9%), 2회 1,777건(2.4%) 순으로 나타났다.
-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과 없음이 80%~90%의 높은 비율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전과횟수 1회는 10% 내외의 비율을, 전과횟수 2회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2-1〉 성범죄 전과 횟수 현황

연도	전과	전과 없음	1회	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총계
2008	226	23	11	4	–	–	264	
	85.6	8.7	4.2	1.5	–	–	[%]	
2009	732	93	30	13	–	–	868	
	84.3	10.7	3.5	1.5	–	–	[%]	
2010	828	114	38	20	–	–	1,000	
	82.8	11.4	3.8	2.0	–	–	[%]	
2011	1,653	205	53	32	–	1	1,944	
	85.0	10.6	2.7	1.7	–	0.1	[%]	
2012	3,108	455	119	47	1	–	3,730	
	83.3	12.2	3.2	1.3	0.0	–	[%]	
2013	5,030	612	145	73	2	–	5,862	
	85.8	10.4	2.5	1.3	0.0	–	[%]	
2014	8,912	1,079	289	136	3	–	10,419	
	85.5	10.4	2.8	1.3	0.0	–	[%]	
2015	11,095	1,221	315	144	3	1	12,779	
	86.8	9.6	2.5	1.1	0.0	0.0	[%]	
2016	9,927	1,020	328	142	4	2	11,423	
	86.9	8.9	2.9	1.2	0.0	0.0	[%]	

연도	전과	전과 없음	1회	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총계
2017		11,238	988	263	117	8	–	12,614
		89.1	7.8	2.1	0.9	0.1	–	[%]
2018		12,889	870	186	105	3	–	14,053
		91.7	6.2	1.3	0.8	0.0	–	[%]
총계		65,638	6,680	1,777	833	24	4	74,956
		87.6	8.9	2.4	1.1	0.0	0.0	[%]

〈그림 3-2-1〉 성범죄 전과 횟수 비율



(2) 공개대상자 성범죄 전과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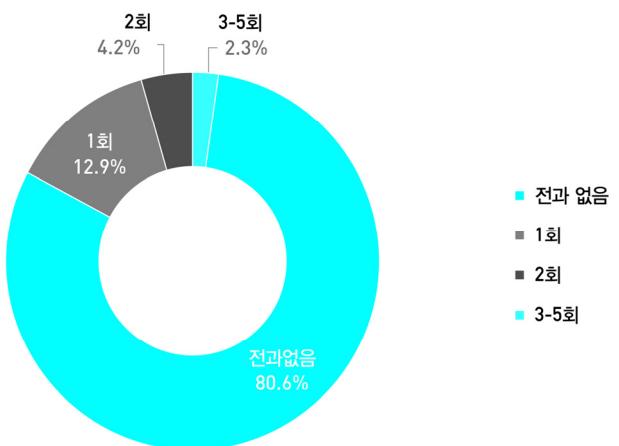
- 〈표 3-2-2〉는 공개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2,598건 중 2,095건(80.6%)이 전과가 없었으며, 1회가 334건(12.9%), 2회가 110건(4.2%) 순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8년을 제외하고는 공개대상자 중 60~80%가 전과가 없었으며, 전과 1회가 2015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표 3-2-2〉 공개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 현황

연도	전과	전과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총계
2008		123	17	7	2	149
		82.6	11.4	4.7	1.3	[%]

연도	전과	전과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총계
2009		293	53	21	13	380
		77.1	14.0	5.5	3.4	(%)
2010		398	76	29	20	523
		76.1	14.5	5.5	3.8	(%)
2011		859	114	30	13	1,016
		84.6	11.2	3.0	1.3	(%)
2012		200	34	6	4	244
		82.0	13.9	2.5	1.6	(%)
2013		88	14	7	2	111
		79.3	12.6	6.3	1.8	(%)
2014		56	6	9	3	74
		75.7	8.1	12.2	4.1	(%)
2015		36	13	1	2	52
		69.2	25.0	1.9	3.9	(%)
2016		22	5	-	-	27
		81.5	18.5	-	-	(%)
2017		4	2	-	-	6
		66.7	33.3	-	-	(%)
2018		16	-	-	-	16
		100.0	-	-	-	(%)
총계		2,095	334	110	59	2,598
		80.6	12.9	4.2	2.3	(%)

〈그림 3-2-2〉 공개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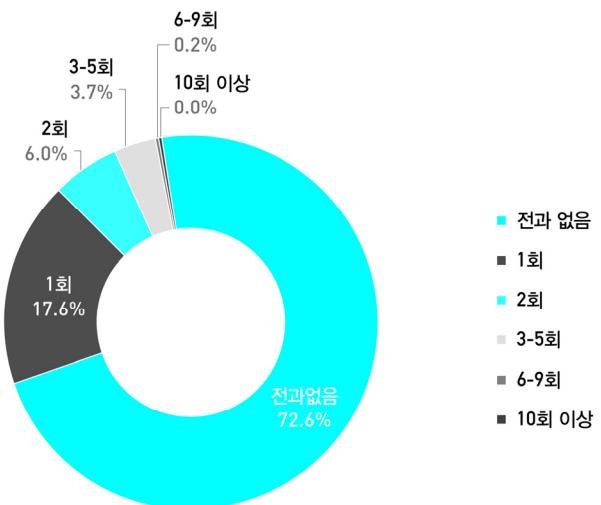
(3) 고지대상자 전과 횟수

- 〈표 3-2-3〉은 고지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11,715건 중 8,499건(72.6%)이 전과가 없었으며, 1회가 2,059건(17.6%), 2회가 703건(6.0%) 순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추이를 보면, 매년 전과 없는 고지대상자가 60~70%대이며, 전과 1회가 10%~2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적은 수치지만 10회 이상도 총 3건으로 나타났다. 전과가 없는 고지대상자의 비율(72.6%)은 등록대상자(87.6%)보다 15%, 공개대상자(80.6%)보다 8% 정도 낮았다.

〈표 3-2-3〉 고지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 현황

연도 \ 전과	전과 없음	1회	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총계
2011	359	63	17	15	-	1	455
	78.9	13.9	3.7	3.3	-	0.2	[%]
2012	1,826	329	98	35	1	-	2,289
	79.8	14.4	4.3	1.5	0.0	-	[%]
2013	1,762	375	90	55	2	-	2,284
	77.2	16.4	3.9	2.4	0.1	-	[%]
2014	1,453	454	146	83	2	-	2,138
	68.0	21.2	6.8	3.9	0.1	-	[%]
2015	1,336	390	154	87	2	1	1,970
	67.8	19.8	7.8	4.4	0.1	0.1	[%]
2016	731	223	109	63	4	1	1,131
	64.6	19.7	9.6	5.6	0.4	0.1	[%]
2017	508	123	51	50	6	-	738
	68.8	16.7	6.9	6.8	0.8	-	[%]
2018	524	102	38	45	1	-	710
	73.8	14.4	5.4	6.3	0.1	-	[%]
총계	8,499	2,059	703	433	18	3	11,715
	72.6	17.6	6.0	3.7	0.2	0.0	[%]

〈그림 3-2-3〉 고지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 비율



2.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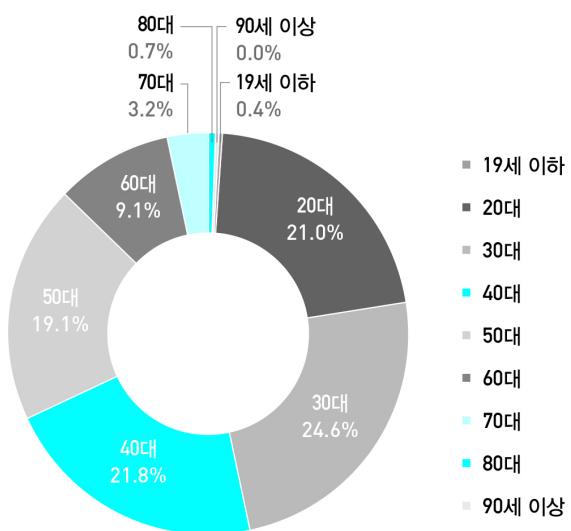
(1) 연령

- 〈표 3-2-4〉는 등록대상자의 연령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대~50대 대상자의 범죄가 전체 건수의 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0대가 2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80대는 509건(0.7%)으로 19세 이하 297건(0.4%)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90세 이상도 33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자 연령 분석을 살펴보면, 전체 성폭력범죄자 240,184명 중 19~30세가 67,341명(28.0%), 31~40세가 52,762명(22.0%), 41~50세가 46,558명(19.4%) 순으로 나타났다.
- 등록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사건 수 중 20~40대의 비율이 각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성폭력범죄자의 연령 비율도 20~40대가 각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전체 성폭력범죄자 중에서는 19세 미만이 10.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등록대상사건 중에서는 19세 이하 대상자가 등록된 사건이 0.4%에 그치고 있다. 이는 등록대상사건 중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의 이유로 등록이 되지 않은 사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부록 〈표 5-1-6〉 참조).

〈표 3-2-4〉 연령별 현황

연령	사건 수	(%)
19세 이하	297	0.4
20대	15,768	21.0
30대	18,402	24.6
40대	16,360	21.8
50대	14,305	19.1
60대	6,850	9.1
70대	2,432	3.2
80대	509	0.7
90세 이상	33	0.0
총계	74,956	-

〈그림 3-2-4〉 연령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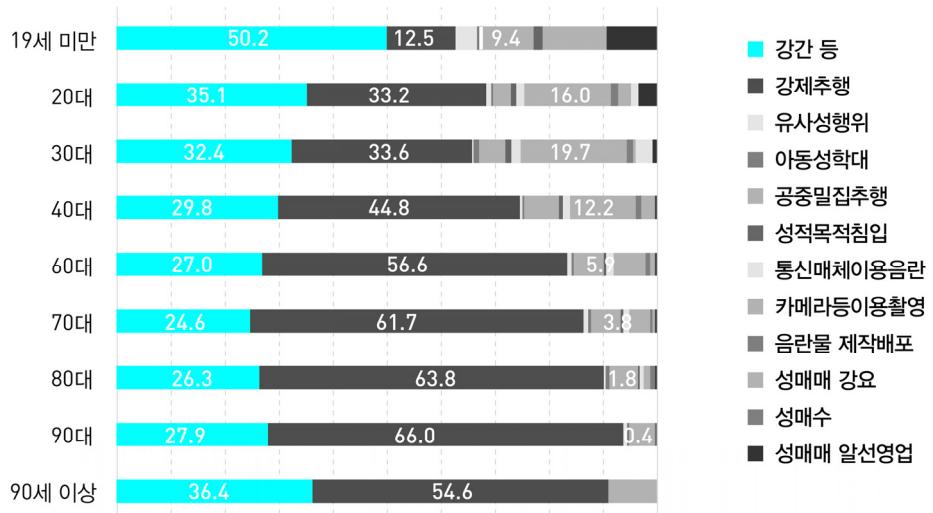
(2) 연령별 죄명

- <표 3-2-5>는 죄명별 등록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사건 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 20대는 전체 15,768건 중 강간 등 5,533건(35.1%), 강제추행 5,233건(33.2%), 카메라등이용촬영 2,520건(16.0%) 순으로, 강간 등과 강제추행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이 두 범죄가 전체의 6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대는 전체 18,402건 중 강제추행 6,184건(33.6%), 강간 등 5,957건(32.4%), 카메라등이용촬영 3,630건(19.7%) 순으로, 20대와 달리 강제추행 건수가 강간 등의 건수보다 많았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 40대는 전체 16,360건 중 강제추행 7,335건(44.8%), 강간 등 4,873건(29.8%), 카메라등이용촬영 1,993건(12.2%) 순으로, 30대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 50대는 전체 14,305건 중 강제추행 8,098건(56.6%), 강간 등 3,856건(27.0%), 카메라등이용촬영 841건(5.9%) 순으로, 강제추행의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20대~40대 모두에서 10%대를 보였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비율은 5.9%로 급격히 줄었다.
- 20~50대를 종합적으로 볼 때, 강간 등 범죄의 비율은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고, 강제추행 범죄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편,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는 전체 9,317건 중 20~40대가 8,143건(87.4%)을 차지했다.
- 이 외에 19세 이하는 297건, 90세 이상은 33건이 있었다. 특히 90세 이상은 강제 추행이 18건(54.6%), 강간 등이 12건(36.4%),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3건(9.1%)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등록대상자는 다양한 연령대에 걸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3-2-5〉 연령별 죄명 현황

죄명 연령	강간 등	강제 추행	유사 성행위	아동 성학대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성적 목적 침입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이용 촬영	음란물 제작 배포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영업	총계
19세 이하	149	37	12	1	—	—	2	28	5	35	—	28	297
	50.2	12.5	4.0	0.3	—	—	0.7	9.4	1.7	11.8	—	9.4	[%]
20대	5,533	5,233	143	79	491	173	244	2,520	188	417	237	510	15,768
	35.1	33.2	0.9	0.5	3.1	1.1	1.6	16.0	1.2	2.6	1.5	3.2	[%]
30대	5,957	6,184	57	78	955	230	264	3,630	245	59	591	152	18,402
	32.4	33.6	0.3	0.4	5.2	1.3	1.4	19.7	1.3	0.3	3.2	0.8	[%]
40대	4,873	7,335	70	64	1,033	142	215	1,993	147	12	431	45	16,360
	29.8	44.8	0.4	0.4	6.3	0.9	1.3	12.2	0.9	0.1	2.6	0.3	[%]
50대	3,856	8,098	69	50	823	74	184	841	99	8	172	31	14,305
	27.0	56.6	0.5	0.4	5.8	0.5	1.3	5.9	0.7	0.1	1.2	0.2	[%]
60대	1,687	4,228	54	46	378	27	74	260	35	3	50	8	6,850
	24.6	61.7	0.8	0.7	5.5	0.4	1.1	3.8	0.5	0.0	0.7	0.1	[%]
70대	640	1,551	14	11	129	8	15	43	13	—	8	—	2,432
	26.3	63.8	0.6	0.5	5.3	0.3	0.6	1.8	0.5	—	0.3	—	[%]
80대	142	336	3	2	23	—	1	2	—	—	—	—	509
	27.9	66.0	0.6	0.4	4.5	—	0.2	0.4	—	—	—	—	[%]
90세 이상	12	18	—	—	3	—	—	—	—	—	—	—	33
	36.4	54.6	—	—	9.1	—	—	—	—	—	—	—	[%]
총계	22,849	33,020	422	331	3,835	654	999	9,317	732	534	1,489	774	74,956
	30.5	44.1	0.6	0.4	5.1	0.9	1.3	12.4	1.0	0.7	2.0	1.0	[%]

〈그림 3-2-5〉 연령별 죄명 비율



3.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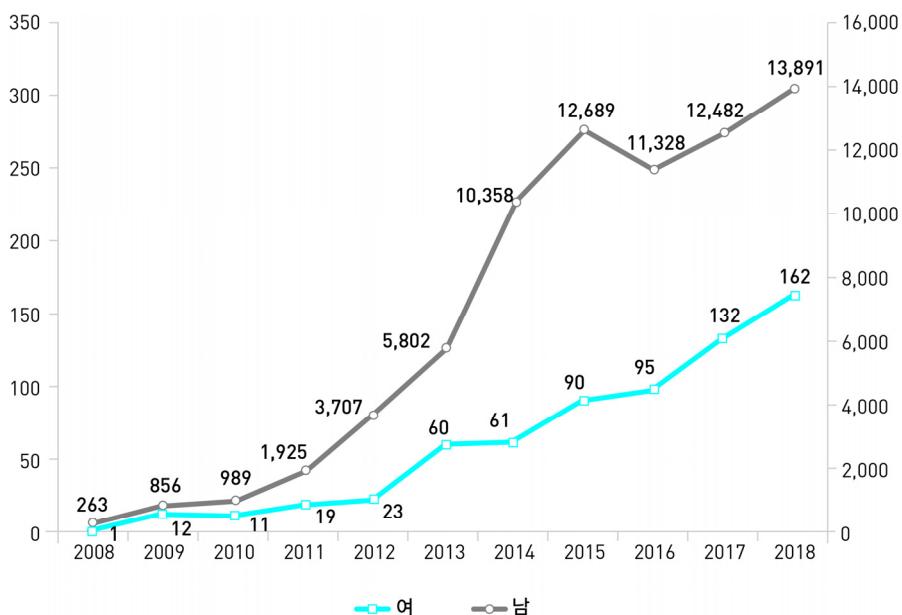
- 〈표 3-2-6〉은 등록대상자의 성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등록사건 74,956건 중 남성이 74,290건(9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666건(0.9%)이다. 매년 남녀 모두 등록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자 성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성폭력범죄자 240,184명 중 남성이 231,384명(96.3%), 여성이 4,886명(2.0%)으로 남성 성범죄자가 여성 성범죄자보다 많았다.
- 여성 비율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 처음 2%대 비율을 보였으며, 그 후 증감을 반복하며 2%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등록대상자와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자 모두 여성의 비율이 미미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부록 〈표 5-1-5〉 참조).

〈표 3-2-6〉 성별 현황

연도 \ 성별	남	여	총계
2008	263	1	264
	99.6	0.4	[%]
2009	856	12	868
	98.6	1.4	[%]
2010	989	11	1,000
	98.9	1.1	[%]
2011	1,925	19	1,944
	99.0	1.0	[%]
2012	3,707	23	3,730
	99.4	0.6	[%]
2013	5,802	60	5,862
	99.0	1.0	[%]
2014	10,358	61	10,419
	99.4	0.6	[%]
2015	12,689	90	12,779
	99.3	0.7	[%]
2016	11,328	95	11,423
	99.2	0.8	[%]

연도	성별	남	여	총계
2017	남	12,482	132	12,614
	여	99.0	1.1	(%)
2018	남	13,891	162	14,053
	여	98.9	1.2	(%)
총계	남	74,290	666	74,956
	여	99.1	0.9	(%)

〈그림 3-2-6〉 성별 현황



4. 직업

- 〈표 3-2-7〉은 등록대상자의 직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등록사건 74,956건 중 무직은 27,585건으로, 36.8%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뒤이어 단순노무 종사자가 13,772건(18.4%)이며, 그 다음으로 사무 종사자가 10,897건(14.5%)이다. 공무원은 254건(0.3%)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자 직업 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무직이 52,113명(21.7%), 일반회사원이 41,092명(17.1%), 학생이 33,533명(14.0%) 순이었으며, 무직자는 매해 20%대로 일정했다. 등록대상자와 「범죄분석」 성폭력범죄자의 직업 분류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등록대상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자 중에서도 무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학생의 비율은 등록대상사건에서는 3.0%였으나,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자 직업 분류에는 14.0%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연령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등록대상 사건 중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의 이유로 등록이 되지 않은 사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부록 <표 5-1-7> 참조).

〈표 3-2-7〉 직업 현황

직업	사건수	(%)
공무원	254	0.3
관리자	1,176	1.6
군인	736	1.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480	3.3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251	0.3
단순노무 종사자	13,772	18.4
사무 종사자	10,897	14.5
서비스 종사자	2,018	2.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629	3.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214	4.3
판매 종사자	5,479	7.3
학생	2272	3.0
무직	27,585	36.8
미상	2193	2.9
총계	74,956	-

5.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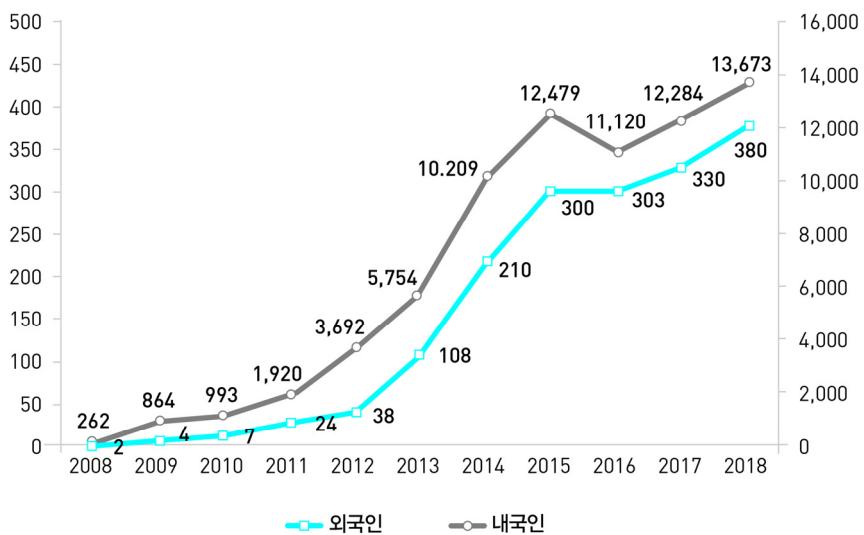
(1) 내·외국인 비교

- 〈표 3-2-8〉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등록된 내·외국인대상자의 사건 수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 등록사건 74,956건 중 외국인은 1,706건(2.3%)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대상자는 2008년 2건으로 시작한 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고, 2018년 380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8〉 내·외국인대상자 현황

연도	국적	내국인	외국인	총계
2008		262	2	264
		99.2	0.8	(%)
2009		864	4	868
		99.5	0.5	(%)
2010		993	7	1,000
		99.3	0.7	(%)
2011		1,920	24	1,944
		98.8	1.2	(%)
2012		3,692	38	3,730
		99.0	1.0	(%)
2013		5,754	108	5,862
		98.2	1.8	(%)
2014		10,209	210	10,419
		98.0	2.0	(%)
2015		12,478	300	12,779
		97.6	2.4	(%)
2016		11,120	303	11,423
		97.4	2.7	(%)
2017		12,284	330	12,614
		97.4	2.6	(%)
2018		13,673	380	14,053
		97.3	2.7	(%)
총계		73,250	1,706	74,956
		97.7	2.3	(%)

〈그림 3-2-7〉 내·외국인 대상자 현황



(2) 외국인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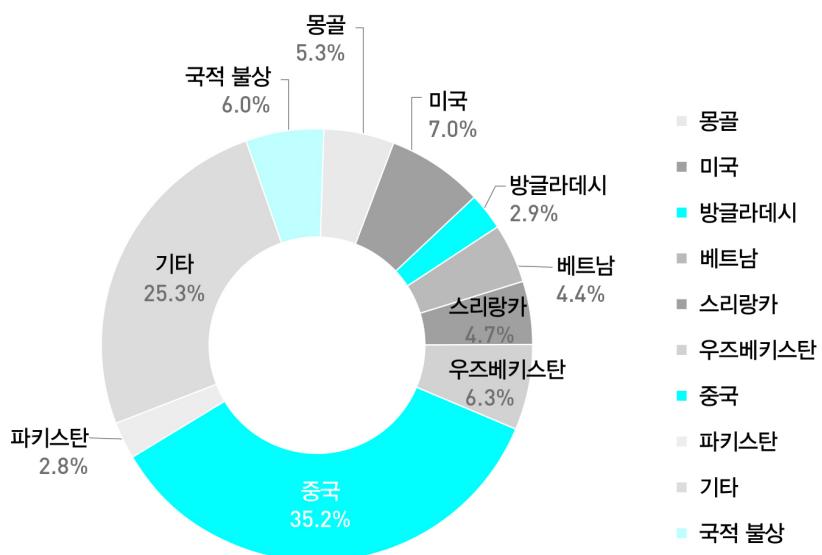
- 〈표 3-2-9〉는 외국인 대상자의 국적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중국이 601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 120건(7.0%), 우즈베키스탄 108건(6.3%) 순이었으며, 이어 몽골, 스리랑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432건은 전체 65개 나라의 합이며, 국적불상 103건은 판결문상 국적 확인이 불가하였다.
- 「범죄분석」의 성폭력 범죄자 국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성폭력 범죄자 240,184명 중 외국인은 5,200명(2.2%)으로 나타났다. 그 중 기타를 제외하고 중국인이 1,827명(35.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439명(8.4%), 우즈베키스탄인 303명(5.8%) 순이었는데, 〈표 3-2-2〉의 비율 분석 내용과 그 순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5-1-8〉 참조).
- 2018년도 체류외국인 현황(명)²⁾과 비교한 결과, 체류인원 대비 등록대상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0.1%의 중국, 미국, 베트남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도 0.2%~0.3%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는 특정 국적 외국인 대상자의 범죄가 월등히 많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2) 통계청. e-나라지표.

〈표 3-2-9〉 외국인 대상자의 국적 현황

국적	체류외국인 현황(명)	사건 수	체류인원 대비 등록대상자 비율(%)	국적별 비율(%)
몽골	46,286	90	0.2	5.3
미국	151,018	120	0.1	7.0
방글라데시	16,641	50	0.3	2.9
베트남	196,633	75	0.1	4.4
스리랑카	25,828	80	0.3	4.7
우즈베키스탄	68,433	108	0.2	6.3
중국 (한국계 종인인 제외)	362,484	601	0.1	35.2
파키스탄	13,275	47	0.3	2.8
기타	-	432	-	25.3
국적 불상	-	103	-	6.0
종계	-	1,706	-	-

〈그림 3-2-8〉 외국인 대상자의 국적 비율



(3) 외국인 죄명

- 〈표 3-2-10〉은 외국인대상자의 죄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죄명별로는 강제 추행이 9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강간 등 382건, 카메라등이용촬영 252건, 공중밀집장소추행 1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죄명별 국적을 분석한 결과, 강간 등은 중국 121건(31.7%), 몽골 31건(8.1%), 우즈베키스탄 28건(7.3%), 미국 23건(6.0%) 등의 순이었다.
- 강제추행은 중국 310건(33.8%), 미국 70건(7.6%), 우즈베키스탄 60건(6.6%), 몽골 52건(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중국 103건(40.9%), 미국 21건(8.3%), 베트남 17건(6.8%), 우즈베키스탄 16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중국 57건(46.0%), 스리랑카 7건(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0〉 외국인대상자의 죄명 현황

국적 죄명	몽골	미국	방글라 데시	베트남	스리 랑카	우즈베키스탄	중국	파키스탄	기타	국적 불상	총계
강간 등	31	23	14	19	16	28	121	14	85	31	382
	8.1	6.0	3.7	5.0	4.2	7.3	31.7	3.7	22.3	8.1	[%]
강제추행	52	70	27	34	48	60	310	23	246	46	916
	5.7	7.6	3.0	3.7	5.2	6.6	33.8	2.5	26.9	5.0	[%]
유사 성행위	-	-	-	-	-	1	3	-	1	-	5
	-	-	-	-	-	20.0	60.0	-	20.0	-	[%]
아동 성학대	-	-	-	-	-	-	1	-	-	-	1
	-	-	-	-	-	-	-	-	-	-	[%]
공중밀집 장소추행	4	3	4	4	7	3	57	4	24	14	124
	3.2	2.4	3.2	3.2	5.7	2.4	46.0	3.2	19.4	11.3	[%]
성적목적 침입	1	-	-	1	-	-	2	-	2	1	7
	14.3	-	-	14.3	-	-	28.6	-	28.6	14.3	[%]
통신매체 이용음란	-	1	-	-	-	-	2	2	4	-	9
	-	11.1	-	-	-	-	22.2	22.2	44.4	-	[%]
카메라등 이용촬영	2	21	4	17	8	16	103	3	67	11	252
	0.8	8.3	1.6	6.8	3.2	6.4	40.9	1.2	26.6	4.4	[%]
음란물 제작배포	-	1	-	-	1	-	1	-	3	-	6
	-	16.7	-	-	16.7	-	16.7	-	50.0	-	[%]
성매수	-	-	1	-	-	-	1	1	-	-	3
	-	-	33.3	-	-	-	33.3	33.3	-	-	[%]
성매매 알선영업	-	1	-	-	-	-	-	-	-	-	1
	-	-	-	-	-	-	-	-	-	-	[%]
총계	90	120	50	75	80	108	601	47	432	103	1,706
	5.3	7.0	2.9	4.4	4.7	6.3	35.2	2.8	25.3	6.0	[%]

(4) 외국인 연령

- 〈표 3-2-11〉은 외국인대상자의 연령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30대가 694건으로 가장 많고, 40대 427건, 20대 340건, 50대 17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대는 중국이 83건(24.4%)으로 가장 많고, 몽골 42건(12.4%), 우즈베키스탄 31건(9.1%), 미국 30건(8.8%) 등의 순으로 많다.
- 30대는 중국 201건(29.0%), 미국 및 우즈베키스탄 각 48건(6.9%), 스리랑카 45건(6.5%), 베트남 43건(6.2%)의 순이다.
- 40대는 중국 167건(39.1%), 우즈베키스탄 27건(6.3%), 미국 25건(5.9%), 방글라데시 및 스리랑카 각 20건(4.7%), 몽골 및 베트남 각 15건(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50대는 중국 108건(63.2%), 미국 6건(3.5%), 파키스탄 5건(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1〉 외국인대상자의 연령 현황

국적 연령	몽골	미국	방글라 데시	베트남	스리 랑카	우즈베 키스탄	중국	파키 스탄	기타	국적 불상	총계
19세 이하	-	-	-	-	-	-	-	-	2	-	2
	-	-	-	-	-	-	-	-	100.0	-	[%]
20대	42	30	8	14	13	31	83	9	98	12	340
	12.4	8.8	2.4	4.1	3.8	9.1	24.4	2.7	28.8	3.5	[%]
30대	32	48	20	43	45	48	201	24	195	38	694
	4.6	6.9	2.9	6.2	6.5	6.9	29.0	3.5	28.1	5.5	[%]
40대	15	25	20	15	20	27	167	9	96	33	427
	3.5	5.9	4.7	3.5	4.7	6.3	39.1	2.1	22.5	7.7	[%]
50대	1	6	2	2	2	2	108	5	29	14	171
	0.6	3.5	1.2	1.2	1.2	1.2	63.2	2.9	17.0	8.2	[%]
60대	-	7	-	1	-	-	40	-	10	6	64
	-	10.9	-	1.6	-	-	62.5	-	15.6	9.4	[%]
70대	-	4	-	-	-	-	1	-	2	-	7
	-	57.1	-	-	-	-	14.3	-	28.6	-	[%]
80세 이상	-	-	-	-	-	-	1	-	-	-	1
	-	-	-	-	-	-	100.0	-	-	-	[%]
총계	90	120	50	75	80	108	601	47	-	-	1,706
	5.3	7.0	2.9	4.4	4.7	6.3	35.2	2.8	25.3	6.0	[%]

성범죄 죄명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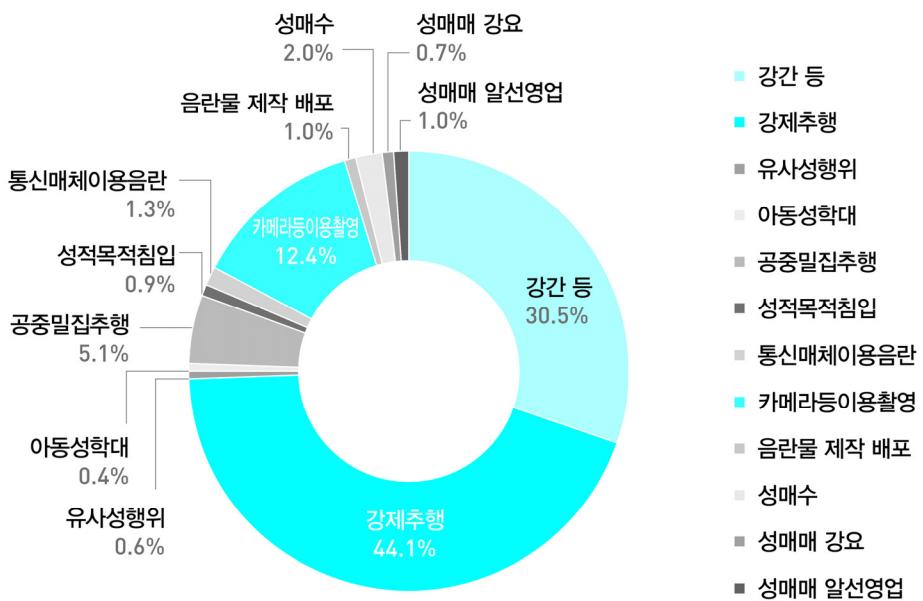
1. 등록사건

- <표 3-3-1> 죄명별로 등록사건을 나타낸 것이다. 총계를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33,020건(44.1%)으로 가장 많고, 강간 등이 22,849건(30.5%), 카메라등이용촬영이 9,317건(12.4%) 순이다. 강제추행, 강간 등,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전체 8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강제추행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2008년 21건(8.0%)이 등록된 후 2018년 7,496건(53.3%)이 등록되기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다음으로 강간 등의 경우 등록사건은 2008년 237건(89.8%)에서 2014년 3,246건(31.2%)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등록 비율은 2008년 89.8%에서 2018년에는 17.6%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강간 등의 범죄로 등록된 사건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한 이후 수치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비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부터 등록하게 된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2013년 412건(7.0%)을 시작으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2,388건(17.0%)까지 증가하였다.
-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강간 등의 범죄는 발생 건수와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발생건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와 죄명에 따른 등록대상사건 수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부록 <표 5-1-9> 참조).

〈표 3-3-1〉 죄명별 등록사건 현황

죄명 연도	강간 등	강제 추행	유사 성행위	아동 성학대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성적 목적 침입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음란물 제작 배포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영업	총계
2008	237	21	—	—	—	—	—	—	—	1	2	3	264
	89.8	8.0	—	—	—	—	—	—	—	0.4	0.8	1.1	[%]
2009	747	64	—	—	—	—	—	—	2	3	26	26	868
	86.1	7.4	—	—	—	—	—	—	0.2	0.4	3.0	3.0	[%]
2010	850	96	—	—	—	—	—	—	3	5	13	33	1,000
	85.0	9.6	—	—	—	—	—	—	0.3	0.5	1.3	3.3	[%]
2011	1,654	222	—	—	—	—	—	—	2	13	31	22	1,944
	85.1	11.4	—	—	—	—	—	—	0.1	0.7	1.6	1.1	[%]
2012	2,665	967	5	1	—	—	—	—	11	35	17	29	3,730
	71.5	25.9	0.1	0.0	—	—	—	—	0.3	0.9	0.5	0.8	[%]
2013	2,626	2,116	36	14	121	8	27	412	250	132	81	39	5,862
	44.8	36.1	0.6	0.2	2.1	0.1	0.5	7.0	4.3	2.3	1.4	0.7	[%]
2014	3,246	4,358	42	18	646	138	285	1,187	149	255	56	39	10,419
	31.2	41.8	0.4	0.2	6.2	1.3	2.7	11.4	1.4	2.5	0.5	0.4	[%]
2015	3,234	5,870	88	30	837	220	397	1,593	107	228	59	116	12,779
	25.3	45.9	0.7	0.2	6.6	1.7	3.1	12.5	0.8	1.8	0.5	0.9	[%]
2016	2,696	5,472	90	50	689	180	97	1,670	75	181	71	152	11,423
	23.6	47.9	0.8	0.4	6.0	1.6	0.9	14.6	0.7	1.6	0.6	1.3	[%]
2017	2,424	6,338	71	105	772	50	88	2,067	76	358	90	175	12,614
	19.2	50.3	0.6	0.8	6.1	0.4	0.7	16.4	0.6	2.8	0.7	1.4	[%]
2018	2,470	7,496	90	113	770	58	105	2,388	57	278	88	140	14,053
	17.6	53.3	0.6	0.8	5.5	0.4	0.8	17.0	0.4	2.0	0.6	1.0	[%]
총계	22,849	33,020	422	331	3,835	654	999	9,317	732	1,489	534	774	74,956
	30.5	44.1	0.6	0.4	5.1	0.9	1.3	12.4	1.0	2.0	0.7	1.0	[%]

〈그림 3-3-1〉 죄명별 등록사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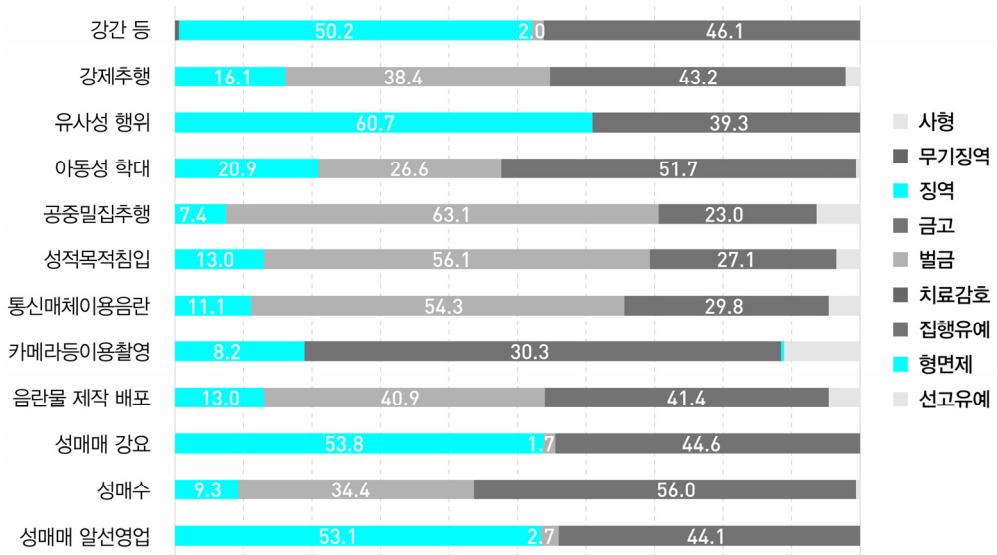
2. 선고형

- 〈표 3-3-2〉는 죄명별 선고형 현황이다. 비율이 가장 높은 강제추행(33,020건), 강간 등(22,849건), 카메라등이용촬영(9,317건)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제추행은 전체 33,020건 중 집행유예가 14,251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 12,688건(38.4%), 징역 5,291건(16.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강간 등은 전체 22,849건 중 징역형이 11,778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10,525건(46.1%)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벌금 455건(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 등의 경우 살인, 상해 등 경합범죄가 있어 중한 형벌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전체 9,317건 중 벌금 5,268건(56.5%), 집행유예 2,822건 (30.3%), 징역 763건(8.2%) 순이었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전체 3,835건 중 벌금 2,420건(63.1%), 집행유예 881건(23.0%), 징역 283건(7.4%), 선고유예 251건(6.5%) 순으로 나타났다.
- 강제추행은 집행유예–벌금–징역, 강간 등은 징역–집행유예–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벌금–집행유예–징역 순으로 그 선고형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 죄명별 선고형 현황(병과된 벌금, 치료감호는 제외)

선고형 죄명 \ 사형	사형	무기 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 감호	집행 유예	형면제	선고 유예	총계
강간 등	3	68	11,778	2	455	2	10,525	4	12	22,849
	0.0	0.3	51.6	0.0	2.0	0.0	46.1	0.0	0.1	(%)
강제추행	-	2	5,291	2	12,688	-	14,251	3	783	33,020
	-	0.0	16.0	0.0	38.4	-	43.2	0.0	2.4	(%)
유사성행위	-	-	256	-	-	-	166	-	-	422
	-	-	60.7	-	-	-	39.3	-	-	(%)
아동성학대	-	-	69	-	88	-	171	-	3	331
	-	-	20.9	-	26.6	-	51.7	-	0.9	(%)
공중밀집 장소추행	-	-	283	-	2,420	-	881	-	251	3,835
	-	-	7.4	-	63.1	-	23.0	-	6.5	(%)
성적목적 침입	-	-	85	-	367	-	177	-	25	654
	-	-	13.0	-	56.1	-	27.1	-	3.8	(%)
통신매체 이용음란	-	-	111	-	542	-	298	-	48	999
	-	-	11.1	-	54.3	-	29.8	-	4.8	(%)
카메라등 이용촬영	-	-	763	-	5,268	-	2,822	1	463	9,317
	-	-	8.2	-	56.5	-	30.3	0.0	5.0	(%)
음란물 제작배포	-	-	95	-	299	-	303	-	35	732
	-	-	13.0	-	40.9	-	41.4	-	4.8	(%)
성매매 강요	-	-	287	-	9	-	238	-	-	534
	-	-	53.8	-	1.7	-	44.6	-	-	(%)
성매수	-	-	138	-	512	-	833	-	6	1,489
	-	-	9.3	-	34.4	-	55.9	-	0.4	(%)
성매매 알선영업	-	1	411	-	21	-	341	-	-	774
	-	0.1	53.1	-	2.7	-	44.1	-	-	(%)
총계	3	71	19,567	4	22,669	2	31,006	8	1,626	74,956
	0.0	0.1	26.1	0.0	30.2	0.0	41.4	0.0	2.2	(%)

〈그림 3-3-2〉 죄명별 선고형 비율(병과된 벌금, 치료감호는 제외)



3. 벌금형

- 〈표 3-3-3〉은 죄명별 벌금형을 나타낸 것이다. 등록대상사건 중 벌금을 받은 전체 건수는 24,400건이다. 〈표 3-3-2〉의 통계와 수치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병과된 벌금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전체 24,400건의 벌금형 중 300~400만 원이 7,309건(3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0~300만 원 5,186건(21.3%), 500~600만 원 4,292건(17.6%)의 순이다.
- 가장 비율이 높은 죄명은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순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13,496건인 강제추행의 벌금형은 300~400만 원 4,154건(30.8%), 500~600만 원 2,819건(20.9%), 200~300만 원 2,537건(18.8%) 등의 순이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전체 5,742건 중 300~400만 원 1,777건(31.0%), 200~300만 원 1,278건(22.3%), 500~600만 원 1,034건(18.0%)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2,674건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200~300만 원이 875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 원 874건(32.7%), 100~200만 원 767건(28.7%) 등의 순으로 많았다.

-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비율이 높은 3가지 죄명에서 300~400만 원의 벌금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강간 등, 강제추행, 성매수의 범죄에서 2,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성매수의 경우 전체 521건 중 1,000만 원 이상이 248건(47.6%)으로 나타나는 특이점을 보인다.

〈표 3-3-3〉 죄명별 벌금형(단위: 만원)

벌금 죄명	~1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500	1,700	1,800	2,000	2,500	3,000	3,500	4,000	4,900	총계
강간 등	35	9	52	93	17	182	4	46	10	-	24	-	1	1	19	1	-	14	-	5	-	-	1	514
	6.8	1.8	10.1	18.1	3.3	35.4	0.8	9.0	2.0	-	4.7	-	0.2	0.2	3.7	0.2	-	2.7	-	1.0	-	-	0.2	(%)
강제 추행	126	1,330	2,537	4,154	1,155	2,819	180	472	117	15	295	1	15	3	170	-	2	78	3	20	1	2	1	13,496
	0.9	9.9	18.8	30.8	8.6	20.9	1.3	3.5	0.9	0.1	2.2	0.0	0.1	0.0	1.3	-	0.0	0.6	0.0	0.2	0.0	0.0	0.0	(%)
아동 성학대	3	5	7	25	9	34	-	3	-	-	5	-	1	-	1	-	-	1	-	-	-	-	-	94
	3.2	5.3	7.5	26.6	9.6	36.2	-	3.2	-	-	5.3	-	1.1	-	1.1	-	-	1.1	-	-	-	-	-	(%)
공중 밀집 장소 추행	50	767	875	874	68	35	2	2	-	-	1	-	-	-	-	-	-	-	-	-	-	-	-	2,674
	1.9	28.7	32.7	32.7	2.5	1.3	0.1	0.1	-	-	0.0	-	-	-	-	-	-	-	-	-	-	-	-	(%)
성적 목적 침입	16	100	140	96	21	14	2	2	1	-	1	-	-	-	-	-	-	-	-	-	-	-	-	393
	4.1	25.5	35.6	24.4	5.3	3.6	0.5	0.5	0.3	-	0.3	-	-	-	-	-	-	-	-	-	-	-	-	(%)
통신 매체 이용 음란	31	184	179	137	26	27	-	7	1	-	-	-	-	-	-	-	-	-	-	-	-	-	-	592
	5.2	31.1	30.2	23.1	4.4	4.6	-	1.2	0.2	-	-	-	-	-	-	-	-	-	-	-	-	-	-	(%)
카메라 등이용 촬영	79	827	1,278	1,777	398	1,034	82	173	33	3	44	-	6	-	8	-	-	-	-	-	-	-	-	5,742
	1.4	14.4	22.3	31.0	6.9	18.0	1.4	3.0	0.6	0.1	0.8	-	0.1	-	0.1	-	-	-	-	-	-	-	-	(%)
음란물 제작 배포	53	87	76	82	12	27	1	1	1	-	1	-	-	-	-	-	-	-	-	-	-	-	-	341
	15.5	25.5	22.3	24.1	3.5	7.9	0.3	0.3	0.3	-	0.3	-	-	-	-	-	-	-	-	-	-	-	-	(%)
성매수	3	18	38	66	15	115	3	12	3	-	136	-	7	-	49	-	-	44	5	5	1	1	-	521
	0.6	3.5	7.3	12.7	2.9	22.1	0.6	2.3	0.6	-	26.1	-	1.3	-	9.4	-	-	8.5	1.0	1.0	0.2	0.2	-	(%)
성매매 강요	3	-	2	1	-	-	1	2	-	1	2	-	-	-	-	-	-	-	-	-	-	-	-	12
	25.0	-	16.7	8.3	-	-	8.3	16.7	-	8.3	16.7	-	-	-	-	-	-	-	-	-	-	-	-	(%)
성매매 알선 영업	1	2	2	4	3	5	1	-	-	-	2	-	-	-	-	-	-	-	1	-	-	-	-	21
	4.8	9.5	9.5	19.1	14.3	23.8	4.8	-	-	-	9.5	-	-	-	-	-	-	-	4.8	-	-	-	-	(%)
총계	400	3,329	5,186	7,309	1,724	4,292	276	720	166	19	511	1	30	4	247	1	2	138	8	30	2	3	2	24,400
	1.6	13.6	21.3	30.0	7.1	17.6	1.1	3.0	0.7	0.1	2.1	0.0	0.1	0.0	1.0	0.0	0.0	0.6	0.0	0.1	0.0	0.0	0.0	(%)

4. 집행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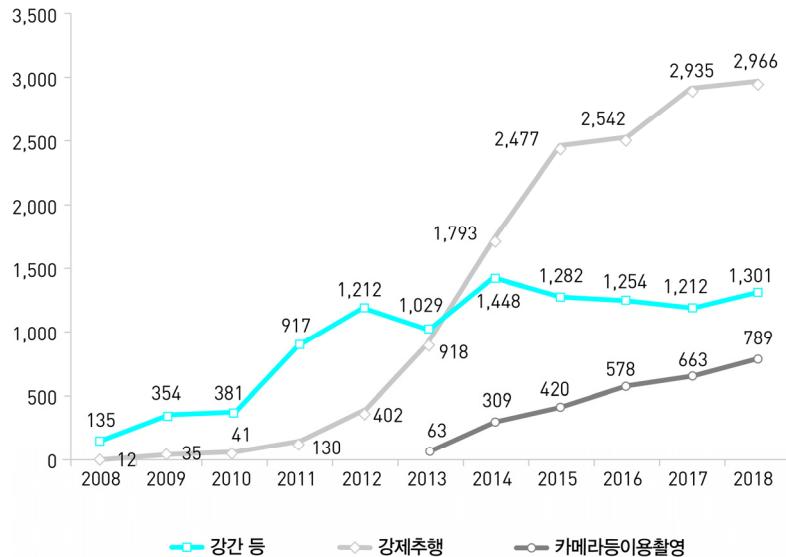
- 〈표 3-3-4〉는 죄명별 집행유예 현황을 나타낸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1,006건 중 강제추행이 14,251건으로 전체의 46.0%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강간이 10,525건(34.0%), 카메라등이용촬영이 2,822건(9.1%)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강제추행은 집행유예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8년 7.9%에서 2012년 24.3%까지 상승하였고, 2015년 처음으로 50%를 넘어 2018년에는 52.0%로 나타났다. 건수 또한 2008년 12건을 시작으로 2018년 2,966건까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반면 강간 등의 경우 2008년에는 전체 선고형의 88.8%를 차지했으나, 점차 그 비율이 감소하다 2013년에 44.8%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2018년에는 22.8%로 나타났다. 다만 건수의 경우 2012년부터 1,000건 이상을 유지하며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집행유예로 등록되는 다른 범죄, 특히 강제추행죄가 더 증가하여 강간 등이 집행유예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집행유예의 비율은 2013년 2.7%에서 2018년 13.8%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그 건수 또한 2013년 63건을 시작으로 2018년 789건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3-4〉 죄명별 집행유예 현황

죄명 연도	강간 등	강제 추행	유사 성행위	아동 성학대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성적 목적 침입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등 이용촬영	음란물 제작 배포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영업	총계
2008	135	12	—	—	—	—	—	—	—	1	1	3	152
	88.8	7.9	—	—	—	—	—	—	—	0.7	0.7	2.0	[%]
2009	354	35	—	—	—	—	—	—	2	2	16	22	431
	82.1	8.1	—	—	—	—	—	—	0.5	0.5	3.7	5.1	[%]
2010	381	41	—	—	—	—	—	—	1	2	8	26	459
	83.0	8.9	—	—	—	—	—	—	0.2	0.4	1.7	5.7	[%]
2011	917	130	—	—	—	—	—	—	2	6	23	16	1,094
	83.8	11.9	—	—	—	—	—	—	0.2	0.6	2.1	1.5	[%]
2012	1,212	402	1	1	—	—	—	—	5	13	10	13	1,657
	73.1	24.3	0.1	0.1	—	—	—	—	0.3	0.8	0.6	0.8	[%]
2013	1,029	918	22	10	23	1	5	63	122	46	40	17	2,296
	44.8	40.0	1.0	0.4	1.0	0.0	0.2	2.7	5.3	2.0	1.7	0.7	[%]

죄명 연도	강간 등	강제 추행	유사 성행위	아동 성학대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성적 목적 침입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등 이용촬영	음란물 제작 배포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영업	총계
2014	1,448	1,793	12	8	130	26	51	309	35	141	28	14	3,995
	36.3	44.9	0.3	0.2	3.3	0.7	1.3	7.7	0.9	3.5	0.7	0.4	[%]
2015	1,282	2,477	30	18	172	45	84	420	31	111	24	54	4,748
	27.0	52.2	0.6	0.4	3.6	1.0	1.8	8.9	0.7	2.3	0.5	1.1	[%]
2016	1,254	2,542	29	26	182	41	23	578	32	116	31	44	4,898
	25.6	51.9	0.6	0.5	3.7	0.8	0.5	11.8	0.7	2.4	0.6	0.9	[%]
2017	1,212	2,935	35	59	221	23	60	663	41	226	28	67	5,570
	21.8	52.7	0.6	1.1	4.0	0.4	1.1	11.9	0.7	4.1	0.5	1.2	[%]
2018	1,301	2,966	37	49	153	41	75	789	32	169	29	65	5,706
	22.8	52.0	0.7	0.9	2.7	0.7	1.3	13.8	0.6	3.0	0.5	1.1	[%]
총계	10,525	14,251	166	171	881	177	298	2,822	303	833	238	341	31,006
	34.0	46.0	0.5	0.6	2.8	0.6	1.0	9.1	1.0	2.7	0.8	1.1	[%]

〈그림 3-3-3〉 죄명별 집행유예 현황



5. 집행유예 기간

- 〈표 3-3-5〉는 죄명별 집행유예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31,006건 중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인 경우가 14,243건(45.9%), 3년인 경우가 8,334건(26.9%), 4년인 경우가 4,104건(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강제추행은 전체 14,251건 중 2년이 7,907건(55.5%), 3년이 3,105건(21.8%), 1년이 1,669건(11.7%) 순으로 나타났다.
- 강간 등은 전체 10,525건 중 3년이 4,639건(44.1%), 4년이 2,712건(25.8%), 2년이 2,011건(19.1%) 등의 순이었다.
- 다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전체 2,822건 중 2년이 2,161건(76.6%)으로 가장 많았고, 1년이 488건(17.3%), 3년이 148건(5.2%) 등의 순이었다.
-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집행유예 2년인 경우의 비율이 높았고, 강간 등의 경우 3년인 경우의 비율이 높았다.
- 다른 범죄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 2년의 비율이 높았으나, 성매매 강요, 유사 성행위의 경우 집행유예 3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표 3-3-5〉 죄명별 집행유예 기간

죄명 \ 집행유예 기간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3년6월	4년	5년	총계
강간 등	54	-	2,011	-	4,639	2	2,712	1,107	10,525
	0.5	-	19.1	-	44.1	0.0	25.8	10.5	[%]
공중밀집 장소추행	280	-	585	-	16	-	-	-	881
	31.8	-	66.4	-	1.8	-	-	-	[%]
성매매 강요	7	-	77	-	79	-	53	22	238
	2.9	-	32.4	-	33.2	-	22.3	9.2	[%]
성매매 알선영업	6	-	164	1	122	-	41	7	341
	1.8	-	48.1	0.3	35.8	-	12.0	2.1	[%]
성매수	67	-	695	-	60	-	6	5	833
	8.0	-	83.4	-	7.2	-	0.7	0.6	[%]
성적목적침입	51	-	120	-	5	-	1	-	177
	28.8	-	67.8	-	2.8	-	0.6	-	[%]
아동성학대	15	-	128	-	25	-	2	1	171
	8.8	-	74.9	-	14.6	-	1.2	0.6	[%]
유사성행위	-	-	4	-	67	-	59	36	166
	-	-	2.4	-	40.4	-	35.5	21.7	[%]

집행유예 기간 죄명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3년6월	4년	5년	총계
음란물 제작배포	36	3	172	-	53	-	31	8	303
	11.9	1.0	56.8	-	17.5	-	10.2	2.6	[%]
강제추행	1,669	2	7,907	-	3,105	-	1,181	387	14,251
	11.7	0.0	55.5	-	21.8	-	8.3	2.7	[%]
카메라등 이용촬영	488	-	2,161	-	148	-	17	8	2,822
	17.3	-	76.6	-	5.2	-	0.6	0.3	[%]
통신매체 이용음란	62	-	219	-	15	-	1	1	298
	20.8	-	73.5	-	5.0	-	0.3	0.3	[%]
총계	2,735	5	14,243	1	8,334	2	4,104	1,582	31,006
	8.8	0.0	45.9	0.0	26.9	0.0	13.2	5.1	[%]

6. 최종 심급

- <표 3-3-6>은 죄명별 최종 심급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확정 심급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죄명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강제추행, 강간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은 1심 확정이 18,176건(55.1%)으로 가장 많았고, 2심 9,463건(28.7%), 3심 3,855건(11.7%) 순으로 나타났다.
- 강간 등의 경우 2심 확정이 10,244건(44.8%), 1심 확정이 7,391건(32.4%), 3심 확정이 5,196건(22.7%) 순이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1심 확정이 6,057건(65.0%), 2심 확정이 2,038건(21.9%), 3심 확정이 535건(5.7%) 순으로 강제추행과 비율 순서가 같다. 다만, 약식명령의 경우도 687건(7.4%)의 비율을 차지한다.
-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최종심급비율은 1심, 2심, 3심 순이었으나, 강간 등의 경우 2심, 1심, 3심 순으로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대부분의 죄명들은 1심 확정의 비율이 높으나 강간 등, 유사성행위,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알선영업은 2심 확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심 확정은 강간 등이 5,196건(22.7%), 유사성행위가 109건(25.8%)으로 20%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죄명별 최종 심급 현황

죄명	심급	약식명령	1심	2심	3심	총계
강간 등	18	7,391	10,244	5,196	22,849	
	0.1	32.4	44.8	22.7	[%]	
강제추행	1,526	18,176	9,463	3,855	33,020	
	4.6	55.1	28.7	11.7	[%]	
유사성행위	-	116	197	109	422	
	-	27.5	46.7	25.8	[%]	
아동성학대	12	177	105	37	331	
	3.6	53.5	31.7	11.2	[%]	
공중밀집장소추행	311	2,474	704	346	3,835	
	8.1	64.5	18.4	9.0	[%]	
성적목적침입	4	482	126	42	654	
	0.6	73.7	19.3	6.4	[%]	
통신매체이용음란	6	713	214	66	999	
	0.6	71.4	21.4	6.6	[%]	
카메라등이용촬영	687	6,057	2,038	535	9,317	
	7.4	65.0	21.9	5.7	[%]	
음란물 제작배포	17	493	158	64	732	
	2.3	67.4	21.6	8.7	[%]	
성매수	25	994	355	115	1,489	
	1.7	66.8	23.8	7.7	[%]	
성매매 강요	-	166	266	102	534	
	-	31.1	49.8	19.1	[%]	
성매매 알선영업	1	267	363	143	774	
	0.1	34.5	46.9	18.5	[%]	
총계	2,607	37,506	24,233	10,610	74,956	
	3.5	50.0	32.3	14.2	[%]	

7. 형량

- 〈표 3-3-7〉은 사형·무기징역·징역·금고형을 받은 사건의 죄명별 형량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19,645건 중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강간 등 11,851건, 강제추행 5,295건, 카메라등이용촬영 763건 순으로 나타났다.
- 강간 등의 경우 3년 이상~6년 미만의 형을 받은 사건이 5,098건(43.0%)이며, 1년 이상~3년 미만이 3,230건(27.3%), 6년 이상~10년 미만이 2,145건(18.1%) 순이었다.
- 강제추행은 전체 5,295건 중 1년 이상~3년 미만의 형을 받은 사건이 2,371건 (44.8%), 1년 미만이 1,614건(30.5%), 3년 이상~6년 미만이 1,066건(20.1%) 순이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전체 763건 중 1년 미만이 408건(53.5%), 1년 이상~3년 미만이 297건(38.9%), 3년 이상~6년 미만이 50건(6.6%) 순으로 나타났다.
- 종합해보면, 강간 등의 경우 3년 이상~6년 미만의 형이, 강제추행은 1년 이상~3년 미만의 형이, 카메라등이용 촬영은 1년 미만의 형을 받은 사건이 가장 많았다.
- 다른 죄명들도 살펴보면, 아동성학대,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은 1년 미만의 형을 받은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3-7〉 죄명별 형량 현황(사형·무기징역·징역·금고형)

형량 죄명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40년 미만	40년 이상	무기 징역	사형	총계
강간 등	111	3,230	5,098	2,145	1,075	113	6	2	68	3	11,851
	0.9	27.3	43.0	18.1	9.1	1.0	0.1	0.0	0.6	0.0	%
강제 추행	1,614	2,371	1,066	187	53	1	—	1	2	—	5,295
	30.5	44.8	20.1	3.5	1.0	0.0	—	0.0	0.0	—	%
유사 성행위		54	143	55	4	—	—	—	—	—	256
		21.1	55.9	21.5	1.6	—	—	—	—	—	%
아동 성학대	30	28	9	2	—	—	—	—	—	—	69
	43.5	40.6	13.0	2.9	—	—	—	—	—	—	%
공중 밀집 추행	243	39	1	—	—	—	—	—	—	—	283
	85.9	13.8	0.4	—	—	—	—	—	—	—	%

형량 죄명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40년 미만	40년 이상	무기 징역	사형	총계
성적 목적 침입	66	15	3	1	—	—	—	—	—	—	85
	77.7	17.7	3.5	1.2	—	—	—	—	—	—	%
통신 매체 이용 음란	55	46	8	—	1	—	1	—	—	—	111
	49.6	41.4	7.2	—	0.9	—	0.9	—	—	—	%
카메라 등이용 촬영	408	297	50	7	1	—	—	—	—	—	763
	53.5	38.9	6.6	0.9	0.1	—	—	—	—	—	%
음란물 제작 배포	21	47	23	3	1	—	—	—	—	—	95
	22.1	49.5	24.2	3.2	1.1	—	—	—	—	—	%
성매수	42	64	25	6	1	—	—	—	—	—	138
	30.4	46.4	18.1	4.4	0.7	—	—	—	—	—	%
성매매 강요	19	117	140	11	—	—	—	—	—	—	287
	6.6	40.8	48.8	3.8	—	—	—	—	—	—	%
성매매 알선 영업	41	124	232	12	1	—	1	—	1	—	412
	10.0	30.1	56.3	2.9	0.2	0.0	0.2	0.0	0.2	—	%
총계	2,650	6,432	6,798	2,429	1,137	114	8	3	71	3	19,645
	13.5	32.7	34.6	12.4	5.8	0.6	0.0	0.0	0.4	0.0	%

8. 범죄시간

- 〈표 3-3-8〉은 죄명별 범죄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74,956건 중 21:00~23:59에 발생한 범죄가 12,105건(1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00:00~02:59 11,755건(15.7%), 03:00~05:59 9,702건(12.9%)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는데 주로 야간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제추행은 전체 33,020건 중 21:00~23:59 6,336건 (19.2%), 00:00~02:59 5,830건(17.7%), 03:00~05:59 4,177건(12.6%)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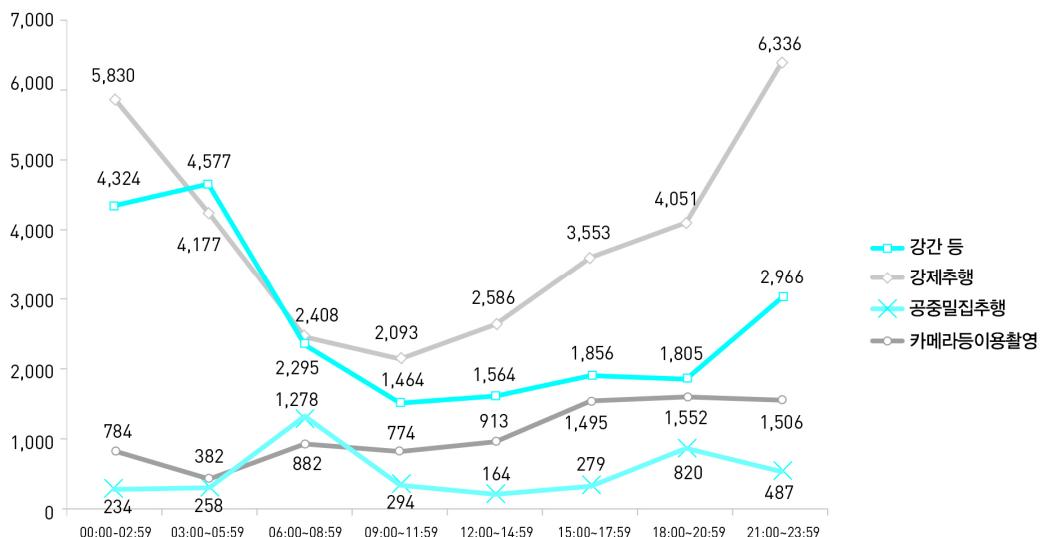
- 강간 등은 전체 22,849건 중 03:00~05:59 4,577건(20.0%), 00:00~02:59 4,324건(18.9%), 21:00~23:59 2,966건(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전체 9,317건 중 18:00~20:59 1,552건(16.7%), 21:00~23:59 1,506건(16.2%), 15:00~17:59 1,495건(16.0%) 등의 순으로 절반(48.9%)의 범행이 15:00~24:00 사이에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전체 3,835건 중 06:00~08:59 1,278건(33.3%), 18:00~20:59 820건(21.4%), 21:00~23:59 487건(12.7%)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주로 출·퇴근 시간에 범행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범죄분석」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폭력범죄 발생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121,488건 중 20:00~03:59의 시간대가 42,105건(34.7%)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전체 성폭력범죄 123,107건 중 미상은 제외하고 21:00~23:59이 19,246건(15.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18:00~20:59이 15,447건(12.5%), 15:00~17:59이 12,657건(10.3%) 순으로 나타났는데, 성폭력범죄 역시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등록사건과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 분석 결과,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간대는 21:00~23:59임을 알 수 있다(부록 <표 5-1-3>, <표 5-1-4> 참조).

<표 3-3-8> 죄명별 범죄시간 현황

죄명 \ 시간	00:00~02:59	03:00~05:59	06:00~08:59	09:00~11:59	12:00~14:59	15:00~17:59	18:00~20:59	21:00~23:59	미상	총계
강간 등	4,324	4,577	2,295	1,464	1,564	1,856	1,805	2,966	1,998	22,849
	18.9	20.0	10.0	6.4	6.8	8.1	7.9	13.0	8.7	[%]
강제추행	5,830	4,177	2,408	2,093	2,586	3,553	4,051	6,336	1,986	33,020
	17.7	12.6	7.3	6.3	7.8	10.8	12.3	19.2	6.0	[%]
유사 성행위	44	39	18	23	45	46	54	55	98	422
	10.4	9.2	4.3	5.5	10.7	10.9	12.8	13.0	23.2	[%]
아동 성학대	15	1	23	19	42	83	48	26	74	331
	4.5	0.3	6.9	5.7	12.7	25.1	14.5	7.9	22.4	[%]
공중밀집 장소추행	234	258	1,278	294	164	279	820	487	21	3,835
	6.1	6.7	33.3	7.7	4.3	7.3	21.4	12.7	0.5	[%]
성적목적 침입	119	51	22	56	65	84	97	152	8	654
	18.2	7.8	3.4	8.6	9.9	12.8	14.8	23.2	1.2	[%]
통신매체 이용음란	144	60	65	116	127	129	121	158	79	999
	14.4	6.0	6.5	11.6	12.7	12.9	12.1	15.8	7.9	[%]
카메라등 이용촬영	784	382	882	774	913	1,495	1,552	1,506	1,029	9,317
	8.4	4.1	9.5	8.3	9.8	16.0	16.7	16.2	11.0	[%]

시간 죄명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총계
음란물 제작배포	31	14	15	16	31	52	50	40	483	732
	4.2	1.9	2.0	2.2	4.2	7.1	6.8	5.5	66.0	[%]
성매수	135	84	47	77	122	213	244	255	312	1,489
	9.1	5.6	3.2	5.2	8.2	14.3	16.4	17.1	21.0	[%]
성매매 강요	49	26	8	9	17	18	36	58	313	534
	9.2	4.9	1.5	1.7	3.2	3.4	6.7	10.9	58.6	[%]
성매매 알선영업	46	33	12	14	20	36	32	66	515	774
	5.9	4.3	1.6	1.8	2.6	4.7	4.1	8.5	66.5	[%]
총계	11,755	9,702	7,073	4,955	5,696	7,844	8,910	12,105	6,916	74,956
	15.7	12.9	9.4	6.6	7.6	10.5	11.9	16.1	9.2	[%]

〈그림 3-3-4〉 죄명별 범죄시간 현황



9. 범행월

- 〈표 3-3-9〉는 죄명별 범행월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74,956건 중 7월~8월에 16,215건(21.6%)의 범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뒤이어 5월~6월 14,930건(19.9%), 9월~10월 13,331건(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월~2월에는 8,782건(11.7%)이 발생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를 보면 주로 추운 계절보다는 따뜻한 계절에 범행이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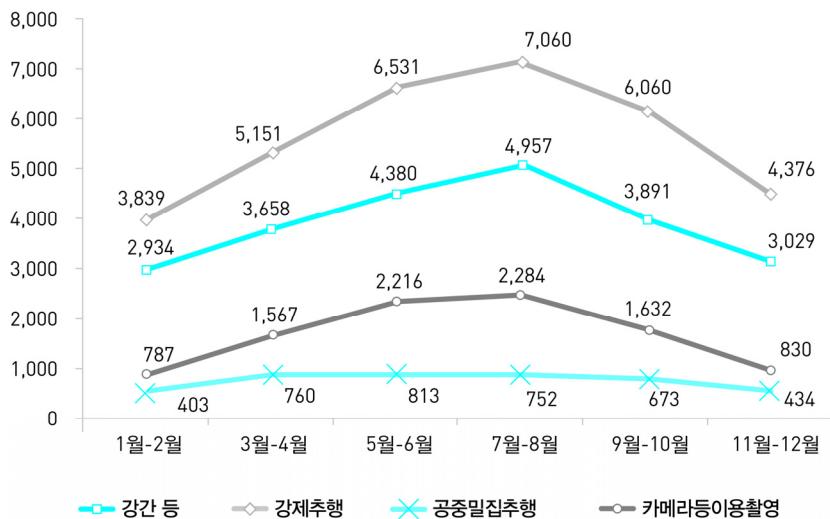
- 죄명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제추행 범죄는 전체 33,020건 중 7월~8월에 7,060건(21.4%)이 발생하였고, 뒤이어 5월~6월 6,531건(19.8%), 9월~10월 6,060건(18.4%)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 강간 등 범죄는 22,849건 중 7월~8월 4,957건(21.7%), 5월~6월 4,380건(19.2%), 9월~10월 3,891건(17.0%)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전체 9,317건 중 7월~8월 2,284건(24.5%), 5월~6월 2,216건(23.8%), 9월~10월 1,632건(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범죄분석」의 성폭력 발생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성폭력범죄 260,280건 중 7월~8월에 54,228건(20.9%)(7월 26,930건, 8월 27,298건)이 발생하였고, 1월~2월에는 28,451건(11.0%)(1월 14,439건, 2월 14,012건)이 발생하였다.
- 등록대상사건과 「범죄분석」의 전체 성폭력범죄 모두 7월~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1월~2월에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5-1-2> 참조).

〈표 3-3-9〉 죄명별 범행월 현황

죄명 \ 범행월	1월~2월	3월~4월	5월~6월	7월~8월	9월~10월	11월~12월	미상	총계
강간 등	2,934	3,658	4,380	4,957	3,891	3,029	-	22,849
	12.8	16.0	19.2	21.7	17.0	13.3	-	(%)
강제추행	3,839	5,151	6,531	7,060	6,060	4,376	3	33,020
	11.6	15.6	19.8	21.4	18.4	13.3	0.0	(%)
유사성행위	56	65	74	80	64	83	-	422
	13.3	15.4	17.5	19.0	15.2	19.7	-	(%)
아동성학대	34	65	57	72	67	36	-	331
	10.3	19.6	17.2	21.8	20.2	10.9	-	(%)
공중밀집장소추행	403	760	813	752	673	434	-	3,835
	10.5	19.8	21.2	19.6	17.6	11.3	-	(%)
성적목적침입	67	103	109	138	136	101	-	654
	10.2	15.8	16.7	21.1	20.8	15.4	-	(%)
통신매체이용음란	149	173	192	198	149	138	-	999
	14.9	17.3	19.2	19.8	14.9	13.8	-	(%)
카메라등이용촬영	787	1,567	2,216	2,284	1,632	830	1	9,317
	8.5	16.8	23.8	24.5	17.5	8.9	0.0	(%)

죄명 \ 범행월	1월~2월	3월~4월	5월~6월	7월~8월	9월~10월	11월~12월	미상	총계
음란물 제작배포	46	184	96	145	197	64	-	732
	6.3	25.1	13.1	19.8	26.9	8.7	-	[%]
성매수	280	264	252	275	220	197	1	1,489
	18.8	17.7	16.9	18.5	14.8	13.2	0.1	[%]
성매매 강요	91	79	88	107	103	66	-	534
	17.0	14.8	16.5	20.0	19.3	12.4	-	[%]
성매매 알선영업	96	146	122	147	139	124	-	774
	12.4	18.9	15.8	19.0	18.0	16.0	-	[%]
총계	8,782	12,215	14,930	16,215	13,331	9,478	5	74,956
	11.7	16.3	19.9	21.6	17.8	12.6	0.0	[%]

〈그림 3-3-5〉 죄명별 범행월 현황



(1) 강간 범죄의 월별 범행 시간

- 〈표 3-3-10〉은 강간 등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22,849건 중 03:00~05:59에 4,577건(20.0%)의 강간 등 범죄가 발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00:00~02:59 4,324건(18.9%), 21:00~23:59 2,966건(13.0%)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 야간에 강간 등 범죄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06:00~08:59과 같은 아침 시간대에도 2,295건의 강간 등 범죄가 발생하였다.

- 월별로 분석해 본 결과, 7월~8월에 4,957건의 가장 많은 강간 등 범죄가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시간을 살펴보면 03:00~05:59 1,103건(22.3%), 00:00~02:59 974건(19.6%), 21:00~23:59 585건(11.8%) 등의 순이었다.
- 5월~6월에는 전체 4,380건 중 03:00~05:59 969건(22.1%), 00:00~02:59 847건(19.3%), 21:00~23:59 577건(13.2%) 순이었다.
- 9월~10월은 전체 3,891건 중 03:00~05:59 782건(20.1%), 00:00~02:59 742건(19.1%), 21:00~23:59 496건(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강간 등의 범죄는 7월~8월 03:00~05:59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3-10〉 강간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월별 \ 범행시간	00:00~02:59	03:00~05:59	06:00~08:59	09:00~11:59	12:00~14:59	15:00~17:59	18:00~20:59	21:00~23:59	미상	총계
1월~2월	515	546	299	192	225	223	247	387	300	2,934
	17.6	18.6	10.2	6.5	7.7	7.6	8.4	13.2	10.2	(%)
3월~4월	670	644	384	251	267	330	313	490	309	3,658
	18.3	17.6	10.5	6.9	7.3	9.0	8.6	13.4	8.4	(%)
5월~6월	847	969	425	268	292	343	316	577	343	4,380
	19.3	22.1	9.7	6.1	6.7	7.8	7.2	13.2	7.8	(%)
7월~8월	974	1,103	498	337	337	360	326	585	437	4,957
	19.6	22.3	10.0	6.8	6.8	7.3	6.6	11.8	8.8	(%)
9월~10월	742	782	398	224	244	340	325	496	340	3,891
	19.1	20.1	10.2	5.8	6.3	8.7	8.4	12.7	8.7	(%)
11월~12월	576	533	291	192	199	260	278	431	269	3,029
	19.0	17.6	9.6	6.3	6.6	8.6	9.2	14.2	8.9	(%)
총계	4,324	4,577	2,295	1,464	1,564	1,856	1,805	2,966	1,998	22,849
	18.9	20.0	10.0	6.4	6.8	8.1	7.9	13.0	8.7	(%)

(2) 강제추행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 〈표 3-3-11〉은 강제추행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33,020건 중 21:00~23:59에 강제추행 범죄가 6,336건(19.2%)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00:00~02:59 5,830건(17.7%), 03:00~05:59 4,177건(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강제추행 범죄의 49.5%가 21:00~05:59 사이의 시간대에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 월별 분포를 보면 7월~8월이 7,060건으로 전체 33,020건의 21.4%를 차지하였는데, 시간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1:00~23:59이 1,321건(18.7%)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00:00~02:59 1,305건(18.5%), 03:00~05:59 954건(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강제추행 범죄가 많이 발생한 월은 5월~6월로 6,531건이 발생했다. 시간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1:00~23:59 1,270건(19.4%), 00:00~02:59 1,156건(17.7%), 18:00~20:59 816건(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9월~10월은 전체 6,060건의 강제추행 범죄가 발생했는데, 21:00~23:59 1,205건 (19.9%), 00:00~02:59 1,167건(19.3%), 18:00~20:59 716건(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강제추행 범죄는 7월~8월 21:00~23:59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3-11〉 강제추행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월별	범행시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총계
1월~2월		641	556	241	279	331	377	469	661	284	3,839
		16.7	14.5	6.3	7.3	8.6	9.8	12.2	17.2	7.4	[%]
3월~4월		818	621	384	339	439	554	681	1,010	305	5,151
		15.9	12.1	7.5	6.6	8.5	10.8	13.2	19.6	5.9	[%]
5월~6월		1,156	796	463	441	503	746	816	1,270	340	6,531
		17.7	12.2	7.1	6.8	7.7	11.4	12.5	19.4	5.2	[%]
7월~8월		1,305	954	559	431	549	738	816	1,321	387	7,060
		18.5	13.5	7.9	6.1	7.8	10.5	11.6	18.7	5.5	[%]
9월~10월		1,167	694	452	362	451	632	716	1,205	381	6,060
		19.3	11.5	7.5	6.0	7.4	10.4	11.8	19.9	6.3	[%]
11월~12월		743	556	309	241	313	506	553	869	286	4,376
		17.0	12.7	7.1	5.5	7.2	11.6	12.6	19.9	6.5	[%]
미상	-	-	-	-	-	-	-	-	-	3	3
	-	-	-	-	-	-	-	-	-	100	[%]
총계		5,830	4,177	2,408	2,093	2,586	3,553	4,051	6,336	1,986	33,020
		17.7	12.6	7.3	6.3	7.8	10.8	12.3	19.2	6.0	[%]

(3) 유사성행위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 〈표 3-3-12〉는 유사성행위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422건 중 월별 범행 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미상 98건(23.2%)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범행시간별로 살펴보면, 21:00~23:59이 55건(13.0%), 18:00~20:59이 54건 (12.8%), 15:00~17:59이 46건(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월별로 살펴보면, 11월~12월에 83건의 가장 많은 유사성행위 범죄가 발생했는데, 시간대를 분석해 본 결과, 21:00~23:59이 18건(21.7%), 15:00~17:59 및 18:00~20:59이 각 9건(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80건이 발생한 7월~8월에는 18:00~20:59이 13건(16.3%), 12:00~14:59이 11건(13.8%), 15:00~17:59이 10건(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74건이 발생한 5월~6월에는 21:00~23:59이 13건(17.6%), 03:00~05:59이 12건(16.2%), 00:00~02:59이 9건(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유사성행위 범죄는 11월~12월 21:00~23:59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3-12〉 유사성행위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월별 \ 범행시간	00:00~02:59	03:00~05:59	06:00~08:59	09:00~11:59	12:00~14:59	15:00~17:59	18:00~20:59	21:00~23:59	미상	총계
1월~2월	5	3	1	3	5	7	8	5	19	56
	8.9	5.4	1.8	5.4	8.9	12.5	14.3	8.9	33.9	(%)
3월~4월	5	2	5	6	10	4	12	8	13	65
	7.7	3.1	7.7	9.2	15.4	6.2	18.5	12.3	20.0	(%)
5월~6월	9	12	2	2	7	8	6	13	15	74
	12.2	16.2	2.7	2.7	9.5	10.8	8.1	17.6	20.3	(%)
7월~8월	8	9	1	5	11	10	13	3	20	80
	10.0	11.3	1.3	6.3	13.8	12.5	16.3	3.8	25.0	(%)
9월~10월	9	7	4	2	4	8	6	8	16	64
	14.1	10.9	6.3	3.1	6.3	12.5	9.4	12.5	25.0	(%)
11월~12월	8	6	5	5	8	9	9	18	15	83
	9.6	7.2	6.0	6.0	9.6	10.8	10.8	21.7	18.1	(%)
총계	44	39	18	23	45	46	54	55	98	422
	10.4	9.2	4.3	5.5	10.7	10.9	12.8	13.0	23.2	(%)

(4) 아동성학대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 〈표 3-3-13〉은 아동성학대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331건 중 월별 범행 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미상 74건(22.4%)는 제외하고, 분석 하였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범행시간별로 살펴보면, 15:00~17:59에 83건(25.1%)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8:00~20:59이 48건(14.5%), 12:00~14:59이 42건(12.7%)으로 나타났다.
- 월별로 살펴보면 7월~8월에 72건으로 아동성학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세부적 시간대가 15:00~17:59이 20건(27.8%), 12:00~14:59 및 21:00~23:59 각 8건(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67건이 발생한 9월~10월에는 15:00~17:59이 15건(22.4%), 18:00~20:59이 9건(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월~4월에는 65건이 발생하였는데, 15:00~17:59 19건(29.2%), 18:00~20:59 10건(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아동성학대 범죄는 7월~8월 15:00~17:59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3-13〉 아동성학대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월별 \ 범행시간	00:00~02:59	03:00~05:59	06:00~08:59	09:00~11:59	12:00~14:59	15:00~17:59	18:00~20:59	21:00~23:59	미상	총계
1월~2월	4	1	1	1	9	3	6	3	6	34
	11.8	2.9	2.9	2.9	26.5	8.8	17.6	8.8	17.6	(%)
3월~4월	1	-	7	2	9	19	10	6	11	65
	1.5	-	10.8	3.1	13.8	29.2	15.4	9.2	16.9	(%)
5월~6월	1	-	6	4	6	18	11	-	11	57
	1.8	-	10.5	7.0	10.5	31.6	19.3	-	19.3	(%)
7월~8월	2	-	4	4	8	20	7	8	19	72
	2.8	-	5.6	5.6	11.1	27.8	9.7	11.1	26.4	(%)
9월~10월	5	-	4	5	5	15	9	7	17	67
	7.5	-	6.0	7.5	7.5	22.4	13.4	10.4	25.4	(%)
11월~12월	2	-	1	3	5	8	5	2	10	36
	5.6	-	2.8	8.3	13.9	22.2	13.9	5.6	27.8	(%)
총계	15	1	23	19	42	83	48	26	74	331
	4.5	0.3	6.9	5.7	12.7	25.1	14.5	7.9	22.4	(%)

(5)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 〈표 3-3-14〉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시간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3,835건 중 06:00~08:59에 1,278건(33.3%), 18:00~20:59에 820건(21.4%), 21:00~23:59에 487건(12.7%)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는데,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 월별로 살펴보면, 5월~6월에 발생한 813건이 06:00~08:59 299건(36.8%), 18:00~20:59 176건(21.6%), 21:00~23:59 92건(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3월~4월에 발생한 760건은 06:00~08:59 275건(36.2%), 18:00~20:59 179건(23.6%), 21:00~23:59 91건(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7월~8월에는 전체 752건 중 06:00~08:59에 272건(36.2%), 18:00~20:59에 144건(19.1%), 21:00~23:59에 103건(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는 5월~6월 06:00~08:59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3-14〉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월별 \ 범행시간	00:00~02:59	03:00~05:59	06:00~08:59	09:00~11:59	12:00~14:59	15:00~17:59	18:00~20:59	21:00~23:59	미상	총계
1월~2월	39	51	107	25	13	29	82	54	3	403
	9.7	12.7	26.6	6.2	3.2	7.2	20.3	13.4	0.7	(%)
3월~4월	35	32	275	58	28	58	179	91	4	760
	4.6	4.2	36.2	7.6	3.7	7.6	23.6	12.0	0.5	(%)
5월~6월	45	35	299	71	32	59	176	92	4	813
	5.5	4.3	36.8	8.7	3.9	7.3	21.6	11.3	0.5	(%)
7월~8월	33	50	272	59	34	53	144	103	4	752
	4.4	6.6	36.2	7.8	4.5	7.0	19.1	13.7	0.5	(%)
9월~10월	45	47	210	50	35	51	151	81	3	673
	6.7	7.0	31.2	7.4	5.2	7.6	22.4	12.0	0.4	(%)
11월~12월	37	43	115	31	22	29	88	66	3	434
	8.5	9.9	26.5	7.1	5.1	6.7	20.3	15.2	0.7	(%)
총계	234	258	1,278	294	164	279	820	487	21	3,835
	6.1	6.7	33.3	7.7	4.3	7.3	21.4	12.7	0.5	(%)

(6) 성적목적침입 범죄의 월별 범행 시간

- 〈표 3-3-15〉는 성적목적침입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654건 중 21:00~23:59에 152건(23.2%)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00:00~02:59에 119건(18.2%)이 발생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뒤이어 18:00~20:59에 97건(14.8%)이 발생했다.
- 월별로 보면 7월~8월에 138건으로 가장 많은 성적목적침입 범죄가 발생했는데, 구체적 시간대는 21:00~23:59 28건(20.3%), 15:00~17:59 및 18:00~20:59 각 24건(17.4%), 00:00~02:59 19건(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9월~10월은 전체 136건이 발생하였는데, 21:00~23:59 32건(23.5%), 00:00~02:59 28건(20.6%), 18:00~20:59 23건(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5월~6월은 전체 109건 중 21:00~23:59 26건(23.9%), 00:00~02:59 21건(19.3%), 18:00~20:59 19건(17.4%)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목적침입 범죄는 월별 발생 건수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9월~10월 21:00~23:59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표 3-3-15〉 성적목적침입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범행시간 월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총계
1월~2월	10	4	2	8	7	9	8	18	1	67
	14.9	6.0	3.0	11.9	10.4	13.4	11.9	26.9	1.5	[%]
3월~4월	18	10	5	9	11	18	6	25	1	103
	17.5	9.7	4.9	8.7	10.7	17.5	5.8	24.3	1.0	[%]
5월~6월	21	5	5	10	9	11	19	26	3	109
	19.3	4.6	4.6	9.2	8.3	10.1	17.4	23.9	2.8	[%]
7월~8월	19	13	6	8	15	24	24	28	1	138
	13.8	9.4	4.3	5.8	10.9	17.4	17.4	20.3	0.7	[%]
9월~10월	28	15	1	7	15	14	23	32	1	136
	20.6	11.0	0.7	5.1	11.0	10.3	16.9	23.5	0.7	[%]
11월~12월	23	4	3	14	8	8	17	23	1	101
	22.8	4.0	3.0	13.9	7.9	7.9	16.8	22.8	1.0	[%]
총계	119	51	22	56	65	84	97	152	8	654
	18.2	7.8	3.4	8.6	9.9	12.8	14.8	23.2	1.2	[%]

(7)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 〈표 3-3-16〉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999건 중 21:00~23:59에 158건(15.8%)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00:00~02:59 144건(14.4%), 15:00~17:59 129건(12.9%) 등의 순으로 많았다.
- 월별 시간대를 살펴보면, 7월~8월에 발생한 198건은 21:00~23:59 33건(16.7%), 15:00~17:59 32건(16.2%), 18:00~20:59 28건(14.1%)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 5월~6월에는 전체 192건 중 00:00~02:59 37건(19.3%), 21:00~23:59 32건(16.7%), 09:00~11:59 30건(15.6%)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 3월~4월 전체 173건의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발생 시간대는 21:00~23:59 27건(15.6%), 00:00~02:59 25건(14.5%), 12:00~14:59 24건(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월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5월~6월 00:00~02:59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표 3-3-16〉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월별 \ 범행시간	00:00~02:59	03:00~05:59	06:00~08:59	09:00~11:59	12:00~14:59	15:00~17:59	18:00~20:59	21:00~23:59	미상	총계
1월~2월	23	8	8	20	17	18	18	24	13	149
	15.4	5.4	5.4	13.4	11.4	12.1	12.1	16.1	8.7	(%)
3월~4월	25	11	10	19	24	20	23	27	14	173
	14.5	6.4	5.8	11.0	13.9	11.6	13.3	15.6	8.1	(%)
5월~6월	37	9	12	30	22	24	17	32	9	192
	19.3	4.7	6.3	15.6	11.5	12.5	8.9	16.7	4.7	(%)
7월~8월	23	8	18	22	24	32	28	33	10	198
	11.6	4.0	9.1	11.1	12.1	16.2	14.1	16.7	5.1	(%)
9월~10월	22	12	11	11	19	21	20	21	12	149
	14.8	8.1	7.4	7.4	12.8	14.1	13.4	14.1	8.1	(%)
11월~12월	14	12	6	14	21	14	15	21	21	138
	10.1	8.7	4.3	10.1	15.2	10.1	10.9	15.2	15.2	(%)
총계	144	60	65	116	127	129	121	158	79	999
	14.4	6.0	6.5	11.6	12.7	12.9	12.1	15.8	7.9	(%)

(8)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 〈표 3-3-17〉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9,317건 중 18:00~20:59에 1,552건(16.7%)으로 가장 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발생했고, 뒤이어 21:00~23:59 1,506건(16.2%), 15:00~17:59 1,495건(16.0%)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월별 시간대를 살펴보면, 7월~8월의 전체 2,284건은 18:00~20:59 414건(18.1%), 15:00~17:59 351건(15.4%), 21:00~23:59 350건(15.3%)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 5월~6월의 전체 2,216건은 18:00~20:59 414건(18.7%), 15:00~17:59 391건(17.6%), 21:00~23:59 337건(15.2%)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 9월~10월은 전체 1,632건 중 21:00~23:59에 285건(17.5%), 15:00~17:59 및 18:00~20:59에 각 258건(15.8%)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는 5월~8월의 18:00~20:59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3-17〉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월별 \ 범행시간	00:00~02:59	03:00~05:59	06:00~08:59	09:00~11:59	12:00~14:59	15:00~17:59	18:00~20:59	21:00~23:59	미상	총계
1월~2월	107	52	32	56	76	100	112	125	127	787
	13.6	6.6	4.1	7.1	9.7	12.7	14.2	15.9	16.1	[%]
3월~4월	122	49	142	147	159	282	251	254	161	1,567
	7.8	3.1	9.1	9.4	10.1	18.0	16.0	16.2	10.3	[%]
5월~6월	151	93	229	194	230	391	414	337	177	2,216
	6.8	4.2	10.3	8.8	10.4	17.6	18.7	15.2	8.0	[%]
7월~8월	182	82	258	202	221	351	414	350	224	2,284
	8.0	3.6	11.3	8.8	9.7	15.4	18.1	15.3	9.8	[%]
9월~10월	130	68	159	123	152	258	258	285	199	1,632
	8.0	4.2	9.7	7.5	9.3	15.8	15.8	17.5	12.2	[%]
11월~12월	92	38	62	52	75	113	103	155	140	830
	11.1	4.6	7.5	6.3	9.0	13.6	12.4	18.7	16.9	[%]
미상	-	-	-	-	-	-	-	-	1	1
	-	-	-	-	-	-	-	-	100.0	[%]
총계	784	382	882	774	913	1,495	1,552	1,506	1,029	9,317
	8.4	4.1	9.5	8.3	9.8	16.0	16.7	16.2	11.0	[%]

(9) 음란물 제작 배포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 〈표 3-3-18〉은 음란물 제작배포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 음란물 제작배포 범죄 분석 결과 가장 큰 특이점은 범행 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732건 중 범행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이 483건으로 전체의 66.0%를 차지하고 있어 시간대별로 분석 결과는 통계적 의미가 크지 않아 생략하였다.
- 월별로는 미상 건을 포함하여 9~10월, 3~4월, 7~8월에 총 526건(71.8%)이 발생한 바, 이를 중심으로 아래 분석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3-3-18〉 음란물 제작배포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월별 \ 범행시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총계
1월~2월	4	-	-	2	1	1	2	2	34	46
	8.7	-	-	4.3	2.2	2.2	4.3	4.3	73.9	[%]
3월~4월	7	3	4	6	9	14	17	14	110	184
	3.8	1.6	2.2	3.3	4.9	7.6	9.2	7.6	59.8	[%]
5월~6월	3	5	1	1	6	3	8	6	63	96
	3.1	5.2	1.0	1.0	6.3	3.1	8.3	6.3	65.6	[%]
7월~8월	13	2	3	1	5	10	8	5	98	145
	9.0	1.4	2.1	0.7	3.4	6.9	5.5	3.4	67.6	[%]
9월~10월	3	2	3	5	9	19	12	7	137	197
	1.5	1.0	1.5	2.5	4.6	9.6	6.1	3.6	69.5	[%]
11월~12월	1	2	4	1	1	5	3	6	41	64
	1.6	3.1	6.3	1.6	1.6	7.8	4.7	9.4	64.1	[%]
총계	31	14	15	16	31	52	50	40	483	732
	4.2	1.9	2.0	2.2	4.2	7.1	6.8	5.5	66.0	[%]

(10) 성매수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 〈표 3-3-19〉는 성매수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1,489건 중 월별 범행 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미상 312건(21.0%)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범행시간대별로 살펴보면, 21:00~23:59이 255건(17.1%), 18:00~20:59이 244건(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월별 시간대를 분석해보면, 1월~2월의 전체 280건은 21:00~23:59 50건(17.9%), 18:00~20:59 43건(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7월~8월의 전체 275건 중에서는 21:00~23:59이 45건(16.4%), 15:00~17:59이 42건(15.3%) 등의 순으로 많았다.
- 3월~4월 범행발생 시간대는 21:00~23:59이 47건(17.8%), 18:00~20:59이 46건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성매수 범죄는 1월~2월 21:00~23:59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3-19〉 성매수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월별 \ 범행시간	00:00~02:59	03:00~05:59	06:00~08:59	09:00~11:59	12:00~14:59	15:00~17:59	18:00~20:59	21:00~23:59	미상	총계
1월~2월	29	20	11	18	20	37	43	50	52	280
	10.4	7.1	3.9	6.4	7.1	13.2	15.4	17.9	18.6	[%]
3월~4월	19	13	7	7	30	40	46	47	55	264
	7.2	4.9	2.7	2.7	11.4	15.2	17.4	17.8	20.8	[%]
5월~6월	23	11	7	10	19	38	45	40	59	252
	9.1	4.4	2.8	4.0	7.5	15.1	17.9	15.9	23.4	[%]
7월~8월	30	16	10	14	20	42	40	45	58	275
	10.9	5.8	3.6	5.1	7.3	15.3	14.5	16.4	21.1	[%]
9월~10월	14	16	7	12	20	27	36	38	50	220
	6.4	7.3	3.2	5.5	9.1	12.3	16.4	17.3	22.7	[%]
11월~12월	20	8	5	16	13	29	34	35	37	197
	10.2	4.1	2.5	8.1	6.6	14.7	17.3	17.8	18.8	[%]
미상	-	-	-	-	-	-	-	-	1	1
	-	-	-	-	-	-	-	-	100.0	[%]
총계	135	84	47	77	122	213	244	255	312	1,489
	9.1	5.6	3.2	5.2	8.2	14.3	16.4	17.1	21.0	[%]

(11) 성매매 강요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 〈표 3-3-20〉은 성매매 강요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역시 534건 중 313건(58.6%)이 범행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미상건을 제외하고, 분석 하였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시간대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 534건 중 21:00~23:59이 58건(10.9%), 00:00~02:59이 49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월별 시간대를 분석해보면, 가장 많은 성매매 강요 범죄가 발생한 7월~8월의 107건 중 00:00~02:59이 13건(12.1%), 21:00~23:59이 11건(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9월~10월 전체 103건 중에서는 00:00~02:59 및 21:00~23:59 각 11건(10.7%), 03:00~05:59이 7건(6.8%)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1월~2월은 전체 91건 중 21:00~23:59이 14건(15.4%), 18:00~20:59이 9건(9.9%)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성매매 강요 범죄는 1월~2월 21:00~23:59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3-20〉 성매매 강요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범행시간 죄명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총계
1월~2월	6	4	4	1	1	2	9	14	50	91
	6.6	4.4	4.4	1.1	1.1	2.2	9.9	15.4	54.9	(%)
3월~4월	4	2	1	-	2	3	2	8	57	79
	5.1	2.5	1.3	-	2.5	3.8	2.5	10.1	72.2	(%)
5월~6월	7	5	1	4	4	5	7	10	45	88
	8.0	5.7	1.1	4.5	4.5	5.7	8.0	11.4	51.1	(%)
7월~8월	13	5	1	2	1	4	6	11	64	107
	12.1	4.7	0.9	1.9	0.9	3.7	5.6	10.3	59.8	(%)
9월~10월	11	7	-	2	5	4	5	11	58	103
	10.7	6.8	-	1.9	4.9	3.9	4.9	10.7	56.3	(%)
11월~12월	8	3	1	-	4	-	7	4	39	66
	12.1	4.5	1.5	-	6.1	-	10.6	6.1	59.1	(%)
총계	49	26	8	9	17	18	36	58	313	534
	9.2	4.9	1.5	1.7	3.2	3.4	6.7	10.9	58.6	(%)

(12)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 〈표 3-3-21〉은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역시 전체 774건 중 515건(66.5%)이 범행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미상 건을 제외했다는 사실을 참고하기 바란다.
- 시간대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 774건 중 21:00~23:59이 66건(8.5%), 00:00~02:59이 46건(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월별 시간대로 살펴보면, 7월~8월에 147건으로 가장 많은 성매매 강요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 중 00:00~02:59이 15건(10.2%), 15:00~17:59이 10건 (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3월~4월에는 전체 146건 중 21:00~23:59이 12건(8.2%), 00:00~02:59 및 06:00~08:59이 각 7건(4.8%) 등의 순으로 범죄가 발생했다.
- 9월~10월은 전체 139건 중 21:00~23:59이 18건(12.9%), 18:00~20:59이 7건 (5.0%)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는 9월~10월 21:00~23:59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 앞선 성매수, 성매매 강요 범죄와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세 범죄 모두 계절에 관계없이 21:00~23:59의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1〉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월별 \ 범행시간	00:00~02:59	03:00~05:59	06:00~08:59	09:00~11:59	12:00~14:59	15:00~17:59	18:00~20:59	21:00~23:59	미상	총계
1월~2월	3	11	0	2	4	2	3	8	63	96
	3.1	11.5	0.0	2.1	4.2	2.1	3.1	8.3	65.6	[%]
3월~4월	7	6	7	2	3	2	4	12	103	146
	4.8	4.1	4.8	1.4	2.1	1.4	2.7	8.2	70.5	[%]
5월~6월	8	1	2	0	7	10	4	10	80	122
	6.6	0.8	1.6	0.0	5.7	8.2	3.3	8.2	65.6	[%]
7월~8월	15	5	1	5	3	10	7	9	92	147
	10.2	3.4	0.7	3.4	2.0	6.8	4.8	6.1	62.6	[%]
9월~10월	6	3	1	5	3	3	7	18	93	139
	4.3	2.2	0.7	3.6	2.2	2.2	5.0	12.9	66.9	[%]
11월~12월	7	7	1	0	0	9	7	9	84	124
	5.6	5.6	0.8	0.0	0.0	7.3	5.6	7.3	67.7	[%]
총계	46	33	12	14	20	36	32	66	515	774
	5.9	4.3	1.6	1.8	2.6	4.7	4.1	8.5	66.5	[%]

10. 범죄 유형(접촉·비접촉)

- 〈표 3-3-22〉는 연도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범죄 유형을 접촉 여부에 따라 나눈 것이다.³⁾ 전체 등록사건 74,956건 중 접촉 범죄는 60,457건(80.7%)이다. 2008년에는 전체 범죄 중 97.7%의 대다수가 접촉 범죄였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 배포 등의 등록대상 범죄가 늘어나면서 접촉 범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2013년 접촉 범죄의 비율이 83.8%로 감소한 반면, 비접촉 범죄는 16.2%로 증가 하였는데, 이는 2013년 6월 19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비접촉 범죄인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침입 범죄가 등록대상범죄로 추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접촉 범죄는 70%대를, 비접촉 범죄는 2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3-22〉 범죄 유형(접촉·비접촉) 현황

연도	접촉	비접촉	총계
2008	258	6	264
	97.7	2.3	(%)
2009	811	57	868
	93.4	6.6	(%)
2010	946	54	1,000
	94.6	5.4	(%)
2011	1,876	68	1,944
	96.5	3.5	(%)
2012	3,638	92	3,730
	97.5	2.5	(%)
2013	4,913	949	5,862
	83.8	16.2	(%)
2014	8,310	2,109	10,419
	79.8	20.2	(%)
2015	10,059	2,720	12,779
	78.7	21.3	(%)
2016	8,997	2,426	11,423
	78.8	21.2	(%)
2017	9,710	2,904	12,614
	77.0	23.0	(%)

3) 접촉 범죄 : 강간, 추행, 아동성학대, 유사성행위, 공중밀집장소추행

비접촉 범죄 : 성적목적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제작배포,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영업

연도	전족	비전족	총계
2018	10,939	3,114	14,053
	77.8	22.2	(%)
총계	60,457	14,499	74,956
	80.7	19.3	(%)

11. 내 · 외국인

- 〈표 3-3-23〉은 죄명별 등록대상사건의 내·외국인대상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내국인대상자의 죄명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32,104건(43.8%)을 차지하여 가장 많이 등록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강간 등이 22,467건(30.7%), 카메라등이용촬영은 9,065건(12.4%)이 등록되어, 강제추행·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이 전체 내국인 대상자 범죄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대상자의 경우 역시 강제추행이 916건(53.7%), 강간 등이 382건(22.4%), 카메라등이용촬영이 252건(14.8%)의 순으로 많이 등록되어, 3가지 범죄가 전체 외국인 대상자 범죄의 약 91%를 차지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내·외국인 대상자의 죄명별 등록사건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 2018년 국내 체류 외국인(2,367,607명)⁴⁾ 대비 외국인대상자 등록사건(1,706건)의 비율은 0.07%이다. 2018년 인구수(약 5,1610,000명)⁵⁾ 대비 전체등록사건(73,250건)의 비율은 0.14%이다. 이를 볼 때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의 신상정보등록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3-23〉 죄명별 등록대상사건의 내·외국인대상자 현황

죄명 국적	강간 등	강제 추행	유사 성행위	아동 성학대	공중 밀집 추행	성적 목적 침입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이용 촬영	음란물 제작 배포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영업	총계
내국인	22,467	32,104	417	330	3,711	647	990	9,065	726	1,486	534	773	73,250
	30.7	43.8	0.6	0.5	5.1	0.9	1.4	12.4	1.0	2.0	0.7	1.1	(%)
외국인	382	916	5	1	124	7	9	252	6	3	—	1	1,706
	22.4	53.7	0.3	0.1	7.3	0.4	0.5	14.8	0.4	0.2	—	0.1	(%)
총계	22,849	33,020	422	331	3,835	654	999	9,317	732	1,489	534	774	74,956
	30.5	44.1	0.6	0.4	5.1	0.9	1.3	12.4	1.0	2.0	0.7	1.0	(%)

4) 통계청 e-나라지표, 2018년도 체류 외국인 현황

5) 통계청 e-나라지표, 2018년 인구수

〈그림 3-3-6〉 죄명별 등록대상사건의 내·외국인대상자 비율



12. 피해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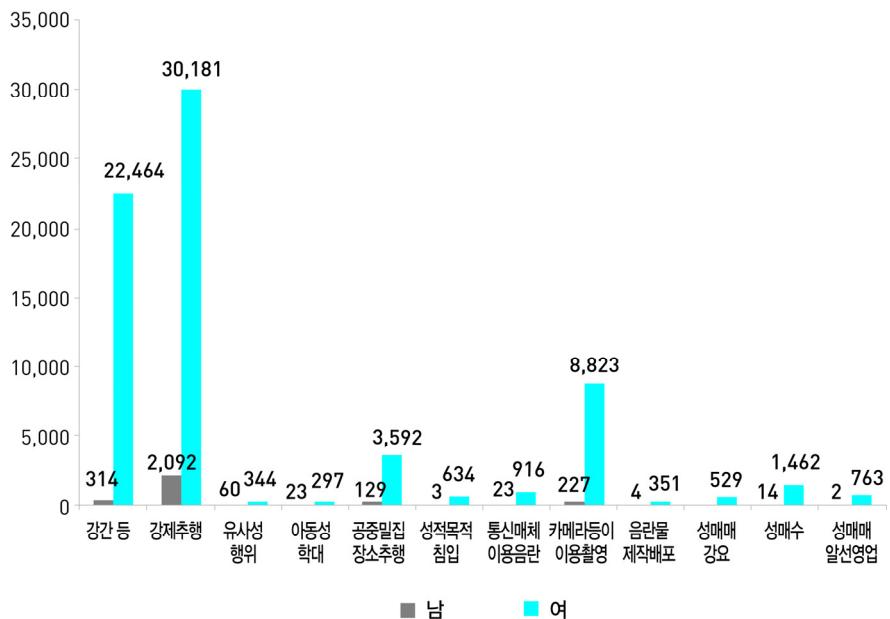
- 〈표 3-3-24〉는 죄명별 피해자 성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74,956건의 범행 중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가 70,356건(93.9%)의 수치를 보여준다. 특히 성매매강요,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관련 죄명에서 여성이 피해자였던 사건의 비율이 98%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특히 성매매 강요 범죄는 성별 불상을 제외하면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었다.
- 반면 남성이 피해자인 전체 범죄 2,891건을 살펴본 결과, 죄명별로는 강제추행 범죄가 2,092건(72.4%)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각 죄명에 따른 남녀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전체 유사성행위 범죄 422건 중 피해자가 남성인 사건이 60건으로, 14.2%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4〉 죄명별 피해자 성별 현황

죄명 \ 피해자성별	남	여	불상	총계
강간 등	314	22,464	71	22,849
	1.4	98.3	0.3	(%)
강제추행	2,092	30,181	747	33,020
	6.3	91.4	2.3	(%)
유사성행위	60	344	18	422
	14.2	81.5	4.3	(%)

죄명	피해자성별	남	여	불상	총계
아동성학대		23	297	11	331
		7.0	89.7	3.3	[%]
공중밀집장소추행		129	3,592	114	3,835
		3.4	93.7	3.0	[%]
성적목적침입		3	634	17	654
		0.5	96.9	2.6	[%]
통신매체이용음란		23	916	60	999
		2.3	91.7	6.0	[%]
카메라등이용촬영		227	8,823	267	9,317
		2.4	94.7	2.9	[%]
음란물 제작배포		4	351	377	732
		0.6	48.0	51.5	[%]
성매수		14	1,462	13	1,489
		0.9	98.2	0.9	[%]
성매매 강요		–	529	5	534
		–	99.1	0.9	[%]
성매매 알선영업		2	763	9	774
		0.3	98.6	1.2	[%]
총계		2,891	70,356	1,709	74,956
		3.9	93.9	2.3	[%]

〈그림 3-3-7〉 죄명별 피해자 성별 현황



13. 피해자 연령

- <표 3-3-26>은 죄명별 피해자 연령에 따른 사건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74,956건 중 피해자의 연령이 19~24세인 사건이 18,737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3~18세 17,484건(23.3%), 25~29세 8,664건(11.6%)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한 피해자가 5세 이하인 사건도 360건(0.5%)으로 나타나, 피해자가 29세 이하인 사건이 전체의 67.8%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앞선 피해자 성별 분석과 종합해보면, 주로 29세 이하의 젊거나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죄명별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강제추행 범죄는 전체 33,020건 중 피해자의 연령이 19~24세인 사건이 9,400건(28.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13~18세가 5,946건(18.0%), 25~29세가 4,012건(12.2%)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강간 등 범죄는 전체 22,849건 중 피해자의 연령이 13~18세인 사건이 7,122건 (31.2%), 19~24세 4,976건(21.8%), 6~12세 2,543건(11.1%) 순으로, 여타 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연령대가 더 낮았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전체 9,317건 중 피해자의 연령이 19~24세인 사건이 2,333건(25.0%), 25~29세 1,334건(14.3%), 30대 1,091건(11.7%)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는 전체 3,835건 중 피해자의 연령이 19~24세인 사건이 1,549건(40.4%), 25~29세 951건(24.8%), 30대 526건(13.7%)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 한편, 피해자가 5세 이하인 사건은 360건(0.5%), 80대 이상인 사건은 157건 (0.2%)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자가 5세 이하인 사건은 80대 이상인 사건보다 203건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360건 중에서도 접촉범죄인 강제추행 범죄가 188건(52.2%), 강간 등 범죄가 155건(43.1%)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등록사건의 피해자는 어느 한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26〉 죄명별 피해자 연령

연령 죄명	5세 이하	6~12 세	13~18 세	19~24 세	25~29 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미상	총계
강간 등	155	2,543	7,122	4,976	2,163	2,298	1,692	1,083	309	179	82	11	236	22,849
	0.7	11.1	31.2	21.8	9.5	10.1	7.4	4.7	1.4	0.8	0.4	0.1	1.0	[%]
강제 추행	188	2,546	5,946	9,400	4,012	3,893	2,874	2,311	613	210	58	4	965	33,020
	0.6	7.7	18.0	28.5	12.2	11.8	8.7	7.0	1.9	0.6	0.2	0.0	2.9	[%]
유사 성행위	7	102	227	31	11	15	18	8	1	1	—	—	1	422
	1.7	24.2	53.8	7.4	2.6	3.6	4.3	1.9	0.2	0.2	—	—	0.2	[%]
아동 성학대	7	145	176	—	—	—	—	—	—	—	—	—	3	331
	2.1	43.8	53.2	—	—	—	—	—	—	—	—	—	0.9	[%]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3	366	1,549	951	526	159	63	20	2	—	—	196	3,835
	—	0.1	9.5	40.4	24.8	13.7	4.2	1.6	0.5	0.1	—	—	5.1	[%]
성적 목적 침입	—	3	37	187	91	99	43	13	1	—	—	—	180	654
	—	0.5	5.7	28.6	13.9	15.1	6.6	2.0	0.2	—	—	—	27.5	[%]
통신 매체 이용 음란	—	35	167	261	102	123	111	69	12	5	2	—	112	999
	—	3.5	16.7	26.1	10.2	12.3	11.1	6.9	1.2	0.5	0.2	—	11.2	[%]
카메라 등이용 촬영	2	17	670	2,333	1,334	1,091	547	237	34	3	—	—	3,049	9,317
	0.0	0.2	7.2	25.0	14.3	11.7	5.9	2.5	0.4	0.0	—	—	32.7	[%]
음란물 제작 배포	1	40	125	—	—	—	—	—	—	—	—	—	566	732
	0.1	5.5	17.1	—	—	—	—	—	—	—	—	—	77.3	[%]
성매수	—	6	522	—	—	—	—	—	—	—	—	—	6	1,489
	—	1.1	97.8	—	—	—	—	—	—	—	—	—	1.1	[%]
성매매 강요	—	72	1,396	—	—	—	—	—	—	—	—	—	21	534
	—	4.8	93.8	—	—	—	—	—	—	—	—	—	1.4	[%]
성매매 알선 영업	—	11	730	—	—	—	—	—	—	—	—	—	33	774
	—	1.4	94.3	—	—	—	—	—	—	—	—	—	4.3	[%]
총계	360	5,523	17,484	18,737	8,664	8,045	5,444	3,784	990	400	142	15	5,368	74,956
	0.5	7.4	23.3	25.0	11.6	10.7	7.3	5.1	1.3	0.5	0.2	0.0	7.2	[%]

성범죄 재범 현황

1. 재등록사건

- 〈표 3-4-1〉은 재등록사건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9년 1건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처음 100건을 넘어 197건이 등록되었고, 이후에도 2015년 349건, 2016년 550건, 2017년 738건, 2018년 967건이 등록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18년 전체 등록사건 74,956건 중 재등록의 비율은 3.9%이다.

〈표 3-4-1〉 재등록사건 현황

연도 재등록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2,901	-	1	5	15	23	56	197	349	550	738	967
	(%)	0.0	0.1	0.2	0.5	0.8	1.9	6.8	12.0	19.0	25.4	33.3

2. 등록 근거법

- 〈표 3-4-2〉는 재등록사건의 등록 근거법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원등록사건 중에서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한 사건은 2,243건(77.3%)이었으며, 「청소년 성보호법」을 근거로 한 사건은 658건(22.7%)으로 나타났다.
- 재등록사건 중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한 사건이 2,812건(96.9%), 「청소년 성보호법」을 근거로 한 사건이 89건(3.1%)이었다.
-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한 원등록사건 2,243건 중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재등록된 건수는 2,235건(99.6%)으로 대부분이 이 경우에 속했다. 「청소년 성보호법」을 근거로 한 658건의 원등록사건 중에서도 577건(87.7%)이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하여 재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성폭력처벌법」에서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등록 근거법이 바뀐 건수 및 비율(8건, 0.4%)보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성폭력처벌법」으로 등록 근거법이 바뀐 비율 및 건수(81건, 12.3%)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2〉 재등록사건 등록 근거법 현황

원등록	재등록	총계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총계		2,901	2,812	89
		[%]	96.9	3.1
성폭력처벌법		2,243	2,235	8
		[%]	99.6	0.4
청소년성보호법		658	577	81
		[%]	87.7	12.3

3. 등록 유형

- 〈표 3-4-3〉은 재등록사건의 등록 유형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원등록사건의 경우 등록대상사건 2,095건(72.2%), 공개대상사건 237건(8.2%), 고지대상사건 569건(19.6%)으로 나타났다. 재등록사건은 등록대상사건 1,776건(61.2%), 공개대상사건 26건(0.9%), 고지대상사건 1,099건(37.9%)으로 나타나, 원등록사건보다 고지비율이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났다.
- 원등록사건의 등록대상사건은 등록기간 10년 이하가 1,117건(38.5%), 15년이 878건(30.3%), 20년이 100건(3.4%) 순으로 나타났고, 공개대상사건의 등록기간은 3년 초과~5년 이하 213건(7.3%), 2년 초과~3년 이하 16건(0.6%) 순으로 나타났다.
- 고지대상사건의 경우에는 3년 초과~5년 이하가 230건(7.9%), 2년 초과~3년 이하 202건(7.0%), 1년 초과~2년 이하 99건(3.4%) 순으로 나타났다.
- 재등록사건의 등록대상사건은 등록기간 15년이 1,346건(46.4%), 10년 이하가 382건(13.2%), 20년이 47건(1.6%) 순으로, 등록기간이 15년인 사건의 비율이 원등록사건에서 15년인 사건의 비율보다 높고, 10년 이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개대상사건의 등록기간은 3년 초과~5년 이하가 14건(0.5%), 1년 초과~2년 이하가 6건(0.2%) 순으로 나타났고, 고지대상사건의 등록기간은 2년 초과~3년 이하가 395건(13.6%), 3년 초과~5년 이하가 386건(13.3%), 1년 초과~2년 이하가 179건(6.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3〉 재등록사건 등록 유형 현황

재등록 원등록	계	등록				공개						고지								
		소계	10년 이하	15년	20년	30년	소계	1년 이하	2년	3년 이하	5년 이하	10년 이하	소계	1년 이하	2년	3년 이하	5년 이하	7년 이하	10년 이하	
계	2,901	1,776	382	1,346	47	1	26	2	6	2	14	2	1,099	11	179	395	386	42	86	
	(%)	61.2	13.2	46.4	1.6	0.0	0.9	0.1	0.2	0.1	0.5	0.1	37.9	0.4	6.2	13.6	13.3	1.4	3.0	
등록	소계	2,095	1,539	316	1,182	40	1	6	—	2	—	2	2	550	7	114	228	155	19	27
	(%)	73.5	15.1	56.4	1.9	0.0	0.3	—	0.1	—	0.1	0.1	26.3	0.3	5.4	10.9	7.4	0.9	1.3	
	10년 이하	1,117	867	168	687	11	1	6	—	2	—	2	2	244	5	54	85	74	7	19
	(%)	77.6	15.0	61.5	1.0	0.1	0.5	—	0.2	—	0.2	0.2	21.8	0.4	4.8	7.6	6.6	0.6	1.7	
공개	15년	878	585	126	441	18	—	—	—	—	—	—	—	293	2	56	140	76	11	8
	(%)	66.6	14.4	50.2	2.1	—	—	—	—	—	—	—	33.4	0.2	6.4	15.9	8.7	1.3	0.9	
	20년	100	87	22	54	11	—	—	—	—	—	—	—	13	—	4	3	5	1	—
	(%)	87.0	22.0	54.0	11.0	—	—	—	—	—	—	—	13.0	—	4.0	3.0	5.0	1.0	—	
고지	소계	237	66	13	50	3	—	11	—	1	1	9	—	160	—	14	42	78	4	22
	(%)	27.8	5.5	21.1	1.3	—	4.6	—	0.4	0.4	3.8	—	67.5	—	5.9	17.7	32.9	1.7	9.3	
	1년 이하	1	1	—	1	—	—	—	—	—	—	—	—	—	—	—	—	—	—	
	(%)	100.0	—	100.0	—	—	—	—	—	—	—	—	—	—	—	—	—	—	—	
고지	2년 이하	4	2	—	2	—	—	—	—	—	—	—	—	—	—	—	—	—	—	
	(%)	50.0	—	50.0	—	—	—	—	—	—	—	—	50.0	—	—	25.0	25.0	—	—	
	3년 이하	16	9	1	8	—	—	—	—	—	—	—	—	7	—	—	4	—	—	3
	(%)	56.3	6.3	50.0	—	—	—	—	—	—	—	—	43.8	—	—	25.0	—	—	18.8	
고지	5년 이하	213	53	12	38	3	—	11	—	1	1	9	—	149	—	14	37	77	4	17
	(%)	24.9	5.6	17.8	1.4	0.0	5.2	0.0	0.5	0.5	4.2	0.0	70.0	—	6.6	17.4	36.2	1.9	8.0	
	7년 이하	1	—	—	—	—	—	—	—	—	—	—	—	1	—	—	—	—	—	1
	(%)	—	—	—	—	—	—	—	—	—	—	—	100.0	—	—	—	—	—	100.0	
고지	10년 이하	2	1	—	1	—	—	—	—	—	—	—	—	1	—	—	—	—	—	1
	(%)	50.0	—	50.0	—	—	—	—	—	—	—	—	50.0	—	—	—	—	—	50.0	
	소계	569	171	53	114	4	—	9	2	3	1	3	—	389	4	51	125	153	19	37
	(%)	30.1	9.3	20.0	0.7	—	1.6	0.4	0.5	0.2	0.5	—	68.4	0.7	9.0	22.0	26.9	3.3	6.5	
고지	1년 이하	7	2	1	1	—	—	1	—	—	—	1	—	4	—	—	1	2	—	1
	(%)	28.6	14.3	14.3	—	—	14.3	—	—	—	14.3	—	57.1	—	—	14.3	28.6	—	14.3	
	2년 이하	99	42	11	31	—	—	1	—	—	1	—	—	56	1	16	19	18	1	1
	(%)	42.4	11.1	31.3	—	—	1.0	—	—	1.0	—	—	56.6	1.0	16.2	19.2	18.2	1.0	1.0	
고지	3년 이하	202	48	12	35	1	—	2	2	—	—	—	—	152	1	18	61	55	7	10
	(%)	23.8	5.9	17.3	0.5	—	1.0	1.0	—	—	—	—	75.2	0.5	8.9	30.2	27.2	3.5	5.0	
	5년 이하	230	72	25	44	3	—	5	—	3	—	2	—	153	2	16	38	72	10	15
	(%)	31.3	10.9	19.1	1.3	—	2.2	0.0	1.3	—	0.9	—	66.5	0.9	7.0	16.5	31.3	4.3	6.5	
고지	7년 이하	12	3	2	1	—	—	—	—	—	—	—	—	9	—	—	2	2	1	4
	(%)	25.0	16.7	8.3	—	—	—	—	—	—	—	—	75.0	—	—	16.7	16.7	8.3	33.3	
	10년 이하	19	4	2	2	—	—	—	—	—	—	—	—	15	—	1	4	4	—	6
	(%)	21.1	10.5	10.5	—	—	—	—	—	—	—	—	78.9	—	5.3	21.1	21.1	—	31.6	

4. 선고형

- 〈표 3-4-4〉는 재등록사건의 선고형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원등록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1,201건(41.4%), 벌금 941건(32.4%), 징역 705건(24.3%), 선고유예 54건(1.9%) 순으로 나타났다.
- 재등록사건은 징역 1,598건(55.1%), 집행유예 880건(30.3%), 벌금 416건(14.3%) 순으로 나타나, 원등록사건보다 징역의 비율은 높고, 집행유예와 벌금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등록사건에서 벌금을 받은 사건 941건 중 집행유예로 재등록된 사건은 554건 (58.9%)으로 나타났고, 징역으로 재등록된 사건은 219건(23.3%)으로 나타났다.
- 원등록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1,201건 중 징역으로 재등록된 사건은 754건 (62.8%)으로 나타났고, 집행유예로 재등록된 사건은 261건(21.7%)으로 나타났다.
- 원등록사건에서 징역을 받은 705건의 사건 중 징역으로 재등록된 사건은 622건 (88.2%)으로 나타났다.
- 이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원등록사건이 벌금에서 집행유예로, 집행유예에서 징역으로 재등록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등록 때보다 재등록 시 좀 더 중한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4〉 재등록사건 선고형 현황

재등록 원등록	총계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치료감호	집행유예	형면제	선고유예
총계	2,901	3	1,598	1	416	1	880	1	1
	(%)	0.1	55.1	0.0	14.3	0.0	30.3	0.0	0.0
징역	705	2	622	-	50	-	31	-	-
	(%)	0.3	88.2	-	7.1	-	4.4	-	-
벌금	941	-	219	1	167	-	554	-	-
	(%)	-	23.3	0.1	17.7	-	58.9	-	-
집행유예	1,201	1	754	-	182	1	261	1	1
	(%)	0.1	62.8	-	15.2	0.1	21.7	0.1	0.1
선고유예	54	-	3	-	17	-	34	-	-
	(%)	-	5.6	-	31.5	-	63.0	-	-

5. 사회내처우 부과 현황

- 〈표 3-4-5〉는 재등록사건의 사회내처우 부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재등록사건 2,901건 중 원등록 시 수강·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건은 2,128건(73.4%)이다. 그 중 재등록 시 1,947건(91.5%)이 다시 수강·이수명령을 부과 받았다. 한편, 원등록 시 수강·이수명령을 미부과 받았던 773건 중 611건(79.0%)은 재등록 시 부과처분을 받았다.
- 원등록 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661건 중에서는 288건(43.6%)이 재등록 시 다시 보호관찰을 부과 받았고, 원등록 시 보호관찰을 미부과 받았던 2,240건 중 686건(30.6%)은 재등록 시 부과처분을 받았다.
- 원등록 시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 받은 182건 중 107건(58.8%)은 재등록 시 다시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 받았고, 원등록 시 전자장치 부착을 미부과 받았던 2,719건 중 419건(15.4%)은 재등록 시 부과처분을 받았다.
- 한편, 원등록 시 치료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를 부과 받은 건은 없었으나, 재등록 시에는 각 18건(0.6%), 5건(0.2%)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5〉 재등록사건 사회내처우 부과 현황

원등록	재등록	소계	미부과	부과
수강·이수 명령	소계	2,901	343	2,558
		(%)	11.8	88.2
	미부과	773	162	611
		(%)	21.0	79.0
	부과	2,128	181	1,947
		(%)	8.5	91.5
보호관찰	소계	2,901	1,927	974
		(%)	66.4	33.6
	미부과	2,240	1,554	686
		(%)	69.4	30.6
	부과	661	373	288
		(%)	56.4	43.6

원등록		재등록	소계	미부과	부과
전자장치 부착	소계	2,901	2,375	526	
		[%]	81.9	18.1	
	미부과	2,719	2,300	419	
		[%]	84.6	15.4	
	부과	182	75	107	
		[%]	41.2	58.8	
사회봉사 명령	소계	2,901	2,634	267	
		[%]	90.8	9.2	
	미부과	2,549	2,311	238	
		[%]	90.7	9.3	
	부과	352	323	29	
		[%]	91.8	8.2	
치료감호	소계	2,901	2,864	37	
		[%]	98.7	1.3	
	미부과	2,892	2,857	35	
		[%]	98.8	1.2	
	부과	9	7	2	
		[%]	77.8	22.2	
치료명령	소계	2,901	2,883	18	
		[%]	99.4	0.6	
	미부과	2,901	2,883	18	
		[%]	99.4	0.6	
성충동 약물치료	소계	2,901	2,896	5	
		[%]	99.8	0.2	
	미부과	2,901	2,896	5	
		[%]	99.8	0.2	

성범죄 재범자 특성

1. 재등록 경과 기간⁶⁾

- 〈표 3-5-1〉은 재등록 경과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 1년 이후~2년 이내에 재등록된 사건이 755건(26.0%)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2년 이후~3년 이내가 702건(24.2%)이었으며, 3년 이후~4년 이내가 506건(17.4%)을 차지하였다. 1년 이후부터 4년 이내 재등록된 사건은 총 1,963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하고 있다.
-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기간 및 종류를 살펴보면, 전체 113,196건 중 15,636건(13.7%)이 동종재범(성폭력범죄)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중 재범기간이 3년 초과인 사건이 4,665건(29.8%)이었으며, 다음으로 1년 이내가 3,646건(23.3%), 2년 이내가 2,391건(15.1%)이었다.
- 재등록 경과 기간이 3년 이내인 사건은 전체 2,901건 중 1,811건(62.4%)이고, 「범죄분석」의 동종범죄 재범기간이 3년 이내인 사건은 전체 15,636건 중 10,971건(70.2%)으로, 3년 이내에 과반 이상의 재범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부록 〈표 5-1-12〉 참조).

〈표 3-5-1〉 재등록 경과 기간

원등록 \ 기간	계	3월 이내	6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8년 이내	9년 이내	9년 초과
계	2,901	31	39	284	755	702	506	289	168	66	39	16	6
	(%)	1.1	1.3	9.8	26.0	24.2	17.4	10.0	5.8	2.3	1.3	0.6	0.2

6) 원등록일로부터 재등록일까지를 의미한다.

2. 국적

- 〈표 3-5-2〉는 내·외국인 대상자의 재등록사건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내국인 재등록사건은 2,891건(99.7%), 외국인 재등록사건은 10건(0.3%)이며, 그 국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중국과 대만이 각 3건, 방글라데시·몽골·케냐·인도가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표 3-5-2〉 내·외국인 대상자 재등록사건 현황

국적 계	내국인	외국인						
		계	중국	대만	방글라데시	몽골	케냐	인도
2,901	2,891	10	3	3	1	1	1	1
(%)	99.7	0.3	[0.3]	[0.3]	[0.1]	[0.1]	[0.1]	[0.1]

*괄호 안은 외국인 중 비율

3. 성별

- 〈표 3-5-3〉은 재등록사건의 성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재등록사건의 성별이 남성인 사건이 2,898건으로 99.9%를 차지하고 있다.

〈표 3-5-3〉 재등록사건 성별 현황

계	구분	남	여
2,901		2,898	3
(%)		99.9	0.1

4. 직업

- 〈표 3-5-4〉는 재등록대상자의 직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원등록사건에서 대상자의 직업이 무직이었던 사건이 1,395건(48.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단순 노무자가 482건(16.6%)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종사자가 355건(12.2%)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재등록사건에서 대상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원등록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직이 1,296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노무자가 544건(18.8%)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사무종사자가 326건(11.2%)으로 뒤를 이었다.

- 원등록사건 직업과 재등록사건 직업을 비교해보면 전체 2,901건에서 미상 47건을 제외한 2,854건 중 2,275건이 대상자가 같은 직업을 가진 상태로 저지른 사건으로 79.7%의 비율을 나타냈다. 2,275건 중 원등록·재등록사건에서 모두 대상자의 직업이 무직이었던 사건은 1,191건(52.3%)으로 나타났고, 단순노무자 375건(16.5%), 사무종사자 276건(12.1%) 등으로 나타났는데, 비교적 높은 비율로 원등록사건 대상자의 직업과 재등록사건 대상자의 직업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4〉 재등록대상자의 직업 현황

원등록 재등록	재등록														
	계	공무원	관리자	군인	기능원	농림· 어업	단순 노무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기계 조작자	전문가	판매 종사자	학생	무직	미상
계	2,901	1	31	9	93	8	544	326	76	70	108	128	61	1,296	150
	(%)	0.0	1.1	0.3	3.2	0.3	18.8	11.2	2.6	2.4	3.7	4.4	2.1	44.7	5.2
공무원	1	1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	—
관리자	18	—	12	—	—	—	1	—	1	—	2	1	—	1	—
	(%)	—	66.7	—	—	—	5.6	—	5.6	—	11.1	5.6	—	5.6	—
군인	15	—	—	7	—	—	—	2	—	—	—	1	—	4	1
	(%)	—	—	46.7	—	—	—	13.3	—	—	—	6.7	—	26.7	6.7
기능원	79	—	—	—	61	—	10	2	1	1	1	—	—	2	1
	(%)	—	—	—	77.2	—	12.7	2.5	1.3	1.3	1.3	—	—	2.5	1.3
농림·어업	8	—	—	—	—	5	1	—	—	1	—	—	—	—	1
	(%)	—	—	—	—	62.5	12.5	—	—	12.5	—	—	—	—	12.5
단순노무자	482	—	7	—	10	—	375	13	5	6	8	5	—	36	17
	(%)	—	1.5	—	2.1	—	77.8	2.7	1.0	1.2	1.7	1.0	—	7.5	3.5
사무 종사자	355	—	4	—	5	1	29	276	—	2	4	3	1	19	11
	(%)	—	1.1	—	1.4	0.3	8.2	77.7	—	0.6	1.1	0.8	0.3	5.4	3.1
서비스 종사자	79	—	—	—	—	—	7	—	61	—	—	1	—	7	3
	(%)	—	—	—	—	—	8.9	—	77.2	—	—	1.3	—	8.9	3.8
기계조작자	66	—	—	—	3	—	2	—	—	52	1	2	—	1	5
	(%)	—	—	—	4.5	—	3.0	—	—	78.8	1.5	3.0	—	1.5	7.6
전문가	100	—	—	—	—	—	4	7	—	1	84	—	—	3	1
	(%)	—	—	—	—	—	4.0	7.0	—	1.0	84.0	—	—	3.0	1.0
판매 종사자	139	—	7	—	5	1	7	6	2	1	1	96	—	9	4
	(%)	—	5.0	—	3.6	0.7	5.0	4.3	1.4	0.7	0.7	69.1	—	6.5	2.9
학생	69	—	—	—	—	—	3	—	1	—	—	—	54	7	4
	(%)	—	—	—	—	—	4.3	—	1.4	—	—	—	78.3	10.1	5.8
무직	1,395	—	1	2	6	1	88	17	5	4	6	13	6	1,191	55
	(%)	—	0.1	0.1	0.4	0.1	6.3	1.2	0.4	0.3	0.4	0.9	0.4	85.4	3.9
미상	95	—	—	—	3	—	17	3	—	2	1	6	—	16	47
	(%)	—	—	—	3.2	—	17.9	3.2	—	2.1	1.1	6.3	—	16.8	49.5

5. 성범죄 전과 횟수

- 〈표 3-5-5〉는 재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과를 확인할 수 없는 329건은 제외하였다.
- 재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가 1회인 사건이 1,511건(58.7%)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2회 615건(23.9%), 3~5회 418건(16.3%), 6~9회 27건(1.0%) 순으로 나타났다.
- 재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전과가 1회인 사건은 2012년 이후 50%~60%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2회인 사건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4년 이후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3~5회인 사건은 꾸준히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재등록사건 중 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최고 횟수는 13회로 나타났다.

〈표 3-5-5〉 재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

연도 \ 전과	계	1회	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계	2,572	1,511	615	418	27	1
	[%]	58.7	23.9	16.3	1.0	0.0
2009	1	1	–	–	–	–
	[%]	100.0	–	–	–	–
2010	4	4	–	–	–	–
	[%]	100.0	–	–	–	–
2011	14	10	2	2	–	–
	[%]	71.4	14.3	14.3	–	–
2012	23	16	3	4	–	–
	[%]	69.6	13.0	17.4	–	–
2013	54	35	9	9	1	–
	[%]	64.8	16.7	16.7	1.9	–
2014	193	114	43	35	1	–
	[%]	59.1	22.3	18.1	0.5	–
2015	321	202	69	48	2	–
	[%]	62.9	21.5	15.0	0.6	–
2016	504	282	130	87	4	1[13회]
	[%]	56.0	25.8	17.3	0.8	0.2
2017	648	383	157	100	8	–
	[%]	59.1	24.2	15.4	1.2	–
2018	810	464	202	133	11	–
	[%]	57.3	24.9	16.4	1.4	–

6. 음주

- 〈표 3-5-6〉은 재등록대상자의 범행당시 음주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재등록 사건 2,901건 중 원등록사건에서 음주 상태인 경우가 244건(8.4%)이며, 재등록 사건에서 음주 상태인 경우는 220건(7.6%)이다.
- 대상자가 원등록사건에서 음주 상태인 244건 중 재등록사건에서 음주 상태인 사건인 경우는 65건(26.6%)으로 원등록사건에서 음주상태가 아닌 2,657건 중 재등록사건에서 음주 상태인 155건(5.8%) 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5-6〉 재등록대상자 음주 여부

원등록자	재등록자	총계	음주	해당없음
총계		2,901	220	2,681
		[%]	7.6	92.4
음주		244	65	179
		[%]	26.6	73.4
해당없음		2,657	155	2,502
		[%]	5.8	94.2

7. 공범

- 〈표 3-5-7〉은 재등록대상자의 공범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원등록사건은 전체 2,901건 중 84건(2.9%)이 공범이 있었으며, 재등록사건은 56건(1.9%)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등록사건에서 공범이 있었던 84건 중 재등록사건에서 공범이 있는 경우는 26건(31%)으로 나타났다.
- 단독범에서 단독범으로 재등록된 경우는 2,817건 중 2,787건(98.9%)으로 나타났으며, 공범이 있었으나 단독범으로 재등록된 경우는 84건 중 58건(69.0%)으로 나타났다.
-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 공범 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39,370명 중 단독범의 경우 228,731명(95.6%)이며, 공범이 있는 성범죄자는 10,639명(4.4%)이다. 등록 대상사건에서 단독범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부록 5-1-11) 참조).

〈표 3-5-7〉 재등록대상자 공범 여부

원등록	재등록	총계	단독범	있음
총계		2,901	2,845	56
		(%)	98.1	1.9
단독범		2,817	2,787	30
		(%)	98.9	1.1
있음		84	58	26
		(%)	69.0	31.0

8. 직권등록

- 〈표 3-5-8〉은 재등록대상자의 직권등록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원등록사건 중에서 220건(7.6%)이 직권등록된 것으로 나타났고, 재등록사건 중에서도 220건(7.6%)이 직권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등록사건에서 직권등록된 사건 220건 중 재등록 사건에서도 직권 등록된 경우는 28건(12.7%)으로 나타났다.

〈표 3-5-8〉 재등록대상자 직권등록 여부

원등록	재등록	총계	일반등록	직권등록
총계		2,901	2,681	220
		(%)	92.4	7.6
일반등록		2,681	2,489	192
		(%)	92.8	7.2
직권등록		220	192	28
		(%)	87.3	12.7

9. 범행수단 및 방법

- 〈표 3-5-9〉은 재등록대상자의 범행수단 및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해당없음 등의 경우 범행수단 및 방법을 알 수 없었거나, 비접촉범죄로 범행수단 및 방법 등에 해당이 없는 경우이다.

- 원등록사건의 경우 전체 2,901건 중 위협·폭력을 사용한 경우는 601건(20.6%),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503건(17.3%), 질문을 사용한 경우는 76건(2.6%)으로 나타났다.
- 재등록사건의 경우 위협·폭력을 사용한 경우는 488건(16.8%)으로 나타났고,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468건(16.1%), 금품을 사용한 경우는 91건(3.2%) 등으로 나타났다.
- 원등록 및 재등록사건을 비교해보면 전체 2,901건에서 해당없음 등 1,009건을 제외한 1,892건 중 479건(25.3%)이 동일한 범행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479건 중 동일하게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한 경우가 227건(47.3%)으로 나타났고, 위협·폭력을 사용한 경우는 190건(39.6%)으로 나타났으며, 금품을 사용한 경우 25건(5.2%)으로 나타났다.

〈표 3-5-9〉 재등록대상자의 범행수단 및 방법

재등록 원등록	계	금품	놀이	사칭 위장	수면·음주· 약물	애정 · 칭찬	위협 · 폭력	정신 장애	질문	친분	편의제공	해당없음 등
계	2,901	91	13	32	468	66	488	41	70	81	56	1,495
	(%)	3.1	0.4	1.1	16.1	2.3	16.8	1.4	2.4	2.8	1.9	51.5
금품	66	25	—	—	8	1	8	—	1	4	6	14
	(%)	2.3	37.9	—	—	12.1	1.5	12.1	—	1.5	6.1	9.1
놀이	15	2	—	—	3	1	2	—	2	—	—	5
	(%)	13.3	—	—	20.0	6.7	13.3	—	13.3	—	—	33.3
사칭위장	45	2	—	4	3	3	12	1	2	2	2	14
	(%)	4.4	—	8.9	6.7	6.7	26.7	2.2	4.4	4.4	4.4	31.1
수면·음주· 약물	503	11	—	1	227	14	72	4	6	20	8	140
	(%)	2.2	—	0.2	45.1	2.8	14.3	0.8	1.2	4.0	1.6	27.8
애정·칭찬	30	2	1	1	3	7	3	—	2	1	3	7
	(%)	6.7	3.3	3.3	10.0	23.3	10.0	—	6.7	3.3	10.0	23.3
위협·폭력	601	22	5	12	85	13	190	8	14	10	10	232
	(%)	3.7	0.8	2.0	14.1	2.2	31.6	1.3	2.3	1.7	1.7	38.6
정신장애	25	1	1	—	1	2	6	4	—	—	—	10
	(%)	4.0	4.0	—	4.0	8.0	24.0	16.0	—	—	—	40.0
질문	76	1	—	3	4	4	17	4	6	4	5	28
	(%)	1.3	—	3.9	5.3	5.3	22.4	5.3	7.9	5.3	6.6	36.8
친분	69	5	—	1	10	4	15	1	2	10	1	20
	(%)	7.2	—	1.4	14.5	5.8	21.7	1.4	2.9	14.5	1.4	29.0
편의제공	57	7	—	1	9	3	8	—	4	3	6	16
	(%)	12.3	—	1.8	15.8	5.3	14.0	—	7.0	5.3	10.5	28.1
해당없음 등	1,414	13	6	9	116	14	154	19	30	29	15	1,009
	(%)	0.9	0.4	0.6	8.2	1.0	10.9	1.3	2.1	2.1	1.1	71.4

성범죄 재범의 죄명별 특성

1. 재등록

- <표 3-6-1>은 재등록대상자의 죄명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같은 범죄로 재등록된 사건은 전체 재등록사건 2,901건 중 1,649건(56.8%)으로 나타났다.
- 특히, 815건이 원등록되었던 강간 등은 다시 강간 등으로 263건(32.3%)이 재등록되었으며, 강제추행으로 재등록된 건수도 408건(50.0%)으로 나타났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재등록사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으로 등록된 건수가 300건으로 전체 332건의 90.3%를 차지했고, 강제추행의 경우 재등록사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으로 재등록된 경우는 1,106건 중 877건으로 79.3%로 나타나 추행 범죄의 경우 재차 추행 범죄로 재등록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17건이 원등록되었던 성매매강요는 그 중 6건(35.2%)이 상대적으로 더 중한 범죄인 강간 등으로 재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원등록되었던 428건 중 321건(75.0%)이 카메라등이용 촬영으로 재등록되어 높은 재등록율을 보였고, 강간 등으로 14건(3.3%), 강제추행으로 36건(8.4%)이 재등록됨으로써, 접촉 범죄인 강제추행, 강간 등으로 재등록되는 경우도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1〉 재등록대상자 죄명 현황

재등록 원등록	계	강간 등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아동 성학대	공중밀집 장소추행	성적목적 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등 이용촬영	음란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영업
계	2,901	422	1,361	13	19	372	59	49	508	12	51	14	21
	(%)	14.5	46.9	0.4	0.7	12.8	2.0	1.7	17.5	0.4	1.8	0.5	0.7
강간 등	815	263	408	7	8	32	5	6	52	1	18	6	9
	(%)	32.3	50.1	0.9	1.0	3.9	0.6	0.7	6.4	0.1	2.2	0.7	1.1
강제추행	1,106	116	777	2	4	100	9	11	75	—	12	—	—
	(%)	10.5	70.3	0.2	0.4	9.0	0.8	1.0	6.8	—	1.1	—	—
유사성행위	13	2	6	2	—	—	—	—	—	1	1	—	1
	(%)	15.4	46.2	15.4	—	—	—	—	—	7.7	7.7	—	7.7
아동성학대	8	—	3	—	3	—	—	—	2	—	—	—	—
	(%)	—	37.5	—	37.5	—	—	—	25.0	—	—	—	—
공중밀집 장소추행	332	5	96	—	—	204	4	1	22	—	—	—	—
	(%)	1.5	28.9	—	—	61.4	1.2	0.3	6.6	—	—	—	—
성적목적침입	63	4	13	—	—	6	21	—	19	—	—	—	—
	(%)	6.3	20.6	—	—	9.5	33.3	—	30.2	—	—	—	—
통신매체 이용음란	56	5	11	—	2	2	—	27	8	—	1	—	—
	(%)	8.9	19.6	—	3.6	3.6	0.0	48.2	14.3	—	1.8	—	—
카메라등 이용촬영	428	14	36	1	2	26	20	2	321	3	3	—	—
	(%)	3.3	8.4	0.2	0.5	6.1	4.7	0.5	75.0	0.7	0.7	—	—
음란물 제작배포	16	1	5	—	—	—	—	2	—	6	2	—	—
	(%)	6.3	31.3	—	—	—	—	12.5	—	37.5	12.5	—	—
성매수	34	4	4	—	—	1	—	—	9	1	13	1	1
	(%)	11.8	11.8	—	—	2.9	—	—	26.5	2.9	38.2	2.9	2.9
성매매강요	17	6	1	—	—	—	—	—	—	—	6	4	—
	(%)	35.3	5.9	—	—	—	—	—	—	—	35.3	23.5	—
성매매 알선영업	13	2	1	1	—	1	—	—	—	—	1	1	6
	(%)	15.4	7.7	7.7	—	7.7	—	—	—	—	7.7	7.7	46.2

2. 범죄 발생 시간

- 〈표 3-6-2〉는 재등록대상자의 범죄 발생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원등록사건은 전체 2,901건 중 21:00~23:59의 시간대가 423건(14.6%)으로 가장 비율이 높고, 뒤이어 18:00~20:59이 407건(14.0%), 06:00~08:59이 402건(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재등록사건은 21:00~23:59이 449건(15.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18:00~20:59이 426건(14.7%), 15:00~17:59이 401건(13.8%)으로 나타났다.

- 원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이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은 614건(미상제외)으로 전체 원등록사건 2,792건(미상제외) 중 22.0%이다. 614건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06:00~08:59[95건(15.5%), 21:00~23:59[104건(16.9%), 06:00~08:59[97건(15.8%) 등이다. 대체로 원등록사건의 범행시간과 재등록사건의 범행시간이 동일한 경우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6-2〉 재등록대상자 범죄 발생 시간

재등록 원등록	계	00:00~ 02:59	03:00~ 05:59	06:00~ 08:59	09:00~ 11:59	12:00~ 14:59	15:00~ 17:59	18:00~ 20:59	21:00~ 23:59	미상
총계	2,901	323	320	340	239	259	401	426	449	144
	(%)	11.1	11.0	11.7	8.2	8.9	13.8	14.7	15.5	5.0
00:00~02:59	371	84	54	33	21	20	34	30	74	21
	(%)	22.6	14.6	8.9	5.7	5.4	9.2	8.1	19.9	5.7
03:00~05:59	338	55	95	40	21	15	18	33	47	14
	(%)	16.3	28.1	11.8	6.2	4.4	5.3	9.8	13.9	4.1
06:00~08:59	402	37	47	97	42	27	39	63	42	8
	(%)	9.2	11.7	24.1	10.4	6.7	9.7	15.7	10.4	2.0
09:00~11:59	199	10	27	24	24	22	28	26	28	10
	(%)	5.0	13.6	12.1	12.1	11.1	14.1	13.1	14.1	5.0
12:00~14:59	284	19	20	20	37	43	56	46	29	14
	(%)	6.7	7.0	7.0	13.0	15.1	19.7	16.2	10.2	4.9
15:00~17:59	368	19	14	32	30	63	84	71	44	11
	(%)	5.2	3.8	8.7	8.2	17.1	22.8	19.3	12.0	3.0
18:00~20:59	407	37	21	41	28	35	71	83	67	24
	(%)	9.1	5.2	10.1	6.9	8.6	17.4	20.4	16.5	5.9
21:00~23:59	423	49	29	44	30	27	58	63	104	19
	(%)	11.6	6.9	10.4	7.1	6.4	13.7	14.9	24.6	4.5
미상	109	13	13	9	6	7	13	11	14	23
	(%)	11.9	11.9	8.3	5.5	6.4	11.9	10.1	12.8	21.1

3. 범행월

- 〈표 3-6-3〉은 재등록대상자의 범행 월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원등록사건의 경우 7월~8월에 668건(23.0%)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5월~6월 592건(20.4%), 9월~10월 538건(18.5%) 등으로 나타났다. 재등록사건은 7월~8월 613건(21.1%), 5월~6월 593건(20.4%), 3월~4월 529건(18.2%) 등의 순으로 발생하여, 원등록 사건과 재등록사건의 범행 월별 현황이 비슷한 추이를 나타낸다.
- 원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이 모두 같은 월에 발생한 사건은 513건으로 전체 2,901건 중 17.7%의 비율을 나타냈는데, 513건 중 7월~8월이 151건으로 29.4%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5월~6월이 118건(23.0%)으로 나타났으며 9월~10월이 88건(17.2%)으로 나타났다.

〈표 3-6-3〉 재등록대상자 범행 월별 현황

원등록	재등록	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계		2,901	325	529	593	613	496	345
	(%)		11.2	18.2	20.4	21.1	17.1	11.9
1~2월		307	39	50	57	64	60	37
	(%)		12.7	16.3	18.6	20.8	19.5	12.1
3~4월		477	48	74	111	86	93	65
	(%)		10.1	15.5	23.3	18.0	19.5	13.6
5~6월		592	68	125	118	133	84	64
	(%)		11.5	21.1	19.9	22.5	14.2	10.8
7~8월		668	81	120	141	151	105	70
	(%)		12.1	18.0	21.1	22.6	15.7	10.5
9~10월		538	58	98	112	116	88	66
	(%)		10.8	18.2	20.8	21.6	16.4	12.3
11~12월		319	31	62	54	63	66	43
	(%)		9.7	19.4	16.9	19.7	20.7	13.5

4. 범행장소

- 〈표 3-6-4〉는 재등록대상자의 범행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원등록사건은 노상 465건(16.0%), 지하철·기차 435건(15.0%), 목욕탕·찜질방·사우나 243건(8.4%) 순으로 나타났다. 재등록사건은 지하철·기차 517건(17.8%), 노상 392건(13.5%), 목욕탕·찜질방·사우나가 214건(7.4%) 순으로 나타났다.
-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전체 244,595건 중 미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노상이 37,478건(1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이 26,109건(10.7%), 숙박업소·목욕탕이 25,835건(10.6%) 순이었다. 노상의 비율이 높고, 목욕탕 등의 시설이 포함된 점은 재등록사건의 경우와 공통적이지만, 「범죄분석」의 성폭력범죄 발생 장소의 비율은 단독주택이 높은 반면, 등록사건에서는 지하철·기차의 비율이 높다는 차이점도 나타난다(부록 〈표 5-1-10〉 참조).
- 이어서 원등록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재등록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일치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2,901건 중 1,058건(36.5%)이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58건 중 지하철·기차의 경우 272건(25.7%), 목욕탕·찜질방·사우나 148건(14.0%), 버스 93건(8.8%) 등으로 나타났다.
- 원등록사건에서 가해자 주거지가 범행장소인 191건 중 재등록사건에서도 가해자 주거지가 범행장소인 사건은 71건(37.2%)이었다. 그리고 원등록사건에서 피해자 주거지가 범행장소인 164건 중 재등록사건에서 피해자 주거지가 범행장소인 사건은 40건(24.4%)으로 나타났다.

〈표 3-6-4〉 재등록대상자의 범행 장소

재등록 원등록	계	가주 해거 자지	공원	공장 창고 빈집	교 도 소	군 부 대	기주 거 타지	노 상	디중 시설	목찜 탕방	버 스	버스 택시 승 강 장	상업 시설	숙박 시설	유동 인소	자 동 차	주 차 장	지기 하 철차	작 장	택 시	편 의 점	피 가 해 자 자 공동 주거	피 주 해 거 자 자	학 교 학 원	화 장 실
계	2,901	185	88	5	23	4	19	392	138	214	200	48	123	171	107	67	22	517	168	10	30	29	169	11	161
	(%)	6.4	3.0	0.2	0.8	0.1	0.7	13.5	4.8	7.4	6.9	1.7	4.2	5.9	3.7	2.3	0.8	17.8	5.8	0.3	1.0	1.0	5.8	0.4	5.5
가해자주거지	191	71	7	1	1	2	4	15	1	1	1	-	2	20	6	10	2	12	7	1	2	3	14	-	8
	(%)	37.2	3.7	0.5	0.5	1.0	2.1	7.9	0.5	0.5	0.5	-	1.0	10.5	3.1	5.2	1.0	6.3	3.7	0.5	1.0	1.6	7.3	-	4.2
공원	79	4	10	-	-	-	1	17	6	-	3	1	4	2	-	5	1	8	5	-	3	-	4	3	2
	(%)	5.1	12.7	-	-	-	1.3	21.5	7.6	-	3.8	1.3	5.1	2.5	-	6.3	1.3	10.1	6.3	-	3.8	-	5.1	3.8	2.5
공장·창고· 빈집	2	-	-	-	1	-	-	-	-	-	-	-	-	-	-	-	-	-	-	-	-	1	-	-	-
	(%)	-	-	-	50.0	-	-	-	-	-	-	-	-	-	-	-	-	-	-	-	-	50.0	-	-	-

제등록 원등록	계	가주 해거 자지	공원	공장 창고 빈집	교 도 소	군 부 대	기주 거 타지	노상	다중 사설	목점 욕질 탕방	버스	택시 승 강 장	상업 시설	숙박 시설	유통 업소	자동 차	주 차 장	지기 하 철차	작장	택시	편 의 점	파 해 자자 공동 주거	피 주 해거 자지	학 교 학 원	화 장 실
교도소	2	-	-	-	-	-	-	-	-	1	-	-	-	-	-	-	-	-	-	-	-	1	-	-	-
	(%)	-	-	-	-	-	-	-	-	50.0	-	-	-	-	-	-	-	-	-	-	-	50.0	-	-	-
군부대	3	2	-	-	-	-	-	-	-	-	-	-	1	-	-	-	-	-	-	-	-	-	-	-	-
	(%)	66.7	-	-	-	-	-	-	-	-	-	-	33.3	-	-	-	-	-	-	-	-	-	-	-	-
기타 주거지	19	3	-	-	-	-	1	3	2	-	-	-	2	4	1	-	-	-	2	-	-	-	1	-	-
	(%)	15.8	-	-	-	-	5.3	15.8	10.5	-	-	-	10.5	21.1	5.3	-	-	-	10.5	-	-	-	5.3	-	-
노상	465	17	18	1	2	1	1	158	30	10	23	7	18	19	15	3	8	66	21	2	7	1	19	2	16
	(%)	3.7	3.9	0.2	0.4	0.2	0.2	34.0	6.5	2.2	4.9	1.5	3.9	4.1	3.2	0.6	1.7	14.2	4.5	0.4	1.5	0.2	4.1	0.4	3.4
다중시설	201	6	11	-	3	1	3	30	25	7	9	2	11	10	6	4	2	32	15	-	2	-	12	2	8
	(%)	3.0	5.5	-	1.5	0.5	1.5	14.9	12.4	3.5	4.5	1.0	5.5	5.0	3.0	2.0	1.0	15.9	7.5	-	1.0	-	6.0	1.0	4.0
목욕탕·찜질방· 사우나	243	2	1	1	1	-	1	6	7	148	11	2	5	8	3	-	-	18	10	2	1	6	5	-	5
	(%)	0.8	0.4	0.4	0.4	-	0.4	2.5	2.9	60.9	4.5	0.8	2.1	3.3	1.2	-	-	7.4	4.1	0.8	0.4	2.5	2.1	-	2.1
버스	175	2	2	-	-	-	-	10	5	7	93	8	3	1	4	-	-	27	6	1	-	-	2	1	3
	(%)	1.1	1.1	-	-	-	-	5.7	2.9	4.0	53.1	4.6	1.7	0.6	2.3	-	-	15.4	3.4	0.6	-	-	1.1	0.6	1.7
버스·택시 승강장	54	-	1	-	-	-	-	8	3	1	10	8	2	2	2	1	1	9	1	1	-	-	1	-	3
	(%)	-	1.9	-	-	-	-	14.8	5.6	1.9	18.5	14.8	3.7	3.7	3.7	1.9	1.9	16.7	1.9	1.9	-	-	1.9	-	5.6
상업시설	133	7	4	1	2	-	-	21	4	2	4	-	29	8	8	4	1	16	10	-	2	-	7	-	3
	(%)	5.3	3.0	0.8	1.5	-	-	15.8	3.0	1.5	3.0	-	21.8	6.0	6.0	3.0	0.8	12.0	7.5	-	1.5	-	5.3	-	2.3
숙박시설	183	22	4	-	6	-	2	15	7	7	-	2	3	51	10	9	2	11	9	-	1	3	15	-	4
	(%)	12.0	2.2	-	3.3	-	1.1	8.2	3.8	3.8	-	1.1	1.6	27.9	5.5	4.9	1.1	6.0	4.9	-	0.5	1.6	8.2	-	2.2
유통업소	81	1	2	-	1	-	2	16	2	2	-	1	2	9	18	-	-	5	12	2	-	-	5	-	1
	(%)	1.2	2.5	-	1.2	-	2.5	19.8	2.5	2.5	-	1.2	2.5	11.1	22.2	-	-	6.2	14.8	2.5	-	-	6.2	-	1.2
자동차	57	6	2	-	2	-	-	2	1	1	1	-	2	4	17	1	3	3	-	1	3	7	-	1	
	(%)	10.5	3.5	-	3.5	-	-	3.5	1.8	1.8	1.8	-	3.5	7.0	29.8	1.8	5.3	5.3	-	1.8	5.3	12.3	-	1.8	
주차장	24	1	2	-	-	-	-	8	-	-	-	-	2	-	-	-	1	1	1	-	-	6	-	2	
	(%)	4.2	8.3	-	-	-	-	33.3	-	-	-	-	8.3	-	-	-	4.2	4.2	4.2	-	-	25.0	-	8.3	
지하철·기차	435	5	5	-	-	-	-	29	16	8	30	10	18	3	5	1	1	272	10	-	3	1	5	-	13
	(%)	1.1	1.1	-	-	-	-	6.7	3.7	1.8	6.9	2.3	4.1	0.7	1.1	0.2	0.2	62.5	2.3	-	0.7	0.2	1.1	-	3.0
직장	129	4	2	-	-	-	-	17	8	4	6	4	8	10	9	4	-	6	32	-	1	1	6	1	6
	(%)	3.1	1.6	-	-	-	-	13.2	6.2	3.1	4.7	3.1	6.2	7.8	7.0	3.1	-	4.7	24.8	-	0.8	0.8	4.7	0.8	4.7
택시	13	1	1	-	-	-	1	1	-	-	-	-	-	-	-	4	-	-	1	1	1	-	2	-	-
	(%)	7.7	7.7	-	-	-	7.7	7.7	-	-	-	-	-	-	-	30.8	-	-	7.7	7.7	7.7	-	15.4	-	-
편의점	21	1	-	-	-	-	-	4	2	-	-	-	1	1	3	-	1	2	4	-	1	-	1	-	-
	(%)	4.8	-	-	-	-	-	19.0	9.5	-	-	-	4.8	4.8	14.3	-	4.8	9.5	19.0	-	4.8	-	4.8	-	-
피해자·기해자 공동주거지	36	11	-	-	-	-	1	1	1	2	-	-	1	2	3	1	-	1	1	-	-	4	7	-	-
	(%)	30.6	-	-	-	-	2.8	2.8	2.8	5.6	-	-	2.8	5.6	8.3	2.8	-	2.8	2.8	-	-	11.1	19.4	-	-
피해자주거지	164	14	9	1	4	-	2	22	7	6	-	1	4	15	7	2	1	6	8	-	2	4	40	-	9
	(%)	8.5	5.5	0.6	2.4	-	1.2	13.4	4.3	3.7	-	0.6	2.4	9.1	4.3	1.2	0.6	3.7	4.9	-	1.2	2.4	24.4	-	5.5
학교·학원	19	-	2	-	-	-	1	3	-	-	-	2	-	-	1	-	4	2	-	2	-	1	1	-	
	(%)	-	10.5	-	-	-	5.3	15.8	-	-	-	10.5	-	-	5.3	-	21.1	10.5	-	10.5	-	5.3	5.3	-	
화장실	172	5	5	-	-	-	-	10	7	7	9	1	6	3	3	1	-	18	8	-	1	1	9	1	77
	(%)	2.9	2.9	-	-	-	-	5.8	4.1	4.1	5.2	0.6	3.5	1.7	1.7	0.6	-	10.5	4.7	-	0.6	0.6	5.2	0.6	44.8

5. 범죄 유형(접촉 · 비접촉)

- 〈표 3-6-5〉는 재등록대상자의 범죄 유형(접촉 범죄·비접촉 범죄)⁷⁾을 나타낸 것이다.
- 원등록사건의 경우 접촉 범죄가 2,274건(78.4%), 비접촉 범죄가 627건(21.6%) 이었고, 재등록사건은 접촉 범죄가 2,187건(75.4%), 비접촉 범죄가 714건(24.6%)으로 나타나, 원등록·재등록사건 모두 접촉 범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비접촉 범죄가 다시 비접촉 범죄로 재등록되는 건수는 627건 중 478건(76.2%)이며, 접촉 범죄가 다시 접촉 범죄로 재등록되는 건수는 2,274건 중 2,038건(89.6%)으로 모두 높은 비율을 보였다.
- 한편, 접촉 범죄가 비접촉 범죄로 재등록되는 비율(10.4%)보다 비접촉 범죄가 접촉 범죄로 재등록되는 비율(23.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5〉 재등록대상자의 범죄 유형

원등록	재등록	총계	비접촉	접촉
총계		2,901	714	2,187
		(%)	24.6	75.4
비접촉		627	478	149
		(%)	76.2	23.8
접촉		2,274	236	2,038
		(%)	10.4	89.6

6. 피해자

(1) 범행장소와 대상자 주거지 간 행정구역 일치 여부

- 〈표 3-6-6〉은 범행 시 대상자가 주거하는 행정구역(행정동) 내에서의 범행 발생 여부를 나타낸 표이다. 미상은 알 수 없는 경우이며, ‘교통수단 내’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건 등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다. 원등록사건 중 범행 장소와 대상자의 주거지 간 행정구역이 일치하는 사건은 760건(26.1%)이었고, 재등록사건 중 범행 장소와 대상자의 주거지 간 행정구역이 일치하는 경우는 830건(28.6%)이었다.

7) 접촉 범죄 : 강간, 추행, 아동성학대, 유사성행위, 공중밀집장소추행

비접촉 범죄 : 성적목적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제작배포,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영업

- 원등록사건 중 범행 장소와 대상자의 주거지 간 행정구역이 일치하는 사건 760건 중 재등록시에도 일치하는 경우는 361건(47.5%)이었으며, 불일치하는 경우는 333건(43.8%)이었다.
- ‘교통수단 내’ 범죄로 원등록된 사건은 269건(9.3%), 재등록된 사건은 361건 (12.4%)으로 나타났다.

〈표 3-6-6〉 원등록·재등록사건 범행장소와 대상자 주거지간 행정구역 일치 여부

원등록	재등록	총계	일치	불일치	교통수단 내	미상
총계		2,901	830	1,574	361	136
		(%)	28.6	54.3	12.4	4.7
일치		760	361	333	40	26
		(%)	47.5	43.8	5.3	3.4
불일치		1,793	419	1,087	195	92
		(%)	23.4	60.6	10.9	5.1
교통수단 내		269	28	114	121	6
		(%)	10.4	42.4	45.0	2.2
미상		79	22	40	5	12
		(%)	27.8	50.6	6.3	15.2

(2) 피해자 성별

- 〈표 3-6-7〉은 피해자 성별을 나타낸 것이다. 원등록사건의 피해자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2,738건(94.4%),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119건(4.1%)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등록사건의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2,695건(92.9%), 남성인 경우는 137건(4.7%)으로 나타나, 원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의 피해자 성별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원등록사건 119건에서 재등록사건 137건으로 증가하였다.
- 원등록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성인 2,738건 중 재등록사건에서 피해자가 남성으로 바뀐 건수는 53건(1.9%)이며, 원등록사건에서 피해자가 남성인 119건 중 재등록 사건에서 여성으로 바뀐 건수는 22건(18.5%)이다.

〈표 3-6-7〉 피해자 성별

원등록	재등록	총계	남	여	미상
총계		2,901	137	2,695	69
	(%)		4.7	92.9	2.4
남		119	80	22	17
	(%)		67.2	18.5	14.3
여		2,738	53	2,637	48
	(%)		1.9	96.3	1.8
미상		44	4	36	4
	(%)		9.1	81.8	9.1

(3) 피해자 유형(아동 · 성인)

- 〈표 3-6-8〉은 피해자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원등록사건의 경우 성인이 피해자였던 사건이 1,778건(61.3%), 아동 1,028건(35.4%), 아동·성인 95건(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등록사건의 경우는 성인이 피해자였던 사건이 2,032건(70.0%), 아동 777건(26.8%), 아동·성인 92건(3.2%) 순으로 나타났다.
- 아동이 피해자였던 원등록사건 1,028건 중 489건(47.5%)이 재등록사건에서 성인이 피해자인 사건이 되었고, 성인이 피해자였던 원등록사건 1,778건 중 250건(14.1%)은 재등록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동인 사건이 되어 원등록사건보다 재등록사건에서 성인 피해자가 증가하고, 아동 피해자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6-8〉 피해자 유형

원등록	재등록	총계	성인	아동	아동·성인
총계		2,901	2,032	777	92
	(%)		70.0	26.8	3.2
성인		1,778	1,475	250	53
	(%)		83.0	14.1	3.0
아동		1,028	489	507	32
	(%)		47.6	49.3	3.1
아동·성인		95	68	20	7
	(%)		71.6	21.1	7.4

(4) 피해자 정신장애 등 여부

- 〈표 3-6-9〉는 피해자의 정신장애 등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원등록사건의 경우 52건(1.8%)이 피해자가 정신장애 등이 있는 경우였고, 재등록사건 중에서는 60건(2.0%)이 피해자가 정신장애 등이 있는 경우였던 것으로 나타나, 원등록사건 보다 재등록사건에서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가 8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6-9〉 피해자 정신장애 등 여부

원등록	재등록	총계	장애없음	정신장애 등 있음
총계		2,901	2,841	60
		(%)	97.9	2.1
장애없음		2,849	2,802	47
		(%)	98.4	1.6
정신장애 등 있음		52	39	13
		(%)	75.0	25.0

(5) 피해자 인원수

- 〈표 3-6-10〉은 피해자 인원수를 나타낸 것이다. 원등록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명이었던 사건이 2,175건(75.0%), 피해자 2명이 329건(11.3%), 3명이 123건(4.2%), 4명이 43건(1.5%), 5명 이상이 231건(8.0%) 순으로 나타났다.
- 재등록사건의 경우는 피해자 1명이 2,199건(75.8%), 피해자 2명이 325건(11.2%), 피해자 3명이 117건(4.0%), 피해자 4명이 42건(1.4%), 5명 이상이 218건(7.5%)으로 나타나, 원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의 피해자 인원수는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등록사건의 피해자 수가 1명인 2,175건 중 재등록사건에서 피해자 수가 그대로 1명인 경우는 1,729건(79.5%)이며, 2명 이상으로 피해자가 바뀐 재등록사건은 446건(20.5%)이다. 피해자가 5명 이상이었던 원등록사건 231건 중 재등록사건에서 다시 피해자가 5명 이상인 경우는 84건(36.4%)이며, 피해자가 1명으로 바뀐 사건은 102건(44.2%)으로 나타났다.

〈표 3-6-10〉 피해자 인원수

원등록	재등록	총계	1	2	3	4	5이상
총계		2,901	2,199	325	117	42	218
		(%)	75.8	11.2	4.0	1.4	7.5
1		2,175	1,729	236	77	24	109
		(%)	79.5	10.9	3.5	1.1	5.0
2		329	257	41	11	6	14
		(%)	78.1	12.5	3.3	1.8	4.3
3		123	81	16	12	4	10
		(%)	65.9	13.0	9.8	3.3	8.1
4		43	30	7	3	2	1
		(%)	69.8	16.3	7.0	4.7	2.3
5이상		231	102	25	14	6	84
		(%)	44.2	10.8	6.1	2.6	36.4

(6) 피해자와의 관계

- 〈표 3-6-11〉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원등록사건의 경우 낯선사람이 2,126건(73.5%), 지인이 446건(15.5%), 당일 만난사람이 201건(6.8%), 권력관계가 53건(2.0%), 애인이 23건(0.7%)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등록사건의 경우에도 낯선사람이 2,024건(69.8%), 지인이 514건(17.7%), 당일 만난사람이 208건(7.2%), 권력관계가 63건(2.2%), 애인이 28건(1.0%) 순으로 그 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재등록사건 2,901건 중 원등록사건 당시의 관계와 동일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2,021건(69.7%)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낯선사람이 낯선사람으로 재등록된 경우가 2,021건 중 1,758건(87.0%)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지인이 178건 (8.8%), 당일 만난 사람이 49건(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11〉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재등록 원등록	계	계부	권력 관계	그 외 가족	낯선 사람	부부	당일 만난 사람	아파트 관리인	애인	지인	직장 동료	친구	친모	친부	친척	학교 선후배	형제
계	2,901	8	63	—	2,024	6	208	8	28	514	12	6	—	12	7	3	2
	[%]	0.3	2.2	—	69.8	0.2	7.2	0.3	1.0	17.7	0.4	0.2	—	0.4	0.2	0.1	0.1
계부	11	4	1	—	4	—	—	—	—	2	—	—	—	—	—	—	—
	[%]	36.4	9.1	—	36.4	—	—	—	—	18.2	—	—	—	—	—	—	—
권력 관계	53	—	20	—	12	—	5	—	2	13	1	—	—	—	—	—	—
	[%]	—	37.7	—	22.6	—	9.4	—	3.8	24.5	1.9	—	—	—	—	—	—
그 외 가족	7	—	1	—	—	—	1	—	—	4	—	—	—	1	—	—	—
	[%]	—	14.3	—	—	—	14.3	—	—	57.1	—	—	—	14.3	—	—	—
낯선 사람	2,126	1	17	—	1,758	4	97	6	5	224	6	2	—	3	1	—	2
	[%]	0.0	0.8	—	82.7	0.2	4.6	0.3	0.2	10.5	0.3	0.1	—	0.1	0.0	—	0.1
부부	2	—	—	—	—	—	—	—	—	2	—	—	—	—	—	—	—
	[%]	—	—	—	—	—	—	—	—	100.0	—	—	—	—	—	—	—
당일 만난사람	201	—	7	—	70	—	49	1	2	67	2	1	—	—	1	1	—
	[%]	—	3.5	—	34.8	—	24.4	0.5	1.0	33.3	1.0	0.5	—	—	0.5	0.5	—
아파트 관리인	1	—	—	—	—	—	—	—	—	1	—	—	—	—	—	—	—
	[%]	—	—	—	—	—	—	—	—	100.0	—	—	—	—	—	—	—
애인	23	—	1	—	4	—	1	—	6	11	—	—	—	—	—	—	—
	[%]	—	4.3	—	17.4	—	4.3	—	26.1	47.8	—	—	—	—	—	—	—
지인	446	3	15	—	170	1	52	1	12	178	3	3	—	4	2	2	—
	[%]	0.7	3.4	—	38.1	0.2	11.7	0.2	2.7	39.9	0.7	0.7	—	0.9	0.4	0.4	—
직장 동료	9	—	1	—	3	—	1	—	—	4	—	—	—	—	—	—	—
	[%]	—	11.1	—	33.3	—	11.1	—	—	44.4	—	—	—	—	—	—	—
친구	2	—	—	—	1	—	—	—	1	—	—	—	—	—	—	—	—
	[%]	—	—	—	50.0	—	—	—	50.0	—	—	—	—	—	—	—	—
친모	1	—	—	—	—	—	—	—	—	1	—	—	—	—	—	—	—
	[%]	—	—	—	—	—	—	—	—	100.0	—	—	—	—	—	—	—
친부	9	—	—	—	1	1	1	—	—	2	—	—	—	4	—	—	—
	[%]	—	—	—	11.1	11.1	11.1	—	—	22.2	—	—	—	44.4	—	—	—
친척	5	—	—	—	1	—	—	—	—	2	—	—	—	—	2	—	—
	[%]	—	—	—	20.0	—	—	—	—	40.0	—	—	—	40.0	—	—	—
학교 선후배	4	—	—	—	—	—	1	—	—	3	—	—	—	—	—	—	—
	[%]	—	—	—	—	—	25.0	—	—	75.0	—	—	—	—	—	—	—
형제	1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100.0	—	—

분석 요약 및 주요 동향

1. 성범죄 분석 요약

-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성폭력범죄⁸⁾ 발생건수는 전체 260,280건이고, 등록 대상사건⁹⁾의 등록 누계 건수는 2018년 기준 74,956건, 재등록사건 등록 누계 건수는 2,901건으로 재등록률은 3.9%이다(부록 <표 5-1-1> 참조).
-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그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2008년 16,234건에서 2017년 32,824건으로 약 2배 증가하였고, 등록대상사건 또한 2008년 264건에서 2018년 14,053건으로 53.2배 증가하였다. 재등록사건의 경우 2009년 1건을 시작으로 2018년 967건으로 증가 하였다.
- 등록대상사건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등록대상자는 2008년 115명을 시작으로 2018년 13,32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개대상자는 2008년 149명에서 2018년 16명으로 감소하였다. 고지대상자 또한 2012년 2,289명에서 2018년 71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낸다.

(1) 발생월

- 성폭력범죄의 발생월을 보면, 전체 성폭력범죄 260,280건 중 7월~8월에 54,228건 (20.9%)(7월 26,930건, 8월 27,298건)이 발생하였고, 1월~2월에는 28,451건 (11.0%)(1월 14,439건, 2월 14,012건)이 발생하였다. 여름철에 성폭력범죄 발생 비율이 겨울철보다 약 2배 이상 많음을 보여준다(부록 <표 5-1-2> 참조).
- 등록대상사건도 비교하여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7월~8월에 16,215건(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1월~2월에 8,782건(11.7%)으로 가장 적었다. 재등록사건 또한 7월~8월에 613건(21.2%)으로 가장 많았고, 1월~2월에 325건(11.2%)으로 가장 적었다.

8) 2018년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의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성폭력범죄

9)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신상정보등록이 된 성범죄 사건

-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성범죄 발생은 계절의 영향에 따라 빈도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발생시간

- 성폭력범죄의 범죄 발생시간을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20:00~03:59 시간대에 42,105건(34.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09:00~11:59 시간대가 7,409건(6.1%)으로 가장 적었다.
- 2014년 이후로는 비교시간대가 변경되었는데, 21:00~23:59 시간대가 19,246건(15.6%)으로 가장 많았고, 09:00~11:59 시간대가 8,874건(7.2%)으로 가장 적었다. 비교시간대가 변경되어도 저녁시간대의 성폭력범죄 발생이 높고, 아침시간대가 적음을 알 수 있다(부록 <표 5-1-3>, <표 5-1-4> 참조).
- 등록대상사건도 비교하여 살펴보면, 21:00~23:59 시간대가 12,105건(16.1%)으로 가장 많았으며, 09:00~11:59 시간대가 4,955건(6.6%)으로 가장 적었다.
- 재등록사건은 21:00~23:59 시간대에 449건(15.5%)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09:00~11:59에 239건(8.2%)이 발생하여 가장 적었다.
- 성폭력범죄와 등록대상사건, 재등록사건 모두 21:00~23:59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 반면, 09:00~11:59 시간대에 가장 적게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3) 성별

- 성폭력범죄자의 성별을 보면, 240,184명 중 여성은 4,886명으로 2.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1% 내외를 유지하다 2012년 처음 2%대 비율을 보였으며, 그 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부록 <표 5-1-5> 참조).
- 등록대상사건도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체 74,956건 중 등록대상자가 여성인 경우가 666건(0.9%)이고, 성폭력범죄자와 다르게 여성인 경우 2%이상의 비율을 보인 적 없이 1%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재등록사건은 전체 2,901건 중 등록대상자가 여성인 경우는 3건으로, 등록대상 사건의 경우보다 더 미미한 수치를 나타낸다.

- 종합적인 성별 비교 결과, 성폭력범죄자와 등록대상사건, 재등록사건의 경우에 모두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적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등록대상사건의 여성 비율이 성폭력범죄자 여성 비율보다 더 적게 나타나고 있다.

(4) 연령

- 성폭력범죄자의 연령을 보면, 19~30세가 67,341명(28.0%)으로 가장 많으며, 14세 미만이 109명(0.1%)으로 가장 적다. 61세 이상도 14,901명으로 6.2% 비율을 보이고 있다(부록 〈표 5-1-6〉 참조).
- 등록대상사건도 비교하여 살펴보면, 20~30대가 34,170건(45.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19세 이하는 297건(0.4%)이다. 60세 이상도 9,824건(13.0%)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성범죄자의 연령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지만, 등록 대상자의 60대 이상의 경우 성범죄자의 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5) 직업

- 성폭력범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이 52,113명(21.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회사원 41,092명(17.1%), 학생 33,533명(14.0%) 순이다(부록 〈표 5-1-7〉 참조).
- 등록대상사건도 비교하여 살펴보면, 무직이 27,585건(36.8%)으로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뒤이어 단순노무종사자 13,772건(18.4%), 사무종사자 10,897건(14.5%)으로, 이 두 직업이 성범죄자의 회사원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다만, 학생의 경우 2,272건(3.0%)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성범죄자의 학생수와 대비된다.
- 재등록사건의 경우 무직이 1,296건(4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노무자가 544건(18.8%)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사무종사자가 326건(11.2%) 순으로 나타나, 등록대상사건의 비율과 같은 순서를 보였다.

(6) 국적

- 성폭력범죄자의 국적을 보면, 240,184명 중 내국인은 234,984명(97.8%)이며, 외국인은 5,200명(2.2%)이다. 외국인의 국적으로는 중국이 1,827명(3.5%)으로 가장 많고, 미국 439명(8.4%), 우즈베키스탄 303명(5.8%) 순이다(부록 <표 5-1-8> 참조).
- 등록대상사건도 비교하여 살펴보면, 내국인이 73,250건(97.7%), 외국인이 1,706건(2.3%)으로 나타나고 있다.
- 외국인의 국적으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중국이 601건(35.2%), 미국이 120건(7.0%), 우즈베키스탄이 108건(6.3%)이다.
- 재등록사건도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체 10건 중 중국이 3건, 대만이 3건 등이다.
- 2018년도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명)¹⁰⁾과도 비교해보면, 신상등록대상 외국인 대비 체류 외국인 현황 비율이 0.1%~0.3%대로 어느 특정 국가의 등록사건의 비율이 높지 않음을 나타난다.
- 성폭력범죄자와 등록대상사건의 국적 분석 결과가 대체로 비슷하나, 등록대상 사건이 성폭력범죄자보다 중국의 비율이 높고, 미국의 비율은 다소 낮은 편이다.

2. 성범죄 재범자 분석 요약

- 2008년부터 2017년 동안 등록된 전체 74,956건의 등록대상사건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은 2,901건이다. 재등록된 사건의 원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재등록된 전체 2,901건 중 원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재등록된 건수는 1,811건 (62.4%)으로 나타났다.
 - 원등록 및 재등록사건 선고형 분포를 살펴보면, 원등록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41.4%, 벌금형 32.4%, 징역형 24.3%, 선고유예 1.9%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재등록사건은 징역형 55.1%, 집행유예 30.3%, 벌금형 14.3%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원등록사건보다 징역형 비율은 높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10) 통계청. e-나라지표.

전체 등록사건은 집행유예 41.4%, 벌금형 30.2%, 징역형 26.1%, 선고유예 2.2%로 원등록사건의 선고형 분포와 비슷하다.

- (3) 원등록 및 재등록사건 등록 유형을 살펴보면, 원등록사건의 경우 등록대상사건이 72.2%, 공개대상사건 8.2%, 고지대상사건 19.6%로 나타났다. 재등록사건의 경우 등록대상사건 61.2%, 공개대상사건 0.9%, 고지대상사건 37.9%로 원등록사건보다 고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등록사건은 등록대상사건 80.9%, 공개대상사건 3.5%, 고지대상사건 15.6%로, 상대적으로 등록사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4) 원등록 및 재등록사건의 접촉 범죄 유무를 살펴보면, 원등록사건의 경우 접촉 범죄가 78.4%, 비접촉 범죄가 21.6%로 나타났고, 재등록사건의 경우 접촉 범죄가 75.4%, 비접촉 범죄가 24.6%로 나타나, 원등록사건보다 비접촉 범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등록사건은 접촉 범죄 80.7%, 비접촉범죄 19.3%로 원등록·재등록사건 보다 접촉범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5) 원등록 시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 받은 사건 182건 중 58.8%가 재등록 시 다시 부과처분을 받았고, 미부과 사건 2,719건 중 15.4%가 재등록 시 부착처분을 받았다. 재등록사건의 전자장치 부착 부과율은 18.1%이며, 원등록사건의 부과율은 6.3%로 모두 전체 등록사건의 전자장치 부착 부과율인 5.0%보다 높다.

- (6) 원등록 및 재등록사건이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은 614건(22.0%, 미상제외)으로 나타났다.

- (7) 원등록 및 재등록사건이 같은 달에 발생한 사건은 17.7%로 나타났다. 특히 7월~8월에 원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여, 그 비율이 29.4%로 나타났다.

- (8) 원등록사건 당시 대상자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재차 음주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의 비율은 26.6%로 나타났다.

- (9) 원등록사건과 같은 범죄로 재등록된 비율은 56.8%이다. 강간 등은 32.3%가 다시 강간 등으로 등록되었고, 강제추행은 70.3%가 강제추행으로 다시 등록되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5.0%가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등록되었다. 이외 공중밀집장소추행 61.4%, 성적목적침입 33.3%, 통신매체이용음란 48.2%, 음란물 제작배포 37.5%, 성매수 38.2%, 성매매강요 35.3% 등이 같은 범죄로 재등록 되었다.

- (10) 원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일치여부를 살펴보면, 36.5%가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 그 중 지하철·기차의 경우 25.7%, 목욕탕·찜질방·사우나가 14.0%, 버스가 8.8%로 나타났다.
- (11) 원등록 및 재등록 시 대상자의 직업을 비교해보면, 같은 직업인 비율이 79.7% (미상 제외)이다. 그 중 무직 52.3%, 단순노무자 16.5%, 사무종사자 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 (12) 원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 시 같은 범행 수단 및 방법을 사용한 비율은 25.3% (해당없음 등 제외)로 이 중 재차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한 경우가 47.3%, 위협·폭력을 사용한 경우가 39.6%, 금품을 사용한 경우가 5.2%로 나타났다.
- 재등록사건을 살펴본 결과, 재등록자의 62.4%가 3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을 알 수 있다. 재등록 시에는 원등록 때보다 중한 선고를 받았고, 고지 처분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대상자의 직업, 죄명, 범행장소가 동일한 것으로 재등록되는 비율이 50% 이상을 나타낸다.

3. 신상정보등록은 지속적 증가, 공개·고지 대상은 급감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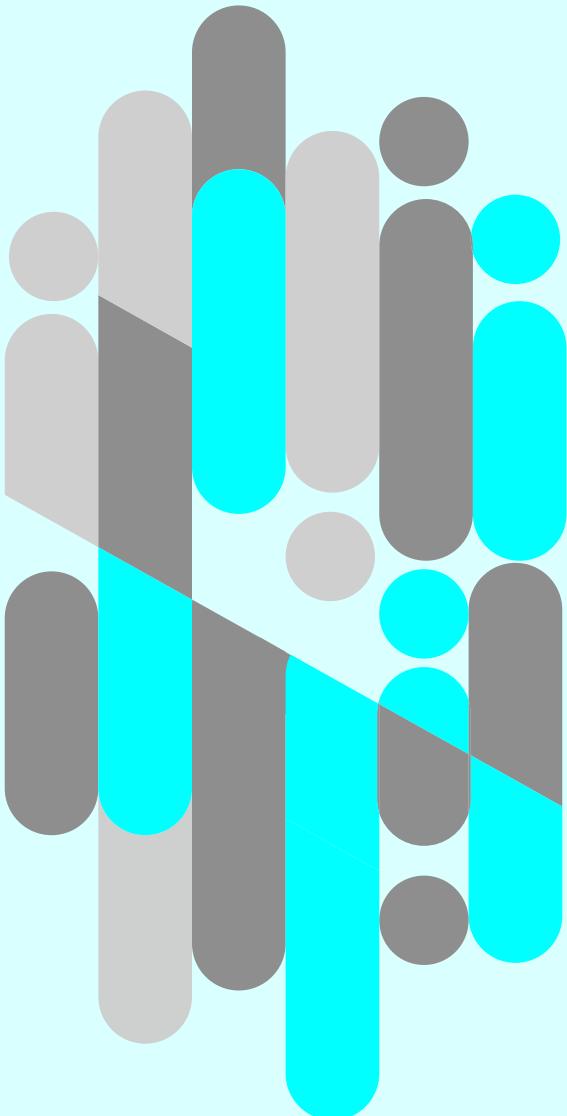
- 신상정보등록사건은 2008년 264건에서 2018년 14,053건으로 53.2배 증가하였다. 2011년부터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되었고, 2013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등이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신상정보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증가되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에 신상정보등록이 1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 하지만 등록되는 모든 성범죄가 증가된 것은 아니다. 강간 등의 경우는 2014년 3,246건에서 2018년 2,470건으로 감소하였고, 전체 등록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44.8%에서 2018년 17.6%로 감소하였다.
- 반면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강제추행은 2013년 2,166건에서 2018년 7,496건으로 3.4배 늘어났고, 전체 등록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36.1%에서 2018년 53.3%로 늘어났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로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 이처럼 강간 등의 범죄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범죄의 증가로 등록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개·고지대상자는 감소하고 있다.
- 등록유형별로 보면, 등록·공개는 2008년 149건에서 2011년 1,016건으로 증가한 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되었고 2018년에는 16건에 불과하였다. 등록·공개·고지는 고지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 455건에서 2013년 2,284건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2014년부터 꾸준히 줄어들었고 2018년에는 710건에 그쳤다.
- 등록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된 2014년에 등록대상사건이 78.8%, 등록·공개대상 사건이 0.7%, 등록·공개·고지대상사건이 20.5%를 차지하였으나, 2018년에는 등록대상사건이 94.8%인 반면 등록·공개대상사건은 0.1%, 등록·공개·고지대상 사건은 5.1%에 불과할 정도로 등록대상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개·고지 대상사건은 감소하고 있다.

4.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록 증가

- 최근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여성은 성폭행 범죄보다 불법촬영에 더 높은 불안감을 보인다.¹¹⁾ 불법촬영에 대해 불안감이 큰 것은 피해자가 일상생활 중 부지불식간에 촬영을 당하고,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 피해정도가 막심하며, 한번 배포된 영상을 영구히 삭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2013년에 신상등록 성범죄에 처음 포함되었다. 2013년 412건이 등록된 이후 매년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2,388건으로 5.8배로 급증하였다. 선고형을 보면 벌금형(56.5%), 집행유예(30.3%), 징역(8.2%) 순이고 대상자 연령은 30대(19.7%), 20대(16.0%), 19세 이하(9.4%)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19~24세(25.0%), 25~29세(14.3%) 30대(11.7%) 순으로 나타났다.
- 주목할 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동종범죄로 재등록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원등록된 사건은 428건인데, 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재등록된 건수가 321건(75.0%)에 이른다. 또한 비접촉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이 접촉 범죄인 강제추행으로 36건(8.4%), 강간으로도 14건(3.3%)이 재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사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대상자의 연령이 30대 이하가 45.1%의 젊은 층이라는 점, 동종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과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¹²⁾ 등을 고려하여 교육 강화 및 전문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11) 서울 여성 3,892명 대상으로 범죄별 불안도 설문조사 결과 : 불법촬영 1,246명(32.0%), 성폭행·추행 1,131명(29.1%), 주거침입 910명(23.4%), 스토킹 595명(15.3%) 순임[2019년 서울경찰청 자료]

12) 비접촉 성범죄는 성행위 방식이나 성행위 본질에서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속하는 성적 일탈 유형으로 DSM-5에서 변태성욕장애에 포함된다. 범죄 행위에 따라 단순 경미한 행위에서부터 심각한 행위까지 그 성적 일탈 범죄가 매우 광범위하고 상황에 따라서 심각한 성도착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접촉 성범죄자들이 성범죄 '경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주로 비접촉 성범죄다.



제4편

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 현황

보호관찰 현황

-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하나로써,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 대하여 교정시설 또는 소년원 등에 수용하여 처벌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자유 활동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돋고 재범을 방지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중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1994년 4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가 흉포화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1년의 보호관찰을,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그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1996년 7월 1일 실시된 「형법」 및 1997년 1월 1일 실시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관찰이 확대되었으며, 2008년 9월 1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실시하였다.
- 그리고 2000년 7월 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더욱 확대되었고, 2010년 3월에 발생한 부산 여중생 강간살해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2011년 7월 24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다시 한 번 강화되었다.
- 보호관찰소에서는 사범에 따른 개별처우의 실천,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10년 사범별 지도감독 매뉴얼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부터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6월부터는 집중 면담과 외부전문가 연계상담을 실시하게 되었다. 향후 보호관찰은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조기개입 및 치료적 보호관찰이 시행 및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1〉 근거법률에서 성폭력범죄자 대상 보호관찰 도입 시기

1994. 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0. 4. 15. 「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
1996. 7. 1.	「형 법」
2009. 8. 9.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2012. 12.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2010. 7. 2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도입 시기는 시행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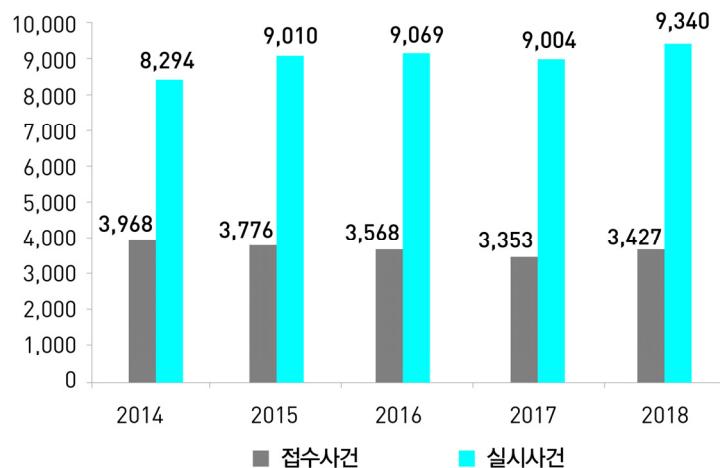
1. 접수사건 및 실시사건(병과자, 전자감독 포함)

- 〈표 4-1-2〉는 성폭력을 저지른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 접수사건 및 실시사건을 나타낸 것이다. 접수사건은 2014년 3,968건을 기록하였고,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17년 3,353건까지 감소했지만 2018년 3,427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실시사건은 2014년 8,294건이었고, 2015년 9,010건으로 증가한 이후, 2017년까지 약 9,000건 내외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8년 9,34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보호관찰 접수사건 및 실시사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접수사건	3,968	3,776	3,568	3,353	3,427
실시사건	8,294	9,010	9,069	9,004	9,340

〈그림 4-1-1〉 보호관찰 접수사건 및 실시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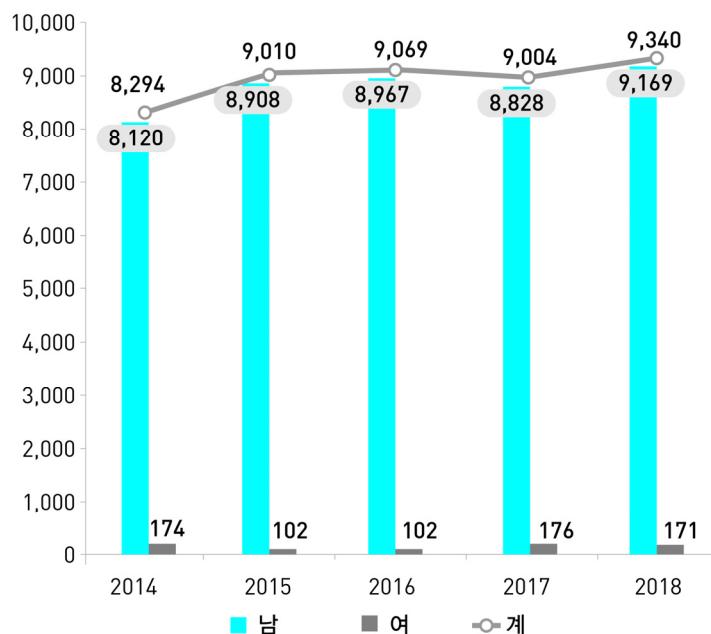
2. 성별(실시사건)

- 〈표 4-1-3〉은 성별에 따른 보호관찰 실시사건을 나타낸 것이다. 남성 실시사건은 2014년 8,120건, 2015년 8,908건, 2016년 8,967건, 2017년 8,828건, 2018년 9,169건 등을 기록하였다. 여성의 경우 2014년 174건, 2015년과 2016년에는 2014년 대비 하락한 102건을 기록하였고 2017년 176건, 2018년 171건 등을 기록하였다. 전체 사건 대비 남성 사건이 약 98%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성별에 따른 보호관찰 실시사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8,294	9,010	9,069	9,004	9,340
남	8,120	8,908	8,967	8,828	9,169
여	174	102	102	176	171

〈그림 4-1-2〉 성별에 따른 보호관찰 실시사건



3. 재범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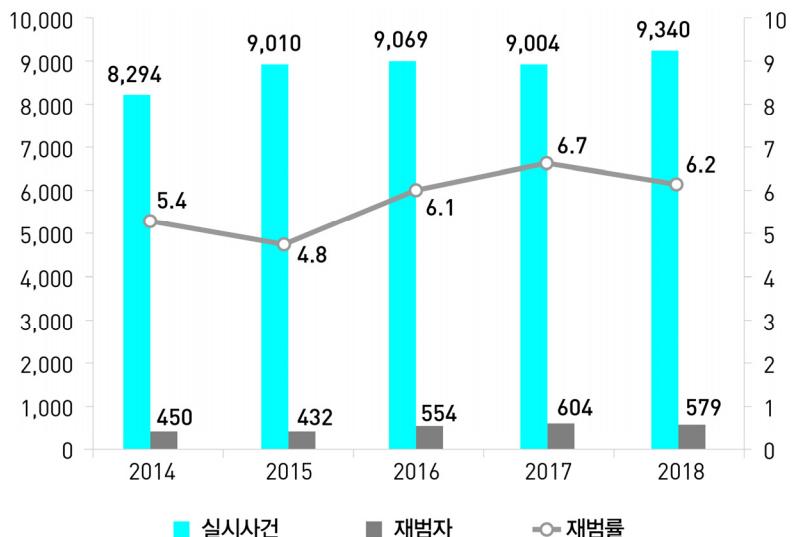
(1) 성폭력사범 재범률(전체)

- 〈표 4-1-4〉는 성폭력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 전체 8,294건 중 450건의 재범이 발생하여 5.4%의 재범률을 기록하였고, 2015년에는 전체 9,010건 중 432건의 재범이 발생해 전년보다 더 낮아진 4.8%의 재범률을 보였다. 2016년에는 6.1%, 2017년에는 6.7%, 2018년에는 6.2%의 재범률을 보였다.

〈표 4-1-4〉 성폭력사범 재범률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실시사건	8,294	9,010	9,069	9,004	9,340
재범자	450	432	554	604	579
재범률	5.4	4.8	6.1	6.7	6.2

〈그림 4-1-3〉 성폭력사범 재범률



(2) 성폭력사범 재범률(동종)

- 〈표 4-1-5〉는 보호관찰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을 나타낸 것이다. 재범자의 수는 2014년 156명, 2015년 154명, 2016년 164명 등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17년 190명 및 2018년 185명의 재범자가 발생하여, 2017년 2.1%, 2018년 2.0%의 재범률을 기록했다.

〈표 4-1-5〉 성폭력사범 재범률(동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실시사건	8,294	9,010	9,069	9,004	9,340
재범자	156	154	164	190	185
재범률	1.9	1.7	1.8	2.1	2.0

-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원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 1995년 개정된 「형법」에 사회봉사명령이 규정되었고 1996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에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다. 2011년 4월에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처분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2년 12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확대되었다.
- 보호관찰소에서는 성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여성, 아동, 장애인 제외)에서의 협력 집행 및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복지 지원, 영세농가 일손 돋기 등 농촌지원, 태풍·폭우·폭설로 인한 재난복구 등 대민지원 사회봉사 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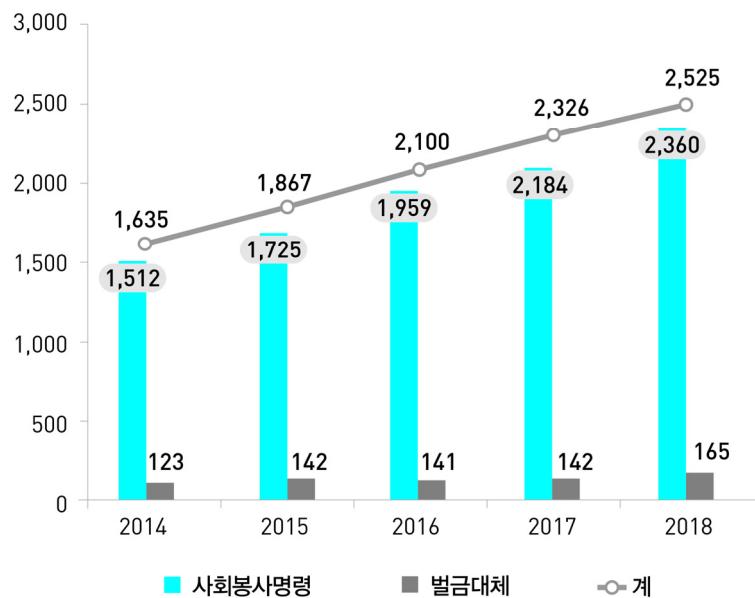
1. 접수사건

- <표 4-2-1>은 성폭력 대상자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 1,512건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고 이어 2015년 1,725건, 2016년 1,959건, 2017년 2,184건, 2018년 2,360건 등이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벌금대체 사회봉사명령 접수현황은 2014년 123건, 2015년 142건, 2016년 141건, 2017년 142건, 2018년 165건 등으로 5년 동안 수치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635	1,867	2,100	2,326	2,525
사회봉사명령	1,512	1,725	1,959	2,184	2,360
벌금대체	123	142	141	142	165

〈그림 4-2-1〉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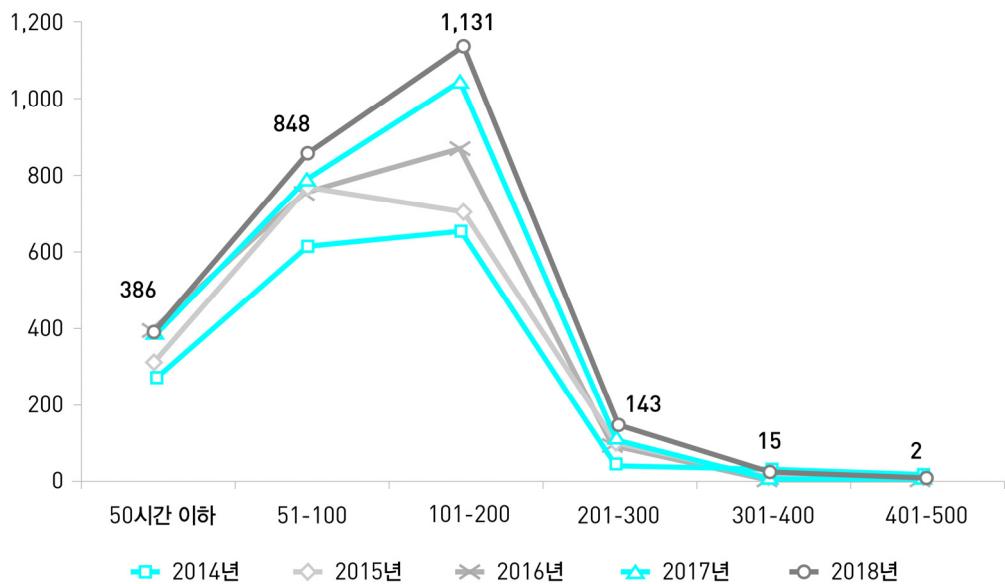
2. 부과시간

- 〈표 4-2-2〉는 접수된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시간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주로 51~200시간이 많이 접수되었는데 2014년에는 전체 1,635건 중 101~200시간이 648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5년에는 51~100시간이 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에는 101~200시간 862건, 2017년에 101~200시간이 1,037건, 2018년에 101~200시간이 1,131건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4-2-2〉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간별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635	1,867	2,100	2,326	2,525
50시간 이하	278	302	394	383	386
51~100	611	767	748	779	848
101~200	648	692	862	1,037	1,131
201~300	46	89	92	115	143
301~400	33	14	4	9	15
401~500	19	3	0	3	2

〈그림 4-2-2〉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간별 현황



수강명령(이수명령) 현황

-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강의, 토론, 심신훈련, 시청각 교육 등을 부과하여 범죄성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수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수강명령의 주요 집행 분야로는 전문프로그램으로써 성폭력 치료, 가정폭력 치료, 약물 및 알코올 치료 등이 있으며 일반프로그램으로써 교통사범을 대상으로 한 준법운전 수강명령,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 성매매방지, 도박치료, 소년 수강명령 등이 있다. 이 중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치료는 흉포화된 성폭력자 및 일반범죄자 또는 폭력범죄자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성범죄자들에게 치료적 접근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성범죄자들의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수정하고 건강한 성 인식을 심어주며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 성폭력 치료는 1998년 1월 1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본격 실시하게 되었고, 2010년 4월 15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한 이수명령이 도입됨에 따라 크게 확대되었다. 성폭력 치료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소 및 교도소, 민간에서는 성폭력상담소 등이 실시하고 있는데, 보호관찰소에서는 임상심리사 등 전문자격을 갖추거나 다양한 분야의 수련을 거친 보호관찰관이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도소에서는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부과된 성범죄자에게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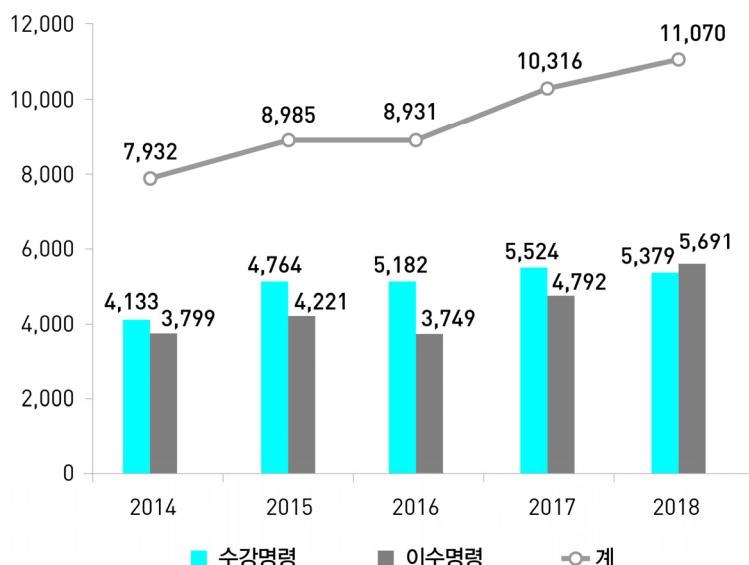
1. 접수현황

- 〈표 4-3-1〉은 성폭력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접수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의 전체 접수건수는 7,932건이었고, 2016년 8,931건으로 약간 줄었던 것을 제외하면 5년 동안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수강명령의 경우 2014년 4,133건에서 2017년 5,524건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 5,379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이다. 이수명령은 2014년 3,799건에서 2015년 4,221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 3,749건으로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후 2017년 4,792건 및 2018년 5,69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수강명령 건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성폭력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접수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7,932	8,985	8,931	10,316	11,070
수강명령	4,133	4,764	5,182	5,524	5,379
이수명령	3,799	4,221	3,749	4,792	5,691

〈그림 4-3-1〉 성폭력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접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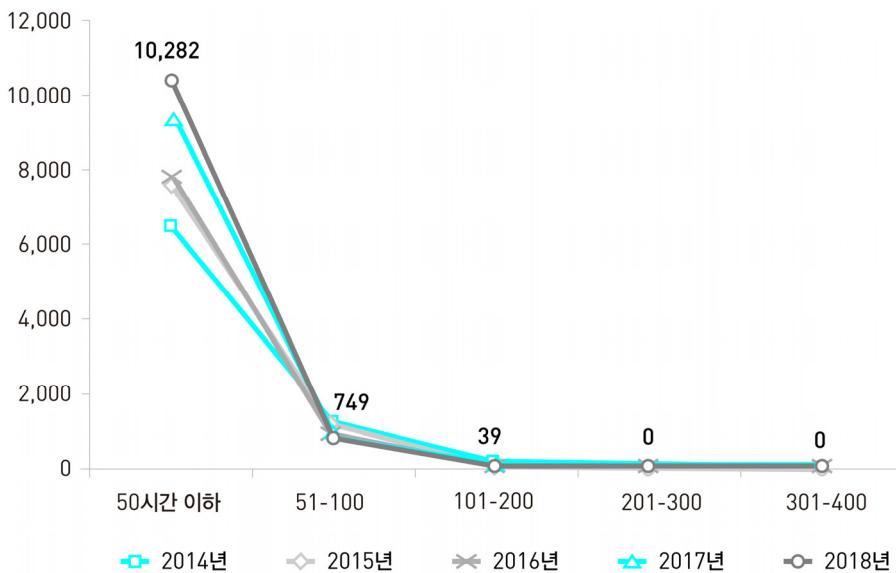
2. 부과시간

- 〈표 4-3-2〉는 수강명령의 시간별 처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50시간 이하 처분이 가장 많았는데 2014년 6,554건, 2015년 7,591건, 2016년 7,770건, 2017년 9,303건, 2018년 10,282건 등으로 51시간 이상 처분보다 많이 부과되었다. 51시간 이상의 처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수강명령 시간별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7,932	8,985	8,931	10,316	11,070
50시간 이하	6,554	7,591	7,770	9,303	10,282
51~100	1,226	1,267	1,082	957	749
101~200	146	127	78	56	39
201~300	6	0	1	0	0
301~400	0	0	0	0	0

〈그림 4-3-2〉 수강명령 시간별 현황



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구성

- 〈표 4-3-3〉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5회기)을 나타낸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 보면 자신의 현재 상태를 되돌아보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동기강화, 성에 대한 정확한 내용 이해, 왜곡된 인지 수정, 피해자에 대한 공감, 마지막으로 자존감 향상과 긍정적 감정을 통한 변화로 구성된다. 주로 일 8시간 5회기로 구성되며 대상자로 하여금 올바른 성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표 4-3-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구성

주 제	내 용
1회기 동기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ssion 1 : 자기소개 및 프로그램 소개 Session 2 : 사건 이후 부정적 감정 다루기 Session 3 : 사건개요 털어놓기 Session 4 : 인생운전, 자신이해하기 Session 5 : 인생목표 설정하기
2회기 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ssion 6 : 현행 법령 이해하기 Session 7 :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Session 8 : 성 관련 경험 탐색하기 Session 9 ~ 10 : 건강한 성(性)
3회기 인지적 왜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ssion 11 : 인지행동 치료 모델 소개 Session 12 : 인지적 왜곡 이해하기 Session 13 : 강간통념의 수정 Session 14 : 성폭력 발생 당시의 기대 검토하기 Session 15 ~ 16 : 계획성 인정하기 (1), (2)
4회기 공감 및 재범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ssion 17 : 피해자 고통 인식하기 Session 18-1, 2 : 역할극,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Session 19 ~ 20 : 재범방지 모델 Session 21 : 스트레스 대처하기
5회기 변화를 위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ssion 22 : 자기조절(분노, 음주, 환경) Session 23 ~ 24 : 대인관계 능력증진(가족, 이성) Session 25 : 자존감 향상 Session 26 : 긍정적 감정 채우기

(2) 심리치료 프로그램(교정)

- 교정본부는 성폭력사범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돋기 위해 2011년 10월부터 서울 남부심리치료센터를 시작으로 포항·밀양·청주·군산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해 왔다.
- 이후 성폭력사범 및 정신질환 수용자, 중독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2016년 11월 기존 교정심리치료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심리치료센터”로 통합하고 심리치료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 〈표 4-3-4〉는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재범위험성과 이수명령 시간에 따라 기본과정, 집중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뉘며, 과정에 따라 운영시간이 상이하다. 기본과정은 전 교정기관에서 실시하며 집중과정은 전국 11개 기관, 심화과정은 5개 심리치료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표 4-3-4〉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교정)

구 분		기본과정	집중과정	심화과정
대상	재범위험성	저	중	고
	이수명령시간	100시간 이하	200시간 이하	200시간 초과
운영시간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운영기관		전 교정기관	집중기관*	심리치료센터**

* 집중기관(11) : 안양·의정부·여주·대구·창원·안동·공주·충주·전주·순천·목포

** 심리치료센터(5) : 서울청(서울남부), 대구청(포항, 밀양), 대전청(청주), 광주청(군산)

(3) 심리치료 실적(교정)

- 〈표 4-3-5〉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폭력 수용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수료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14년 2,070건, 2015년 2,167건, 2016년 2,316건, 2017년 2,229건, 2018년 2,226건을 수료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3-5〉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실적(교정)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본과정	1,579	1,702	1,839	1,765	1,825
집중과정	304	206	221	244	197
심화과정	187	259	256	220	204
합 계	2,070	2,167	2,316	2,229	2,226

(4) 이수명령 집행 실적(교정)

- 〈표 4-3-6〉은 이수명령 집행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에는 963명, 2015년에는 1,531명을 집행했고, 2016년에는 2,014명으로 가장 많이 집행하였으며, 2017년 1,853명, 2018년 1,892명을 집행하였다.

〈표 4-3-6〉 이수명령 집행 실적(교정)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폭력	963	1,531	2,014	1,853	1,892

전자감독 현황

- 전자감독제도는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특정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하여 2008년 9월 1일 전면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작되었는데 이후 강력범죄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유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에 확대되어 시행 중으로, 2019년 4월에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1:1 보호관찰을 실시하게 되었다. 전자감독 제도 시행 후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1.9%로 제도 시행 전 5년간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률 14.1% 대비 1/7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 전자감독 실시 죄명 추가 현황

2008. 9. 1.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시행
2009. 8. 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추가 시행
2010. 7.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 살인죄 추가 시행
2012. 12.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 강도죄 추가 시행
2019. 4.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및 실시

※ 도입 시기는 시행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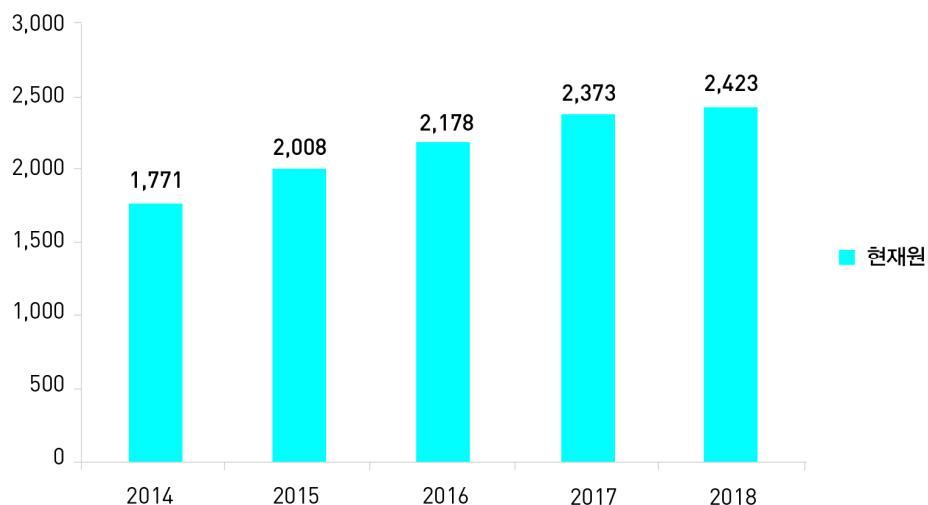
1. 현재원

- 〈표 4-4-2〉는 연도별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현재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 1,771명을 비롯하여 2015년 2,008명, 2016년 2,178명, 2017년 2,373명, 2018년 2,423명의 성폭력 대상자를 집행 중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3.4%, 2016년에는 8.5%, 2017년에는 9.0% 등 증가율을 보였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1% 증가율을 보였다.

〈표 4-4-2〉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현재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771	2,008	2,178	2,373	2,423

〈그림 4-4-1〉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현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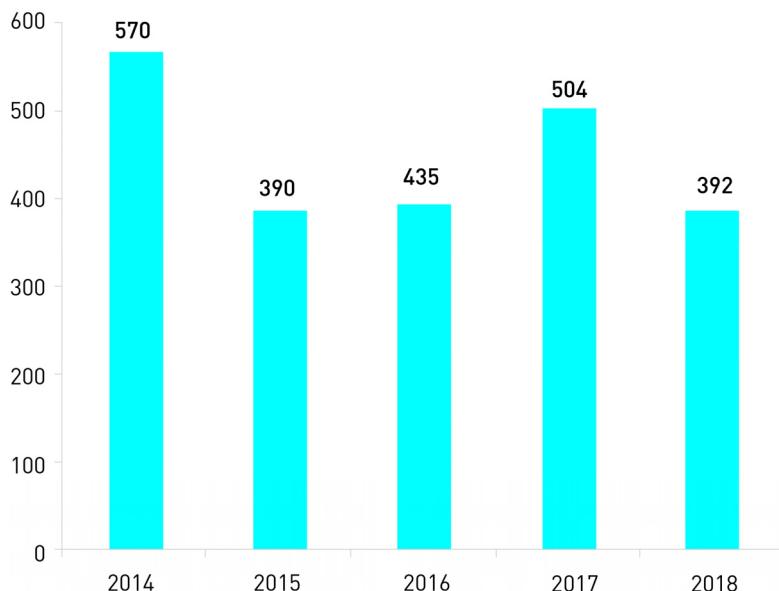
2. 접수사건

- 〈표 4-4-3〉은 연도별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접수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에 570건의 성폭력 대상자가 접수되었고, 2015년 390건, 2016년 435건, 2017년 504건, 2018년 392건 등이 접수되었다.

〈표 4-4-3〉 연도별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접수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570	390	435	504	392

〈그림 4-4-2〉 연도별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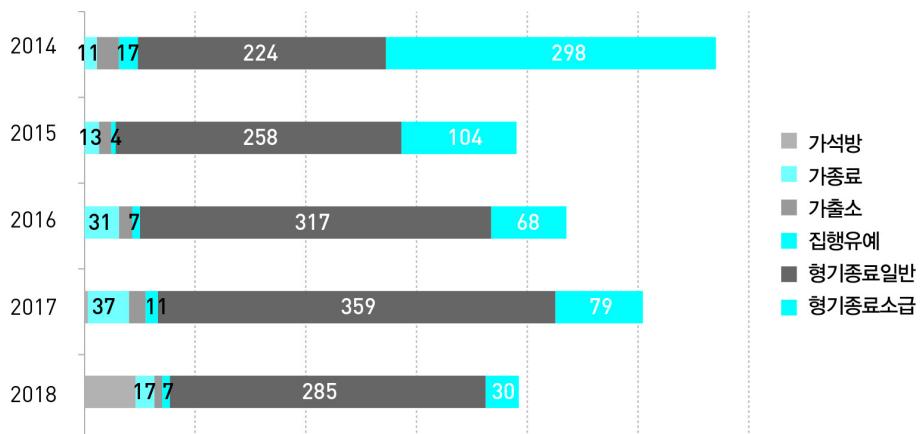
3. 처분유형

- 〈표 4-4-4〉는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처분 유형별 접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 접수된 570건 중 형기종료 대상자가 522건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소급 형기종료 대상자가 298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390건이 접수되었는데 형기종료가 362건이었으며 그 중 일반 형기종료 대상자가 258건이었다. 2016년에도 전체 435건 중 일반 형기종료 대상자가 31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7년에는 전체 504건 중 첫 가석방 성폭력 대상자가 접수되었으며 3건을 기록하였다. 2018년에는 392건의 접수 건수 중 일반 형기종료 대상자가 285건이었는데 2014년 가장 많았던 소급 형기종료 건수는 30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처분 유형별 접수 현황

연도	계	가석방	가종료	가출소	집행유예	형기종료		
						계	일반	소급
2014	570	-	11	20	17	522	224	298
2015	390	-	13	11	4	362	258	104
2016	435	-	31	12	7	385	317	68
2017	504	3	37	15	11	438	359	79
2018	392	46	17	7	7	315	285	30

〈그림 4-4-3〉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처분 유형별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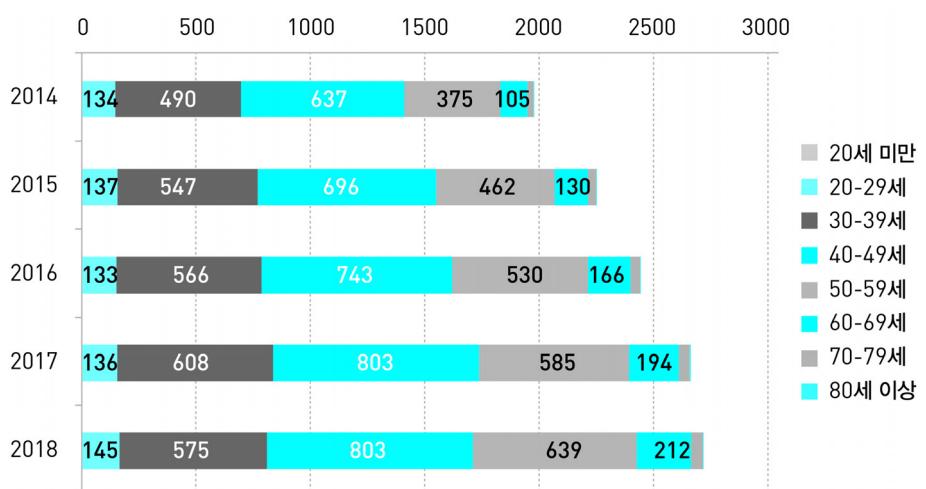
4. 연령

- 〈표 4-4-5〉는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연령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 1,771명의 현재원 중 40~49세가 63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490명, 50~59세가 37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5년에는 40~49세 696명, 30~39세 547명, 50~59세 462명 등의 순이었고, 2016년에는 40~49세 743명, 30~39세 566명, 50~59세 53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40~49세 803명, 30~39세 608명, 50~59세 585명 등의 순이며 2018년에는 40~49세가 80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50~59세 639명, 30~39세 575명으로 이전 4년간과 달리 50~59세가 30~39세보다 많았다. 이러한 연령별 현황을 통해 30~59세까지의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평균 80%를 상회하는 등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5〉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연령별 현황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2014	3	134	490	637	375	105	24	3	1,771
2015	1	137	547	696	462	130	32	3	2,008
2016	0	133	566	743	530	166	37	3	2,178
2017	0	136	608	803	585	194	42	5	2,373
2018	0	145	575	803	639	212	46	3	2,423

〈그림 4-4-4〉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연령별 현황



5. 부착명령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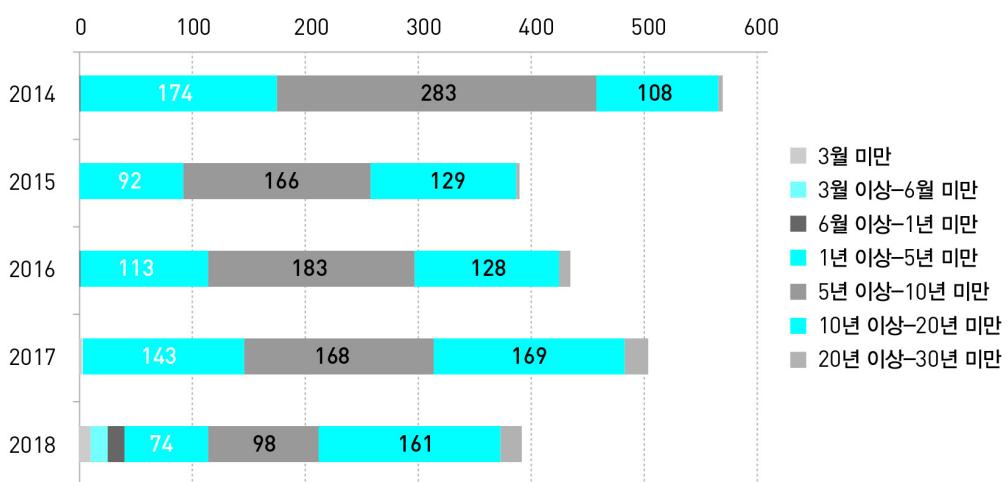
- 〈표 4-4-6〉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부착명령 기간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 접수된 570건 중 5년 이상~10년 미만의 사건이 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5년 미만 사건이 174건, 10년 이상~20년 미만 사건이 108건으로 그 다음을 기록하였다.
- 2015년에는 전체 390건 중 5년 이상~10년 미만이 166건으로 많았으며 10년 이상~20년 미만 사건이 129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 1년 이상~5년 미만이 92건 접수되었다.

- 2016년에는 5년 이상~10년 미만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20년 미만이 128건, 1년 이상~5년 미만이 113건을 기록하였다.
- 2017년에는 10년 이상~20년 미만이 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168건, 1년 이상~5년 미만이 14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 2018년에는 10년 이상~20년 미만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 98건, 1년 이상~5년 미만 74건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록을 살펴본 결과, 10년 이상~20년 미만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6〉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부착명령 기간별 현황

부착기간	3월 미만	3월 이상~6월 미만	6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계
2014	0	0	1	174	283	108	4	570
2015	0	0	0	92	166	129	3	390
2016	0	0	1	113	183	128	10	435
2017	2	1	0	143	168	169	21	504
2018	10	15	15	74	98	161	19	392

〈그림 4-4-5〉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부착명령 기간별 현황



성충동 약물치료 현황

- 성충동 약물치료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왜곡된 성 의식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이다.
- 아동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성폭력범죄가 흉포화되자 2010년 7월 23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1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판·결정 및 치료감호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부과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약물 투여를 하는 것과 더불어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요원 등 전문가에 의해 심리치료를 하는 것을 수반한다.

1. 집행

- 〈표 4-5-1〉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집행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개시된 대상자는 2014년 4명, 2015년 1명, 2016년 7명, 2017년 5명, 2018년에는 10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기준 현재원은 22명이다.

〈표 4-5-1〉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현황

구분 연도	개시				종료				현재원				대기 법원 판결
	소계	법원 판결	가종료 가출소	가석방	소계	법원 판결	가종료 가출소	가석방	소계	법원 판결	가종료 가출소	가석방	
2014	4	-	4	-	-	-	-	-	7	-	7	-	12
2015	1	-	1	-	1	-	1	-	7	-	7	-	18
2016	7	2	5	-	2	-	2	-	12	2	10	-	20
2017	5	-	5	-	4	-	4	-	13	2	11	-	20
2018	10	3	7	-	1	-	1	-	22	5	17	-	18

2. 판결

- 〈표 4-5-2〉는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정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법원에서는 2014년 6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8년 1건 등의 판결을 하였고 치료감호 심의위원회에서는 2014년 5건, 2016년 5건, 2017년 6건, 2018년 7건 등을 결정하였다.

〈표 4-5-2〉 연도별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정 현황

구분 연도	합계	법원판결						가종료· 가출소
		소계	1년	2년	3년	5년	7년	
2014	11	6	1	2	1	2	-	5
2015	6	6	1	3	-	-	2	-
2016	9	4	-	-	1	3	-	5
2017	6	-	-	-	-	-	-	6
2018	8	1	-	-	-	1	-	7
합계	40	17	2	5	2	6	2	23

3. 죄명

- 〈표 4-5-3〉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한 죄명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강간 등 죄의 경우 2014년 9건, 2015년 6건, 2016년 7건, 2017년 4건, 2018년 7건 등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가 실시되었다. 강제추행의 경우 2014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8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 4-5-3〉 성충동 약물치료 죄명별 현황

구분 연도	합계	강간 등				강제추행			
		소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형법 위반	청소년성 보호법 위반	소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형법 위반	청소년성 보호법 위반
2014	11	9	9	-	-	2	1	1	-
2015	6	6	4	1	1	-	-	-	-
2016	9	7	6	1	-	2	1	1	-
2017	6	4	4	-	-	2	1	1	-
2018	8	7	3	3	1	1	-	-	1
합계	40	33	26	5	2	7	3	3	1

4. 치료내용

- 성충동 약물치료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판·결정(최대 15년) 및 치료감호심의 위원회의 결정(최대 3년)으로 부과되는데 부과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약물 투여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에 1회 실시하며,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심리치료는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해 월 1회 이상 집행한다. 201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재범자는 없다.

〈표 4-5-4〉 치료지정 병원

연번	기관명	업무	소재지
1	치료감호소	감정 및 치료기관	공주
2	경북대학교병원	감정 및 치료기관	대구
3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정 및 치료기관	안산
4	국립중앙의료원	감정 및 치료기관	서울
5	서울대학교병원	감정 및 치료기관	서울
6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감정 및 치료기관	서울
7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감정 및 치료기관	원주
8	원광대학교병원	감정 및 치료기관	익산
9	전주예수병원	치료기관	전주
10	신창사랑병원	치료기관	광주
11	단국대학교병원	치료기관	천안
12	김해중앙병원	치료기관	김해
13	조선대학교병원	치료기관	광주
14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치료기관	창원
15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치료기관	영천
16	정읍사랑병원	치료기관	정읍

5. 심리치료 프로그램

-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은 정신성적장애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성적장애는 흔히 성도착증이라고 일컫는데 노출증, 소아기호증, 관음증, 물품음란증 등이 있다. 치료감호 대상으로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 국립법무병원에서는 주치의가 피치료 감호자의 증상 및 정도에 따라 심리 치료, 약물치료, 재활 치료 등을 하고 있다.

〈표 4-5-5〉 국립법무병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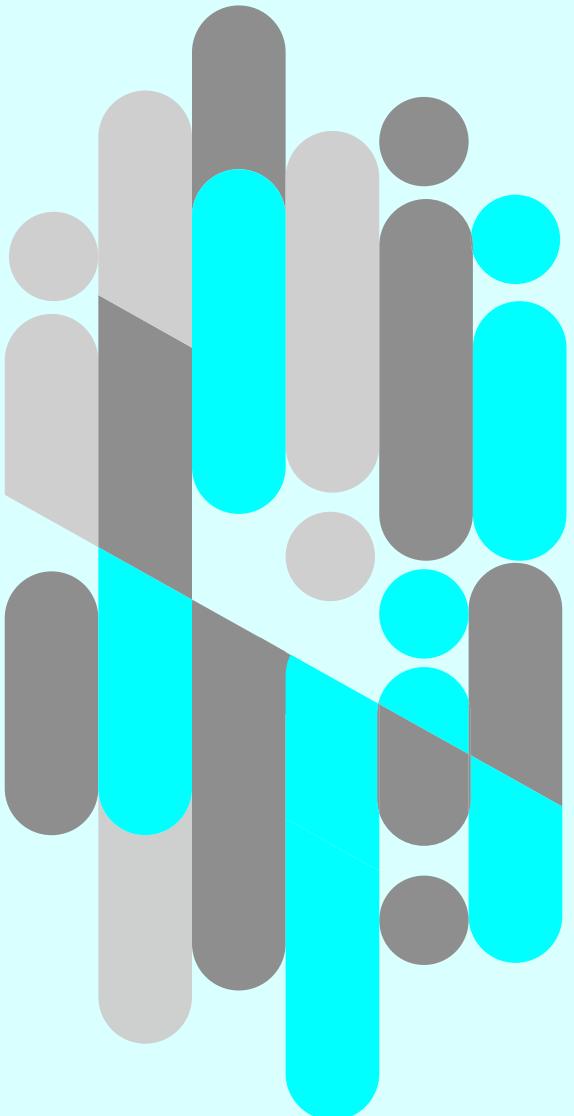
프로그램	종류	내용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환자의 잘못된 신념을 바꿈으로써 결과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치료과정
	영화치료, 심리극	-
약물치료	정신과약물치료	정신과적 치료의 일부분으로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항정신병 약물 등의 약물치료 병행
	성충동 약물치료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
재활치료	의료재활치료	미술치료, 단주교육, 명상, 신체단련, 일상생활훈련, 기초학습능력훈련, 위생교육, 정신보건교육 등
	직업재활	건축도장, 제과제빵, PC정비, 건축시공 등 5개 공과 직업훈련 및 컴퓨터 교육
	지역사회 복귀	정신건강 출소 교육, 사후관리

청구전조사 등 현황

- 조사란 법원 및 검찰의 요구에 의해 보호관찰관이 범죄인의 인격 및 환경에 관한 상황, 재범위험성의 양태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양형 및 처우 개별화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1989년 「보호관찰법」 제정으로 소년 판결전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2008년 9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 등의 개정 시행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었다.
- 보호관찰관은 피조사자의 범죄동기, 피해회복 여부, 가족사항 등 다양한 분야를 조사하여 통보한다. 현재 조사는 판결전조사, 결정전조사, 청구전조사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심리검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성장기의 왜곡된 성 의식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 및 작성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에는 임상심리 자격증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보호관찰관들이 조사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형사사법 절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표 4-6-1>은 성폭력범죄자 조사 접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3,000건을 상회하였으나 2017년 2,707건으로 2016년 대비 크게 감소했고 2018년에는 2,680건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정전 조사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비슷한 접수 건수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8년에는 73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에, 청구전 조사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000건 이상이 접수되었으나 2018년 1,333건이 접수되는 등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1〉 성폭력범죄자 조사 접수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747	3,488	3,577	2,707	2,680
청구전조사	2,281	2,072	2,250	1,511	1,333
판결전조사	437	472	374	270	297
결정전조사	580	565	563	522	737
검사결정전조사	265	214	250	183	148
환경조사	184	165	140	221	165



—

부록

1. 표/그림목차

제2편 신상정보등록제도

〈표 2-1-1〉	신상정보공개제도 변천과정과 주요내용	18
〈그림 2-2-1〉	유관기관 업무 흐름도	19
〈표 2-2-1〉	등록대상 성범죄	23
〈표 2-2-2〉	선고 유형별 등록기간 및 정보 확인 주기	25
〈표 2-2-3〉	등록면제 신청을 위한 등록기간 경과 기준	26
〈표 2-2-4〉	신상정보 신규 등록 및 신상정보제출서 접수 현황	26
〈그림 2-2-2〉	신상정보 신규 등록 및 신상정보제출서 접수 현황	27
〈표 2-3-1〉	미국의 성범죄자 분류 단계(Sex Offender Classification Tiers)	36
〈표 2-3-2〉	캐나다 : 법정형 기준 차등화	40
〈표 2-3-3〉	영국 : 선고형 기준 차등화	42

제3편 성범죄 동향 분석

〈표 3-1-1〉	신상정보등록 현황	46
〈그림 3-1-1〉	신상정보등록 현황	47
〈표 3-1-2〉	연도별 성범죄 기소 건수, 성폭력범죄등록 건수 현황	48
〈그림 3-1-2〉	연도별 성범죄 기소 건수, 성폭력범죄등록 건수 현황	48
〈표 3-1-3〉	등록 근거법별 현황	49
〈그림 3-1-3〉	등록 근거법별 현황	50
〈표 3-1-4〉	등록유형별 현황	51
〈그림 3-1-4〉	등록유형별 현황	52
〈표 3-1-5〉	공개기간별 현황	53
〈표 3-1-6〉	고지기간별 현황	55
〈표 3-1-7〉	선고형별 현황	56
〈그림 3-1-5〉	선고형별 비율	57
〈표 3-1-8〉	최종 심급별 현황	58
〈표 3-1-9〉	선고형별 등록대상사건 최종 심급 현황	59
〈표 3-1-10〉	형량별 현황(시형·무기징역·징역·금고형)	60
〈표 3-1-11〉	사회내차우 부과 현황(중복집계)	62
〈그림 3-1-6〉	사회내차우 부과 현황	63
〈표 3-1-12〉	보호관찰 부과 현황	63
〈그림 3-1-7〉	보호관찰 부과 비율	64

〈표 3-1-13〉	보호관찰 기간 현황	65
〈표 3-1-14〉	사회봉사명령 부과 현황	66
〈그림 3-1-8〉	사회봉사명령 부과 비율	67
〈표 3-1-15〉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간별 현황	67
〈표 3-1-16〉	수강·이수명령 부과 현황	68
〈그림 3-1-9〉	수강·이수명령 부과 비율	69
〈표 3-1-17〉	수강명령·이수 부과 시간별 현황	69
〈표 3-1-18〉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 현황	70
〈그림 3-1-10〉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 비율	71
〈표 3-1-19〉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별 현황	71
〈표 3-1-20〉	치료감호 부과 현황	72
〈그림 3-1-11〉	치료감호 부과 비율	73
〈표 3-1-21〉	치료명령 부과 현황	74
〈그림 3-1-12〉	치료명령 부과 비율	75
〈표 3-1-22〉	성충동 약물치료 부과 현황	75
〈그림 3-1-13〉	연도별 성충동 약물치료 부과 비율	76
〈표 3-1-23〉	등록 종료별 현황	77
〈그림 3-1-14〉	등록 종료별 비율	77
〈표 3-2-1〉	성범죄 전과 횟수 현황	78
〈그림 3-2-1〉	성범죄 전과 횟수 비율	79
〈표 3-2-2〉	공개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 현황	79
〈그림 3-2-2〉	공개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 비율	80
〈표 3-2-3〉	고지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 현황	81
〈그림 3-2-3〉	고지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 비율	82
〈표 3-2-4〉	연령별 현황	83
〈그림 3-2-4〉	연령별 비율	83
〈표 3-2-5〉	연령별 죄명 현황	85
〈그림 3-2-5〉	연령별 죄명 비율	85
〈표 3-2-6〉	성별 현황	86
〈그림 3-2-6〉	성별 현황	87
〈표 3-2-7〉	직업 현황	88

〈표 3-2-8〉	내·외국인대상자 현황	89
〈그림 3-2-7〉	내·외국인대상자 현황	90
〈표 3-2-9〉	외국인 대상자의 국적 현황	91
〈그림 3-2-8〉	외국인 대상자의 국적 비율	91
〈표 3-2-10〉	외국인대상자의 죄명 현황	92
〈표 3-2-11〉	외국인대상자의 연령 현황	93
〈표 3-3-1〉	죄명별 등록사건 현황	95
〈그림 3-3-1〉	죄명별 등록사건 비율	96
〈표 3-3-2〉	죄명별 선고형 현황(병과된 벌금, 치료감호는 제외)	97
〈그림 3-3-2〉	죄명별 선고형 비율(병과된 벌금, 치료감호는 제외)	98
〈표 3-3-3〉	죄명별 벌금형	99
〈표 3-3-4〉	죄명별 집행유예 현황	100
〈그림 3-3-3〉	죄명별 집행유예 현황	101
〈표 3-3-5〉	죄명별 집행유예 기간	102
〈표 3-3-6〉	죄명별 최종 심급 현황	104
〈표 3-3-7〉	죄명별 형량 현황(사형·무기징역·징역·금고형)	105
〈표 3-3-8〉	죄명별 범죄시간 현황	107
〈그림 3-3-4〉	죄명별 범죄시간 현황	108
〈표 3-3-9〉	죄명별 범행월 현황	109
〈그림 3-3-5〉	죄명별 범행월 현황	110
〈표 3-3-10〉	강간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111
〈표 3-3-11〉	강제추행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112
〈표 3-3-12〉	유사성행위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113
〈표 3-3-13〉	아동성학대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114
〈표 3-3-14〉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115
〈표 3-3-15〉	성적목적침입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116
〈표 3-3-16〉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117
〈표 3-3-17〉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118
〈표 3-3-18〉	음란물 제작배포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119
〈표 3-3-19〉	성매수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120
〈표 3-3-20〉	성매매 강요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121
〈표 3-3-21〉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의 월별 범행시간 현황	122

〈표 3-3-22〉 범죄 유형(접촉·비접촉) 현황	123
〈표 3-3-23〉 죄명별 등록대상사건의 내·외국인대상자 현황	124
〈그림 3-3-6〉 죄명별 등록대상사건의 내·외국인대상자 비율	125
〈표 3-3-24〉 죄명별 피해자 성별 현황	125
〈그림 3-3-7〉 죄명별 피해자 성별 현황	126
〈표 3-3-26〉 죄명별 피해자 연령	128
〈표 3-4-1〉 재등록사건 현황	129
〈표 3-4-2〉 재등록사건 등록 근거법 현황	130
〈표 3-4-3〉 재등록사건 등록 유형 현황	131
〈표 3-4-4〉 재등록사건 선고형 현황	132
〈표 3-4-5〉 재등록사건 사회내처우 부과 현황	133
〈표 3-5-1〉 재등록 경과 기간	135
〈표 3-5-2〉 내·외국인대상자 재등록사건 현황	136
〈표 3-5-3〉 재등록사건 성별 현황	136
〈표 3-5-4〉 재등록대상자의 직업 현황	137
〈표 3-5-5〉 재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	138
〈표 3-5-6〉 재등록대상자 음주 여부	139
〈표 3-5-7〉 재등록대상자 공범 여부	140
〈표 3-5-8〉 재등록대상자 직권등록 여부	140
〈표 3-5-9〉 재등록대상자의 범행수단 및 방법	141
〈표 3-6-1〉 재등록대상자 죄명 현황	143
〈표 3-6-2〉 재등록대상자 범죄 발생 시간	144
〈표 3-6-3〉 재등록대상자 범행 월별 현황	145
〈표 3-6-4〉 재등록대상자의 범행 장소	146
〈표 3-6-5〉 재등록대상자의 범죄 유형	148
〈표 3-6-6〉 원등록·재등록사건 범행장소와 대상자 주거지간 행정구역 일치 여부	149
〈표 3-6-7〉 피해자 성별	150
〈표 3-6-8〉 피해자 유형	150
〈표 3-6-9〉 피해자 정신장애 등 여부	151
〈표 3-6-10〉 피해자 인원수	152
〈표 3-6-11〉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153

제4편 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 현황

〈표 4-1-1〉	근거법률에서 성범죄자 대상 보호관찰 도입 시기	165
〈표 4-1-2〉	보호관찰 접수사건 및 실시사건	165
〈그림 4-1-1〉	보호관찰 접수사건 및 실시사건	165
〈표 4-1-3〉	성별에 따른 보호관찰 실시사건	166
〈그림 4-1-2〉	성별에 따른 보호관찰 실시사건	166
〈표 4-1-4〉	성폭력사범 재범률	167
〈그림 4-1-3〉	성폭력사범 재범률	167
〈표 4-1-5〉	성폭력사범 재범률(동종)	168
〈표 4-2-1〉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	170
〈그림 4-2-1〉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	170
〈표 4-2-2〉	사회봉사명령 시간별 부과 현황	171
〈그림 4-2-2〉	사회봉사명령 시간별 부과 현황	171
〈표 4-3-1〉	성폭력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접수현황	173
〈그림 4-3-1〉	성폭력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접수현황	173
〈표 4-3-2〉	수강명령 시간별 현황	174
〈그림 4-3-2〉	수강명령 시간별 현황	174
〈표 4-3-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구성	175
〈표 4-3-4〉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교정)	176
〈표 4-3-5〉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실적(교정)	176
〈표 4-3-6〉	이수명령 집행 실적(교정)	177
〈표 4-4-1〉	전자감독 실시 죄명 추가 현황	178
〈표 4-4-2〉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현재원	179
〈그림 4-4-1〉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현재원	179
〈표 4-4-3〉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접수 현황	180
〈그림 4-4-2〉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접수 현황	180
〈표 4-4-4〉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처분 유형별 접수 현황	181
〈그림 4-4-3〉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처분 유형별 접수 현황	181
〈표 4-4-5〉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연령별 현황	182
〈그림 4-4-4〉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연령별 현황	182
〈표 4-4-6〉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부착명령 기간별 현황	183
〈그림 4-4-5〉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부착명령 기간별 현황	183

〈표 4-5-1〉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현황	184
〈표 4-5-2〉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정 현황	185
〈표 4-5-3〉	성충동 약물치료 죄명별 현황	185
〈표 4-5-4〉	치료지정 병원	186
〈표 4-5-5〉	국립법무병원 프로그램	187
〈표 4-6-1〉	성범죄자 조사 접수 현황	189

부 록

〈표 5-1-1〉	연도별 성폭력범죄 현황	198
〈그림 5-1-1〉	연도별 성폭력범죄 검거 상황	198
〈표 5-1-2〉	연도별 성폭력범죄 발생월	199
〈그림 5-1-2〉	성폭력범죄 발생월 비율	199
〈표 5-1-3〉	연도별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간(2014년 이전)	200
〈그림 5-1-3〉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간 비율(2014년 이전)	200
〈표 5-1-4〉	연도별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간(2014년 이후)	201
〈그림 5-1-4〉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간 비율(2014년 이후)	201
〈표 5-1-5〉	성폭력범죄자 성별	202
〈그림 5-1-5〉	성폭력범죄자 성별	202
〈표 5-1-6〉	연도별 성폭력범죄자 연령	203
〈그림 5-1-6〉	성폭력범죄자 연령 비율	203
〈표 5-1-7〉	연도별 성폭력범죄자 직업	204
〈그림 5-1-7〉	성폭력범죄자 직업 비율	205
〈표 5-1-8〉	연도별 성폭력범죄자 국적	206
〈그림 5-1-8〉	연도별 성폭력범죄자 국적	206
〈표 5-1-9〉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207
〈그림 5-1-9〉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207
〈표 5-1-10〉	연도별 성폭력 발생장소	208
〈그림 5-1-10〉	연도별 성폭력 주요 발생장소	208
〈표 5-1-11〉	연도별 성폭력범죄 공범 수	209
〈그림 5-1-11〉	연도별 성폭력 공범 수	209
〈표 5-1-12〉	연도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기간 및 종류	210
〈그림 5-1-12〉	연도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기간 및 종류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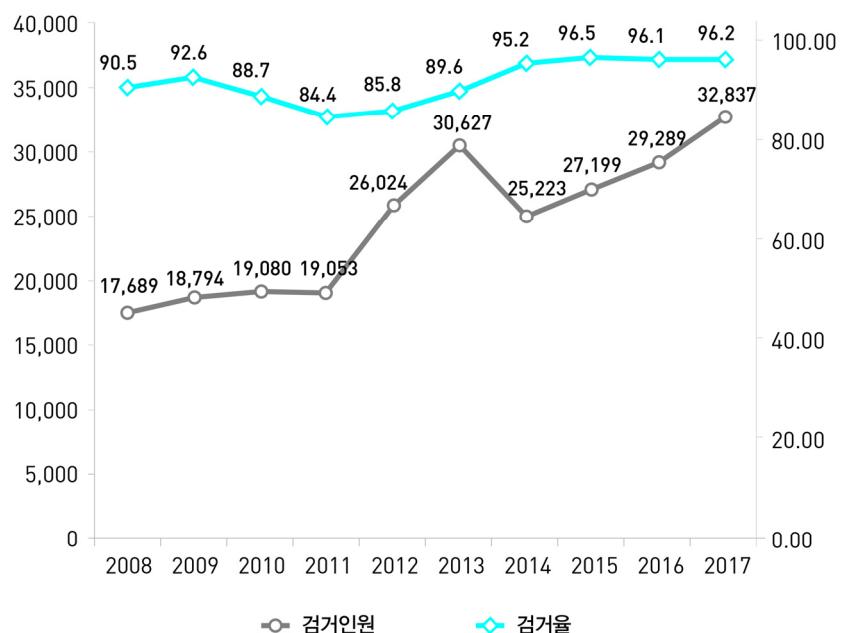
2.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1) 성폭력범죄 현황

〈표 5-1-1〉 연도별 성폭력범죄 현황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08	16,234	14,698	90.5	17,689
2009	17,263	15,977	92.6	18,794
2010	20,368	18,058	88.7	19,080
2011	22,132	18,673	84.4	19,053
2012	27,237	23,373	85.8	26,024
2013	33,939	30,408	89.6	30,627
2014	29,863	28,420	95.2	25,223
2015	31,063	29,981	96.5	27,199
2016	29,357	28,197	96.1	29,289
2017	32,824	31,585	96.2	32,837
전체	260,280	239,370	92.0	245,815

〈그림 5-1-1〉 연도별 성폭력범죄 검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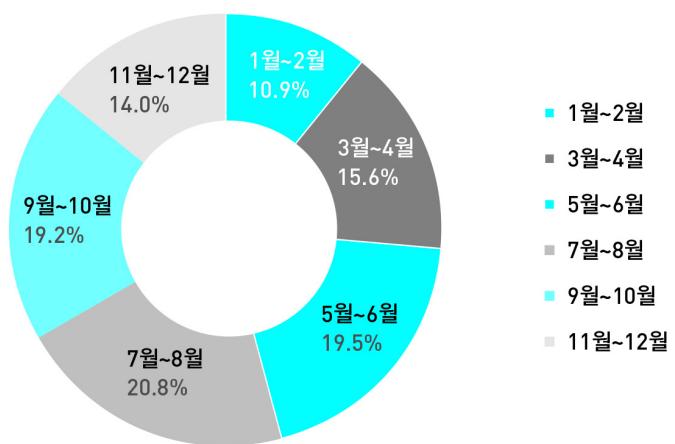


(2) 성폭력범죄 발생월

〈표 5-1-2〉 연도별 성폭력범죄 발생월

연도	계	1월~2월	3월~4월	5월~6월	7월~8월	9월~10월	11월~12월
2008	16,234	1,820	2,307	2,983	3,119	3,229	2,776
	%	11.2	14.2	18.4	19.2	19.9	17.1
2009	17,263	1,975	2,439	2,906	3,491	3,558	2,894
	%	11.4	14.1	16.8	20.2	20.6	16.8
2010	20,368	2,097	3,160	3,619	4,036	3,796	3,660
	%	10.3	15.5	17.8	19.8	18.6	18.0
2011	22,132	2,877	3,385	4,041	4,546	3,760	3,523
	%	13.0	15.3	18.3	20.5	17.0	15.9
2012	27,237	2,561	3,376	4,557	5,490	6,808	4,445
	%	9.4	12.4	16.7	20.2	25.0	16.3
2013	33,939	2,859	4,464	7,270	6,888	7,640	4,818
	%	8.4	13.2	21.4	20.3	22.5	14.2
2014	29,863	3,459	5,352	6,054	6,659	4,949	3,390
	%	11.6	17.9	20.3	22.3	16.6	11.4
2015	31,063	3,489	5,505	6,675	6,681	5,229	3,484
	%	11.2	17.7	21.5	21.5	16.8	11.2
2016	29,357	3,426	4,920	5,887	6,166	5,253	3,705
	%	11.7	16.8	20.1	21.0	17.9	12.6
2017	32,824	3,888	5,586	6,765	7,152	5,748	3,685
	%	11.8	17.0	20.6	21.8	17.5	11.2
전체	260,280	28,451	40,494	50,757	54,228	49,970	36,380
	%	10.9	15.6	19.5	20.8	19.2	14.0

〈그림 5-1-2〉 성폭력범죄 발생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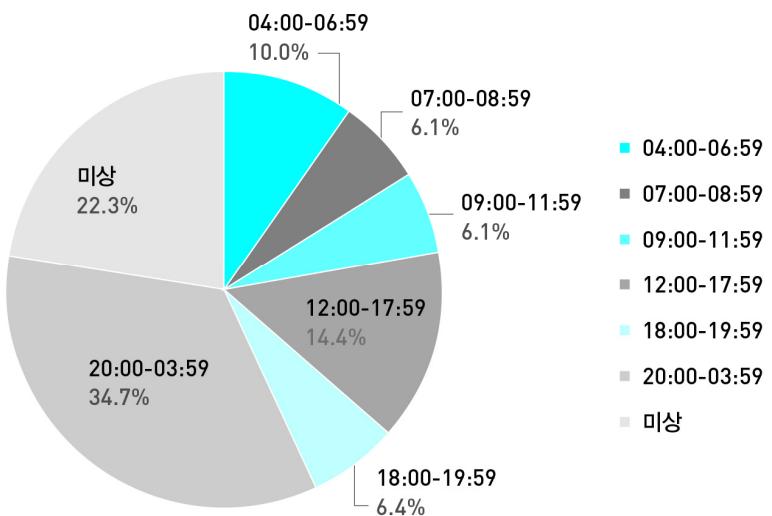


(3) 발생시간

〈표 5-1-3〉 연도별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간[2014년 이전]

연도	계	04:00~06:59	07:00~08:59	09:00~11:59	12:00~17:59	18:00~19:59	20:00~03:59	미상
2008	15,094	1,811	906	923	2,114	889	5,526	2,925
	%	12.0	6.0	6.1	14.0	5.9	36.6	19.4
2009	16,156	1,816	980	1,036	2,233	902	5,653	3,536
	%	11.2	6.1	6.4	13.8	5.6	35.0	21.9
2010	19,939	1,982	1,361	1,166	2,659	1,298	6,798	4,675
	%	9.9	6.8	5.8	13.3	6.5	34.1	23.4
2011	22,034	2,188	1,446	1,163	3,007	1,577	7,706	4,947
	%	9.9	6.6	5.3	13.6	7.2	35.0	22.5
2012	21,346	2,120	1,228	1,249	3,074	1,346	7,631	4,698
	%	9.9	5.8	5.9	14.4	6.3	35.7	22.0
2013	26,919	2,214	1,542	1,872	4,432	1,806	8,791	6,262
	%	8.2	5.7	7.0	16.5	6.7	32.7	23.3
전체	121,488	12,131	7,463	7,409	17,519	7,818	42,105	27,043
	%	10.0	6.1	6.1	14.4	6.4	34.7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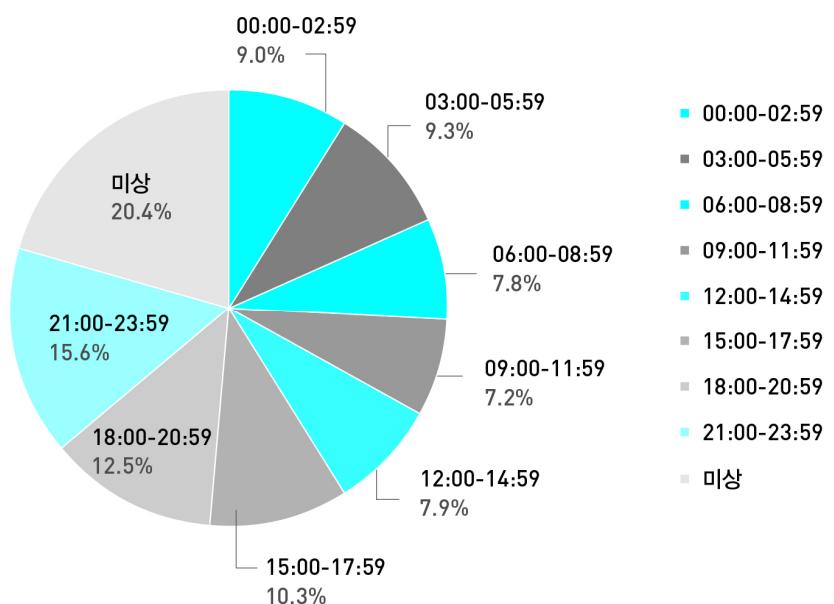
〈그림 5-1-3〉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간 비율[2014년 이전]



〈표 5-1-4〉 연도별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간[2014년 이후]

연도	계	00:00~02:59	03:00~05:59	06:00~08:59	09:00~11:59	12:00~14:59	15:00~17:59	18:00~20:59	21:00~23:59	미상
2014	29,863	2,511	2,651	2,275	2,197	2,330	3,059	3,576	4,405	6,859
	%	8.4	8.9	7.6	7.4	7.8	10.2	12.0	14.8	22.9
2015	31,063	2,518	2,665	2,465	2,122	2,473	3,262	3,826	4,635	7,097
	%	8.1	8.6	7.9	6.8	8.0	10.5	12.3	14.9	22.9
2016	29,357	2,897	2,852	2,202	1,996	2,241	2,894	3,710	4,903	5,662
	%	9.9	9.7	7.5	6.8	7.6	9.9	12.6	16.7	19.3
2017	32,824	3,200	3,296	2,615	2,559	2,651	3,442	4,335	5,303	5,423
	%	9.7	10.0	8.0	7.8	8.1	10.5	13.2	16.1	16.6
전체	123,107	11,126	11,464	9,557	8,874	9,695	12,657	15,447	19,246	25,041
	%	9.0	9.3	7.8	7.2	7.9	10.3	12.5	15.6	20.4

〈그림 5-1-4〉 성폭력범죄의 발생 시간 비율[2014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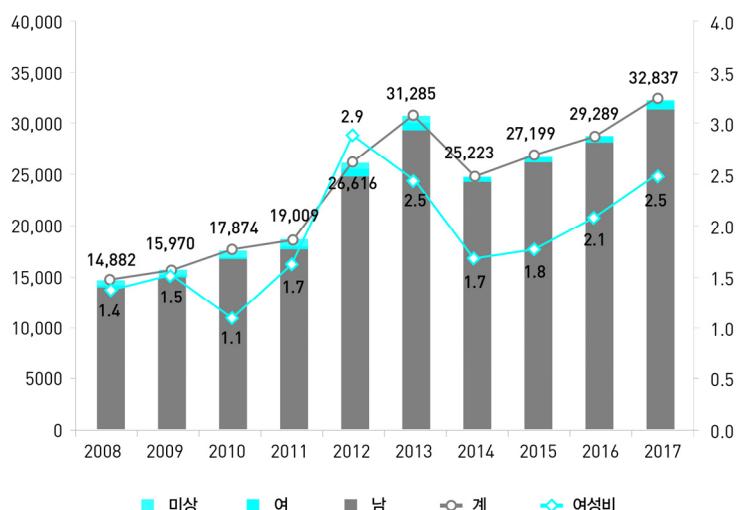


(4) 성폭력범죄자 성별

〈표 5-1-5〉 성폭력범죄자 성별

연도	계	남	여	미상
2008	14,882	14,164	205	513
	[%]	95.2	1.4	3.5
2009	15,970	15,209	245	516
	[%]	95.2	1.5	3.2
2010	17,874	17,034	199	641
	[%]	95.3	1.1	3.6
2011	19,009	17,995	315	699
	[%]	94.7	1.7	3.7
2012	26,616	25,242	782	592
	[%]	94.8	2.9	2.2
2013	31,285	29,847	780	658
	[%]	95.4	2.5	2.1
2014	25,223	24,710	428	85
	[%]	98.0	1.7	0.3
2015	27,199	26,651	486	62
	[%]	98.0	1.8	0.2
2016	29,289	28,627	617	45
	[%]	97.7	2.1	0.2
2017	32,837	31,905	829	103
	[%]	97.2	2.5	0.3
전체	240,184	231,384	4,886	3,914
	[%]	96.3	2.0	1.6

〈그림 5-1-5〉 성폭력범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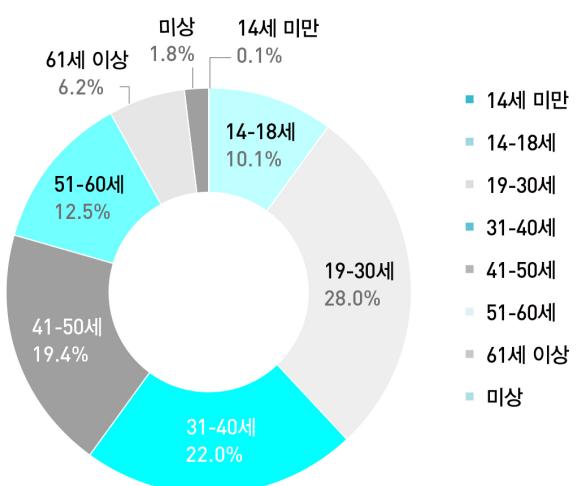


(5) 성폭력범죄자 연령

〈표 5-1-6〉 연도별 성폭력범죄자 연령

연도	계	14세 미만	14~18세	19~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미상
2008	14,882	15	1,477	3,919	3,776	3,049	1,332	635	679
	(%)	0.1	9.9	26.3	25.4	20.5	9.0	4.3	4.6
2009	15,970	15	1,727	4,286	3,963	3,229	1,468	648	634
	(%)	0.1	10.8	26.8	24.8	20.2	9.2	4.1	4.0
2010	17,874	8	2,154	4,668	4,160	3,740	1,918	829	397
	(%)	0.0	12.1	26.1	23.3	20.9	10.7	4.6	2.2
2011	19,009	6	2,038	5,138	4,293	4,004	2,184	999	347
	(%)	0.0	10.7	27.0	22.6	21.1	11.5	5.3	1.8
2012	26,616	30	2,986	7,869	5,919	4,916	2,955	1,266	675
	(%)	0.1	11.2	29.6	22.2	18.5	11.1	4.8	2.5
2013	31,285	25	3,173	9,463	6,859	5,744	3,637	1,643	741
	(%)	0.1	10.1	30.3	21.9	18.4	11.6	5.3	2.4
2014	25,223	1	2,563	6,955	5,279	5,132	3,505	1,684	104
	(%)	0.0	10.2	27.6	20.9	20.4	13.9	6.7	0.4
2015	27,199	1	2,206	7,535	5,866	5,335	3,812	2,010	434
	(%)	0.0	8.1	27.7	21.6	19.6	14.0	7.4	1.6
2016	29,289	3	2,857	8,059	6,039	5,527	4,328	2,346	130
	(%)	0.0	9.8	27.5	20.6	18.9	14.8	8.0	0.4
2017	32,837	5	3,078	9,449	6,608	5,882	4,771	2,841	203
	(%)	0.0	9.4	28.8	20.1	17.9	14.5	8.7	0.6
전체	240,184	109	24,259	67,341	52,762	46,558	29,910	14,901	4,344
	(%)	0.1	10.1	28.0	22.0	19.4	12.5	6.2	1.8

〈그림 5-1-6〉 성폭력범죄자 연령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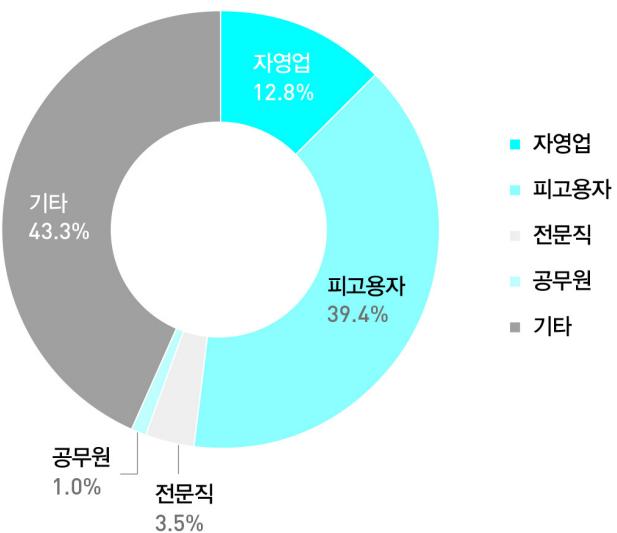
(6) 직업

〈표 5-1-7〉 연도별 성폭력범죄자 직업

직업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계	14,882	15,970	17,874	19,009	26,616	31,285	25,223	27,199	29,289	32,837	240,184
자영업자소계	2,278	15.3	2,424	15.2	2,303	12.9	2,390	12.6	3,423	12.9	3,076
농림수산업	278	1.9	261	1.6	295	1.7	280	1.5	357	1.3	396
광업	3	0.0	0	0.0	3	0.0	2	0.0	1	0.0	0
제조업	154	1.0	155	1.0	126	0.7	62	0.3	70	0.3	64
건설업	199	1.3	212	1.3	160	0.9	130	0.7	151	0.6	196
도소매업	204	1.4	244	1.5	195	1.1	140	0.7	147	0.6	47
무역업	32	0.2	23	0.1	30	0.2	28	0.2	27	0.1	29
요식업	214	1.4	278	1.7	162	0.9	173	0.9	230	0.9	151
숙박업	25	0.2	36	0.2	31	0.2	69	0.4	96	0.4	54
유통업	129	0.9	132	0.8	133	0.7	149	0.8	193	0.7	92
금융업	43	0.3	29	0.2	23	0.1	20	0.1	24	0.1	17
부동산업	66	0.4	63	0.4	67	0.4	47	0.3	61	0.2	71
의료보건업	21	0.1	14	0.1	17	0.1	13	0.1	10	0.0	8
차량정비업	34	0.2	36	0.2	39	0.2	28	0.2	30	0.1	14
노점	39	0.3	30	0.2	34	0.2	33	0.2	45	0.2	36
행상	26	0.2	8	0.1	15	0.1	15	0.1	7	0.0	6
기타사업	811	5.5	903	5.7	973	5.4	1,201	6.3	1,974	7.4	1,894
피고용자소계	5,457	36.7	5,740	35.9	6,913	38.7	7,542	39.7	11,006	41.4	13,465
교원사립	21	0.1	23	0.1	21	0.1	24	0.1	24	0.1	64
사무원	128	0.9	138	0.9	99	0.6	99	0.5	42	0.2	20
기술자	108	0.7	86	0.5	112	0.6	79	0.4	78	0.3	218
점원	119	0.8	108	0.7	115	0.6	97	0.5	99	0.4	65
공원	176	1.2	164	1.0	162	0.9	170	0.9	192	0.7	167
운전자	486	3.3	531	3.3	598	3.4	602	3.2	769	2.9	705
경비원	73	0.5	80	0.5	118	0.7	90	0.5	109	0.4	111
외판원	23	0.2	30	0.2	24	0.1	9	0.1	13	0.1	71
국공기업직원	23	0.2	22	0.1	23	0.1	15	0.1	11	0.0	9
일반회사원	1,982	13.3	2,160	13.5	2,729	15.3	3,331	17.5	4,521	17.0	5,251
금융기관직원	33	0.2	30	0.2	23	0.1	30	0.2	20	0.1	34
유홍업종사자	96	0.7	100	0.6	144	0.8	124	0.7	111	0.4	85
요식업종사자	159	1.1	144	0.9	261	1.5	224	1.2	264	1.0	243
일용노동자	990	6.7	987	6.2	1,235	6.9	1,234	6.5	1,515	5.7	1,323
기타피고용자	1,040	7.0	1,137	7.1	1,249	7.0	1,414	7.4	3,238	12.2	5,099
전문직소계	407	2.7	422	2.6	562	3.1	615	3.2	803	3.0	910
의사	50	0.3	56	0.4	67	0.4	61	0.3	95	0.4	104
변호사	1	0.0	0	0.0	3	0.0	2	0.0	5	0.0	9
교수	19	0.1	21	0.1	27	0.2	17	0.1	22	0.1	33
종교인	62	0.4	72	0.5	94	0.5	91	0.5	97	0.4	105
언론인	11	0.1	10	0.1	13	0.1	11	0.1	10	0.0	15
예술인	33	0.2	27	0.2	46	0.3	43	0.2	71	0.3	118

직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인구	율	인구	율	인구	율	인구	율	인구	율	인구	율	인구	율	인구	율	인구	율	인구	율	인구	율
	기타전문직	231	1.6	236	1.5	312	1.8	390	2.1	503	1.9	526	1.7	472	1.9	797	2.9	860	2.9	1,009	3.1	5,336	2.2
	공무원(소계)	101	0.7	119	0.8	146	0.8	154	0.8	223	0.8	213	0.7	283	1.1	345	1.3	403	1.4	419	1.3	2,406	1.0
공무원	공무원	101	0.7	119	0.8	146	0.8	154	0.8	223	0.8	213	0.7	209	0.8	331	1.2	393	1.3	415	1.3	2,304	1.0
	군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74	0.3	14	0.1	10	0.0	4	0.0	102	0.0
	기타(소계)	6,628	44.5	7,258	45.5	7,923	44.3	8,308	43.7	11,161	41.9	13,621	43.5	10,164	40.3	11,377	41.8	13,027	44.5	14,525	44.2	103,992	43.3
기타	학생	1,810	12.2	2,047	12.8	2,673	15.0	2,791	14.7	4,059	15.3	4,395	14.1	3,393	13.5	3,714	13.7	4,071	13.9	4,580	14.0	33,533	14.0
	주부	12	0.1	12	0.1	12	0.1	14	0.1	28	0.1	37	0.1	29	0.1	27	0.1	31	0.1	62	0.2	264	0.1
	전경, 의경	17	0.1	9	0.1	7	0.0	22	0.1	17	0.1	20	0.1	17	0.1	18	0.1	22	0.1	22	0.1	171	0.1
	공익요원	32	0.2	31	0.2	42	0.2	73	0.4	136	0.5	143	0.5	70	0.3	105	0.4	92	0.3	91	0.3	815	0.3
	무직자	3,604	24.2	3,887	24.3	4,064	22.7	4,102	21.6	5,770	21.7	6,608	21.1	5,243	20.8	5,897	21.7	6,035	20.6	6,903	21.0	52,113	21.7
	미상	1,153	7.8	1,272	8.0	1,125	6.3	1,306	6.9	1,151	4.3	2,418	7.7	1,412	5.6	1,616	5.9	2,776	9.5	2,867	8.7	17,096	7.1

〈그림 5-1-7〉 성폭력범죄자 직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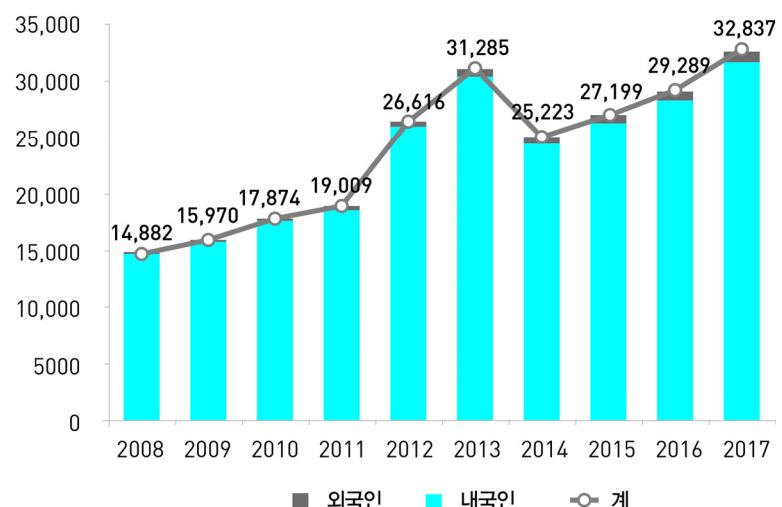


(7) 성폭력범죄자 국적

〈표 5-1-8〉 연도별 성폭력범죄자 국적

연도	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대만	필리핀	슬리랑카	일본	기타
2008	14,882	14,712	170	46	6	15	3	37	4	7	3	0	0	49
	[%]	98.9	1.1	0.3	0.0	0.1	0.0	0.3	0.0	0.1	0.0	0.0	0.0	0.3
2009	15,970	15,787	183	49	6	13	4	23	13	4	4	0	0	67
	[%]	98.9	1.2	0.3	0.0	0.1	0.0	0.1	0.1	0.0	0.0	0.0	0.0	0.4
2010	17,874	17,671	203	58	4	27	4	7	12	8	3	15	0	65
	[%]	98.9	1.1	0.3	0.0	0.2	0.0	0.0	0.1	0.0	0.0	0.1	0.0	0.4
2011	19,009	18,621	388	90	26	31	28	4	26	8	9	22	6	138
	[%]	98.0	2.0	0.5	0.1	0.2	0.2	0.0	0.1	0.0	0.1	0.1	0.0	0.7
2012	26,616	26,150	466	166	31	34	2	35	31	4	7	22	9	125
	[%]	98.3	1.8	0.6	0.1	0.1	0.0	0.1	0.1	0.0	0.0	0.1	0.0	0.5
2013	31,285	30,605	680	216	31	45	9	38	44	14	10	35	17	221
	[%]	97.8	2.2	0.7	0.1	0.1	0.0	0.1	0.1	0.0	0.0	0.1	0.1	0.7
2014	25,223	24,610	613	230	32	57	16	35	34	15	9	11	13	161
	[%]	97.6	2.4	0.9	0.1	0.2	0.1	0.1	0.1	0.1	0.0	0.0	0.1	0.6
2015	27,199	26,450	749	282	22	71	15	36	53	14	7	44	15	190
	[%]	97.3	2.8	1.0	0.1	0.3	0.1	0.1	0.2	0.1	0.0	0.2	0.1	0.7
2016	29,289	28,491	798	336	23	59	12	44	49	20	22	20	8	205
	[%]	97.3	2.7	1.2	0.1	0.2	0.0	0.2	0.2	0.1	0.1	0.1	0.0	0.7
2017	32,837	31,887	950	354	39	87	23	53	37	14	13	19	23	288
	[%]	97.1	2.9	1.1	0.1	0.3	0.1	0.2	0.1	0.0	0.0	0.1	0.1	0.9
전체	240,184	234,984	5,200	1,827	220	439	116	312	303	108	87	188	91	1,509
	[%]	97.8	2.2	0.8	0.1	0.2	0.1	0.1	0.1	0.0	0.0	0.1	0.0	0.6

〈그림 5-1-8〉 연도별 성폭력범죄자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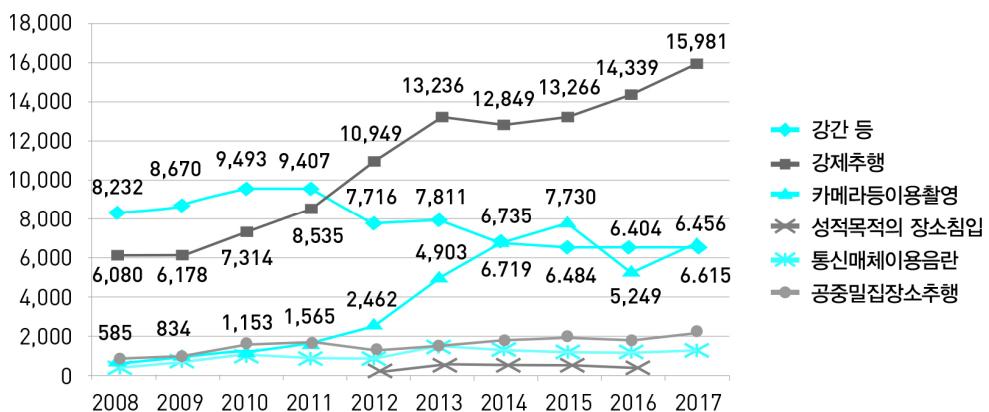


(8)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표 5-1-9〉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연도	강간 등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 장소추행	전체
2008	8,232	6,080	585	—	378	854	16,129
	51.0	37.7	3.6	0.0	2.3	5.3	[%]
2009	8,670	6,178	834	—	761	934	17,377
	49.9	35.6	4.8	0.0	4.4	5.4	[%]
2010	9,493	7,314	1,153	—	1,031	1,593	20,584
	46.1	35.5	5.6	0.0	5.0	7.7	[%]
2011	9,407	8,535	1,565	—	911	1,750	22,168
	42.4	38.5	7.1	0.0	4.1	7.9	[%]
2012	7,716	10,949	2,462	—	917	1,332	23,376
	33.0	46.8	10.5	0.0	3.9	5.7	[%]
2013	7,811	13,236	4,903	214	1,416	1,517	29,097
	26.8	45.5	16.9	0.7	4.9	5.2	[%]
2014	6,719	12,849	6,735	470	1,254	1,838	29,865
	22.5	43.0	22.6	1.6	4.2	6.2	[%]
2015	6,484	13,266	7,730	543	1,139	1,901	31,063
	20.9	42.7	24.9	1.7	3.7	6.1	[%]
2016	6,404	14,339	5,249	477	1,115	1,773	29,357
	21.8	48.8	17.9	1.6	3.8	6.0	[%]
2017	6,456	15,981	6,615	422	1,265	2,085	32,824
	19.7	48.7	20.2	1.3	3.9	6.4	[%]

〈그림 5-1-9〉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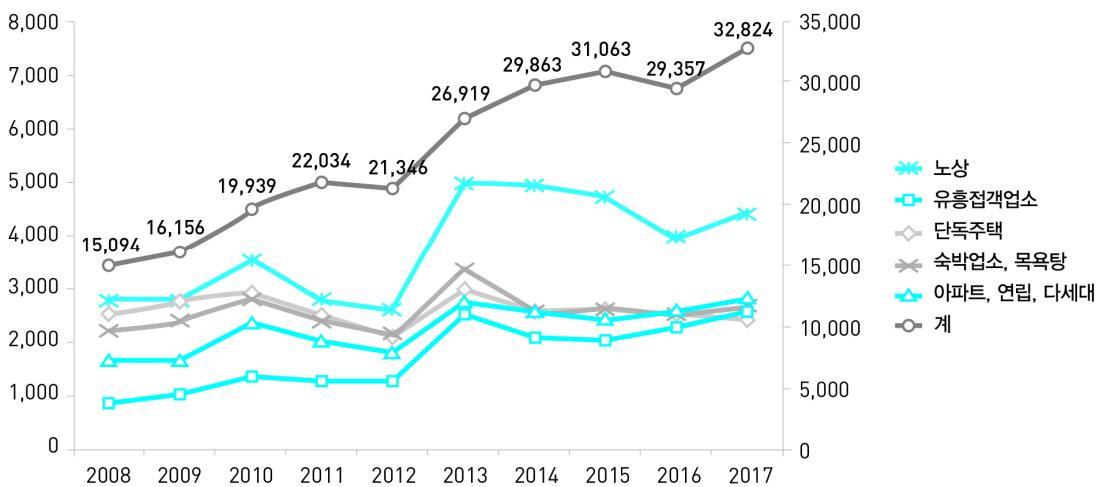


(9) 성폭력범죄 발생 장소

〈표 5-1-10〉 연도별 성폭력 발생장소

장소 연도	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주택	고속 도로	노상	상점	시장 노점	숙박 업소- 목욕탕	유통 접객 업소	사무실	공장	공사장· 광산	청고	역· 대중설	지하철	기타 교통 수단 내	총행정 부단	유원지	학교	금융 기관	의료 기관	종교 기관	선야	해상	부대	구급 장소	공지	기타
2008	15,094 [%]	1,679 11.1	2,586 17.1	13 0.1	2,787 18.5	266 1.8	12 0.1	2,232 14.8	931 6.2	255 1.7	20 0.1	18 0.1	16 0.1	87 0.6	618 4.1	317 2.1	41 0.3	166 1.1	201 1.3	11 0.1	84 0.6	45 0.3	30 0.2	1 0.0	5 0.0	12 0.1	11 0.1	2,650
2009	16,156 [%]	1,668 10.3	2,776 17.2	10 0.1	2,788 17.3	369 2.3	16 0.1	2,425 15.0	1,094 6.8	276 1.7	24 0.2	10 0.1	14 0.1	148 5.1	820 2.1	343 0.3	40 1.1	175 0.9	138 0.9	9 0.1	94 0.6	44 0.3	37 0.2	1 0.0	5 0.0	5 0.0	5 0.0	2,822
2010	19,939 [%]	2,371 11.9	2,927 14.7	18 0.1	3,488 17.5	390 2.0	26 0.1	2,798 14.0	1,362 6.8	352 1.8	26 0.1	12 0.1	24 1.5	298 6.7	1,339 2.8	551 0.3	65 1.1	227 0.9	188 0.1	17 0.7	147 0.3	64 0.2	37 0.0	2 0.0	1 0.1	14 0.1	11 0.1	3,184
2011	22,034 [%]	2,082 9.5	2,493 11.3	14 0.1	2,765 12.6	351 1.6	29 0.1	2,452 11.1	1,309 5.9	327 1.5	30 0.1	15 0.1	22 2.0	435 5.6	1,227 2.5	552 0.1	31 0.8	170 0.7	150 0.1	17 0.6	138 0.2	53 0.2	39 0.0	2 0.0	4 0.0	3 0.0	7 0.0	7,317
2012	21,346 [%]	1,817 8.5	2,070 9.7	9 0.0	2,604 12.2	454 2.1	91 0.4	2,145 10.1	1,369 6.4	383 1.8	27 0.1	11 0.1	13 0.1	523 2.5	760 3.6	808 3.8	31 0.2	150 1.1	144 0.9	9 0.1	130 0.6	43 0.2	58 0.2	42 0.0	5 0.0	4 0.0	7 0.0	7,639
2013	26,919 [%]	2,842 10.6	3,001 11.2	14 0.1	4,969 18.5	826 3.1	176 0.7	3,369 12.5	2,632 9.8	755 2.8	65 0.2	13 0.1	18 0.1	1,143 4.3	1,098 4.1	1,361 5.1	83 0.3	238 0.9	240 0.3	38 0.8	262 0.7	58 0.9	68 0.1	135 1.0	5 0.2	13 0.3	7 0.5	3,490
2014	29,863 [%]	2,584 8.7	2,629 8.8	13 0.0	4,919 16.5	766 2.6	122 0.4	2,604 8.7	2,115 7.1	655 2.2	60 0.2	10 0.0	22 0.1	1,269 4.3	1,200 4.0	1,243 4.2	154 0.5	268 0.9	440 1.5	18 0.1	234 0.8	73 0.2	68 0.2	1 0.0	8 0.1	14 0.0	5 0.0	8,369
2015	31,063 [%]	2,440 7.9	2,683 8.6	24 0.1	4,748 15.3	744 2.4	163 0.5	2,611 8.4	2,097 6.8	712 2.3	36 0.1	11 0.0	13 0.0	1,857 6.0	1,570 5.1	876 2.8	63 0.2	304 1.0	418 1.4	17 0.1	264 0.9	84 0.3	72 0.2	1 0.0	8 0.1	20 0.3	3 0.0	9,224
2016	29,357 [%]	2,597 8.9	2,513 8.6	18 0.1	3,962 13.5	657 2.2	161 0.6	2,526 8.6	2,351 8.0	637 2.2	62 0.2	15 0.1	16 0.1	1,121 3.8	1,309 4.5	929 3.2	63 0.2	274 0.9	423 1.4	22 0.1	268 0.9	61 0.2	64 0.2	2 0.0	11 0.1	37 0.0	6 0.0	9,252
2017	32,824 [%]	2,845 8.7	2,431 7.4	20 0.1	4,448 13.6	798 2.4	185 0.6	2,673 8.1	2,588 7.9	596 1.8	55 0.2	13 0.0	19 0.1	1,481 4.5	1,692 5.2	1,035 3.2	79 0.2	284 0.9	491 1.5	20 0.1	292 0.1	61 0.1	39 0.0	3 0.0	15 0.1	29 0.3	3 0.0	10,629
전체	244,595 [%]	22,925 9.4	26,109 10.7	153 0.1	37,478 15.3	5,621 2.3	981 0.4	25,835 10.6	17,848 7.3	4,948 2.0	405 0.2	128 0.1	177 0.1	8,362 3.4	11,633 4.8	8,015 3.3	650 0.3	2,256 0.9	2,833 1.2	178 0.1	1,913 0.8	586 0.2	512 0.2	190 0.1	67 0.1	151 0.1	65 0.0	64,576

〈그림 5-1-10〉 연도별 성폭력 주요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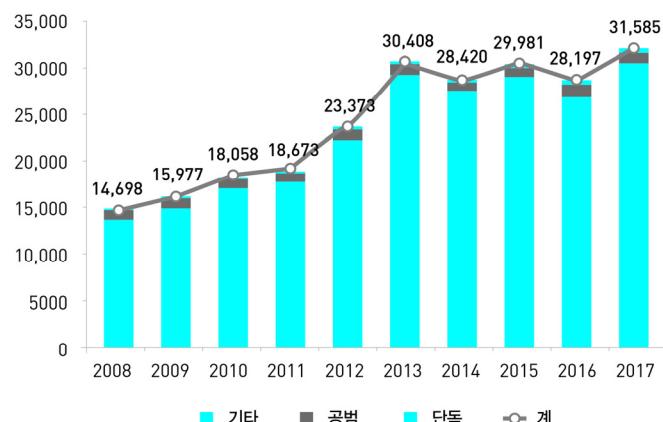


(10) 성폭력범죄 공범수

〈표 5-1-11〉 연도별 성폭력범죄 공범 수

연도	계	단독	공범 (소계)	공범							기타
				2명	3명	4명	5명	10명 이하	20명 이하		
2008	14,698	13,668	1,030	489	178	70	34	76	6	177	
	(%)	93.0	7.0	3.3	1.2	0.5	0.2	0.5	0.0	1.2	
2009	15,977	14,884	1,093	534	160	71	53	58	10	207	
	(%)	93.2	6.8	3.3	1.0	0.4	0.3	0.4	0.1	1.3	
2010	18,058	17,062	996	470	161	76	45	41	6	197	
	(%)	94.5	5.5	2.6	0.9	0.4	0.3	0.2	0.0	1.1	
2011	18,673	17,750	923	439	139	57	38	33	2	215	
	(%)	95.1	4.9	2.4	0.7	0.3	0.2	0.2	0.0	1.2	
2012	23,373	22,231	1,142	513	172	63	28	35	8	323	
	(%)	95.1	4.9	2.2	0.7	0.3	0.1	0.2	0.0	1.4	
2013	30,408	29,242	1,166	552	164	56	28	51	7	308	
	(%)	96.2	3.8	1.8	0.5	0.2	0.1	0.2	0.0	1.0	
2014	28,420	27,520	900	392	106	49	10	26	2	315	
	(%)	96.8	3.2	1.4	0.4	0.2	0.0	0.1	0.0	1.1	
2015	29,981	29,022	959	339	101	35	14	28	5	437	
	(%)	96.8	3.2	1.1	0.3	0.1	0.1	0.1	0.0	1.5	
2016	28,197	26,858	1,339	592	157	41	21	30	6	492	
	(%)	95.3	4.8	2.1	0.6	0.2	0.1	0.1	0.0	1.7	
2017	31,585	30,494	1,091	410	106	22	16	19	2	516	
	(%)	96.6	3.5	1.3	0.3	0.1	0.1	0.1	0.0	1.6	
전체	239,370	228,731	10,639	4,730	1,444	540	287	397	54	3,187	
	(%)	95.6	4.4	2.0	0.6	0.2	0.1	0.2	0.0	1.3	

〈그림 5-1-11〉 연도별 성폭력 공범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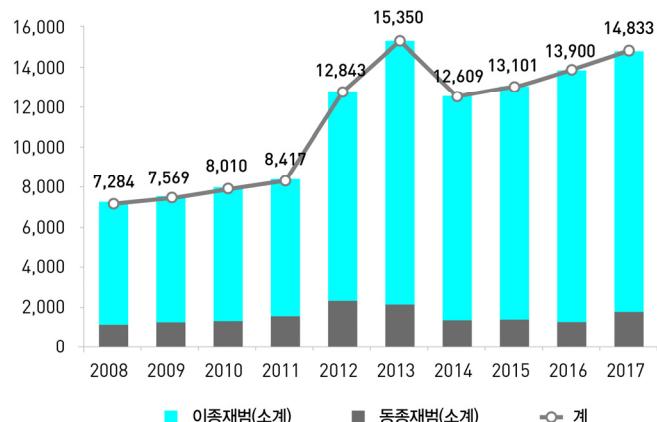


(11) 성폭력범죄자 재범기간 및 종류

〈표 5-1-12〉 연도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기간 및 종류

연도	계	동종 재범 (소계)	동종재범							이종 재범 (소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2008	7,284	1,145	49	70	63	299	180	153	331	6,139
	[%]		15.7	0.7	1.0	0.9	4.1	2.5	4.5	84.3
2009	7,569	1,267	65	84	77	320	190	172	359	6,302
	[%]		16.7	0.9	1.1	1.0	4.2	2.5	4.7	83.3
2010	8,010	1,325	60	102	111	287	201	176	388	6,685
	[%]		16.5	0.8	1.3	1.4	3.6	2.5	4.8	83.5
2011	8,417	1,568	96	108	101	373	195	233	462	6,849
	[%]		18.6	1.1	1.3	1.2	4.4	2.3	5.5	81.4
2012	12,843	2,329	129	179	172	553	339	353	604	10,514
	[%]		18.1	1.0	1.4	1.3	4.3	2.6	4.7	81.9
2013	15,350	2,159	74	142	181	546	310	315	591	13,191
	[%]		14.1	0.5	0.9	1.2	3.6	2.0	3.9	85.9
2014	12,609	1,371	39	59	102	295	236	171	469	11,238
	[%]		10.9	0.3	0.5	0.8	2.3	1.9	3.7	89.1
2015	13,101	1,404	43	54	85	300	211	199	512	11,697
	[%]		10.7	0.3	0.4	0.7	2.3	1.6	3.9	89.3
2016	13,900	1,280	30	59	74	293	225	218	381	12,620
	[%]		9.2	0.2	0.4	0.5	2.1	1.6	2.7	90.8
2017	14,833	1,788	66	100	111	380	304	259	568	13,045
	[%]		12.1	0.4	0.7	0.8	2.6	2.1	3.8	88.0
전체	113,916	15,636	651	957	1,077	3,646	2,391	2,249	4,665	98,280
	[%]		13.7	0.6	0.8	1.0	3.2	2.1	2.0	4.1

〈그림 5-1-12〉 연도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기간 및 종류



3. 신상정보등록제도 개선 방향

(1)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업무 일원화

- 현행법은 신상정보의 등록업무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2000년 7월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신상등록, 열람, 인터넷 공개, 우편고지 공개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 그러던 중 2010년 여중생을 납치한 후 성폭행하고 살인한 이른바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공개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커졌고, 이에 「성폭력처벌법」을 제정하여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시행하였다.
- 하지만 조속히 대응하다 보니 기존 제도에 관해 충분한 연구를 하지 못한 채 시행되어 같은 제도를 「청소년정보보호법」(여성가족부)과 「성폭력처벌법」(법무부) 등 두 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양 기관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 이원화된 운영체제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크다는 논란과 함께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 첫째, 신상정보 등록 업무와 공개·고지 업무가 두 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최초 등록시점부터 공개·고지 집행까지 약 4주간의 소요기간이 발생하는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고지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 둘째,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가 등록된 때부터 등록기간이 기산되지만 「청소년 정보보호법」은 판결확정시부터 공개·고지기간이 기산되어 기산점이 상이하고, 집행유예 실효, 노역 등 수용기간의 기간 산입 여부에 있어 등록기간과 공개·고지기간 산정 방법이 서로 다르다.¹³⁾ 또한 등록과 공개·고지의 근거법률과 소관부처가 달라 기관 간 법률해석의 견해 차이 등으로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13) 『청소년정보보호법』 일부개정을 통해 공개·고지 기간을 「성폭력처벌법」의 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2019.10.31.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셋째, 이원화에 따른 행정의 중복적 업무처리로 인해 인력과 예산이 이중 투입되고 있고, 정보의 전달 및 가공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정보의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신상정보의 정확한 관리 및 공개·고지의 신속성과 업무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업무를 동일한 기관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성범죄자의 등록과 공개·고지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없다.
-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므로, 그 전담 주체를 형사 집행 주무부처인 법무부로 일원화하여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전자감독, 보호관찰, 성충동 약물치료 등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상당하다. 또한 신상정보등록·공개 업무가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정보보호법」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이원적 체계의 발단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업무에 관한 제규정을 법무부 소관의 법률로 통합할 필요도 있다.

(2) KICS편입 및 관계기관 시스템 연계 강화

- 신상등록공개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 자료의 정확성이 확보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 간에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는 것이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 법무부의 신상정보 등록관리시스템에서 형사사법망을 통해 경찰청의 신상정보 시스템으로 등록대상자의 최초 신상정보 및 변경 신상정보를 전송하고 있고, 공개·고지대상자의 등록정보는 형사사법망이 아닌 행정정보공동망을 이용하여 여성 가족부의 신상공개·고지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있다.
- 현재 관할경찰관서에서는 관련 공문을 전자문서로 법무부에 송부하고 있으나,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에 송달하고 있어 법무부의 신상정보 등록관리시스템에 최초 신상정보 등록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다. 신속한 신상정보 등록을 위하여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를 경찰관서에서 형사사법망의 경찰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정보가 법무부의 신상정보 등록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도록 완전 전산화하여 최초 신상정보 등록 업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업무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 또한 경찰·교정의 정보시스템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편입되어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관리시스템은 별개 시스템으로 운용 중으로, 정보 전송 시 별도 연계서버를 경유하고 있어 전송 정보의 지연, 연계서버 장애 시 정보유통 차단 등의 우려가 있다. 현재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신상정보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상정보의 안정적 운용과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관리시스템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 향후 법무부의 신상정보 등록관리시스템과 여성가족부·경찰청시스템을 통합하는 신상정보 통합전산망을 구축함으로써 중간 연계 절차를 생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또한, 현행 제도 상 신상정보 제출은 등록대상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신상정보의 정확성과 관리의 내실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수용정보시스템, 범죄경력시스템 등을 통해 주민등록지, 고용보험 자료, 소유차량 등록번호, 출입국자료, 수용자료, 성범죄 전과자료 등을 조회하여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관계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조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13년 이후 매년 등록대상자가 1만 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조회 연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공개·고지 명령 및 면제 시 재범위험성 평가 도입

- 현행법에 법원은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보안처분으로 본다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여 배제할 것이 아니라 공개·고지명령의 요건으로 재범의 위험성¹⁴⁾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점은 전자감독제도와 성충동 약물 치료제도가 법원의 재범위험성 인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14)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신상등록 위한 현법소원 청구에 대해 등록 관련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하고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 신상정보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크다며 신상정보 등록 합헌 결정이 났으나, 현재 재판관 3명은 재범위험성에 대해 심사절차를 두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있었음(2017헌미399, 2019.11.28.). 공개·고지의 경우 단순 등록보다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재범 위험성 심사절차 등의 제도 도입이 더욱 필요해 보임

- 공개·고지명령이 인터넷으로 사진을 비롯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이웃 주민들에게 주거지의 상세주소까지 포함된 신상정보가 우편고지 되는 등 형벌 못지않은 중대한 형사법적 제재이고, 등록대상자 및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개별적인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 특히, 고지명령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지역주민 등에게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개·고지명령 부과 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처럼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판결 시 참고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 2017년 6월 시행된 등록면제제도는 재범위험성의 평가 없이 일정한 객관적 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등록이 면제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인 경우에도 부과 받은 등록기간 중 약 70%가 경과하고, 성범죄 재범을 저지른 경력이 없으며, 선고받은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는 등의 등록면제를 위한 객관적 요건만 충족하면 면제가 가능하기에 청와대 국민청원(2017.12.5.)에서 60만 명 이상이 출소를 반대한 조두순의 경우에도 면제의 객관적 조건만 충족된다면 면제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객관적 조건 부합 여부만으로 면제를 허가하는 방식에서 면제 심사 시 재범위험성 평가를 반영한 면제방식으로 개선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범죄자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 신상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기반 구축 및 활용범위 확대

- 법무부 신상정보관리센터는 2015년 7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수행하는 업무는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록기간 동안의 신상정보 보존·관리, 여성가족부에 공개·고지 대상자의 신상정보 전송 등이다. 신상정보관리센터에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판결문, 등록 성범죄내용, 성범죄 경력 등의 중요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나, 현재 신상정보 데이터 등록, 관리, 관계기관 간 전송 및 요청받은 수사자료 제공 등의 업무에 머물고 있다.
-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성범죄 발생 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지만,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교육적·치료적 개입 또한 매우 중요하다. 성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치료,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기초자료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신상정보관리센터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수사기관에서 보유한 수사나 기소단계의 성범죄자 자료와는 달리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성범죄자의 자료이다. 이러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판결문 등의 관련 자료를 보관 위주의 관리차원에서 벗어나, 방대한 성범죄자의 정형·비정형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신상등록 정보의 활용 범위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보호관찰 기관을 포함한 법 집행 및 감독기관, 아동 보호기관 등과 같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자원봉사단체에까지도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영국의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다양한 지역사회 형사 사법기관들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상정보를 성범죄예방과 수사에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사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만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국가나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성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신상등록 정보 제공 범위와 성범죄의 심층 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9). 「연구보고서」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보호관찰 연계방안 연구: 외국의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보호관찰 연계 사례 중심으로.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9). 보호관찰 30년사.
-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 법무부 교정본부. (2019). 교정통계연보.
- 법무연수원. (2019). 범죄백서.
- 통계청. e-나라지표.
- 강지현 · 김정명 · 김지선. (2012). 성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Ⅰ) - 신상공개 제도의 효
과성 연구.
- 강지현. (2013). 신상공개제도 대상자의 제도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호관찰 중인 신상공개 대상
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2).
- 김정환. (2013). “2013년 성폭행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 보호관찰, 13(1).
- 김태명. (2011).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2(3).
- 문지선. (2016).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개선방안, 신상정보등록제도 개선 입법공청회 자료.
- 법무부용역과제. (2015). 성범죄자 프로파일링 및 신상정보등록제도 효율화 방안.
- 심선옥. (2015).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외출장보고서.
- 조윤오. (2017).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조직 및 인력 운영 개선 방안 연구.
- 조종태. (2015).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형사법학 석사 학위
논문.
- 최응렬 · 장현석 · 이창배. (2007).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1권.

2. 국외문헌

- 법무 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 (2005). “성범죄자 관리: 경찰 지원 시민지원봉사” 보고서.
- Beard, J. (2017).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sex offenders. House of Commons Briefing
Paper, Number 5267, 28.
- Brodsky, D. (2006), The ‘predator’ next door: Risk management at the community interface.
37th Annual APPL meeting, Chicago, USA.
- Cole, M., & Petrunik, M. [2006].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privacy rights. Criminal Justice
Reports.

- Davidson, J. (2009). Sex offender registration – a review of practice in the United Kingdom, Europe, and North America. Hallam Centre for Community Justice Briefing Paper.
- Donaher, E. (2015). Sex offender registration laws for the homeless: Safeguarding society or punishing sexually dangerous individuals for being homeless?
- Hudson, K. (2005). Offending identities: Sex offenders' perspectives on their treatment and management. Portland, OR: William Publishing.
- Lovell, E., (2007). Megans's law: Does it protect Children? LohDom: Polocy and Public Affairs, NSPCC.
- Ministry of Community Safety and Correctional Services(MCSCS). (2004). Annual Report 2003-2004. Ministry of Community Safety and Correctional Services.
- Murphy, L., Fedoroff, J. P., & Martineau, M. (2009). Canada's sex offender registries: Background, implementation, and social policy considerations.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18(1-2).
- Newburn, K. (2011). The prospect of an international sex offender registry: Why an international system modeled after united states sex offender laws is not an effective solution to stop child sexual abuse.
- Petrunik, M., Murphy, L., & Fedoroff, J. P. (2008). American and Canadian approaches to sex offenders: A study of the politics of dangerousness.
- Public Safety Canada. (2007). National sex offender registry.
<http://www.publicsafety.gc.ca/prg/cor/tls/soir-eng.aspx>.
- Thomas, T., (2008). Sex offender 'Register': A case Study in Function Creep.
- U.S. Department of Justice. (2016). SMART summary 2016 global survey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system. U.S. Department of Justice.
- Vess, J., Langskail, B., Day, A., Powell, M., & Graffam, J. (2011). A Comparative analysis of Australian sex offender legislation for sex offender registries.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44, 404-424. doi:10.1177/0004865811419065.
- Walker, J., Madden, S., Vásquez, B., VanHonten, A., Ervin-McLarty, G. (2005). The Influence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Laws in the United States.
- Zevitz, R., (2003). Sex offender Community Notification and Its Impact on Neighborhood Life.

2020 성범죄백서

인쇄일 2020.2.7

발행일 2020.2.10

발행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총괄 강호성(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 및 집필 문희갑(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장)

손세현(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장)

민덕희(법무부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김근한(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사무관)

김상술(법무부 전주소년원 책임관)

김용우(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책임관)

이선구(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책임관)

이민우(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책임관)

홍수민(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주무관)

임수정(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주무관)

디자인 · 인쇄 디자인페이지 02) 2285-5278

2020
성범죄백서

